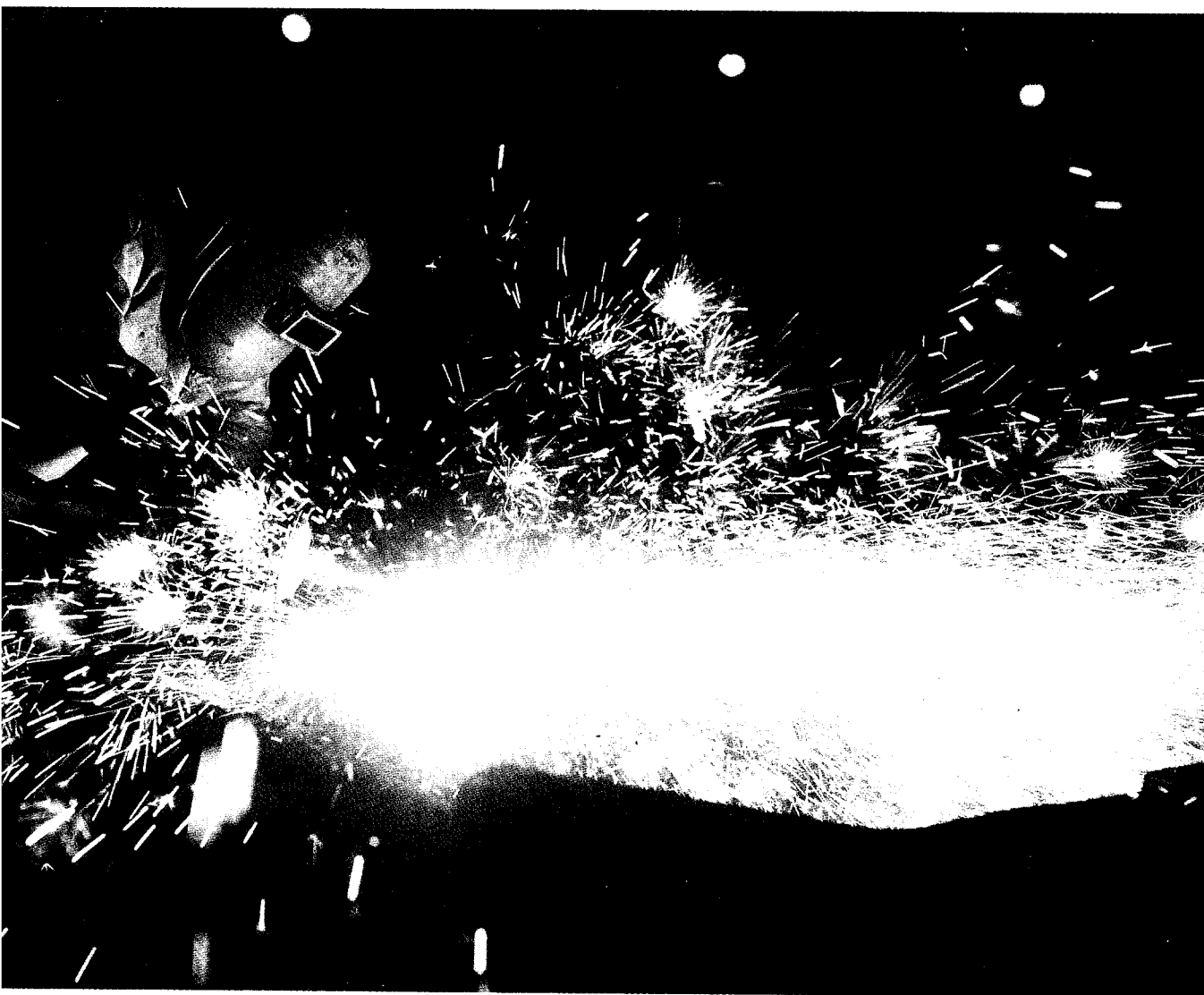


1993년도

사업보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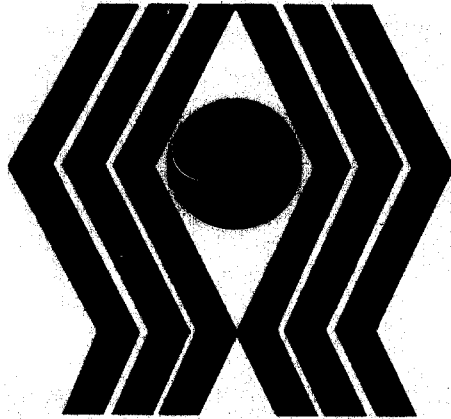
1993년도

사 업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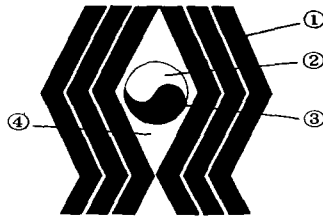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금속노조연맹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의 업종별, 분파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한국의 금속노동조합을 뜻함.
 3. 원 : 뜻과 목적과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를 나타내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뭉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머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땀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무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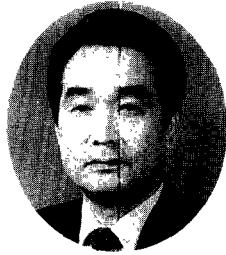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저 가 는 금 속 노 — 련

목 차

1. 화 보	6
2. 머리말	17
3. 선언·강령	20
4. 연 혁	21
5. 총 론	29
6. 총무활동	51
7. 조직활동	81
8. 국제활동	155
9. 노사대책·법규활동	201
10. 조사통계활동	267
11. 산업안전활동	317
12. 교육활동	321
13. 홍보활동	331
14. 여성활동	363
15. 문화활동	379
16. 복지활동	389

임원



위원장
박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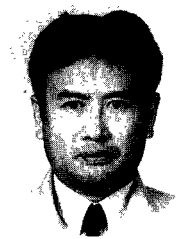
수석부위원장
김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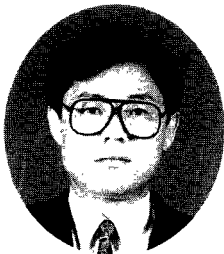
부위원장
김성문



부위원장
배창영



부위원장
배재섭



부위원장
박병준



부위원장
배기춘



부위원장
배학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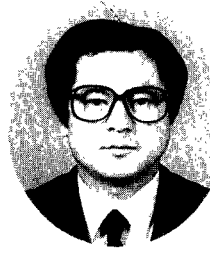
부위원장
배선중



부위원장
박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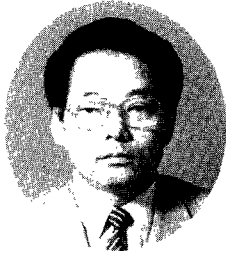
부위원장
배희중



부위원장
배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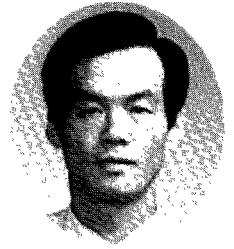
부위원장
배재석



부 위 원 장
강 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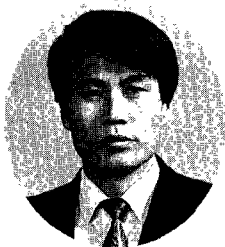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박 영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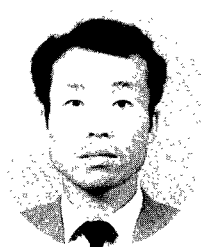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김 영 철



사 무 처 장
최 웅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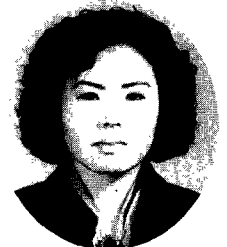
회 계 감 사
오 병 호



회 계 감 사
김 흥 수



회 계 감 사
김 동 교



회 계 감 사
박 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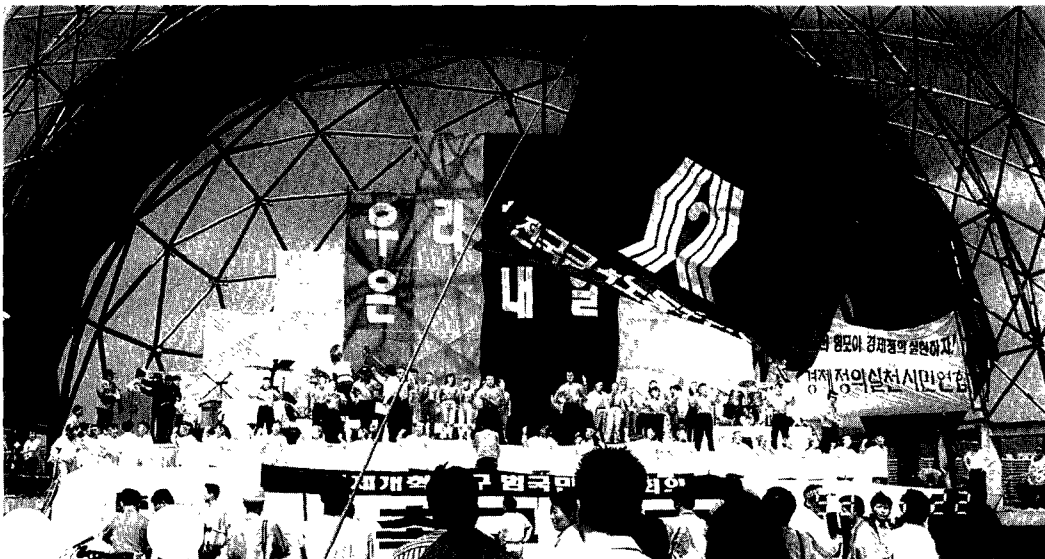
화보로 보는 '93년 연맹 주요 활동

힘찬 단결과 계속 전진을 다짐한 정기대의원대회



'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5월 20일 노충강당에서 열렸다

“경제개혁을 촉구한다”



93. 5. 22 한강시민공원에서 울려 퍼진 경제개혁의 함성

금속노련 창립 제32주년 및 30년사 출판기념식



금속노련 30년사 출판기념과 창립 3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박인상위원장이 일본 사절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노총위원장 및 역대선배들과 함께 축하촛불을 끄는 박인상 위원장

노동자 의식을 고양한 활발한 교육활동



◁ '93 신입대표자 세미나

핀란드 금속노조지원 ▷
산업안전 활동세미나



◁ 제20회 여성간부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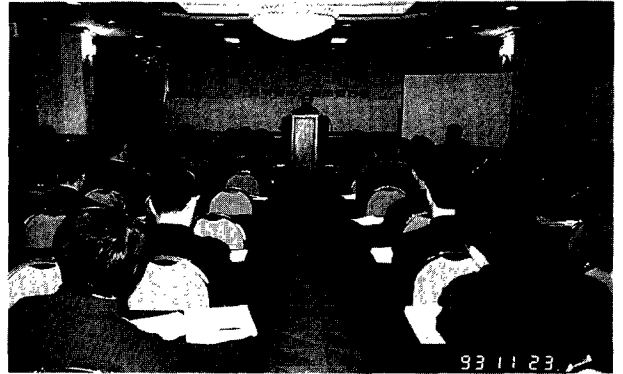
신노동정책 대응을 위한 ▷
정책 세미나



신노동정책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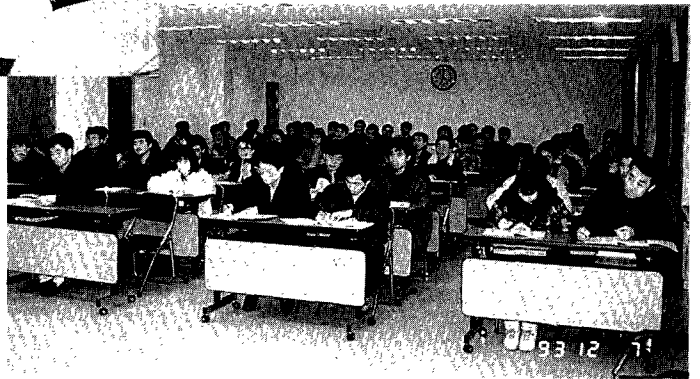
진수: 하근호 추조안규영의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1차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



< 신입사무국장 교육

홍보선전 교육 >



상집간부 실무전문 교육



제2차 노동문화 지도자양성 교육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강력한 집행력 도출



제3차 중집및 실·국·부장 연석회의



'93임투를 정리하고 평가한 '93임투 평가회의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회의



제109차 중앙위 및 제4차 중집연석회의

노동외교 및 대외활동



◁ 중화전국총공회간부의 방문을 받고 환담하는 박인상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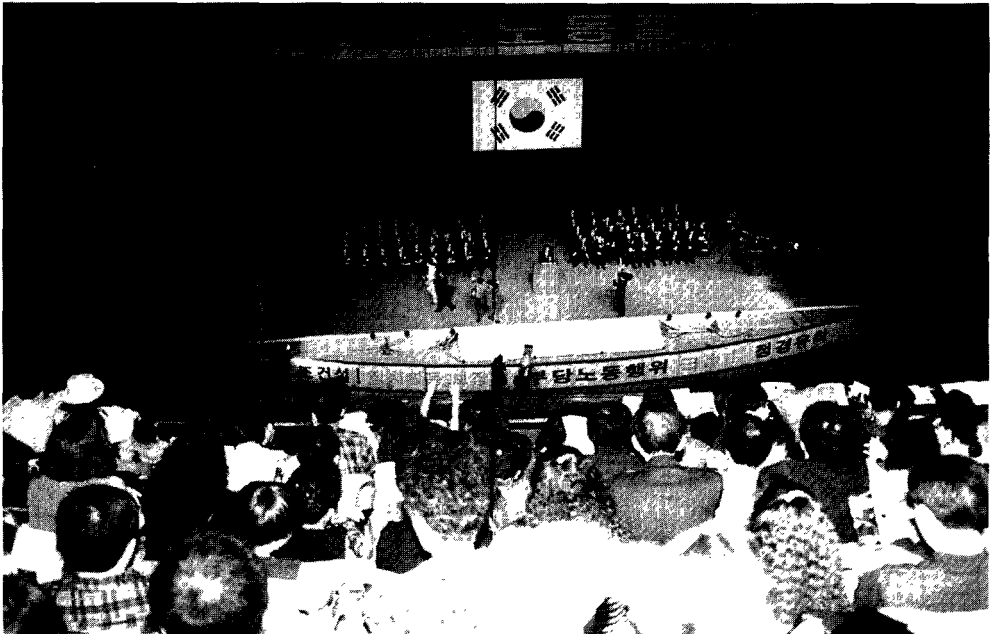


일본 자동차 총련 및 혼다노
런 간부들과 요담하는 박인상
위원장



◁ 노동자신문 창간 4주년
기념리셉션에서 축사를
하는 박인상 위원장

국제 노동자의 축제일 5.1노동절



법적으로도 이제는 5.1 노동절을 거부할 수 없었다.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채운 노동절행사

머 리 말

지난 '93년은 한국에 있어서 격변의 한해였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61년 5월 16일 군부정치가 등장한 이래 32년만에 최초로 민간정부를 갖게 되었다. 민간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그 개혁성향에 대해 의혹도 있었으나,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작년 우르과이라운드와 쌀시장개방 문제, 그리고 '94년에 들어서는 낙동강, 영산강 물 오염, 물가상승 등에 뒤이어 최근에는 국무총리 경질이라는 사태를 맞이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한국 경제는 최근 3~4년동안 산업구조재조정에 따른 충격을 앓고 있다. 작년중반기까지 침체일로를 거듭해오던 경기는 하반기에 들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으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산업과 사양산업간에 경기회복 속도나 그 정도가 양극화되는 경기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해 수출지향적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처하겠지만,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경기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농촌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력과 더불어 고용불안,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사내의 하청,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을 날로 증대시키고 있어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조합원수를 잠식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작년 도입된 고용보험제의 경우도 오히려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통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의 근대화라는 두가지 목표하에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었다. 이러한 목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가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이 두가지 목표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정부는 신경제 성공이라는 목표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난 1년간 명확히 보여주었다. 노동부 지침제비과정에서 일어났던 무노동 부분임금 파동과 현대자동차 노동쟁의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블루라운드의 여파로 다시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의 경우 정부는

당초 작년 노동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노동법개정연구회에 초안 작성을 맡긴 바 있다. 그러나, '92년말 노동부장관이 교체된후 노동법 개정은 다시 금년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인 97년까지 경제의 완전한 국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법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법개정이 반드시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정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점이 있다. 정부, 경영자측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향적으로 푸는 대신 노동기준을 저하시키고 개별적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년 좌절되었던 근로자 파견법을 금년도에 재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천명이나,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 공휴일 삭감, 파트타임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도 등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신정부의 임금정책은 과거의 물리적인 탄압에서 고도의 이념적, 제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해였다. 작년 임금교섭에 있어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한국 노총이나 한국경총이 4.1임금합의라고 불리는 단일 지침을 냈다는 점이다. 이 지침은 본노련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단위노조의 임금교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산하노조에 반발을 가져왔었다. 금년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대와 불참보다는 사실상 산하노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중앙교섭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고, 우르파이라운드를 빌미로 한 정부, 사용자측의 노동법 개악시도와 파트타임, 근로자파견법 도입시도 등을 막는 한편,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고용보험제 적용대상 확대, 세제개혁 등의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켜 보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본노련에서는 작년과 금년도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한 연후 향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속노련은 지난 30여년간 군사독재의 통제하에서 매우 어려운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었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경제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하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산업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경영합리화노력도 가속화되어, 신인사제도, 능력주의적 인사관리, 직능자격제도 등의 이름하에서 임금체제 개편과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정부, 사용자들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키 위한 토론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련은 새로운 정책수립과 이의 확산에 역점을 두어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예상되는 노동법개정과 그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직적혼란에 대처하여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업종별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고용안정대책, 정책, 제도개선, 조직, 교육정책 등을 보다 내실있게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2~3년이 정부, 사용자에게 있어서 전환기이듯이,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환기가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는 전환기라기 보다는 위기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으나, 위기는 또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장과 단위노조 연맹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당당하게 대처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전체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는 자세로 우리 금속노련은 우리에게 닥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활동해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5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宣 言 · 綱 領

宣

言

民族의 繁榮과 祖國의 平和의 南北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意志는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깃발아래 굳게 뭉쳤다.

國家産業의 根幹을 이룬 金屬産業發展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從事하는 우리들은 一絲不亂한 運動體制아래 勞動者의 生活 向上과 社會的 地位를 드높이기 위하여 前進 또 前進하련다.

우리 勞動者는 鞏固한 團結力과 피끓은 同志愛로써 民主主義 諸原則下에 勞使平等의 産業民主主義 俱現을 통한 國家發展에 全力을 다하여 勤勞大衆의 福祉社會建設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제 金屬産業에 從事하는 우리 勞動者들은 이 나라 國民의 注視와 關心속에 社會正義實現에 果敢하게 前進하며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民主化的 實踐을 期하고 産業平和의 繼續의 人 維持로 子孫萬代의 榮光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勞動組合 發展에邁進할 것을 嚴肅히 宣言한다.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綱

領

- 一. 우리는 勞動組合의 組織을 擴大, 強化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祖國의 繁榮과 民主的 平和統一의 先鋒이 된다.
- 二. 우리는 自由, 正義, 平等의 運動理念을 俱現하기 위하여 自由로운 政治活動에 參與, 民主勞動運動의 恒久的 發展을 期한다.
- 三. 우리는 鞏固한 團結로써 勞動者의 地位向上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爲한 福祉國家 實現을 期한다.
- 四. 우리는 健全한 勞動精神으로써 組合員의 總意와 力量을 集中하여 勞動權 尊重의 産業民主化를 期한다.
- 五. 우리는 勞動者의 教育訓練과 文化向上에 強力한 實踐을 期한다.
- 六. 우리는 民主友邦의 勞動者와 國際的 紐帶를 強化하여 世界平和에 貢獻한다.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沿 革

西紀 1959年 3月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이 釜山地區 鐵工勞動組合을 主體로 하여 誕生하였으나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轉機를 摸索하여 오던中 西紀 1960年 10月 大韓造船公社를 主軸으로 한 韓國金屬勞動組合聯盟을 結成하여 事實上 第2勞組로 登場하게 되어 緊要한 總團結 課題는 混迷狀態에 이르게 되어 當時 勞聯에서는 또다시 西紀 1960年 10월에 仁川重工業會社를 主軸으로 한 이른바 全國鐵鋼勞動組合聯盟 結成委員會를 構成하여 第3勞組가 登場하는 課程에 處하여 오던中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으로 因하여 勞動團體가 解體되고 同年 8月 3日 公布된 法律 第672에 依하여 單一 產業別 體系인 全國金屬勞動組合이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어 結成되었다. 그러나 1980年 12月 30日 公布된 改正 勞動組合法에 따라 1981年 2月 23日 開催된 臨時全國代議員大會를 거쳐 全國金屬勞動組合을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으로 改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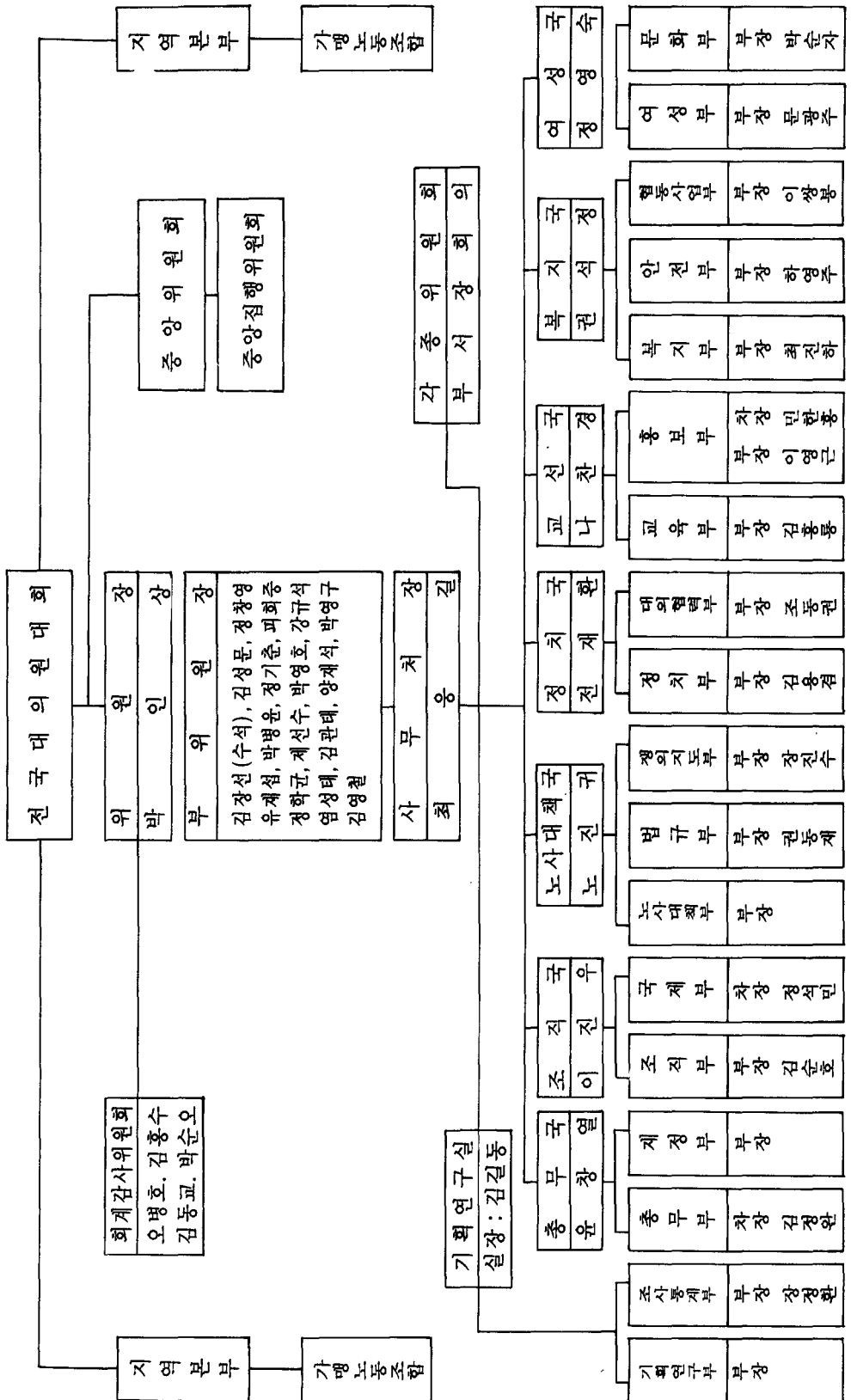
沿 革 一 覽 表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 성 대 회	1959. 3	柳 益 培	韓承龍, 李元錫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 성 대 회	1960. 10	林 漢 植	金 任 郁		
전국철강노동조합	1960. 10		準備委員會: 林漢植 準備副委員會: 宋榮俊, 金在範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성 대 회	1961. 8. 25	池 淵 日	金在範(大韓重機), 李秀永(三陽産業), 李鈴	朴 鍾 晔	609
제 2 차 대 의 원 대 회	1962. 7. 5	(仁川重工業)	(金泉鐵工)	(三成機械)	(61. 9) (62. 7. 20)
제 3 차 대 의 원 대 회 (임 시 대 회)	1963. 4. 12	朴 鍾 晔 (三成機械)	柳貴馨(韓國電力機械), 李秀永(三陽産業), 權鍾五(韓國機械)	金 得 成 (起亞産業)	5,034
제 4 차 대 의 원 대 회	1964. 4. 30		柳貴馨(韓國電力機械), 朴世天	"	8,455
제 5 차 대 의 원 대 회	1965. 4. 30		崔鍾圭(金星社), 李命求(仁川網業)	李 健 性 (仁川重工業)	9,110 (65. 3)
제 6 차 대 의 원 대 회	1966. 1. 8	朴 世 天 (韓國機械)	崔鍾圭(金星社), 金炳龍(起亞産業), 朴鍾宣(韓國工業)	許 萬 成 (仁川重工業)	9,984
제 7 차 대 의 원 대 회	1967. 4. 27		崔鍾圭(金星社), 金炳龍(起亞産業), 李熙鎔(仁川重工業)	洪 淳 模 (一進機械)	14,038
제 8 차 대 의 원 대 회	1968. 4. 30		"	"	15,223
임 시 대 의 원 대 회	1968. 9. 20	金 炳 龍 (起亞産業)	崔鍾圭(金星社), 李成學(朝鮮企業), 文益模 (利川電氣), 李圭雲(奉信鑄鐵), 姜俊錫(韓 國메아링)	李 澤 龍 (仁川重工業)	17,947
제 9 차 대 의 원 대 회	1969. 4. 29	金 炳 龍 (起亞産業)	文益模(利川電氣), 李圭雲(奉信鑄物), 姜俊 錫(韓國메아링), 虛在業(造船公社)(보선), 姜基泰(金星社)(보선)	李 憲 求 (韓國機械) (보 선)	23,960
제 10 차 대 의 원 대 회	1970. 4. 30	金 炳 龍 (起亞産業)	姜基泰(金星社), 鄭南洙(造船), 河俊(朝鮮 企業), 李牛年(韓國機械)	崔 鍾 圭 (金星社)	25,217
제 11 차 대 의 원 대 회	1971. 4. 16	金 炳 龍 (起亞産業)	鄭南洙(造船), 河俊(朝鮮企業) 文益模(利川電氣) (보선)	崔 鐘 圭 (金星社)	27,306
제 12 차 대 의 원 대 회	1972. 4. 28	"	"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 13 차 대 의 원 대 회	1973. 4. 25	金 炳 龍 (起亞産業)	文益模(利川電機), 姜俊錫(韓國베아링), 鄭 釜炅(金星社), 韓達洙(大韓電線), 彭宗茁 (造船公社), 金正培(大韓重機)	崔 鐘 圭 (金星社)	27,246 27,245
제 14 차 대 의 원 대 회	1974. 4. 30	"	"	"	43,856
제 15 차 대 의 원 대 회	1975. 4. 23	"	"	"	53,293
제 16 차 대 의 원 대 회	1976. 4. 21	"	姜俊錫(韓國베아링), 鄭釜炅(金星社), 河俊 (勝利機械), 韓達洙(大韓電線)	"	72,809
제 17 차 대 의 원 대 회	1977. 4. 27	"	"	"	92,756
제 18 차 대 의 원 대 회	1978. 5. 20	"	"	"	112,891
제 19 차 대 의 원 대 회	1979. 5. 11	"	河俊(慶北支部), 鄭南洙(釜山支部), 李憲求 (大宇重工業), 彭宗茁(造船公社), 李重錫 (南서울支部), 鄭藥均(金星電線)	崔 鐘 圭 (金星社)	138,668
제 20 차 대 의 원 대 회	1980. 6. 17	"	"	"	126,140
제 21 차 대 의 원 대 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 맹결성 임시대의원대 회, 정기대의원대회 갈 음)	1981. 2. 23	彭 宗 茁 (造船公社)	崔鐘圭(金星社), 閔正植(金星社), 朴仁相 (造機), 李俊(貨京), 韓昌錫(仁川製鐵), 金 將鮮(大韓電線), 李尚淑(金星通信), 權守泰 (起亞技研)	崔 鐘 圭 (金星社)	108,964 (81.3.31)
제 22 차 대 의 원 대 회	1982. 5. 7	彭 宗 茁 (造船公社)	權守泰(大林自動車), 朴仁相(造機), 閔正植 (金星社), 金將鮮(大韓電線), 韓昌錫(仁川 製鐵), 趙兌植(曉星重工業), 崔正元(大鮮造 船), 李成均(새한自動車), 許成元(金星電 線)	金 晟 文 (大韓電線)	99,594
제 23 차 대 의 원 대 회	1985. 5. 30	閔 正 植 (金星社)	權守泰(大林自動車), 朴仁相(造機), 金世民 (起亞産業), 金將鮮(大宇電子), 崔璟九(金 星알프스), 姜昌寧(東部製鋼), 崔圭文(國際 綜合機械), 金粧華(亞細亞自動車), 柳喆圭 (平和크릿치)	韓 昌 錫 (仁川製鐵)	119,636
제 24 차 대 의 원 대 회	1986. 5. 23	閔 正 植 (金星社)	"	"	119,445
제 25 차 대 의 원 대 회	1987. 5. 22	閔 正 植 (金星社)	"	"	138,990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 26 차 대 의 원 대 회	1988. 5. 27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金世民(起亞産業), 柳喆 圭(平和크리치), 姜榮燮(金星社), 任昌基 (大韓重機), 朴基植(聯合鐵鋼), 鄭基春(貨 泉), 李榮復(現代自動車), 李金樹(크라운전 자), 梁東生(大宇造船), 朴炳允(大宇通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業)	金 晟 文 (大韓電線)	295,864
제 27 차 대 의 원 대 회	1989. 5. 26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姜榮燮(金星社), 朴基植 (聯合鐵鋼), 鄭基春(貨泉), 李榮復(現代自 動車), 朴炳允(大宇通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業)	金 晟 文 (大韓電線)	356,900
제 28 차 대 의 원 대 회	1990. 5. 11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姜榮燮(金星社), 朴基植 (聯合鐵鋼), 鄭基春(貨泉), 朴炳允(大宇通 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 業)	金 晟 文 (大韓電線)	389,060
제 29 차 대 의 원 대 회	1991. 5. 15	朴 仁 相 (造 機)	수석: 金將鮮 상임: 金晟文, 鄭昌永 朴基植, 柳在涉, 朴炳允, 鄭基春, 車慶 俊, 丁學均, 諸善秀, 朴永浩, 皮熙中, 廉星泰, 梁在錫, 姜圭錫, 朴寧九, 全德 璿, 허관무	崔 雄 吉 (東洋鋼鐵)	272,078
제 30 차 대 의 원 대 회	1992. 5. 13	朴 仁 相 (造 機)	"	"	262,078
제 31 차 대 의 원 대 회	1993. 5. 20	朴 仁 相 (造 機)	수석: 金將鮮 상임: 金晟文, 鄭昌永 朴基植, 柳在涉, 朴炳允, 鄭基春, 車慶 俊, 丁學均, 諸善秀, 朴永浩, 皮熙中, 廉星泰, 梁在錫, 姜圭錫, 朴寧九, 全德 璿, 허관무 金榮喆, 김관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조직기구조표



○임 원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위 원 장	박 인 상	조 기 노동조합	부위원장	염 성 태	대 우 중 공 업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 장 선	대 우 전 자 노동조합	"	양 재 석	동 부 제 강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 성 문	대 한 전 선 노동조합	"	강 규 석	기 아 특 수 강 노동조합
"	정 창 영	금 성 전 선 노동조합	"	박 영 구	력 키 금 속 노동조합
"	유 재 섭	금 성 사 노동조합	"	김 영 철	현 대 전 자 노동조합
"	박 병 윤	대 우 통 신 노동조합	"	김 관 태	기 아 자 동 차 노동조합
"	정 기 춘	화 천 기 공 노동조합	사무처장	최 웅 길	동 양 강 철 노동조합
"	정 학 균	대 동 조 선 노동조합	회계감사	오 병 호	오 리 온 전 기 노동조합
"	제 선 수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조합	"	김 홍 수	금 성 제 전 노동조합
"	박 영 호	영 창 악 기 노동조합	"	김 동 교	인 천 제 철 노동조합
"	피 회 중	영 남 주 물 노동조합	"	박 순 오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지역본부의장

지 역 본 부	의 장	지 역 본 부	의 장
서 울 지 역 본 부	안 영 환	경 남 지 역 본 부	제 선 수
경 기 지 역 본 부	하 영 일	울 산 지 역 본 부	오 진 현
인 천 지 역 본 부	박 한 주	대구·경북지역 본부	김 경 조
충 남 지 역 본 부	김 두 형	포 함 지 역 본 부	백 종 부
충 북 지 역 본 부	김 홍 수	구 미 지 역 본 부	박 병 도
부 산 지 역 본 부	오 봉 출	광주·전남지역 본부	정 기 춘

○중앙위원(당연직 제외)

94. 3. 31 현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 승 리	금성사 구로	이 해 석	대 우 전 자	서 민 애	한국시그네틱스
박 한 섭	동 아 건 설	신 성 균	오 트 론	김 광 현	풍 우 실 업
이 대 영	풍 성 전 기	가 재 두	일 진 전 기	도 정 복	금 성 전 선
신 철	신 일 산 업	김 수 룡	대광다이케스트	윤 무 영	신 한 주 철
유 병 류	신 한 일 전 기	김 권 태	삼 협 전 자	안 회 철	홍 진 기 연
엄 종 국	세 광 알 미 늄	경 홍 식	범 양 냉 방	장 세 익	삼 영 전 자
최 진 화	일 진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박 남 수	코리아스파이서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준만	후지카대원	김동영	한독	오동필	린나이
전재환	대우중공업	이영식	동양철관	이은물	대림통상
박재혁	한국사프	박재형	맥슨전자	이형일	뉴맥스
권성하	에넥스	박갑철	고려제강	김병규	명성
김종갑	한보철강	조덕래	한국주철관	강정목	대동기어
김동철	삼미특수강	이석오	한일제관	강의룡	기아정기
박복열	세신실업	김복천	정일공업	장지태	경창산업
김환수	세방전기	주태화	삼성제침	박용민	평화발레오
서학렬	조광산업	최창기	오리온전기	권선국	한국전자
장문식	동일기업	임문택	기아특수강	장석웅	한일전기
신송근	동국종합전자				

○ 중앙집행위원

94. 3. 31 현재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익화	대한전선	김종국	금성전선구미	김판호	대아산업
박정화	동아정기	김해주	동일제강	김순호	삼양중기
이종진	성신	김윤주	범양냉방	이병욱	태양금속
김규호	부산정기	김덕수	한국종합기계	전병순	대우통신
김남수	두원중공업	임권혁	쌍용중공업	김대근	범한금속
최영대	경신공업	김기선	한국시티즌	천광희	금성사구미1
기한도	고려아연	김무호	평화크랫치	강동근	대동금속
강학중	성림기업	정해용	부산파이프	감상달	강원산업

○ 실·국장

94. 3. 31 기준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소속
기획연구실장	김길동	금성통신노동조합	정치국장	전재환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조직국장	이진우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본노련
총무국장	윤창열	"	교선국장	나찬경	금성사평택노동조합
복지국장	권석정	한샘노동조합	여성국장	정영숙	한독노동조합

○ 부서부장 · 직원

94. 3. 31 현재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조 직 부 장		김	순	호	삼양중기 노동조합	여 성 부 장		문	광	주	세진전자 노동조합
교 육 부 장		김	홍	룡	영창악기 노동조합	문 화 부 장		박	순	자	로움코리아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장	정	환	대원전선 노동조합	법 규 부 장		권	동	재	오리엔탈정공 노동조합
쟁 의 부 장		장	진	수	경원세기 노동조합	정 치 부 장		김	용	겸	럭키금속 노동조합
대외협력부장		조	동	권	화신테크 노동부장	홍 보 부 장		이	영	근	경 남 지 역 본 부
복 지 부 장		최	진	하	일 진 노 동 조 합	협동사업부장		이	쌍	봉	서 울 차 체 노동조합
총 무 차 장		김	정	완	본 노 련	홍 보 차 장		민	한	홍	본 노 련
국 제 차 장		정	석	민	"	직 원		김	영	미	"
직 원		조	경	숙	"	직 원		백	명	아	"
직 원		박	창	식	"						

총 론

I. 경제동향

1. 세계경제동향
2. 국내경제동향
3. 우르파이라운드 타결과 그 영향

II. 노동동향

1. 노동정책
2. 근로자생활실태

I. 경제동향

1. 세계경제 동향

1) '93년 세계경제 운용

- 1.1% 성장에 그쳐, '94년에는 완만한 회복기대

'93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경기침체속에서 정권교체의 변화를 겪은 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이들 국가가 여전히 약세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1.1%의 저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인구도 급팽창하여 '93년말 현재 선진국 실업인구는 3천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도 독일, 일본 등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입수요가 줄어든데다 EC, NAFTA 등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분쟁의 심화로 1%(수입액 기준)의 저성장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는 선진국들이 2%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구공산 국가들의 성장위축도 어느정도 진정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7%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도 완만한 경기회복과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작년보다 훨씬 높은 7% 내외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1992	1993	1994		
			상반기	하반기	
세계경제성장률	1.7	1.1	2.4	2.9	2.7
선진국	1.7	1.3	2.2	2.7	2.4
미국	2.6	2.8	2.9	3.1	3.0
일본	1.3	-0.2	1.0	2.1	1.6
독일	2.0	-1.0	-	-	1.5
개도국	4.8	5.3	-	-	5.3
구공산권 ¹⁾	-12.0	4.1	-1.3	2.6	0.7
세계무역신장률 ²⁾	5.9	1.0	6.3	7.5	6.9
선진국	4.3	-0.9	4.2	5.4	5.8
개도국 ³⁾	10.2	6.9	8.2	9.8	9.0

자료 : 산업연구원.

UN 「94 세계경제전망」, 1994. 1. 6

주 : 1) 중국포함, 2) 수입금액 기준, 3) 구공산권 경제포함

국제금리 · 환율 · 유가전망

(단위 : 연율, %)

	1992	1993	1994				
			1/4	2/4	3/4	4/4	
미국공정할인율	3.00	3.00	3.00	3.00	3.50	3.50	3.50
일본공정할인율	3.25	1.75	1.50	1.50	1.50	2.00	2.00
독일공정할인율	8.25	5.25	4.75	4.25	4.25	4.25	4.25
엔/달러	124.6	109.6	109.0	109.0	108.0	108.0	108.0
마르크/달러	1.615	1.700	1.720	1.730	1.750	1.750	1.750
WTI	19.5	18.5	16.5	17.7	17.9	18.8	17.8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개도국 경제는 지역별로 다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93년에는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94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새로운 저임 노동시장을 노리는 국제자본이동경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92, '93년 모두 13%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세계최고의 성장률을 보였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도 7% 이상의 GDP성장을 나타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추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속성장의 배후에 열악한 근로조건, 아동노동, 여성의 장시간 저임 노동 등이 강요되고 있고 인원, 노동조합권에 대한 기본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나, 이들 나라의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UN의 주요개도국 실질GDP 성장추이 및 전망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p)
한 국	6.1	9.0	8.4	4.7	4.6	6.5
대 만	7.6	5.0	7.2	6.6	6.0	6.3
중 국	3.6	5.2	7.7	12.8	13.0	9.5
인 도 네 시 아	7.4	7.4	6.6	6.3	6.5	6.5
태 국	12.0	10.0	6.0	7.4	7.5	8.0
라 틴 아 메 리 카	1.1	-0.1	2.8	2.2	3.1	3.0

자료 : UN, '94년 세계경제 전망, '94. 1. 6

2)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등장 - 지역주의의 가속화와 UR의 타결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격렬한 합리화 전략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신보수주의 전략이 오히려 세계경제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의 수요를 정체시킴으로써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던 발전도상국의 경기악화를 동반하면서 '90년대 이후 불황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근년간 각국은 초국적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저임지역으로의 자본 이동을 확대하는 한편, 보호주의를 강화하여 역내시장의 확보를 위한 지역통합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량의 자본유입에 따른 개발붐을 겪으면서 국제분업질서의 하부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으며, 지역적인 경제통합 움직임도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지역의 삼극체제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C는 지난 11월 1일의 마스트리트조약의 정식발효와 함께, EC를 더욱 확장한 유럽 경제지역(EEC)의 창설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지난 11월 미의회에 비준을 받음으로써 역시 '94년 1월 1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블록의 탄생이 지난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으로 본격 가동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화 경향은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대내적으로는 저임지역으로 생산자본이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실업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86년 9월 '푼다 델 에스테' 각료선언으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협상이 7년 3개월만인 지난 12월 15일 미국과 EC의 타협으로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냉전체 이후 계속되어온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작업이 1993년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계116개국이 참가한 이번 협상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따라 1947년 이래 세계무역질서의 바탕이 됐던 관세 및 일반무역협정(GATT)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95년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점으로 한 다자간 무역기구가 새로운 무역체제를 끌고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교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국제자본시장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개편 논의를 놓고 있어, 마야흐로 세계경제는 2차 대전이후 지속되어 왔던 미국 중심의 GATT, IMF 체제로부터 다극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엇보다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협상의제들은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블록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장본인들도 국경을 넘나들며 기업내 분업을 완성시키고 있는 세계적 자본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의 정부들 역시 개방의 이익을

노리는 자국의 산업,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이러한 재편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반드시 농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업자의 이익이 반드시 생산자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때 향후 세계경제는 UR의 타결로 인한 보다 확대된 자유무역질서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의화 경향을 동시에 띠는 한층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세계경제 질서를 조정할 수 있는 규범들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환경문제, 노동기준,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규제수단들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환경의 엄청난 변화속에서 사회복지와 고용안정 등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활을 풍부하게 할 '노동의 인간화' 전략은 국가이익에 밀려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노동운동의 세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경제 동향

1) 신경제 계획의 허와 실

정부는 출범이후 이른바 '신경제'를 표방하면서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금리를 세차례 인하하였으며 직접적인 자금공급도 단행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해 주었으며, 고통분담론을 통하여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유도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도 잡고 고성장을 달성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신경제의 '세마리 토끼론'에 대한 우려와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신경제' 1년의 성적표는 참으로 불만스럽다. 성장과 투자는 각각 4.5%와 1%씩 목표에 미달하였지만 물가만은 0.9%를 초과달성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비록 무역수지가 당초 목표보다 개선되었지만 그것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중 달성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억제뿐으로 유일한 소득원천인 임금을 양보하면서까지 정부를 지탱해준 노동자를 완전히 기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이 근로자의 생활향상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과 적대를 심화시키고 말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신경제 100일 기간 동안에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이유로 금리인하와 직접적인 통화증발을 감행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잠재화(6조원)시켰고,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자산계층의 불만과

사보타지를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통화공급(4조원)을 확대한 바 있다. 기업에게는 도저히 높은 금리를 부담시킬 수 없는 정부가 노동자에게는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라고 강요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약속이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은 분명하며, 경제발전에 대한 노동자의 동참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는 그 자체로 임금생활자로부터 자산소유자로의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단위 : %, 억달러)

	「신경제」 '93목표	'93년 실적	'94년 전망			
			KDI	KIET	한 은	민간연구소
○ 성 장 륜	6.0	5.0내외*	7.0	6.4	6.3	5.5~6.8
-민간소비	5.5	5.4	5.7	6.0	5.6	5.5~5.8
-설비투자	4.5	0.0	6.2	6.7	5.8	3.8~7.5
-건설투자	2.8	4.8	7.0	8.0	6.5	1.2~6.5
○ 경상수지	-14	2~3	12	10	5	4~23
(무역수지)	(10)	(20)	(32)	(33)	(24)	(19~23)
-수 출	823	824.4	877.3*	898	890내외	878~894
(증가율)	(9.5)	(7.6)	(9.1)	(9.1)	(7.9)	(7.0~8.6)
-수 입	813	838.8	845.3*	900	900내외	880~892
(증가율)	(5.1)	(2.5)	(7.7)	(7.8)	(7.8)	(5.5~6.6)
○ 소비자물가	4.9	5.8	5.6	5.8	6.1내외	5.8~6.0

자료 : 경제기획원

주 : *은 국제수지기준

더우기 신임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목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물가안정이 더이상 내각의 최우선목표가 아님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초부터 대대적인 공공요금의 인상(현실화)을 단행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물가인상을 주도하였으며, 잇따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인상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국민의 여론과 노사문제의 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우려가 일자 뒤늦게 전근대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물가불안요인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다. 자본자유화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해외자본의 대폭적인 유입은 직접적인 통화증발(외화유입은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찍어내는 것과 같다. 약 5조원 예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가격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가격이 4.7% 오르는 등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통화유통속도의 정상화가 본격화 되는 것도 중대한 물가불안요인의 하나이다.

2) 변화없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안

그러나 정부가 밝힌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UR타결에 따른 농업대책이 추가되었을 뿐 그 기조에 있어 과거정책을 그대로 베껴오고 있다. 성장과 물가안정,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확대, 공공투자의 민간이양 등이 기본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를 상쇄시킬 해외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국제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한국경제관은 상당히 안이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허약한 우리경제가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국내자본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 체질을 강화하기 보다는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투기적인 경제관행을 시정하는 '경제개혁'이 '성장' 보다 먼저 고려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는, 환경관련규제를 완화하자마자 폐수가 넘치고 농촌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새로운 세금을 거두는 식의 낙후된 해결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3)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기순환

어쨌든 올해에는 경기회복이 서서히 가시화될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경제는 80년대 중반의 건설, 해운의 부문공황, 89년의 중간공황을 거치면서 92년에 전반적인 공황의 징후를 보였다. 최저의 성장률, 마이너스 투자증가율, 부도율의 고조, 실업률의 증가, 주가하락 등 모든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1.5%의 경상이익률은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했고 금융비용부담률은 82년 이후 가장 높은 6.3%였다. 이러한 주기적인 경기순환이 '92년 11월을 바닥으로 하면서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산업생산·GNP·가동률

(단위 : %)

	1992		1993						
	11월	4/4	1/4	2/4	3/4	1월	8월	9월	10월
동 행 종 합 지 수 순 환 변 동 치	96.1	96.1	95.3	95.8	95.8	95.0	94.4	94.5	94.6
산 업 생 산 지 수 (전 기 대 비)	-1.3 (-3.1)	0.3 (9.0)	0.7 (1.0)	1.7 (1.8)	5.2 (0.2)	3.5 (-0.4)	10.4 (-3.0)	4.1 (4.5)	(5.1)
국 민 총 생 산	-	2.8	3.4	4.5	6.5	-	-	-	
제 조 업 평 균 가 동 률	76.2	77.2	77.9	79.1	77.8	76.9	76.0	78.3	81.2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산업생산 전기대비는 계절변동 조정지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제조업의 재고율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회복국면의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황은 자본의 '폭력적인 재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비효율적인 부문이 퇴조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기순환은 적어도 5~6년간의 연속적인 과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때, 80년대 중반이후 제조업 내부에 있어서의 저임금 부문의 현격한 비중감소와 해외이전의 증가, 그리고 중화학부문의 비약적인 성장 등에서 산업과 수출구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는 것도 경기순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불황시기에 실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조합은 수세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력화 되는 반면, 자본은 '합리화'를 통해 이를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재생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동화를 비롯한 신규투자는 호황국면보다 불황기에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파산한 경쟁자본들을 정리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전체취업자가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자본의 공황탈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순환의 상태중에서 그중 노동자에게 가장 덜 고통스러운 상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이다. 물론 성장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같이 누릴 보장은 없지만 경기후퇴시에 손해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우선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자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배를 요구하는 투쟁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우기 물가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최근의 상황은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노조의 입투에 정당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94년 국내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과 자동차 등 경기선도업종에서부터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그 영향

93년 12월 15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가트 무역협상위원회는 전세계 1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47년 이래의 가트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95년초부터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체제를 끌고 나가게 된다. 앞으로 세계교역은 새로운 무역기구 아래에서의 교역이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게 되며, 이는 외교부문에서의 유엔과 경제부문에서의 세계무역기구로 세계질서가 재편됨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가트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UR이 이전까지의 협상

과 달리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물론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규제(세이프가드) 등 일체의 보호주의 남용수단을 억제하고, 협상분야를 상품이외의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까지 협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협상이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구도변화에 따른 거대한 조정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농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달리 UR타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 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관세인하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장벽, 반덤핑,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관세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 요인 역시 작을 것이다(수입선다변화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면 영향은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UR 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근거들이다.

URI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해 당 산 업	경쟁력 변화	UR의 영향
구조조정 대상산업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경쟁력 상실	· 불리 - 단기 : 수출증가 - 장기 : 수출감소, 수입증가
성숙산업	합섬·직물,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경쟁력 유지	· 유리 - 수출증가
유치산업	건설·농업기계, 중전기,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통신장비, 우주·항공, 정밀화학	경쟁력 미확보	· 불리 - 수입증가 - 산업발전에 애로

UR이 산업자본 전체에 득이 된다 해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산업이 성숙단계에 있어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늘일 수 있는 반면 수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른 피해도 사소하다. 이러한 산업군에 속하는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며 UR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여 이미 격렬한 구조조정

의 과정에 있는 산업들은 UR로 인해 구조조정의 속도가 일층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선진국의 케타 철폐로 기득권이 상실되어 후발개도국의 도전에 수출시장은 급속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가품의 경우 후발국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제어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전형적인 저임의존형 경공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군이 있다. 건설 농업기계, 중전기 등은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고,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통신장비, 우주·항공산업분야는 첨단분야로 이제 유치산업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훨씬 어렵게 되어 관련제품의 수입은 증가하고 국내산업의 발전은 좌절될 수 있다(이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산업을 육성하려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UR이 채운 일반적인 족쇄이다). 이 산업들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으로 지목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UR은 산업별 경쟁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경쟁력 구조를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은 더욱 경쟁력 있게 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은 더욱 경쟁력 없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UR타결이 한국 제조업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단위 : 백만달러)

산 업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2년실적	영 향	1992년실적	영 향	1992년실적	영 향
식료품·담배	847	11	2,268	-28	1,421	36
섬유·가죽	19,874	180	3,797	-2	16,077	182
종이·펄프·인쇄	612	-24	1,653	17	-1,041	-41
화학·석유·고무	7,901	1,803	10,940	-432	-3,039	2,235
금속제품	7,344	1,783	7,983	-76	-638	1,859
전자	20,040	887	7,746	354	12,294	533
일반기계및전기기기	2,888	128	14,010	639	-11,122	-511
운수장비	9,408	37	5,429	-1	3,980	37
UR의 영향	49억 6천만 달러		4억 5천만달러		45억 1천만 달러	

자료 : 최낙균,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1993. 12. p. 128

II. 노동동향

1. 노동정책

'93년 한해는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일정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자동차 보험의 노조탈퇴 강요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그룹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신정부가 집권한 초기 노동부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사문제의 자율적인 해결원칙의 강조, 중립적인 노동행정의 표방이라는 구호속에서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는 무법성을 지녔던 노동부 행정지침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부가 보여준 초기의 참신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종래의 경제성장 우위의 노동정책으로 슬그머니 복귀하고 말았다.

특히, 최근에는 노조 전임자수 축소,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폐지 유도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소위 '문제성노조'로 지목 사정차원의 노조업무조사권 발동을 가시화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 임금정책

임금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노동부 표현에 따르면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안정'에 있었다. 즉, 임금억제의 기조는 6공 때와 마찬가지로, 6공 때와 달라진 것은 종래의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직접적인 억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임금인상자제를 위한 분위기의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압력을 가하고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동자도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등 고통분담의 대열에 동참하여 '신경제'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앙노사단체, 즉 노총과 경총이 4.7~8.9%에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임금교섭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기업에 대해 중앙노사합의 임금인상률을 집중지도하여 임금억제분위기를 전산업에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금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정책

신정부는 '신인력정책'이라는 이름아래 고용정책을 핵심적인 노동정책으로 삼고있다.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에 따른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는 등 노동력의 수급불균형과 고용구조의 질적 취약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고용정책의 방향은 우선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능력개발 및 재배치로 노동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고용보험제가 95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93년 12월 1일 국회에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고용보험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의 성격이 대단히 미약하며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에 치중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국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노동력 수급의 안정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한 집단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와 하청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고용불안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형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법을 입법화 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도입될 경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고 말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신인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고용정책의 기조는 안정적 고용과 능력개발을 보장받는 핵심노동자계층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불안, 능력개발로부터 소외된 주변적 노동자계층으로의 양극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생산성향상과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경영합리화 지원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우선 감량경영과 자동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경영합리화를 전개하고 있고, 소사장제, 독립하청, 공장내 하청, 해외로의 공장이전 등을 통해 기업을 분할하여 생산 단위를 세분화하기도 한다. 임시직, 시간제고용, 촉탁사원, 파견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배치전환, 직무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경영합리화전략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시간제근로자 등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개정하는 시안을 몇 차례에 걸쳐 제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3년 2월 제출한 '노동관련 행정규제 완화방안'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은 정리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거니와, 노동부도 지난해 초 정리하고 요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내렸다.

최근 정부와 사용자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적 노동력관리'이다. 이것은 기업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질을 갖춘 노동력을 적절한 양만큼 선택하고, 이 노동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헌도에 따라 배치전환, 승진,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체계, 즉 임금구조, 직제, 인력관리등의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한데, 그 핵심에는 직능자격제도의 도입과 이에 수반하는 직능급제체로의 임금체계개편이 자리잡고 있다.

직능자격제도는 기업에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임금만이 아니라 채용, 배치, 이동, 교육 등 노동조건 전반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은 노동자 내부의 차별화(능력주의)와 사용자의 인사고과권 강화 및 높은 인사고과를 얻기 위한 노동자들 내부의 경쟁격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이것은 결국 경영전권의 강화, 작업장 통제력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약화로 귀결된다.

4) 불루 라운드와 노동관계법 개정

UR 최종의정서의 서명을 위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던 GATT 각료회의가 지난 4월 15일 폐막했다. 이에 따라 GATT는 보다 강력한 무역제제권한을 갖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UR타결 막바지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대쟁점이었던 불루라운드(BR) 협상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BR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던 미국, 프랑스의 입장에 유럽연합도 가세하기 시작했고, ILO의 비판적 지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부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아동고용부문에서 ○취업의 최저연령 ○연소자 건강진단 ○연소자 야간근로제한과, 강제근로금지와 관련해서는 재소자 근로 및 각종 병역법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전투경찰, 교도경비대, 산업진흥요원활용사례 등이 ILO기준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한다. 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교사 단결권 금지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정치활동금지 등이 문제조

향으로 지적되고 있어 올 하반기 법개정시 개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과 같이 법개정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금년 하반기에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위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별적 노사관계법도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고 노동통제를 도와주고자 근로기준법도 손질하여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잔업수당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려 하고 있다.

정부의 공언대로 금년 가을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2. 근로자 생활실태

1) 임금

1993년 3/4분기까지 전산업 누계월평균임금총액은 95만2천백68원, 제조업은 86만천9백3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업 평균임금이 '92년 동기대비 12.5% 상승한데 반해 제조업 전체로는 11.1% 상승에 그쳐 제조업의 임금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92년까지 15% 이상의 임금상승을 기록해 왔으나, '93년에는 경기부진을 반영하여 임금상승률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월평균명목임금총액 추이

(단위 : 원, %)

연 도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임금총액	상승률	임금총액	상승률
1989		540,611	21.1	491,632	25.1
1990		642,309	18.7	590,760	20.1
1991		754,673	17.6	690,310	16.8
1992		869,284	15.2	798,548	15.8
	'92. 1~9월누계	846,610	-	775,479	-
	'93. 1~9월누계	952,168	12.5	861,932	11.1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임금내역별로 살펴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의한 초과급여의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한 4.7% 증가에 그쳐 경기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를 반

영하고 있다. 특별급여의 상승폭도 '93년 2/4분기에는 21.7% 급상승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나, 3/4분기에 들어서는 14.4% 상승에 그쳤다.

임금내역별 상승률 추이

(단위 : 천원, %)

	1991	1992	1992 3/4	1993 3/4
임 금 총 액	755 (17.5)	869 (15.2)	912 (13.1)	1,019 (11.7)
정 액 급 여	522 (17.6)	597 (14.3)	603 (12.2)	674 (11.8)
초 과 급 여	78 (11.5)	86 (10.6)	88 (9.1)	93 (4.7)
특 별 급 여	155 (20.4)	186 (20.5)	220 (17.5)	252 (14.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이러한 임금인상의 둔화추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활동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93년 들어 처음으로 시도된 노총-경총간의 중앙노사임금합의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의 94.4% 노동조합의 91.1%가 중앙노사합의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임금인상을 결정요인으로 '타기업의 인상률'이 줄어들고 '중앙노사합의 결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총의 같은 조사결과에서 사용자들의 '93년의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62.2%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11.0%는 '부담이 적다'라고 응답한 반면, '무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1년의 53.9%, '92년의 36.2%에 비해 26.8%로 급감하여 임금인상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합의가 임금교섭에 미친 영향력

(단위 : %)

구 분	사 용 자	노 동 조 합
대단히 영향력이 컸다.	10.3	16.4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43.0	40.8
다소 영향력이 있었다.	41.1	38.9
거의 없었다.	5.6	8.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용자들의 임금인상 주요 결정요인

(단위 : %)

구 분	타기업인상률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	정부의 지도	기 타
1991년	45.0	27.6	13.3	-	14.1
1992년	32.9	30.4	10.0	16.6	10.1
1993년	30.4	27.4	6.2	28.4	6.6
구 분	타기업인상률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	중앙노사합의	기 타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 실태조사」, 1993. 10.

임금인상에 대한 기업의 평가

구 분	적정하다	부담이 적다	무리하다
1991년	41.6%	4.4%	53.9%
1992년	53.4%	10.4%	36.2%
1993년	62.2%	11.0%	26.8%

자료 : 경총, 같은 자료.

한편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3년 3/4기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백53만3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명목금액으로는 9.1%, 실질소득으로는 4.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2/4분기에 실질소득이 3.1%증가함으로써 12년만에 가장 낮은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90년 91년의 25%의 증가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기회복 지연과 임금억제 정책으로 소득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가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함으로써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통신비(22.6%)와 주거비지출(11.6%)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가안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흑자율이 0.7% 감소함으로써 91년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연도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90	'91	'92	'92. 3/4	'93. 3/4	전 년 동 기 대비증감률
소득(A)	94.3.3	1,158.6	1,356.1	1,406.2	1,533.6	9.1
근로소득	809.3	986.2	1,156.6	1,210.9	1,334.7	10.2
기타소득	134.0	172.4	199.5	195.3	198.9	1.8

구 분	'90	'91	'92	'92. 3/4	'93. 3/4	전 년 동 기 대비증감률
소비지출(B)	650.0	779.6	902.5	901.4	987.9	9.3
· 식료품	211.1	247.9	274.0	285.9	308.1	7.8
· 주거	29.8	34.5	37.9	40.4	45.1	11.6
· 광열수도29.1	32.2	37.2	24.4	26.5	8.6	
· 가구집기가사용품	37.8	45.5	49.2	46.7	50.6	8.4
· 피복신발	54.6	63.0	71.8	59.4	65.9	10.9
· 보건의료	34.2	41.7	49.2	49.7	51.5	3.6
· 교육교양오락	77.4	96.3	119.7	133.5	143.8	7.7
· 교통통신	54.9	68.7	82.9	89.4	110.0	22.5
· 기타소비지출	120.9	149.7	180.8	171.6	186.4	8.6
비소비지출(C)	105.2	79.4	105.2	107.2	124.1	15.8
가처분소득(A-C)	870.2	1,079.2	1,250.9	1,299.0	1,409.4	8.5
· 흑자액	220.2	299.6	348.4	397.6	421.6	6.0
· 흑자율	(25.3)	(27.8)	(27.9)	(30.6)	(29.9)	-0.7p

자료 : 통계청,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1993. 11

2) 고용동향

'92년 하반기의 경기침체와 휴폐업, 생산의 해외이전 및 불완전고용의 증대로 '93년 상반기에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은 지표상으로는 일단 다소 호전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지표가 '93년 3~4월, 실업지표는 '93년 6~7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추이(비농전산업)

(단위 : 천명, %)

	1991	1992	1992			1993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15,612 (4.4)	16,052 (2.8)	16,128 (3.3)	16,133 (2.3)	16,191 (2.0)	16,140 (2.4)	16,270 (3.7)	16,920 (4.9)
— 남 자	9,491 (4.5)	9,798 (3.2)	9,189 (3.6)	9,845 (2.7)	9,884 (2.8)	9,951 (3.2)	10,182 (3.7)	10,336 (5.0)
— 여 자	6,121 (4.3)	6,254 (2.2)	6,309 (2.9)	6,288 (1.7)	6,307 (0.8)	6,189 (1.2)	6,538 (3.6)	6,585 (4.7)
취 업 자	15,202 (4.7)	15,615 (2.7)	15,717 (3.2)	15,722 (2.1)	15,761 (1.8)	15,578 (2.1)	16,180 (2.9)	16,421 (4.4)
실 업 자	409 (-4.9)	437 (6.9)	411 (9.3)	412 (9.7)	429 (9.1)	563 (13.4)	540 (31.4)	500 (21.4)
실 업 륜	2.6	2.7	2.5	2.6	2.7	3.5	3.2	3.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에서 작성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취업자의 증가를 도소매 숙박업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도소매숙박업 취업자의 증가인원 53만명은 경제활동인구 증가 50만명을 초과한 수치임)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고 하겠다. '93년 3/4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4,57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는 '91년 4/4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중에서도 여자의 취업자 감소가 5.7%로 제조업에서 고용감소가 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11,900천명이며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서비스업(도소매 숙박업) 진출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실업의 문제와 고학력자의 실업증가, 서비스산업의 팽창에 따른 고용구조의 취약성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은 2.6%(남자 0.7%, 여자 7.0%) 감소한 6,138천명인데 반해 관리직과 사무직, 서비스직은 각각 4.4%, 6.0%, 9.4% 증가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기계화가 상당정도로 진행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3) 노동시간

(1) 경기회복 지연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

노동부자료에 의하면 1993도 상반기 전산업 주당평균노동시간은 약 46.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48.1시간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0.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률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초과 근로시간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월평균 총 노동시간 추이

(단위 : 시간)

년 도	전 산 업	제 조 업
1989	213.7 (49.2)	220.0 (50.6)
1990	209.5 (48.2)	216.2 (49.8)
1991	208.2 (47.9)	214.0 (49.3)
1992	206.5 (47.6)	211.6 (48.7)
1991 상반기	205.8 (47.5)	212.1 (48.8)
1992 상반기	205.8 (47.5)	211.2 (48.6)
1993 상반기	203.3 (46.8)	208.8 (48.1)

주 : ()안은 <월노동시간/4,345주>하여 산출된 주당평균노동시간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실태는 아직도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실노동시간은 '92년 현재로 주당 47.5시간 연 2,475시간이며, 실제 노동일수는 현재 연평균 296.4일이고 휴일휴가일수는 68.6일로 일본의 113일(89년), 경쟁국인 대만의 73.4일(89년)에 비해 크게 적은 실정이다.

주평균노동시간 국제비교(제조업)

(단위 : 시간)

국 가	한 국	대 만	일 본	홍 콩	스위스	미 국	호 주	싱가폴
비교년도	1991	1989	1989	1989	1989	1989	1989	1989
노동시간	49.3	47.6	41.4	44.8	41.7	41.0	37.7	48.6

자료 : 경제부처 합동 편집위원회 편집<통계자료로 본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4) 산업재해

(1) 산재왕국

노동부자료에 의하면 91년 한해동안 매일 351명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매일 6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통계에는 산재발생이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발생율은 일본의 4배, 대만의 3.5배, 싱가포르의 2.5배나 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야말로 산재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산문, 90년 7.23일자)

연도별 재해발생현황(전산업)

(단위 : 명, 건, %)

	적용근로자 수(명)	재해건수 (건)	사 망 (명)	산체장해자 (명)	부 상 (명)	계 (명)	재해율 (%)
89	6,687,821	128,138	1,724	25,536	106,867	134,127	1.92
90	7,542,752	126,966	2,236	27,813	102,844	132,893	1.80
91	7,922,704	125,755	2,299	29,854	96,016	128,169	1.60
92	7,058,704	105,330	2,429	33,569	71,437	107,435	1.43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년보」(1991), 「노동백선」(1993).

(2) 중대재해가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재해율은 표면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의 재해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자와 신체장해자는 '9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산재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89년에는 하루에 사망자가 1, 724명, 신체장애자가 25,536명이 발생했으나, '92년에 오면 사망자 2,429명, 장애자 33,569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3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15분마다 1명의 노동자가 불구의 신세가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율과 도수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해강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재해강도율 및 도수율

연 도	강 도 율 ¹⁾	도 수 율 ²⁾
1989	2.19	7.47
1990	2.30	6.70
1991	2.34	6.35
1992	2.89	6.02

주 : 1) 강도율 = $\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인근로일수}} \times 1,000$

2)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인근로일수}} \times 1,000,000$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1993)

총 무 활 동

총 무 부

I. 회의활동

1. 199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2. 중앙위원회 개최
3.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4. 기타회의

II. 기타활동

1. 노총장학금 배정지급
2.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I. 회 의 활 동

1. 199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개최

가. 일 시 : 1993년 5월 20일(목) 10:00시

나. 장 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

다. 참 석 자 : 재적 437명중 332명 참석

라. 결의사항 :

의 안	결 의 사 항
1. 92년도 사업보고	원안통과
2. 92년도 결산보고	원안통과
3. 임원·중앙위원 보선 및 노총파 견 대의원선출	투표자 231표, 찬성 206표, 반대·무효 25표 로 아래와 같이 선출 부위원장 김관태, 김영철 중앙위원 최용국, 김광현, 안영환, 이대영, 경홍식, 장세익, 정광모, 최진하, 오동필, 김광준, 심종섭, 전재환, 이영식, 김종렬, 이은물, 박재혁, 노진호, 박재형, 조성봉, 조덕래, 김종갑, 김동철, 박복렬, 문주빈, 이석오, 강의룡, 김환수, 정한근, 주태화, 장문식, 신승근, 박용민, 유희동, 임문택 노총파견대의원(무순) 본 부 박인상, 김장선, 김성문, 정창영, 박기식, 유재섭, 박병윤, 정기춘, 정학균, 제선수, 박영호, 염성태, 박영구, 강규석, 김관태, 김영철, 최용길, 오병호, 김홍수, 김동교, 하영일, 김경조, 김두형, 오진현, 백종부, 박한주, 권용식, 박병도, 강영섭. 서울지역 박승리, 김종천, 최용국, 이해석, 강익화, 안영환, 박한섭, 김해주, 박순자, 문광주, 신성균, 이대영, 서민애, 김광현, 이근덕, 황창배

의 안	결 의 사 항
	경기지역 김윤주, 김순호, 도정복, 마익록, 박진수, 경홍식, 장세익, 김명화, 가재두, 이웅세, 오희창, 권석정, 육정수, 김길동, 장진수, 이종진, 유병류, 윤무영, 엄종국, 최진하, 이병욱, 나찬경, 정춘식, 장정환, 박정화, 박순영, 이쌍봉. 인천지역 김성열, 김광준, 전재환, 김종렬, 전병순, 오동필, 김석기, 윤유원, 박남수, 김덕수, 정영숙, 심종섭, 한상환, 이준만, 황경발, 노진호, 박재혁, 한창석, 이은물, 이성균. 충남지역 오기순, 윤영걸, 김용겸. 충북지역 김홍수, 박찬익, 박재형. 부산지역 박갑철, 윤정일, 조성봉, 서복호, 김규호, 구성완, 김정호, 오봉출, 문창수, 김종갑, 박병용. 경남지역 전병만, 김홍균, 김남수, 문주빈, 박복렬, 임권혁, 김기선, 손석형, 이석오, 이재만, 정한식, 허장도, 김환수, 강정목, 김동철. 울산지역 기한도, 이재화, 정 철, 노현돈. 대구지역 장지태, 이길호, 정한근, 김무호, 박용민. 경북지역 최영대, 김범섭, 이재철, 서명수. 구미지역 천광희, 이병균, 신송근, 최창기, 권선국. 포항지역 김상달, 이희영, 장문식, 정해용, 신엄현, 강학중. 광주·전남지역 최석호, 김종식, 유희동, 신용석.

의 안	결 의 사 항
강원·전북지역 장석웅, 임문택.	
4. 1993년도 사업계획 수립	원안통과
5. 1993년도 예산수립	원안통과
6. 교육원부지 매도 위임 건	충남 논산 소재 교육원부지의 매도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7. 노련맹비 인상요구의 건	집행부의 100원 인상요구에 대하여 찬반토론후 지역순회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94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결의
8. 결의문 채택	원안 채택 결의

대 회 선 언 문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대의원들은 일하는 사람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진군할 것을 결의하면서 금속노련의 19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 금속노련 대의원들은 전국 각지의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대표자로서 국가경제건설의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생산주체의 이름으로 현실의 사회구조를 인식과 부정부패의 척결 및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다져야 할 시기임을 확인한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가 알았던 것은 결국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부 가진자들의 전횡과 폭거였으며 국민의 의지를 묵살하고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는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위는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부와 행복이 아닌 소수의 부의 편중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던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산과 건설에 진력하고 있을 때 반노동, 반사회적인 세력들은 호화사치와 향락속에서 방탕과 쾌락을 만끽하고 있었고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일부 세력들은 국민의 돈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지금도 그러한 행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국민의 생존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자신의 야욕만 채우면 된다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에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상적이고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건설에 노력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악적인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비리척결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라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경제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고통전담 요구가 있다면 전 노동자의 이름으로 결사 저지할 것이다. 아직도 물가는 여전히 높아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주택난으로 노동자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구조적인 개혁은 뒤로한 채 임시방편의 하나인, 그것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생산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경제를 회복시킨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휴폐업과 감원,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

속에서 우리 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강도의 심화와 산업재해 속에서 건강과 생존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 노동형제가 차디찬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수배자라는 딱지를 몸에 지닌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수천명의 해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긴 채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개혁과 비리척결을 제창함과 아울러 노동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임금억제분쇄와 노동탄압분쇄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역사와 사회발전의 주인으로서 제도개혁과 정치, 경제의 정의 실현,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항상 역사의 진보와 희망찬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공헌한 노동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불평등과 억압을 물리치고 평등과 자주, 해방의 힘찬 진군을 계속할 것이다.

생산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그 주인됨은 노동자의 굳은 단결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하면서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대의원들은 정기대회원대회를 맞이하여 노동자와 모든 생산자가 주인되는 세상 건설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3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3년 전국정기대회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3년 정기대의원 대회

대 회 사

친애하는 전국의 대의원 동지와 선배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속노련의 발전과 이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님과 각 산별대표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과 이자리를 빛내 주기위해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4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국 금속노동자의 강고한 단결의 의지를 모아 지난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은 아직도 개선되

지 않았으며 고용불안 및 노동강도 심화는 날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노동자의 가장 적발한 요구는 생활안정과 건강한 노동환경 쟁취, 그리고 고용안정입니다.

우리모두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활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밖에는 없으며 이러한 현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민정부의 기치를 들고 나온 현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그대로 진정한 개혁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 그리고 노동착취를 온존시키는 법적 개혁이 없이는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생산자가 사회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평등과 평화의 사회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노동자가 해야할 일은 너무도 많으며 또한 굳은 결의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일입니다. 이념적 제도적 임금억제공세를 슬기와 단결로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며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종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가 억압하는 독소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일입니다. 노동악법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완화의 명목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조항, 휴일을 축소하려는 의도, 변형근로제도의 도입, 외국인력 수입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은 역대 정권이 계속해 온 것이며 지금까지 볼 때 문민을 표방하는 한 정부도 일말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안정도 시급합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력의 판매를 보장받지 못하면 경제건설은 물론 사회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노동자가 해야할 일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실한 요구도 노동자가 선봉에 서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 가는 생산자의 당당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단결체입니다. 사소한 의견차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노동자의 대의에 입각

한 활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노동조합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운동은 더이상 노동자의 대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고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질곡의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

을 한해는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 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이념적인 공세를 통해 노동운동을 포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부 특권층과 자본이지 결코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고통의 원인인 각종 특혜와 부도덕을 과감히 일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93년에는 노동자의 참된 진리와 이념을 전파하고 임금억제 및 고용불안을 분쇄하여 평등과 평화,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만연하는 일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패배와 주저는 역사화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

우리 노동자의 무기는 단결밖에 없습니다. 강철의 단결대오는 그 어떠한 반노동세력의 공세도 분쇄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쟁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의 힘은 역사가 증명하며 전세계의 노동세력의 단결된 힘은 사회발전과 인류평등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생산의 주체, 건설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노동자는 단결된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온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겸허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힘찬 전진을 위한 금속노동자의 결의는 노동운동의 선봉이 되는 자랑스러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의가 행동으로 실천될 때 미래를 향한 노동운동의 발전은 보장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가 진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지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여러 대의원동지들과 전국의 금속노동조합원 동지들, 아울러 모든 노동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노동자의 위대한 승리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뭇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3년 전국정기 대의원대회

위 원 장 박 인 상

결 의 문

신한국건설을 기치로 하여 출범한 문민정부는 경제회복을 빌미로 하여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 대한 임금억제와 노동관계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속에서 자본의 축적을 도모하려는 신보수주의 정책이다.

일부 부정부패한 세력들의 척결은 경제회복과 사회민주화로 가는 당연한 길이며 보다 확실하고 구조적인 개혁조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는 경험을 통하여 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실명제, 조세개혁, 고용안정에 대한 신뢰할만한 어떤 조치와 전망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일동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정책 실시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정부와 자본은 경제에 대한 노동자 책임론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의 실책을 인정하라.
1.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개혁 및 토지공개념 확대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
1.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라 !
1. 정부는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
1. 우리는 어떤 형태의 노동법 개악도 거부하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개정에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
1. 우리는 사회·정치의 민주화에 적극 동참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드높인다. !
1. 우리는 기업측이 노사자율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신뢰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일체의 부당노동행위 시도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며 기업의 사회적 윤리확립을 촉구한다 !
1. 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고용보험제의 즉각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
1.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한 작업장 확보를 위해 국민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요구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노동탄압분쇄와 임금억제분쇄를 위해 금속노동자의 총단결로 투쟁할 것이며
임금억제를 분쇄하여 생활임금을 쟁취한다.

1993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19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	금 성 사	지도위원	강영섭	30	남 성 전 기	위 원 장	전경임
2	"	위 원 장	유재섭	31	대 우 전 자	"	이해석
3	"	부위원장	박승리	32	"	부위원장	황창배
4	"	"	나찬경	33	"	"	이종덕
5	"	"	권종안	34	"	"	윤양중
6	"	"	천광희	35	"	"	손형일
7	"	"	장석춘	36	"	지 부 장	이병균
8	"	"	이정식	37	"	"	최석호
9	"	"	정한식	38	"	"	박성구
10	"	"	김영순	39	"	부지부장	김수도
11	"	"	이원수	40	"	"	문종필
12	"	"	예종규	41	대 한 전 선	위 원 장	강익화
13	"	"	성무용	42	"	고 문	김성문
14	"	대 의 원	김재근	43	"	부위원장	신향철
15	"	"	박인기	44	동 부 제 강	위 원 장	안영환
16	"	"	강완모	45	"	부위원장	김한중
17	"	"	최창근	46	"	"	정용근
18	"	"	노재탁	47	동 아 건 설	위 원 장	박한섭
19	"	"	이현구	48	"	부위원장	진상수
20	"	"	김종복	49	로 움 코 리 아	위 원 장	박순자
21	"	"	김영권	50	롯데전자	"	정용호
22	"	"	배호진	51	세진전자	"	문광주
23	"	"	최영호	52	오 트 론	"	신성균
24	"	"	송태복	53	풍 성 전 기	"	이대영
25	"	"	김무인	54	한 국 마 벨	"	"
26	"	"	장경문	55	한국시그네틱스	위 원 장	서민애
27	"	"	문상균	56	"	부위원장	이정규
28	"	"	주규석	57	기 아 서 비 스	위 원 장	김종천
29	"	"	문교창	58	"	부위원장	임병산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59	기 아 서 비 스	사무국장	송 현	91	기 아 자 동 차	교육부장	정 판 기
60	한 국 콘 베 어	위 원 장	권 용 식	92	"	생산대책부장	김 문 오
61	삼 성 화 스 나	"	조 갑 룡	93	"	조직부장	박 병 관
62	경 방 기 계	위 원 장	박 상 범	94	"	쟁의부장	원 경 연
63	풍 우 실 업	"	김 광 현	95	대 광 기 계	위 원 장	김 수 룡
64	태 립 전 자	"	김 회 속	96	대 우 전 자 부 품	사무국장	이 만 재
65	청 우 공 업	"	박 일 수	97	두 산 기 계	위 원 장	박 진 수
66	제 일 종 공	"	선 기 노	98	두 산 제 관	"	조 현 덕
67	한 국 전 자 부 품	"	이 병 원	99	범 양 냉 방	"	경 홍 식
68	한국키스톤발브	"	류 인 조	100	삼 영 전 자	"	장 세 익
69	경 원 산 업	"	성 일 모	101	"	부위원장	박 기 완
70	국 제 전 선	"	이 두 세	102	삼 화 제 관	위 원 장	박 종 서
71	금 성 전 선		하 영 일	103	삼 화 콘 텐 서	위 원 장	김 익 년
72	"	위 원 장	도 정 복	104	서 진 산 업	위 원 장	안 봉 규
73	"	부위원장	조 필 구	105	신 일 산 업	"	신 철
74	"	"	김 종 국	106	쌍 용 자 동 차	"	김 명 화
75	"	"	이 우 창	107	"	부위원장	박 태 석
76	"	"	유 은 식	108	"	"	이 병 목
77	기 아 자 동 차	위 원 장	김 판 태	109	"	지 부 장	최 천 희
78	"	수석부위원장	마 익 룡	110	"	"	최 성 호
79	"	부위원장	조 영 민	111	"	"	권 영 호
80	"	"	황 경 익	112	"	대 의 원	남 기 영
81	"	"	강 창 모	113	필 립 스	위 원 장	이 정 현
82	"	"	최 석 준	114	한 국 브 레 이 크	부위원장	한 정 호
83	"	사무국장	박 관 용	115	한 샘	위 원 장	권 석 정
84	"	조직실장	윤 형 모	116	현대엘레베이터	"	육 정 수
85	"	기획실장	김 성 도	117	현 대 전 자	"	김 영 철
86	"	조직부장	김 효 남	118	"	부위원장	김 원 회
87	"	총무부장	이 상 영	119	"	"	이 승 현
88	"	쟁의부장	남 정 식	120	"	"	김 순 애
89	"	법규부장	강 주 만	121	"	사무국장	정 상 영
90	"	홍보부장	박 홍 귀	122	"	조직부장	김 만 재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23	태광에로리카	위원장	오희창	155	오양공조기	위원장	조재천
124	대경화성	"	박순영	156	해덕강업	"	이철하
125	동양기공	위원장	주영준	157	성진기공	"	조은형
126	삼선공업	"	김원대	158	한국캠브리지필터	"	이한규
127	서울차체	"	이쌍봉	159	기영산업	"	김종성
128	일진	"	최진하	160	계양전기	"	안기호
129	태양금속	"	이병옥	161	삼목강업	"	남진우
130	태일정밀	"	송기선	162	신아전기	"	신은철
131	경원세기	"	장진수	163	삼기기공	"	장인권
132	"	사무차장	이성모	164	성안기계	"	최관섭
133	반도기계	위원장	김영배	165	동성진흥공업	"	오경성
134	성신	"	이종진	166	대덕산업	"	김광호
135	신한일	"	유병류	167	대기산업	"	박종철
136	신한주철	"	윤무영	168	고신열관리	"	김명수
137	대덕전자	총무부장	주종선	169	신진전기	"	유연각
138	수산중공업	위원장	서정국	170	기경실업	"	김종길
139	이화다이아몬드	"	성세현	171	대한제작소	"	이두종
140	대원전선	"	장정환	172	혜성공업	"	조준행
141	신일정밀	"	라경현	173	서진대금	"	김영원
142	동신타강	"	이경복	174	서원풍력기계	"	권혁기
143	대신기계	"	박호성	175	한국번디	"	홍광표
144	동양매직	"	김성복	176	희승산업	"	임완선
145	일신전기	"	가재두	177	대방	"	박승준
146	에벤에셀	"	이현범	178	한국AMP	"	김성덕
147	한국콘테이너	"	최원학	179	배영설비	"	이병도
148	대성전선	"	김완용	180	대륙	"	황명철
149	삼양중기	"	박시열	181	동아정기	"	박정화
150	홍진기연	"	안희철	182	퍼시픽콘트롤즈	"	신영호
151	서울주철	"	금태근	183	삼아알미늄	"	박찬호
152	삼협전자	"	김권태	184	삼아정공	"	조현석
153	풍정산업	"	이문식	185	경동산업	"	김성열
154	중원전기	"	김원곤	186	고니정밀	대의원	김혜란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87	금 성 기 전	위 원 장	김 광 준	219	한 라 중 공 업	위 원 장	심 종 섭
188	"	지 부 장	최 용 호	220	"	수석부위원장	송 관 엽
189	대 우 중 공 업	위 원 장	전 재 환	221	대 우 자 동 차	부위원장	허 준
190	"	지 부 장	허 장 도	222	"	지 부 장	구 자 훈
191	"	"	조 권 식	223	"	"	최 병 규
192	"	"	조 인 근	224	"	"	한 현 석
193	"	조 합 원	염 성 태	225	"	"	엄 성 수
194	대 우 통 신	위 원 장	전 병 순	226	"	대 의 원	한 희 섭
195	"	부위원장	김 윤 제	227	"	"	최 훈
196	대 한 제 당	위 원 장	손 종 홍	228	"	"	김 승 환
197	동 양 철 판	"	이 영 식	229	금 영 실 업	위 원 장	김 병 국
198	린 나 이 코 리 아	"	오 동 필	230	대 한 제 쇠	위 원 장	김 희 복
199	영 창 약 기	"	김 석 기	231	봉 명 산 업	"	김 현 섭
200	"	부위원장	장 태 훈	232	부 국 철 강	"	최 영 진
201	"	"	이 용 주	233	삼 성 정 밀	"	정 길 환
202	"	사무국장	이 선 용	234	세 일 기 계	"	나 용 길
203	"	총무부장	김 영 인	235	영 풍 기 계	"	이 준 선
204	"	조직부장	박 용 의	236	창 성	"	이 계 봉
205	인 천 제 철	위 원 장	김 동 교	237	한 국 분 말 야 금	"	양 태 공
206	"	부위원장	윤 길 준	238	회 성 금 속	"	황 경 발
207	"	조직실장	노 길 호	239	인천지역본부	의 장	박 한 주
208	진 도	위 원 장	윤 유 원	240	동 양 강 철	위 원 장	오 기 순
209	"	지 부 장	정 병 혁	241	연 합 전 선	"	유 진 산
210	코리아스파이서	위 원 장	박 남 수	242	한 국 이 연	"	오 경 세
211	한 국 강 관	"	신 문 군	243	충 남 지 역 본 부	의 장	김 두 형
212	한 국 샤 프	"	박 재 혁	244	대 홍 정 비	위 원 장	김 보 현
213	한국종합기계	"	김 덕 수	245	동 양 금 속	"	김 희 종
214	한 독	"	김 동 영	246	상 지 전 자	"	이 철 수
215	한 양 공 영	"	이 정 복	247	쌍 신 전 기	"	윤 영 절
216	한 영 알 미 늄	"	한 상 환	248	진 합 정 공	"	이 남 철
217	해 태 전 자	"	노 진 호	249	한 국 중 기	"	남 상 천
218	후지카대원전기	"	이 준 만	250	국 제 중 합 기 계	"	곽 윤 섭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251	금 성 계 전	위 원 장	김 홍 수	283	한진섬유기계	위 원 장	오봉출
252	"	부위원장	김 용 해	284	태 양 사	"	이형연
253	금 성 통 신	위 원 장	박 찬 익	285	신 동 방	"	문춘희
254	"	지도위원	김 길 동	286	삼 공 사	"	문판술
255	맥 슨 전 자	위 원 장	박재형	287	부 산 링 구	"	김병옥
256	"	사무국장	남윤덕	288	동 아 전 기	"	윤춘동
257	에 넥 스	위 원 장	권성하	289	유 성 금 속	"	안병무
258	대 성 쉼 틈	"	권영혁	290	대 성 사	"	하상순
259	삼 화 전 기	"	이철주	291	동 승 기 업	"	배공희
260	우 진 정 밀	"	박각규	292	대 립 철 공 장	"	김재곤
261	뉴 맥 스	"	이형일	293	대 립 정 기	"	정인섭
262	고 려 제 강	"	박갑철	294	성 광 벤 드	"	조용석
263	대 동 조 선	"	윤정일	295	오리엔탈정공	"	권동재
264	대 선 조 선	"	조성봉	296	한국오르강침	"	정운국
265	대 일 공 업	"	이재화	297	부 산 정 기	"	김규호
266	대 창 단 조	"	박병용	298	금 성 산 전	"	전병만
267	동 국 제 강	"	서복호	299	금 성 알 프 스	"	김홍균
268	"	지 부 장	지원철	300	"	지 부 장	최병대
269	명 성	위 원 장	김병규	301	"	대 의 원	김한식
270	상 농 기 업	"	하창희	302	"	"	김동만
271	만 호 제 강	"	송규문	303	기 아 정 기	위 원 장	강외룡
272	연 합 철 강	위 원 장	구성완	304	대 립 자 동 차	위 원 장	문종용
273	"	부위원장	강진호	305	동 명 중 공 업		
274	"	"	박행규	306	동 양 물 산	위 원 장	
275	한 국 주 철 관	위 원 장	조덕래	307	두 원 중 공 업	"	김남수
276	한 보 철 강	"	김종갑	308	삼미종합특수강	지 부 장	김규섭
277	"	대 의 원	신문식	309	"	부위원장	전태경
278	한 진 중 공 업	부위원장	김주익	310	"	대 의 원	하 열
279	부 산 주 공	위 원 장	이재섭	311	세 방 전 지	위 원 장	김환수
280	영 진 금 속	"	송성진	312	세 신 실 업	"	박복렬
281	제 일 중 기	"	이우송	313	쌍 용 중 공 업	"	임권혁
282	삼 성 기 업	"	조용철	314	풍성전기창원	부위원장	김 범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315	풍 성 정 밀			347	고 려 아 연	위 원 장	기 한도
316	한 국 씨 티 존	위 원 장	김기선	348	력 키 금 속	"	박영구
317	한 국 중 공 업	"	손석형	349	"	부위원장	김용겸
318	"	대 의 원	강용철	350	세 종 공 업	위 원 장	이태환
319	"	"	김이규	351	정 일 공 업	"	김복천
320	한국중천전화산업	위 원 장	최해경	352	한 국 프 렌 지		
321	한 국 카 시 오	"	박춘규	353	한 일 이 화	위 원 장	박상근
322	한 일 제 관	지 부 장	박하영	354	현 대 강 관	"	정 철
323	효 성 중 공 업	위 원 장	이재만	355	효 성 금 속	대 의 원	권택중
324	"	지부장직대	홍성동	356	울 산 지역본부	의 장	오진현
325	"	부위원장	이 훈	357	대한알루미늄	위 원 장	김성관
326	세 신 정 밀	위 원 장	정병철	358	동 회 산 업	"	노현돈
327	삼 천 리 자 전 거	"	문주빈	359	한국산업서비스	"	권진희
328	양 지 금 속	"	곽평호	360	현 대 공 업	"	최상돌
329	한 일 기 계	"	이창규	361	세 운 공 업	"	박용도
330	대 동 기 어	"	강정목	362	덕 양 산 업	"	신성건
331	태 일 전 자	"	박재원	363	한 라 철 강	"	곽홍근
332	세 일 공 업	"	정필규	364	경 창 산 업	"	장지태
333	수 산 스 타	"	김용환	365	동 해 전 장	"	정한근
334	한 국 일 선	"	홍상만	366	삼 립 산 업	"	이봉구
335	한 국 스 핀 들	"	김성천	367	삼 성 제 침	"	주태화
336	충무연합조선	"	설재국	368	평 화 발 레 오	"	박용민
337	아 주 금 속	"	강기수	369	평 화 산 업	"	이재철
338	대 명 공 업	"	신석기	370	평 화 오 일 썰	"	정광진
339	태 광 특수기계	"	표세봉	371	화 신 제 작 소	"	서명수
340	범 한 금 속	"	김대근	372	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경조
341	창 원 금 속	"	강석수	373	평 화 크 랫 치	위 원 장	김무호
342	한 국 G M B	"	고동권	374	조 광 산 업	"	서학렬
343	태 주 실 업	"	김명헌	375	동 남 주 물	"	김정치
344	동 양 기 전	"	박왕중	376	영 진	"	권태훈
345	미 원 중 기	"	허영환	377	아세아종합기계	"	윤태길
346	한 국 동 양 유 전	"	이문효	378	광 진 상 공	"	김재복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379	동 서 물 산	위 원 장	이길호	409	금성일렉트론	위 원 장	김재환
380	동 국 강 재	"	공석철	410	오 리 온 전 기	"	최창기
381	선 학 알 미 늄	"	이영희	411	오 리 온 전 기	대 의 원	최재숙
382	대 동 인 터 넷	"	강동근	412	"	"	김순태
383	세 원 산 업	"	장현덕	413	"	"	신달철
384	동 진 금 속	"	김춘종	414	태 평 양 금 속	위 원 장	정의용
385	동 협 제 작 소	"	손경목	415	한 국 전 자	"	권선국
386	대 동 공 업	"	이성호	416	"	수석부위원장	박철효
387	삼 도 기 전	"	정문호	417	"	사무국장	정효찬
388	아 진 산 업	"	정재화	418	고 려 전 기	위 원 장	이명희
389	세 왕 금 속	"	정용목	419	동국종합전자	"	신송근
390	삼 협 산 업	"	김운이	420	두 고 전 자	"	김경환
391	금 용 기 계	"	김주현	421	실 트 론	"	김구연
392	대 한 중 석	"	김범섭	422	일 성 기 계	"	김장수
393	승 리 기 계	"	김시종	423	한국대화금속	"	김현철
394	화 신 테 크	"	조동권	424	한국델코전자	"	김경구
395	경 신 공 업	"	최영대	425	클레스트라하우저만	"	한경석
396	강원산업삼표중공업	"	김상달	426	아시아자동차	"	김종식
397	거 양 개 발	"	이희영	427	"	교육선전국장	김선열
398	동 일 기 업	"	장문식	428	제 철 설 비	위 원 장	유희동
399	부 산 파 이 프	"	정해용	429	전남지역본부	의 장	정기춘
400	삼 정 강 업	"	신엄현	430	태 성 기 공	위 원 장	박준근
401	성 립 기 업	"	강학중	431	부 국 산 업	"	최낙종
402	"	부위원장	김우석	432	기 아 특 수 강	부위원장	임승만
403	거 양 로 공 업	"	"	433	"	"	김부경
404	서 한 정 기	위 원 장	김진수	434	"	"	이용석
405	대 성 기 업	"	최부식	435	우 민 주 철	위 원 장	강승흡
406	서 울 용 접 봉	"	최위택	436	한 일 전 기	"	장석웅
407	동 성 철 강	"	박정국	437	속 초 지 역	"	신종찬
408	세 아 특 수 강	"	우범윤				

표 창 자 명 단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	금 성 사	기획실장	정 일 진	15	인 천 자 동 차	위 원 장	이 석 주
2	대 우 전 자	광주지부장	최 석 호	16	연 합 전 선	"	유 진 산
3	기 아 자 동 차	총무부장	이 상 영	17	금 성 계 전	회계감사	장 경 춘
4	금 성 전 선	산업안전부장	신 정 호	18	효 성 중 공 업	위 원 장	이 재 만
5	현 대 전 자	복지후생부장	김 인 규	19	범 한 금 속	"	김 대 근
6	쌍 용 자 동 차	노사대책부장	정 경 호	20	대 성 정 기	"	장 병 국
7	대 우 중 공 업	조 합 원	최 병 구	21	동 양 주 물	"	이 광 희
8	영 창 악 기	사무국장	이 선 용	22	대 일 공 업	"	이 재 화
9	삼미종합특수강	대 의 원	하 열	23	동 국 제 강	"	서 복 호
10	풍 우 실 업	위 원 장	김 광 현	24	현 대 강 관	"	정 철
11	오 트 론	"	신 성 균	25	삼 정 강 업	"	신 엄 현
12	일 진	"	최 진 하	26	한 국 전 자	"	권 선 국
13	태 양 금 속	"	이 병 옥	27	제 철 설 비	"	유 희 동
14	동 방 제 강	"	장 영 일				

2. 중앙위원회

1) 제108차 중앙위원회

가. 일 시 : 1993년 5월 19일(수)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제적 114명중 40명 참석

라. 결의사항

① 19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토의

가) 회순통과-회순 3항의 임원보선을 추가하고 다른 회순은 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나) 1992년도 사업보고-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다) 1992년도 결산보고-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라) 1993년도 사업계획수립-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마) 1993년도 예산 수립-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바) 결의문안 심의-원안대로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② 대의원 자격심사

규약이 정한 맹비 납부실적에 따라 배정한 437명을 93년도 정기대의원 대회참석 대의원으로 확정하다.

③ 노련맹비 인상 요구의 건

노련맹비 100원 인상요구안을 통계자료 일부를 수정하여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④ 제규정 개정

사무처에서 상정한 제규정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결의하다.

⑤ 기타토의

가) 맹비징수에 적극노력해 주기 바라며 매월말 맹비 납부통보를 보내주기로 결의하다.

나) 규약 및 제규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발전적으로 개정준비를 하기로 결의하다.

제규정 개정내용

규정	조항	조항명	현행	개정
처무규정	23조	휴일	다) 노동절(3월 10일)	다) 노동절(5월 1일)
	51조	연차유급휴차	1. 전근무일수의 만근자는 8일, 9할이상 출근자는 3일	1. ...만근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는 8일...
상별규정	7조 4호	징계의 적용 정권	4. 가맹노조 및 지역본부가 소정의 의무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4. 가맹노조가 소정의...
	8조 2호		2. 정권...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정권...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하며 조직에 대한 정권은 사고조직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지 역 본 부 운 영 규 정	3조 2호	기타 사무소	기타 사무소(경기정비사무소, 강원정비사무소, 영동조선사무소)	사무소(지역본부에 의해 설치된 지구사무소 영동조선 사무소)
	4조 1항	지역본부구성	11. 경상북도 지역 12. 강원도 지역 13. 기타사무소	11. 대구. 경북(포항, 구미제외) 지역 12. 포항지역 13. 구미지역 14. 강원도 지역
	4조 2항	가맹의무	관할지역의 모든 노조가 지역본부에 가맹해야 한다.	...가맹해야 하며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불이행시 각 지역본부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8조 1호	기관의 의무	1. 총회 : 노련 파견대의원선출 및 임원선출	1. 총회 : 임원선출
	10조 3항	임원피선거권 제한	(신 설)	본노련에 의해 정권이상의 징계조치된 노조의 조합원은 지역본부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12조	경비의 부담	지역본부의 필요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해진 예산에 의거 지역내 조합의 부담금 및 노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경비는 지역본부 소정의 결의기관에서 정한 의무금 내지 부담금과 노련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3조	분담금	지역본부 부담금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조합원 비율로 징수할 수 있다.	(상별규칙)지역본부는 노련의 상별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의 상별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	조항	조항명	현행	개정
분과 규정	전조		간사	사무국장
국제 규정	5조 3항	심의위원회	(신설)	위원장은 자비부담의 해외연수단 파견을 위하여 본조 제1항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선거 거	5조 1호	피선거권상실	1. 노동조합법 제23조 (2)의 1, 2, 3에 해당되는 자	(삭제)
관 리 규 정	5조 2호	피선거권상실	2. 규약 제50조에 의하여 선거일까지 징계기간중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2. 상벌규정에 의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징계기간중에 있는 자
보 수 규 정	4조	결정기관	월급여는 생계비상충, 근속년수등 감안하여 매 회계년도를 위한 대의원대회(또는 대의원대회 같은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11조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당해년도 만근자는 8일. 9월이상 출근자는 3일……	……당해년도 만근자는 10일. 9월이상 출근자는 8일……

2)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기념식 및 노련창립 제32주년 기념식 개최

가. 일 시 : 1993년 8월 25일 11시

나. 장 소 : 만년부페

다. 참석자 :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및 내빈 250명

라. 기념식 내용

① 10 : 00시에 중앙집행위원 및 실국부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② 11 : 00시에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기념식과 노련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3) 제109차 중앙위원회 및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년 1월 25일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직 126명중 62명 참석

라. 결의사항

- ① 94회계년도 가예산안을 원안 승인한다.
- ② 차입금 추인 및 예산항목 전용의 건을 원안 승인한다.
- ③ 노련맹비 인상 요구안에 대하여 찬반 토의후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 ④ 처무규정 중 정년연장의 건은 충분히 토의한 후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다.
- ⑤ 94년도 임금교섭에 관하여는
 - 93년도와 같은 무원칙한 중앙노사 합의는 반대하며.
 - 임금이외의 부대조건(자료2안)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결론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

1)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3년 4월 2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 54명중 28명참석

라. 결의사항

- ① 본노련 93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93년 5월 20일(목)10시에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맹비의 납부마감은 93년 4월 17일 13시까지로 한다.
- ② 분과소위원회 위원은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3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한다.
- ③ 모범조합원 표창은
 - 93년 3월말 기준 맹비납부 조합원 2,000명 이상 노조에 1명,
 - 시·도 지역본부에 1명
 - 2,000명 이상되는 노조 조합원수를 제외하고 10,000명 이상 지역본부에 추가 1명을 배정하며
 - 시상은 표창패와 금뱃지 1/2돈으로 한다.
- ④ 한국노총 장학재단 93학년도 장학금 117,870,000원을 수령하여 각 지역본부와 해당되는 단위노조에 배정되었음을 보고하다.
- ⑤ 노총과 경제단체대표가 93년 4월 1일에 합의한 93년도 임금인상 합의율인 4.7-8.9%와 본노련이 지난 3월 12일에 개최한 제107차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부서부장 연석회의에서 15.38%를 요구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 중앙노사가 합의한 4.7%-8.9%는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없이 노총이 독자적으로 교섭합의 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본노련 회의기구에서 결의한 15.38%를 93년도 임금교섭에서 요구해야 한다

는 의견과

- 본노련의 요구율인 15.38%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요구율이므로 오히려 중앙노사가 합의율이 참고되어야 한다는 양론을 두고 찬반토의 결과
- 본 노련의 요구율인 15.38%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요구율을 정하기로 하고 중앙노사가 합의한 내용의 금액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회의를 개최하여 설명보고하기로 결의하다.

2)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 가. 일 시 : 1993년 5월 19일(수) 15시
-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 제108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3)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 가. 일 시 : 1993년 8월 25일 10시
-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만년부페
- ※ 금속노동운동 30년사 출판기념식과 노련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개최

4)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 가. 일 시 : 1994년 1월 25일 14시
-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 제109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

4. 기타토의

1) 임원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 가. 일 시 : 1993년 4월 20일 15시
-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다. 참 석 자 : 재적 25명중 15명참석
- 라. 결의사항

중앙노사의 93년도 임금인상 범위를 4.7%~8.9%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의한 바 회의자료의 내용과 같은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보고하고,
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율 15.38%와 중앙노사의 임금인상범위 합의율 4.7-8.9%가 서로 상이한 임금인상기준으로 단위노조의 교섭요구 기준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나 ①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요구율을 적용하도록 지도하며, ② 중

양노사의 부대합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③ 정리해고, 소사장제 시행등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하다.

2) 임원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3년 5월 19일 10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 25명중 13명참석

라. 결의사항

① 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토의

별책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회순에 임원보선을 추가하고 나머지 회순과 상정안건은 제108차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원안상정하기로 결의하다.

3)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3년 7월 15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 27명중 18명참석

라. 결의사항

① 사무처 주요업무추진 경과를 보고하다.

② '93 임투진행내용과 쟁의중인 사업장의 주요쟁점을 보고하고 지역단위로 임투진행 내용을 지역본부의장이 설명보고하다.

③ 서울지역 범한정기 노동조합이 장기적인 노사분규 결과 조직이 와해되어 조합원 170명중 40여명이 남아 있으므로 조직국과 노사대책국에서 정상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④ 가맹노조 임금교섭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4)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3년 9월 23일 12시

나. 장 소 : 충남지역 본부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 27명중 14명참석

라. 결의사항

① 주요업무를 보고하다.

② 자비부담 해외연수단 파견계획에 대하여는 각급 산하조직에 기업부담 해외연수의 기회가 많으므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노련의 재정 형편상 금속노동운동사의 유가보급은 사무처의 계획대로 시행하며 각

지역본부가 적극 협조한다.

5)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3년 11월 19일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결의사항

동부제강 임금반납 강요에 따른 노조간부 단식농성에 대해 회의참석자 전원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적극지원할 것을 결의하다.

6) 임원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4년 1월 14일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 30명중 19명참석

라. 결의사항

① 94년도 임투에 관한 사항-94년도 임투지침안을 노사대책부에서 설명보고 하고 93년도 중앙노사합의는 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임금교섭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능하면 우리노련의 독자안을 제시하고 타산별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시간을 두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② 중앙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 94 회계년도 가예산안과

- 일시차입금 추인 및 예산항목 전용승인안과

- 노련맹비 인상요구안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③ 포항제철 조직 및 협력사 통폐합건에 관한 결의문을 원안채택 결의하다.

④ 동양정밀 구사운동 내용을 설명보고하다.

7) 사업계획 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3년 5월 6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14명 참석

라.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작성한 93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8) 예산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3년 5월 6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6명 참석

라.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작성한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9) 9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가. 일 시 : 1993년 11월 29일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3명

라. 내 용 : 본노련 상반기(93. 4. 1-93. 9. 30)의 회계처리 내용을 감사

10) 93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가. 일 시 : 1994년 월 일 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명

라. 내 용 : 본노련 하반기(93. 10. 1-94. 3. 31)의 회계처리 내용을 감사

11) 한국노총 199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파견

가. 일 시 : 1994년 2월 24일 10시

나. 장 소 : 한국노총 대강당

다. 파견대의원수 : 69명

12) 금속노동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 실무회의

가. 일 시 : 1993년 6월 7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4명 참석

라. 결의사항

- 현재까지 작성된 원고를 검토한 결과

① 각 장의 서론을 간결하게 정리토록 하며 p. 251, 272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② p. 299, 314-315의 신규·해산조직 명단 삭제하고

- ③ p. 326-동일제강사건 보완, p. 332-대흥정비사건 보완
 p. 347-현대계열사 노조조직 과정보완
 p. 355-삼성중공업 보완, p. 361-대우조선조직 및 분규보완
 p. 365-모토로와 분규보완, p. 374-연합철강 분규보완
 p. 416-권리제한 노조 명단삭제하고
- ④ 임기년도의 임원명부를 일관되게 정리하며
- ⑤ 부록편의 각년도 대의원 명단을 삭제하며
- ⑥ 회관건립과정을 보완 기술하며
- ⑦ 조직규모의 변동, 국제활동, 교육활동을 보완하여 빠른 시간내에 전원회의를 개최
 토록 한다.

13) 금속노동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의

가. 일 시 : 1993년 7월 6일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 석 자 : 재적15명중 13명참석

라. 결의사항

- ① 현재까지 작성하여 회의에 상정된 자료중에 경북지부 당시 건립한 회관사진을 설명
 과 함께 수록하고
- ② 정부 포상자 및 노총위원장 표창자 명단을 수록할 것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하며
- ③ 발간사, 축사작성을 배정하고
- ④ 조선중기연수등 내용일부를 보완 수정하며
- ⑤ 표지 제호의 글씨를 소속조합원 중 조예가 깊은 조합원의 글씨를 사용하기로 한
 다.
- ⑥ 30년사의 발간은 93년 8월 25일 이전에 완료한다.

II. 기 타 활 동

1. 노총장학금 배정지급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본 노련에 배정된 93학년도 장학금 117,860,000원을 맹비 납
 부실적에 따라 가맹노조에 배정하였다.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 도 별	중	고	전문대	대	계	지 급 금 액
77년	16	12			28	1,520,000
78	91	68			159	9,765,000
79	118	86			204	13,960,000
80	165	120			285	21,525,000
81	130	42			172	30,980,000
82	127	49			176	37,980,000
83	140	37		2	179	41,680,000
84	68	9			77	16,480,000
85	84	8			92	19,000,000
86	84	8			92	19,000,000
87	71	12			83	19,650,000
88	149	64			213	15,390,000(일반) 45,600,000(국고)
89	128	58		1	187	11,820,000(일반) 47,390,000(국고)
90	199	51		1	251	80,900,000
91	261	47		1	309	114,770,000
92	231	58		3	292	116,960,000
93	165	72	1	2	240	117,860,000
계	2,219	806	1	1	3,036	739,770,000

2.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신임, 신규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담당자와 회계감사들 대상으로 노동조합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참석자 현황

지 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북·전남북	경남·부산·울산	대구·경북·포항
참석자	65	25	45	40

조 직 활 동

조 직 부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지역본부 임원명단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 현황
3. 신규조직 현황
4. 외국인 투자기업체 현황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6. 해산노동조합 현황
7. 지역별 조합원 월별현황
8.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9. 기타 활동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서울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9년 12월 28일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48(4층)
 3) 전 화 번 호 : 863-1983 FAX : 865-4358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안 영 환	동 부 제 강 노 동 조 합	94. 1. 31
수 석 부 의 장	신 성 균	O T R O N "	93. 1. 28
부 의 장	서 민 애	시 그 네 틱 스 "	"
"	박 순 자	름 코 리 아 "	"
사 무 국 장	박 상 범	경 방 기 계 "	94. 1. 31
정 책 실 장	박 일 수	청 우 공 업 "	"
회 계 감 사	문 광 주	세 진 전 자 "	93. 1. 28
"	김 광 현	풍 우 실 업 "	94. 1. 31

5)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방 기 계	박 상 범	88. 6. 27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19-8	타 자 기
금 성 사	유 재 섭	63. 5. 30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6	가 전 제 품
남 성 전 기	전 경 임	77. 2. 1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30	카스테레오
대 우 전 자	이 해 석	83. 3. 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가 전 제 품
대 한 전 선	강 익 화	72. 6. 15	" 구로구 시흥1동 104	광통신, 전선
도 신 정 밀	황 승 익	90. 4. 17	" 구로구 구로동 855	전 자 부 품
동 부 제 강	안 영 환	66. 4. 29	" 구로구 오류동 123	강 관, 철 판
동 아 건 설	박 한 섭	74. 6. 29	" 중구 서소문동 120-23	건 설 업
동아건설창동	한 규 정	87. 6. 15	" 도봉구 창4동 150	"
동 일 제 강	김 해 주	85. 6. 14	" 구로구 구로5동 566-1	와 이 어 로 프
동 해	정 동 익	89. 2. 24	" 구로구 가리봉2동 481-2	카스테레오
로 음 코 리 아	박 순 자	78. 6. 27	" 구로구 가리봉동 371-11	저 항 기
롯데알미늄	전 기 홍	76. 4. 7	" 구로구 독산동 1005	알미늄 호일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품
롯데전자	차명재	87. 8. 21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533	오디오
모토로라코리아	이영숙	88. 12. 19	" 성동구 광장동 445	반도체
삼성화드나	조갑룡	88. 10. 13	" 구로구 가리봉동 60-48	지퍼
샤프전자	유용근	90. 5. 8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계산기
서울남부금속	강성두	93. 8. 28	" 구로구 구로2동 704-48	기계
세진전자	문광주	77. 1. 23	" 구로구 가리봉동 60-19	형광문자판
신명전기	이명재	85. 5. 22	"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	전동기
신진벨브	권영재	74. 10. 18	" 구로구 가리봉동 371-8	벨브
신한전기	엄종원	81. 5. 19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	전기부품
아남산업	박희란	88. 6. 14	" 성동구 화양동 151-22	반도체
오트론	신성균	88. 2. 1	" 구로구 구로동 235-2	전화기
제일종공	선기노	82. 2. 23	"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4	감속기
청우공업	박일수	88. 5. 10	" 영등포구 양평동3가 96-1	펌프
풍성전기	이대영	67. 2. 28	" 성동구 성수1가 656-335	자동차부품
풍우실업	김광현	89. 11. 9	" 구로구 가리봉동3가 371-37	장식용전구
한국마벨	이진렬	75. 9. 13	" 구로구 구로동 235-3	전자부품
한국시그네틱스	서민애	67. 9. 8	" 강서구 염창동 272	반도체
한국음향	변희내	85. 4. 25	" 구로구 가리봉동 371-41	스피커
한국전자부품	이병원	89. 3. 28	" 구로구 가리봉동 79-2	"
한국콘베어	전용식	71. 1. 12	" 구로구 수궁동 72-1	콘베어
한국트라콘	박찬일	88. 4. 27	" 구로구 가리봉동 371-42	콘덴서
한국트랜스	김완귀	88. 10. 14	" 구로구 구로동 237	트랜스
한국특수공구	서갑순	62. 3. 31	" 영등포구 양평동5가 1	절삭공구

경기도 지역본부

1) 지역본부 창립년월일 : 1982년 9월 27일.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377

3) 전 화 번 호 : (0343)44-1390, 42-3666 FAX : (0343)45-2816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하 영 일	금 성 전 선 노 동 조 합	1988. 10. 20
부 의 장	김 길 동	금 성 통 신 "	"
"	강 익 화	대 한 전 선 "	"
"	나 찬 경	금 성 사 "	"
"	김 윤 주	범 양 냉 방 "	"
"	최 진 하	일 진 "	1990. 10. 30
"	권 석 정	한 샘 "	1991. 10. 29
"	이 종 진	성 신 "	"
"	김 윤 제	대 우 통 신 "	"
"	김 명 화	쌍 용 자 동 차 "	"
"	신 성 현	신 한 주 철 "	"
사 무 국 장	박 정 화	동 아 정 기 "	"
회 계 감 사	가 재 두	일 진 전 기 "	"
"	김 종 천	기 아 씨 비 스 "	"

5) 경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강 진 이 강 훈	89. 2. 20	경기도 군포시 당동 7-5	자동차부품	
경 동 산 업 고 봉 석	88. 12. 14	" 고양시 신원동260-2	라지에타·콜라	
경 용 기 계 류 한 국	84. 5. 27	" 안산시 성곡동646-5 반월공단B602-7	기 계 제 작	
경 원 산 업 성 일 모	87. 8. 24	"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산6-1	бат 데 리	
경 원 세 기 이 종 찬	79. 4. 5	" 부천시 중구 내동 222-22	에 어 콘	
계 선 산 업 진 춘 기	87. 8. 28	" 이천군 신둔면 마교리 153-2	철 재 가 구	
계 양 전 기 김 병 주	87. 8. 17	" 안산시 원시동 823-2	전 동 공 구	
고 신 열 관 리 경 명 권	88. 6. 23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9-1	산업용버너	
광 명 기 전 김 창 중	90. 8. 28	" 안산시 목내동 451-3	배 전 차 단 기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품
광명전기	김홍만	87. 8. 15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389번지 2-15	전기제품
광성실업	이병규	92. 4. 29	" 안양시 호계동 911-2	자동차부품
국제전선	이두세	68. 5. 3	" 군포시 금정동 166	전선
금석전파	반현애	88. 8. 19	" 화성군 정남면 신3리 66-1	수정진동자
금성전선	도정복	67. 5. 12	" 안양시 호계동 555번지	전선
기경실업	이문경	87. 8. 25	" 광명시 소하동 781-1	구조물
기린산업	노원숙	90. 7. 14	" 안산시 목내동 403번지 16블럭	센드위치판넬
기아자동차	이재남	61. 10. 24	" 광명시 소하동 781-1	자동차
기아씨비스	박천석	79. 6. 22	"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46	자동차정비
기영산업	이대선	88. 3. 24	" 안산시 원시동 778-5	자동차부품
남북	한석만	89. 2. 24	"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 80-1	"
금성기계	박종찬	89. 4. 10	" 안산시 신길동 1051-1	체인블럭
남성	염규근	88. 9. 6	" 안산시 원시동 724	자동차부품
남신제관	박경래	90. 2. 20	" 부천시 역곡동 24-21	전자파외피
대경화성	박순영	89. 1. 13	" 안산시 성곡동 636-2	자동차부품
대광기계	김수룡	88. 3. 7	" 오산시 누읍동 25	"
대기산업	박종철	89. 2. 23	" 시흥시 시화공업단지2 다601	"
대덕산업	김광호	87. 12. 11	" 안산시 목내동 475	인쇄회로기판
대덕전자	송성수	87. 12. 28	" 안산시 목내동 390-1	PCB전자부품
대동	김봉진	89. 3. 16	" 안산시 성곡동 633-6	사출금형
대륙자원	함종원	92. 1. 19	"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2	
대륙전선	김영규	87. 12. 2	" 안산시 원시동 731-9, B4-10	전선제조
대봉전선	김두환	89. 3. 5	" 안산시 원시동 723-1	전선마그넷
대성전선	김완용	78. 2. 19	"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13	전선
대신기계	박호성	88. 5. 17	" 화성군 정남면 쾌량리 480-1	자동차부품
대아정밀	한대영	91. 3. 26	" 안산시 신길동 1049-5	정밀부품
대양물산	김창석	78. 10. 2	" 시흥시 은행동 32-1	주방기구
대우전자부품	김영환	75. 5. 16	" 군포시 당정동 543	전자부품
대원전선	장정환	87. 7. 31	"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77	전선제조
대일	윤형택	88. 5. 25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7-2	가스보일러
대일전선	박래근	83. 4. 30	" 안산시 목내동 395-2, B3-13L	전선
대한로	최만복	88. 10. 28	" 평택군 진위면 고현리 221-4	열처리로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품
대한제작소	이두중	81. 1. 31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기계제작
도원무역	이봉춘	88. 3. 17	" 부천시 중구 원미동 4-12	피혁
동광제작소	정영배	87. 9. 1	" 안산시 원시동 769-11	철재가구
동서공업	이성근	87. 12. 8	" 안산시 목내동 402 6롯데16호	차량피스톤
동성진흥공업	이상섭	87. 10. 29	" 안산시 목내동 445-4, B15-1	케이블채널
동성진흥	김연한	89. 11. 18	" 안산시 성곡동 610-6B 18-17블럭	방음벽
동신중공업	박용일	90. 6. 4	" 용인군 의사면 백봉리 산66	조립식주택
동신타강	이경복	88. 12. 26	" 화성군 동탄면 중리 833-7	가전제품부품
동아정공	우제문	89. 4. 30	" 안산시 목내동 447-1 15블럭	마라톤타자기
동아정기	조동진	87. 8. 17	"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8	자동차부품
동양기공	김인종	87. 8. 27	" 안산시 원시동 771, 반월공단11블럭	"
동양매직	김성복	92. 11. 10	" 화성군 동화리 100-2	가스용구등
동양산업기계	최영복	92. 11. 23	"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38-1	송풍기
동양산업전기	김석태	88. 11. 29	"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전자기기
동양전관	오형종	88. 9. 7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76-1	철재가구
동양특수기공	양신원	87. 7. 23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5	전화기부품
동유물산	이성식	85. 2. 18	" 안성군 대덕면 모산리 175	주방기구
동진금속	최종강	89. 4. 3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537	알루미늄샷시
동해기업	김명도	92. 5. 16	"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318-1	씨비스
동해산업	김완석	89. 2. 20	"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637-2	주방기구
동화계량기	왕환규	87. 8. 14	" 김포군 대곶면 대능리 126-10	주유기
두산기계	황준태	87. 8. 19	"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465-2	기계제조
두산제관	조현덕	88. 4. 18	"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8-1	알루미늄캔
두원냉기	이기연	90. 7. 1	"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자동차에어컨
두원정공	정춘석	87. 8. 27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80	연료분사펌프
로렌스시계	윤중현	89. 2. 1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73-27	시계
명보산업	조길현	89. 9. 25	"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337-1	전화박스
반도기계	오광수	87. 8. 21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07-2	호이스트크레인
배명금속	김원덕	88. 3. 7	" 아산시 초지동 654-2	스텐레스앵글
배영설비기공	이병도	89. 4. 24	"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7	공조기
범양냉방	경홍식	77. 7. 3	" 군포시 금정동 689-4	에어콘
보원무역	하병기	87. 8. 14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6	수출용액자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부 승 정 밀	남 기 성	88. 8. 16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2-5	B . O
삼 기 기 공	장 인 권	78. 10. 13	" 안산시 원시동726-4, 반월공단B1-45	자 동 차 부 품
삼 목 강 업	남 진 우	88. 4. 18	" 안산시 초지동654-3반월공단9-71-2	자 동 차 스프링
삼 아 알 미 늬	박 찬 호	89. 2. 17	" 안양시 박달동 111-2	알미늬은박지
삼 아 정 공	선 형 규	87. 8. 20	" 안양시 박달동 620-3	자 동 차 부 품
삼 양 증 기	신 기 복	84. 7. 8	" 부천시 남구 소사동 134	프레스산업기계
삼 영 기 공	유 인 수	89. 3. 28	" 안산시 성곡동 B602-18	자 동 차 부 품
삼 영 전 자	장 세 익	88. 8. 2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	콘 덴 사
삼우특수금속	민 경 민	87. 9. 4	" 안산시 목내동406, 반월공단7블럭1호	전 선
삼 원 산 업	이 현 주	86. 6. 24	"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234	자 동 차 부 품
삼 정 기 계	이 길 레	89. 4. 12	"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196-6	공 조 기
삼 협 전 자	김 권 태	89. 4. 7	" 부천시 중구 춘의동 120-8	카스테레오
삼 풍 산 업	김 형 기	93. 1. 9	"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252-1	싱 크 대
삼 아 아 처 리	김 연 철	92. 9. 15	"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 278-3	양 궁
삼 화 제 관	박 종 서	88. 8. 16	" 송탄시 모곡동 94-1	음 료 캔
삼 화 콘 덴 서	조 광 용	87. 8. 24	" 용인군 남사면 복리 124	전 자 부 품
상 진	이 장 규	88. 7. 12	"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292	S / A , ° / A C K
새 생 활	이 강 연	87. 8. 7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25-4	보 일 러
새 한 요 업	김 영 화	75. 11. 28	"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342-1	요 업
서울라디에타	박 양 기	88. 1. 16	" 안산시 원시동 724, 반월공단B1-21	전 자 부 품
서 울 주 철	금 태 근	88. 4. 27	" 부천시 남구 소사2동 133-14	맨 홀
서 울 차 체	이 쌍 봉	67. 10. 13	" 안산시 신길동 1125번지	자 동 차 부 품
서 원 풍 력	권 혁 기	88. 11. 7	" 안양시 관양동 791-2	산업선풍기
서 진 대 금	박 완 수	91. 1. 25	" 군포시 금정동 7	자 동 차 부 품
서 진 산 업	안 봉 규	76. 2. 26	" 군포시 금정동 7	"
선 도 전 기	홍 경 수	88. 5. 16	" 안산시 원시동734 B5-6블럭	배 전 반
선 일 기 계	임 상 근	88. 6. 11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0	자 동 차 부 품
성 신	이 종 진	87. 7. 28	" 부천시 남구 송내동 456-5	펌 프
성 안 기 계	최 관 섭	89. 5. 17	" 안산시 성곡동 646-4	기 계 제 작
성 진 기 공	정 용 철	87. 8. 21	" 안산시 목내동 401-5	신축관이음
성 진 산 업	임 병 우	87. 8. 22	" 안산시 원시동 731-8	자 동 차 부 품
세 강 물 산	한 병 우	90. 4. 23	" 안산시 성곡동 607-6	강 선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물
세광알미늄	엄종국	86. 8. 31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51번지 9L	주방용품
수산중공업	서정국	88. 5. 16	"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109-2	산업기계
신라엔지니어링	윤용기	88. 5. 16	"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0-2	금형프레스
신아전기	신은철	80. 3. 26	" 안산시 원시동 779-10	변압기
신일산업	신철	77. 4. 25	"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19	선풍기
신일정밀	나경현	89. 9. 4	"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23	타이어
신진전기	유연각	87. 8. 28	" 수원시 평동 145-1	각종기계
신한일전기	유병류	74. 5. 18	" 부천시 남구 송내동 431	펌프
신한주철	윤무영	74. 7. 20	" 부천시 남구 소사3동 135번지	주물
신홍	신우철	87. 8. 18	" 안산시 원시동 768-14	치과의료기
쌍용자동차	배범식	87. 7. 31	" 송탄시 칠괴동 150-3	자동차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이준근	87. 8. 22	" 안산시 목내동 398-14	수도꼭지
아세아벤드	김광민	89. 1. 8	"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배관자재
공성통신전자	박경이	88. 8. 25	" 시흥시 신천동 70	카세트이프조립
연안정밀	조기환	89. 4. 14	"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661-16	텐트볼
연화정밀	유지택	88. 7. 27	" 시흥시 정왕동 시화단지2 다502호	가스렌지부품
영림상사	이종국	92. 4. 4	" 부천시 중구 춘의동 193-1	특수바늘
오공금속	김충열	88. 6. 8	"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612-1	자동차부품
오양공조기	조재천	87. 8. 17	" 안산시 원시동 817 B1-89	모타
우성	한인철	89. 2. 17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600-12	스텐남비
우진공업	한창기	89. 5. 12	" 안산시 원시동770-1, 11B17L	스파크브러그
우진전자	전경준	87. 9. 1	" 부천시 중구 도당동 254-5	전자제품
원경	박중식	88. 8. 5	" 안산시 성곡동 646-1	주방기구
유성정밀	김선영	88. 9. 10	" 광주군 오폐면 매산리 597-11	변압기
은성금속	엄광조	88. 11. 30	" 안산시 원시동824-1 반월공단8-15블럭	스텐발코니
이화다이아몬드	성세현	88. 3. 12	" 오산시 원동 520-2	공구
이와전기	김광식	88. 7. 18	"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272-20	전자부품장치
일진	최진하	87. 8. 22	" 안산시 목내동 472-1	알미늄
일진전기	가재두	87. 8. 16	"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7-64	자동차부품
일진금속	이재경	87. 8. 29	" 화성군 정남면 패량리 산60-46	보빈
장안공업	이산웅	79. 3. 16	"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224-1	전기소켓
제원전자	채향란	89. 4. 7	" 군포시 당정동 105	전자부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품
중원전기	김원곤	88. 5. 16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7-9	
지남전자	정상국	92. 4. 17	"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679-1	전기용품
진영공업	김종성	94. 3. 25	" 안산시 원시동 778-5	자동차부품
진영기전	이용우	88. 3. 2	"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4	시린다벨브
진우	황병오	91. 7. 10	"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6	자동차부품
창화공업	박윤기	87. 11. 23	" 안산시 성곡동 647-3	"
철도컨테이너정비	임승재	90. 6. 5	" 의왕시 삼동 163	콘테이너수리
코발트전기	조경희	89. 7. 18	" 의왕시 내손동 409-1	전기다리미
태광에로이카	윤선옥	92. 10. 19	" 안양시 안양7동 191-1	전자부품
태양광업	조한구	88. 5. 8	" 시흥시 시화공업단지 나-706	기계금속
태양금속	이병욱	76. 5. 26	" 안산시 성곡동595 반월공단211블럭	볼트
태일정밀	송기선	90. 12. 31	" 안산시 목내동456-1 16-6블럭	컴퓨터부품
퍼시픽와코전자	박원영	91. 2. 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전자부품
퍼시픽콘트롤즈	장영국	91. 2. 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자동제어기
풍정산업	이문식	87. 11. 10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76-1	자동차백밀러
풍한알미늄	김면식	88. 7. 12	" 화성군 봉담면 동화2리 284	알미늄샷시
필립스	강윤구	87. 8. 2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380	전자부품
한국가구	임홍순	68. 9. 4	"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38-1	가구
한국길전제작소		88. 5. 16	" 안양시 호계동 100	치과기계
한국듀폰	석진완	92. 10. 22	"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345-1	컨넥타
한국번디	왕태식	87. 7. 19	" 평택군 진위면 신리206-1	이중런강관
한국브레이크	한정호	88. 4. 19	" 용인군 남사면 묵리609-23	브레이크
한국에르나	박홍철	78. 7. 26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226-1	전자부품
한국에이.엠.피	김성덕	89. 11. 1	" 안성군 공도면 양지리 451-9	"
한국열교환기	최용만	87. 8. 31	" 용인군 기흥읍 영덕6리 517	열교환기
한국오오모리	서분정	90. 4. 13	" 파주군 교하면 동패리 산202-1	납시용릴
한국체인	한정원	87. 8. 26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177번지	체인
한국캠브리지필터	이한규	90. 2. 16	" 안산시 원시동 781-5	전자제품
한도정밀	이원근	88. 5. 11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29-13	베어링
한독분말야금	조태선	93. 3. 10	" 화성군 동탄면 55-1	자동차부품
한백무역	이운승	87. 9. 7	" 연천군 전곡읍 전곡면 330-8	주방기구
한샘	권석정	80. 4. 1	" 시흥시 조남동 594-1	주방용품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해 덕 강 업	이 철 하	89. 7. 13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60-2, 605B	파이프제조
현대엘리베이터	성 용 주	87. 8. 14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136-1	엘리베이터
현 대 전 자	김 영 철	87. 8. 14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13601	전화기·컴퓨터등
혜 성 공 업	김 광 수	87. 7. 10	" 안양시 호계동 898-2	전 자 부 품
흥 진 기 연	안 희 철	89. 2. 27	" 부천시 남구 소사동 65-6	크레인산업기계
화 천 프 레 스	김 기 섭	87. 9. 19	" 안양시 안양7동 219-7	자 동 차 부 품
흥 진 정 공	이 정 한	88. 11. 19	" 안산시 원시동 780-1, 10-8블럭	가 전 제 품
화 승 알 미 늄	임 만 선	92. 7. 9	" 평택군 고덕면 유포리 산7-1	알미늄샷시
한 독	김 동 영	74. 6. 26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3-3	시 계

인천지역본부

1) 지역본부 창립년월일 : 1981년 11월 2일.

2) 소 재 지 :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66-1 보광빌딩 A동

3) 전 화 번 호 : (032)437-8504~5 FAX : (032)437-8504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박 한 주	코 리 아 스 파 이 서 노 동 조 합	1992. 6. 30
수 석 부 의 장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	1992. 11. 26
부 의 장	전 재 환	대 우 중 공 업 "	1993. 7. 8
"	김 석 기	영 창 약 기 "	1992. 11. 26
"	황 경 발	희 성 금 속 "	"
"	신 용 일	테 평 양 금 속 "	"
"	이 준 만	후 지 카 대 원 전 기 "	"
"	양 태 공	한 국 분 말 야 금 "	"
"	장 영 일	동 방 제 강 "	"
"	이 계 봉	창 성 "	"
"	나 용 길	세 일 기 계 "	"
회 계 감 사	신 문 균	한 국 강 관 "	1993. 7. 8
"	이 준 선	영 품 기 계 "	1992. 11. 26
"	최 천 희	쌍 용 자 동 차 "	"
사 무 국 장	이 길 훈	한 국 화 학 장 치 "	"

5)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동 산 업	배 종 남	86. 1. 25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1-10	스 텐 레 스
고 니 정 밀	이 유 정	80. 5. 17	" 북구 효성동 604	전 자 부 품
금 성 기 전	이 중 교	87. 7. 25	" 남구 주안동 1385-2	엘 리 베 이 터
금 성 하 니 웰	김 태 상	87. 5. 31	" 북구 효성동 316-7	산 업 기 계
금 영 실 업	김 병 국	87. 9. 7	" 북구 효성동 225-2	선 반
대 립 통 상	이 은 물	87. 8. 10	" 서구 가좌동 524-4	양 식 기
대 동 케 이 블	양 승 종	89. 7. 11	" 북구 작전동 739-1	케 이 블
대 우 자 동 차	김 계 수	71. 5. 18	" 북구 청천동 199	자 동 차 제 조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대 우 증 공 업	전 재 환	61. 12. 10	인천시 동구 만석동 6	철 도 차 량
대 우 통 신	전 병 순	81. 3. 2	" 서구 가좌동 531	교 환 기
대 한 제 당	손 종 홍	69. 6. 2	" 중구 북성동1가 6-14	제 당
대 한 제 채	한 해 근	66. 5. 16	" 남구 도화동 7-40	댓
덕 창 기 업	진 양 규	89. 9. 16	" 남동구 남동공단 2-1	자 동 차 부 품
동 광 화 성	한 승 오	89. 12. 11	" 북구 효성동 315-15	사 출
동 방 제 강	장 영 일	87. 8. 10	" 남구 도화동 696	제 강
동 보 최 화 영		87. 9. 6	" 남동구 남촌동 601-1	자 동 차 부 품
동 양 철 관	이 영 식	87. 8. 26	" 북구 청천동 176	강 관
로알동도금속	한 종 윤	87. 7. 25	" 북구 효성동 410-19	수 도 꼭 지
로 알 산 업	박 상 언	89. 4. 3	" 남동구 남동공단 8-10	액 자
롯데기공	김 상 보	93. 1. 31	" 남구 주안5동 1400	자 판 기
린나이코리아	오 동 필	89. 3. 17	" 북구 십정동 560-2	가 스 기 기
봉 명 산 업	김 현 섭	88. 7. 5	" 서구 가좌동 577-3	주 물
봉 신 중 기	서 정 근	88. 12. 5	" 서구 가좌동 530-3	"
부 국 철 강	최 영 진	88. 2. 6	" 남구 도화동 686	철 강
삼 성 공 업	오 인 상	87. 8. 4	" 남동구 남동공단 4-1	자 동 차 부 품
삼 성 정 밀	정 길 환	89. 4. 14	" 남구 도화동 105-2	주 방 기 기
삼 송 공 업	김 철 소	87. 8. 24	" 북구 효성동 316-20	캐 스 타
삼 흥 모 터 스	안 광 열	80. 10. 2	" 남구 학익동 587-73	차 량 정 비
서울경금속	류 인 언	89. 4. 10	" 남구 주안동 5-3	알 미늄 샷시
서울엔지니어링	안 경 봉	87. 8. 25	" 남구 주안동 21-2	자 동 차 부 품
서 울 제 강	최 광 질	88. 2. 7	" 북구 십정동 558-7	철 강
서 울 조 구	홍 성 호	87. 7. 25	" 북구 효성동 566-1	
서 홍 이 홍 일		88. 7. 25	" 서구 가좌동 525-5	보 온 병
성 지 공 업	정 지 호	89. 9. 15	" 서구 가좌동 548-11	중 기 부 품
세 원 개 발	강 순 식	93. 3. 31	"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154-6	스틸그레이팅
세 일 기 계	나 용 길	87. 10. 16	" 남동구 남동공단 3-1	자 동 차 부 품
승 일 제 관	김 성 국	88. 5. 27	" 서구 가좌동 543-4	켄
신 일 특 수 관	김 학 배	92. 4. 28	" 남구 학익동 535	제 관
신 화 공 업	김 재 인	82. 3. 16	" 북구 산곡동 524-3	산 업 기 계
쌍 용 정 공	박 용 민	87. 8. 13	" 북구 효성동 219	공 작 기 계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영창악기	장태훈	76. 2. 6	인천시 서구 가좌동 564-1	악기제조
영풍기계	이준선	87. 8. 20	" 북구 십정동 557	공구
우일정밀	정평원	87. 8. 4	" 남구 도화동 694-1	자동차부품
이천전기	최인배	61. 8. 25	" 동구 화수동 5-5	중전기기
인천자동차	이석주	88. 3. 8	" 남구 학익동 587-79	차량정비
인천제철	김동교	70. 5. 13	" 동구 송현동1	철강
제일엔지니어링	이성남	88. 5. 16	" 남구 주안동 1358-9	전자부품
진영정기	진의범	89. 2. 28	" 남동구 남동공단 49-2	방전기
창성	이승태	88. 12. 19	" 남동구 남동공단 11-9	
코리아스파이서	박남수	80. 5. 1	" 북구 삼산동 211-3	자동차부품
한국강관	신문균	80. 5. 4	" 남구 학익동 468	강관
한국분말야금	김복남	87. 8. 16	" 북구 갈산동 5-1	자동차부품
한국사프	박재혁	88. 5. 30	" 북구 효성동 425-10	오디오
한국종합기계	박광실	68. 3. 21	" 북구 산곡동 162	베어링
한국차량	황종환	87. 6. 23	" 남구 학익동 587-67	차량정비
한국화학장치	이길훈	89. 1. 25	" 서구 가좌동 291-13	화학기계
한라중공업	백운선	87. 8. 13	" 중구 항동7가 104-1	조선
한성실업	박근수	87. 9. 19	" 북구 부평동 65-115	자동차부품
한양공영	정운섭	87. 8. 26	" 남구 주안동 3-21	건축자재
한영알미늄	한상환	76. 10. 26	" 서구 가좌동 541-5	비철금속
한일스텐레스	경지수	77. 8. 27	" 북구 효성동 33-2	주방기구
해태전자	김과환	89. 9. 19	" 북구 청천동 177	오디오
화인	박용복	89. 9. 26	" 서구 가좌동 525-3	가스기기
후지카대원전기	이준만	68. 3. 2	" 북구 작전동 286-1	난로
희성금속	허규선	87. 8. 26	" 서구 가좌동 108-12	용접봉
한중기업	최부성	93. 9. 22	" 남구 학익동 468	중기
한일튜브	김도식	93. 5. 17	" 북구 작전동 871-17	브레이크

대전 · 충남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30일.
 2) 소 재 지 : 대전직할시 동구 정동 1-185
 3) 전 화 번 호 : (042)273-5786 FAX : (042)273-2555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김 두 형	대 성 공 업 노 동 조 합	1994. 3. 31
부 의 장	강 한 우	심 신 "	1994. 3. 31
"	김 재 동	대 아 공 업 "	"
회 계 감 사	김 보 현	대 홍 정 비 "	"
"	김 희 종	동 양 금 속 "	"
사 무 국 장	이 철 수	상 지 전 자 "	"

5)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국제특수금속	이 홍 배	71. 5. 12	충남 연기군 동면 웅암리 산66-8	자동차부품
남 선 기 공	윤 익 병	74. 2. 21	" 대전 대덕구 읍내동 450-10	밀 링
대 성 공 업	송 영 택	78. 10. 15	" 대전 동구 성남1동 180	양 식 기 류
대 아 공 업	김 재 동	89. 3. 15	"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35	후 레 임
대 한 공 조	민 계 동	90. 2. 1	" 천안군 입장면 기로리111-7	공 조 기
대 홍 정 비	김 보 현	85. 6. 18	" 천안시 성정동 2-1	자동차정비
동방의료양행	이 상 만	89. 1. 26	"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128	일회용주사기
동 양 강 철	정 병 석	67. 3. 6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63-15	알미늄 · 샷시
동 양 금 속	김 희 종	78. 8. 7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55	주 물
두 원 공 조	정 덕 순	87. 11. 13	"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16-1	공 조 기
삼 신	강 한 우	87. 7. 29	" 천안시 두정동 63-6	벨 브
삼 천 리 기 계	신 경 선	89. 6. 1	"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18-1	기 계 제 작
상 지 전 자	이 철 수	90. 2. 1	"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73	전 화 기
신 성 팩 카드	정 일 기	89. 5. 10	" 천안군 직산면 부송리 152-15	자동차부품
에프케이엘동화	박 준 택	90. 2. 7	"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38-13	전 자 부 품
연 합 전 선	김 종 덕	87. 8. 26	"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전 선
중 양 공 업	김 병 구	73. 1. 27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7	농 기 구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진 합 정 공	이 남 철	88. 10. 26	충남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57	볼 트
정 풍 물 산	양 정 규	93. 3. 24	"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40	전 화 기
천 일 전 기	이 병 무	89. 3. 15	"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309-8	테 스 타 기
한국쌍신전기	유 재 순	76. 4. 26	"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1	콘 텐 서
한 국 이 연	박 군 호	74. 5. 18	"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261	엔 진 부 품
한 국 중 기	남 상 천	88. 11. 16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13	주 물 · 주 강
두 양 금 속	최 용 우	93. 5. 13	" 온양시 배미동 145-3	
수 산 정 밀	김 관 태	93. 7. 9	"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94	

충북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8년 12월 31일.
-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복대동 100-15번지
- 3) 전 화 번 호 : (0431)67-1418 FAX : (0431)66-5088
-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김 홍 수	금 성 계 전 노 동 조 합	1991. 12. 31
부 의 장	권 성 하	에 넥 스 "	"
회 계 감 사	장 화 현	우 진 전 기 "	"
"	박 각 규	우 진 정 밀 "	"
사 무 국 장	이 형 일	뉴 맥 스 "	"

5)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금 성 통 신	조 동 철	71. 3. 3	충북 청주시 향정동 73	통 신 기 기
국제종합기계	이 병 철	74. 2. 1	"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농 기 계
극 동 전 선	임 오 영	87. 8. 22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16-1	전 선
금 성 계 전	김 홍 수	74. 3. 19	" 청주시 송정동 1	전기계측기기
남 한 홍 산	손 영 수	92. 5. 1	" 청주시 송정동 2-1	
뉴 맥 스	이 형 일	88. 4. 27	" 청주시 송정동 27-15	사 무 기 기
대 성 썰 틱	권 영 혁	89. 4. 19	"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1	가 스 보 일 러
동신오미야법랑	서 용 천	89. 11. 16	"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1	건축내장제
동 성 금 속	배 상 열	91. 3. 1	"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엔진배아령
대 일 오 지	김 기 종		"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308-1	기 어 크 랭 크
맥 스 전 자	박 재 형	82. 5. 11	" 청주시 향정동 125	무선전화기
방 원 금 속	라 채 권	89. 8. 2	" 진천군 만승군 죽현리 693-1	자동차기어
삼 화 전 기	박 효 순	90. 1. 31	" 청주시 복대동 92	콘 텐 서
상 원 산 업	허 완 수	90. 2. 23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4-13	
세 진 다 지 마	이 두 휘	91. 6. 23	"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850	스 텐 레 스
에 넥 스	권 성 하	87. 8. 10	"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55	주 방 기 기
우 진 정 밀	박 각 규	88. 8. 4	" 청주시 향정동 73-3	오디오테잎
일 신 산 업	강 은 정	88. 5. 19	" 청주시 송정동 70-8	헤 드 폰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제 일 공 업	최 영 호	89. 4.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02-2	렌 지 후 드
하 나 계 기	곽 한 규	90. 2. 22	충북 청주시 사천동 619	전 자 저 울
한 국 알 미 늄	김 영 호	90. 8. 26	"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457	은 박
한 국 야 금	왕 용 호	91. 2. 4	" 청주시 송정동 53-16	초경합금공구
한 일 정 공	한 남 석	93. 12. 31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45	자 동 차 부 품
한 주 전 자	박 근 자	89. 2. 18	" 청주시 송정동 277-1	전 자 부 품
현 대 정 밀	이 광 희	90. 2. 19	" 청주시 송정동 19-4	전 자 부 품
에 이 . 엠 . 케이	손 명 식	88. 6. 22	" 청주시 송정동 66-26	컴 퓨 터 헤 드

부산 지역본부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0년 12월 29일.

2)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03-240

3) 전 화 번 호 : (051)644-4613~4 FAX : (051)647-8770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오 봉 출	한 진 섬 유 기 계 노 동 조 합	1994. 1. 31
부 의 장	서 복 호	동 국 제 강	1993. 1. 30
"	조 덕 래	한 국 주 철 관	1994. 1. 31
"	하 봉 남	부 산 수 리 조 선	"
"	김 회 근	고 려 용 접 봉	1993. 1. 30
"	강 진 호	연 합 철 강	1994. 1. 31
사 무 국 장	오 일 환	동 승 기 업	"
회 계 감 사	박 갑 철	고 려 제 강	1993. 1. 30
"	하 상 순	대 성 사	"

5)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강 남 문 정 도	78. 3. 18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선 박	
고 려 용 접 봉 김 회 근	84. 6. 17	" 북구 확장동 271-3	용 접 봉	
고 려 제 강 박 갑 철	82. 6. 5	" 남구 망미동 475	로 프	
고 성 산 업 이 한 봉	87. 8. 25	" 사하구 신평동 370-12	수 도 밸 브	
국 제 밸 브 정 영 제	84. 4. 8	" 북구 주례동 690-14	밸 브	
극 동 금 속 김 대 성	89. 4. 3	" 북구 감전동 124	선 재	
남 성 조 선 배 석 진	80. 2. 25	" 사하구 감천동 391-1	조 선 업	
내 쇼 날 정 공 김 영 중	94. 3. 3	" 동래구 거제1동 1467-1	금 형	
대 동 조 선 윤 정 일	75. 1. 9	" 영도구 대평동1가 160	조 선 업	
대 립 정 기 정 인 섭	91. 4. 3	" 사하구 신평동 509	프 레 스	
대 립 철 공 장 김 재 곤	88. 10. 26	" 사하구 신평동 510	"	
대 명 공 업 이 채 우	88. 3. 3	" 북구 확장동 708-11	차 량 부 품	
대 선 조 선 황 대 선	68. 12. 3	" 영도구 봉래동4가 12	조 선 업	
대 성 사 하 상 순	76. 3. 30	" 동래구 안락동 107-16	차 량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대성스프링	류대열	94. 1. 7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1-4	T V 부 품
대창크랭크	이준기	93.10.19	" 사하구 장림동 16	크 랑 크
대창단조	박병용	75. 5.10	" 북구 감정동 952-3	"
대창주강	이규대	90. 4.10	" 사하구 다대동 1508-5	주 강
대한제강	이한유	89. 4.20	" 사하구 신평동 370-16	철 강
동국제강	서복호	87. 9. 1	" 남구 용호1동 177	엥글철근
동기브레이크	정산규	89. 7. 4	" 사하구 신평동 527	라 이 닝
동승기업	백진현	87. 9. 1	" 해운대구 반여1동 791-1	차량부품
동아금속	이규보	87.10.17	" 북구 학장동 279-7	기계부속
동아금속공업	정성수	89. 1. 5	" 북구 학장동 261-6	차량부품
동아전기	윤춘동	77. 8. 1	" 사하구 신평동 38	스 윗 치
동영공업	박재호	87.10.18	" 북구 학장동 748-9	밸 브
동진전기	정남진	89. 2.18	" 북구 학장동 286-13	전기모타
동화정기	김재술	87. 9.10	" 사하구 다대동 1506-2	선박의장
만호제강	김용정	73.11.21	" 북구 화명동 1130-1	로 프
명성	김병규	76. 7.31	" 사하구 구평동 101-1	라 이 타
미진금속	최영수	75.10.29	" 북구 패법동 800	관 이 음 쇠
부국금속	류채주	87. 3.23	" 사하구 신평동 370-43	황 동 판
부산링구	김병욱	78. 4.30	" 사하구 다대동 1503-1	차량부품
부산선박목의장	박후철	93. 4.18	" 영도구 남항동2가 77	선박수리
부산수리조선	하봉남	87. 9. 9	" 영도구 봉래동5가 29	"
부산정기	김규호	79. 3. 1	" 사하구 다대동 1521-3	미싱제작
부산정밀	김용순	93.11. 1	" 북구 학장동 272-11	신발금형
부산조선	홍신태	78. 7. 3	" 영도구 청학동 330	조선업
부산주공	서영택	88. 4.20	" 북구 학장동 715	주 물
부영철강	최진석	89. 7. 2	" 북구 학장동 724-5	선재압연
삼공사	류국부	87. 2.13	" 사하구 신평동 532	선박비품
삼성기계	조용철	87. 8.25	" 사하구 다대동 1504	철도차량
삼창기계	서원조	79. 6.26	" 북구 학장동 732-2	산업기계
삼천리열처리	이성국	87. 8.24	" 북구 삼락동 353-5	기계부품
상농기업	안천호	78. 8.28	" 금정구 부곡동 296-6	플 러 그
서일	강백준	88. 6.27	" 사하구 신평동 561	실 린 다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서 일 P C M	백 주 식	89. 4. 8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16-9	차 량 부 품
성 광 벤 드	배 명 렬	75.11.19	" 사하구 신평동 520	벤 드
세 동 산 업	공 규 수	88. 4. 18	" 남구 감만동 254-48	금 속 용 기
세 웅 종 합 건 설	김 용 민	89. 3. 18	" 영도구 봉래동5가 29	조 선 업
세	진 김 근 수	89. 2. 2	" 영두구 봉래동5가 29	"
신 동 방	문 춘 희	75.11. 9	" 동래구 연산1동 581-4	철 문 작
연 합 조 선	이 창 만	57.10.15	" 영도구 대평동1가 122	"
연 합 철 강	강 진 호	77. 2. 12	" 남구 감만동 588-1	냉 연 강 판
오 리 엔 탈 정 공	권 동 재	90. 2. 17	" 사하구 신평동 370-18	조 선 자 재
우 창 공 업	권 영 민	93. 2. 8	" 북구 모라동 271-1	조선기자재
적 고	이 승 우	88. 7. 12	" 사하구 감천1동 702	시 계 부 품
제 일 전 기	조 성 래	77. 3. 19	" 사하구 신평동 370-13	스 윗 치
제 일 중 기	이 우 송	76. 2. 25	" 사하구 다대동 1519-3	산 업 기 계
조 광 공 업	이 명 보	89.12.16	" 사하구 다대동 1515-4	멜 브
조 기	강 영 일	67.12.17	" 영도구 대평동1가 101	기 계 수 리
조 선 선 재	김 용 호	88. 7. 26	" 남구 우암1동 39	용 접 봉
태 광 벤 드	양 재 권	76. 2. 6	" 사하구 신평동 534	벤 드
태 양 사	김 근 박	87. 8. 11	" 북구 덕포동 267-1	식 기 류
태 일	권 상 근	93.11.11	" 북구 삼락동 361-7	차 량 부 품
한 국 선 재	최 성 진	89. 5. 8	" 북구 감전1동 148-1	도 금 철 사
한국오루강침	정 운 국	89. 4. 5	" 북구 모라동 660-1	미 상 바 늘
한 국 주 철 관	조 덕 래	80. 4. 19	" 사하구 신평동 370-19	주 물
한 보 철 강	김 종 갑	80. 2. 26	" 사하구 구평동 90	철 강
한 진 금 속	이 수 광	81. 2. 25	" 북구 학장동 749-6	주 물
한진섬유기계	오 봉 출	70. 4. 10	" 금정구 부곡동 799	직 기 제 작
한 창 트 랜 스	박 경 덕	93. 4. 6	" 금정구 회동동 158-6	트 랜 스
형 진 공 업	이 종 동	89. 7. 16	" 북구 학장동 718-6	못 , 철 사

경남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번지
- 3) 전 화 번 호 : (0551)84-4021 FAX : (0551)87-5052
-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제 선 수	삼 미 종 합 특 수 강 노 동 조 합	1993. 1. 8
부 의 장	정 한 식	금 성 사 창 원 1 공 장	"
"	신 석 기	대 명 공 업	"
"	김 남 수	두 원 중 공 업	"
"	이 석 오	한 일 제 관	"
"	이 정 식	금 성 사 김 해 공 장	"
사 무 국 장	김 기 선	한 국 씨 티 존	"
회 계 감 사	강 외 룡	기 아 정 기	"
"	박 재 원	동 호 전 기	"

5)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남 금 속	주 현 식	88. 7. 27	경남 창원시 신촌동 74	알미늄 샷시
고 려 상 사	김 정 훈	87. 3. 21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31-1	와 이 어 로 프
금 성 산 전	손 용 환	87. 7. 27	" 창원시 성산동 74번지	엘 리 베 이 터
금 성 알 프 스	김 종 국	74.10. 7	"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191	전 자 부 품
기 아 정 기	강 외 룡	76.11.20	" 창원시 외동 853-8	자 동 차 부 품
대 동 기 어	강 정 욱	83. 4. 26	" 진주시 주약동 407-1	각 종 기 어
대 동 산 업 사	하 상 기	89.10. 4	" 진주시 상대2동 33-1	자 동 차 정 비
대 동 정 밀	김 형 태	89. 7. 3	" 마산시 양덕동 974-17	금 형 및 사 출
대 명 공 업	신 석 기	88.11.24	" 창원시 팔용동 24-1	중 장 비 부 품
대 신 공 업	윤 영 진	87. 8. 21	" 진주시 상대2동 33-40	농 기 구 부 품
대 한 화 학 기 계	손 정 수	84. 6. 18	" 창원시 신촌동 64	보 일 러 타 워
동 명 중 공 업	송 균 호	87. 7. 21	" 창원시 내동 창원공업기지 A-2B	유 압 기 기
동 양 물 산	유 춘 식	79. 7. 16	"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A-6B	농 기 계
동 양 특 수 기 공	윤 삼 원	87. 8. 13	" 창원시 웅남동 40	자 동 차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동호전기	박재원	88. 5. 30	경남 진양군 지수면 송내리 산58-1	컴퓨터헤드
두레금속	이홍섭	88. 5. 4	" 창원시 성주동 48-3	자동차휠
두원중공업	김남수	80. 1. 14	" 진주시 주악동 360번지	해상기제작
세원중공업	허영환	88. 11. 2	" 창원시 신촌동 72번지	프렌트
범한금속	이치권	75. 5. 12	" 창원시 양곡동 192-1	벨브, 판이음쇠
부산산업기계	정운영	87. 8. 13	" 창원시 내동 456-9	선재, 산업기계
삼미종합특수강	김동철	86. 12. 3	" 창원시 신촌동 66	특수강
삼선공업	남상규	88. 6. 22	" 창원시 성주동 54	알미늄
삼성라디에터	박한봉	85. 4. 4	" 창원시 내동 456-4	라디에터
삼우금속	명노후	80. 6. 10	" 창원시 남산동 604-17	표면처리
삼원금속	박덕춘	77. 5. 7	" 김해시 안동 430-5	안테나
삼천리자전거	김영택	61. 10. 24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자전거
삼화기계	서정엽	88. 5. 14	" 창원시 웅남동 53	산업용냉동기
성우금속	김삼근	88. 7. 7	" 양산군 정관면 달산리 농공단지A	자동차부품
세방전지	김환수	76. 7. 28	" 창원시 남산동 601-2	축전지
세신실업	박복렬	75. 11. 20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4-14	양식기
세신정밀	정병철	80. 4. 21	"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1	주방기구
세일공업	백기형	88. 4. 11	" 진주시 상대동 33-50	종기계기어부품
수산스타	김용환	87. 8. 19	" 마산시 양덕동 974-7	프린트
신동광학	장관수	88. 7. 13	" 창원시 팔용동 차룡1단지 29-3	광학기재
신신기계	박병환	87. 8. 12	" 양산군 정관면 예림리 940-13	산업용펌프
쌍용중공업	임권혁	87. 8. 14	" 창원시 창원기계공업기지 제2	디젤엔진
아주금속	김상권	87. 7. 27	" 창원시 양곡동 176-5	자동차주물
양지금속	곽평호	88. 12. 6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4	자동차부품
영진기계	김익수	89. 3. 21	" 김해시 안동 161-7	"
영흥철강	전덕봉	87. 9. 17	" 창원시 신촌동 71-1	와이어로프
유성금속	안병무	80. 4. 3	" 양산군 웅상읍 덕계리 389	알미늄
제일정밀	박영구	81. 6. 18	" 창원시 내동 456-8	정밀부품
종합기계	김외덕	89. 6. 17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85	용접자동화기계
진해삼미	유금속	92. 2. 7	" 진해시 이동 1번지	전자부품
진흥철강	송낙철	88. 3. 10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3-4	아연철선
창신산업	박철도	87. 10. 6	" 창원시 양곡동 192-4	주물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창 원 공 업	강 석 수	87. 9. 7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4	단 조 품
창 원 기 화 기	백 인 철	87. 10. 21	" 창원시 외동 853-12	자동차카브레타
충무연합조선	설 재 국	86. 5. 3	" 충무시 북평동 162-4	목 조 선
코렉스스포츠	김 재 홍	88. 5. 2	" 창원시 창원공단2단지 사서합 75	자 전 거
태광특수기계	표 세 봉	87. 8. 10	" 창원시 신촌동 76번지	제 지 기
태 양 코 팅	김 정 국	89. 9. 2	" 창원시 성산동 43번지	주 방 용 기 구
태 주 실 업	김 명 현	88. 9. 9	" 창원시 성주동 48-5	주 물
태 평 양 벨 브	이 환 우	89. 4. 23	"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0-8	벨 브
풍성전기창원	정 홍 식	89. 3. 8	" 창원시 성산동 47번지	전 장 품
풍 성 정 밀	임 창 수	80. 5. 24	" 창원시 외동 583-5	자동차기계기류
한 국 금 속	김 진 군	87. 8. 14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1	냉각압연제품
한국동양유전	이 문 효	87. 8. 20	" 충무시 도남1동 486	전 자 부 품
한 국 마 그 넷	이 진 수	86. 12. 16	" 진주시 상대동 33-45	마 그 넷
한 국 스 핀 들	김 성 천	88. 7. 18	" 김해시 안동 161-12	자 동 차 부 품
한 국 씨 티 즌	김 기 선	87. 12. 10	" 마산시 봉암동 654-4	시 계
한 국 일 선	홍 상 만	88. 7. 5	" 마산시 양덕동 974-17	전 자 부 품
한 국 중 천	최 해 경	87. 8. 11	"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17	타임스윙치모터
한 국 지 엠 비	이 유 출	88. 11. 15	" 마산시 웅남동 창원공업기지2단지	자 동 차 부 품
한 국 철 강	이 원 택	87. 8. 10	" 마산시 월영동 621	철 강
한 국 카 시 오	박 춘 규	89. 2. 3	" 마산시 합포구 봉암동 654-4	전 자 시 계
한 덕 산 업	이 상 주	88. 10. 14	"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58-10	못
한 일 기 계	이 창 규	90. 1. 18	"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182	자 동 차 부 품
한 일 제 관	이 석 오	87. 8. 17	"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1-1	통조림용공관
효 성 기 계	김 종 길	83. 3. 26	" 창원시 목동 목동지구 제2단지	모 타 싸 이 클
효 성 중 공 업	박 충 배	71. 1. 24	" 창원시 내동 454-2	모 터 · 변 압 기
성 우 금 속	김 삼 근	88. 7. 7	" 양산군 정관면 정관농공단지	자 동 차 부 품
신 신 기 계	박 명 환	87. 8. 12	" 양산군 정관면 정관농공단지	펌 프
유 성 금 속	안 병 무	84. 4. 3	" 양산군 웅상면 덕계리 389	불 트
효 성 전 기		88. 12. 2	" 양산군 정관면 용수리 1047-2	모 타

대구·경북 지역본부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1년 3월 15일.

2)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73번지

3) 전 화 번 호 : 564-0127~8 FAX : 564-0127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김 경 조	쌍 용 중 공 업 대 구 노 동 조 합	1993. 1. 15
수 석 부 의 장	장 지 태	경 창 산 업 "	"
부 의 장	김 무 호	평 화 크 랫 치 "	"
"	윤 태 길	아 세 아 종 합 기 계 "	1994. 1. 28
회 계 감 사	권 태 훈	영 진 "	1993. 1. 15
"	윤 승 오	화 신 제 작 소 "	1994. 1. 28
"	나 영 섭	일 지 산 업 "	"
사 무 국 장	이 길 호	동 서 물 산 "	1993. 1. 15

5) 대구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창브레이크	박 동 일	88. 9. 9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13	자동차부품
경 창 산 업	장 지 태	85. 7. 20	" 서구 중리동 1072	"
경 창 와 이 퍼	김 춘 길	88. 9. 7	" 달서구 갈산동 79-3	"
금 용 기 계	김 주 현	90. 3. 24	" 북구 노원3가 666-2	선 박 엔 진
경북대우자동차	이 예 식	92. 7. 25	" 북구 침산2동 14번지	자동차판매
대 전 기 계	우 정 훈	90. 4. 6	" 달서구 갈산동 37-2	섬유준비기
대 광 보 일 러	김 기 원	75. 8. 18	" 북구 노원3가 203-1	보 일 러
대 리 정 밀	임 종 춘	88. 7. 14	" 서구 이현동 44-13	자동차부품
대 성 정 기	이 종 규	90. 4. 10	" 달서구 갈산동 400-32	"
대 원 기 계	박 인 환	88. 10. 10	" 서구 이현동 44-26	직 기 제 조
대 철 공 업	조 규 원	70. 2. 26	" 북구 노원3가 205-1	자동차부품
동 남 주 물	김 정 치	88. 3. 19	" 달서구 죽전동 142-29	주 물
동 서 물 산	이 길 호	88. 4. 13	" 달서구 갈산동 100-45	쌀 통
동 양 주 물	이 광 희	88. 3. 19	" 서구 중리동 1120	주 물
동원금속대구	이 상 수	90. 1. 31	" 서구 이현동 42-6	강 관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 생산품
대현정밀공업	이락원	93. 5. 18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46	자동차부품
대현정밀	최정섭	93. 5. 18	" 달서구 갈산동 100-46	"
동해전장	이신렬	89. 2. 27	" 달서구 이곡동 1076-4	"
동협	이종규	89. 1. 28	" 서구 이현동 42-254	금형용골드
동협정밀	차철수	88. 3. 6	" 달서구 갈산동 358-6	"
동협제작소	차광열	88. 3. 12	" 서구 중리동 1122	"
대신산업	강준호	92. 4. 16	" 달서구 갈산동 355-10	자동차부품
대우산업기계	곽상희	93. 3. 3	" 달서구 성서공단2차2지구 46b6	기계
명성기계	이재연	89. 6. 7	" 달서구 대천동52블럭 14롯데	연동제어기
미주금속	김춘종	78. 8. 16	" 서구 이현동 42-39	자동차부품
삼도기전	정문호	87. 8. 24	" 서구 이현동 45-55	"
삼립산업	권종렬	68. 6. 18	" 북구 노원3가 236-3	"
삼익공업	하태광	87. 8. 18	" 북구 침산동 750	줄
삼익정공	류병충	89. 8. 16	" 달서구 갈산동 100-75	기계제작
성산전봉진		89. 3. 6	" 달서구 성서공단 43-4	자동차부품
세명기업	박운준	75. 6. 19	" 수성구 사월동 464	자동차부품
세원	허만진	87. 8. 28	" 북구 태전동 253-3	"
세원산업	장현덕	89. 5. 13	" 수성구 신배동 49	주물
쌍용중공업	김시종	69. 2. 5	" 북구 침산2동 227	직기제조
신삼익	성두식	88. 8. 18	" 달서구 갈산동 100-75	쌀통
신생공업	이영웅	72. 6. 1	" 대구시 북구 침산3동 260-1	기계톱날
삼립전기	오국진	91. 4. 10	" 북구 검단동 887-4	자동차부품
삼성제침	주태화	91. 5. 25	" 북구 노원2가 189번지	바늘
아세아산업	서무한	80. 3. 10	" 북구 노원3가 220	농기계
아진산업	신봉식	79. 7. 27	" 서구 이현동 42-66	자동차부품
영남주물	박민식	71. 10. 1	" 북구 노원3가 234	주물
영일기공	장진복	89. 12. 1	" 북구 검단동 887-31	자전거부품
영진권태훈		85. 11. 15	" 달서구 갈산동 100-52	자동차부품
오대금속		88. 4. 23	" 북구 노원3가 1026	"
유진전장	강환영	93. 7. 12	" 북구 검단동 777-1	전장
아성산업	이협규	93. 11. 27	" 서구 비산7동 2024-24	자동차부품
일지산업	나영섭	89. 2. 1	" 북구 노원3가 177-1	"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물
조광산업	서학렬	68. 3. 27	대구시 부국 칠성2동 123	알미늄
평화발레오	박용민	89. 1. 28	"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105	자동차부품
평화정공	김순창	88. 9. 12	" 서구 중리동 1055	"
평화크랏치	김무호	74. 11. 30	" 북구 노원3가 214	"
협립제작소	신기봉	68. 6. 10	" 서구 이현동 42-31	우산, 양산

5) 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물
경신공업	심경수	87. 9. 1	경주시 황성동 42번지	자동차부품
광진상공	김정태	88. 5. 30	" 황성동 45번지	"
남양금속	조영민	88. 11. 9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주물
남양정밀	김진옥	89. 4. 20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54	전자부품
남중농기사	박태용	81. 3. 25	김천시 신음동 111-1	농기구
대동공업	이성호	84. 2. 5	달성군 논공면 북동 1-12	농기계
대동금속	김형호	88. 2. 16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18	주물
대부기공	홍정표	89. 5. 18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12-2	자동차부품
대영베아링	신재오	81. 3. 30	김천시 신음동 79-3	베아링
대한소결금속	김칠봉	91. 2. 1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10	중석소결
동국강재	공석철	88. 11. 1	달성군 논공면 북동 1-16	현강
동원금속	이재경	86. 4. 7	경산군 진량면 양지동 330-1	자동차부품
동아전장	이추자	88. 9. 17	경주시 용강동 1190-1	"
대한중석	김득수	81. 1. 21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304	중석
명신산업	오세용	87. 9. 3	경주시 황성동 40번지	"
삼협산업	김운이	87. 4. 6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산55-2	"
상신브레이크	김형계	87. 7. 30	달성군 논공면 북동 1-37	"
세왕금속	정용목	87. 8. 28	영천시 망정동 390	병마개
신아금속	손순석	84. 10. 26	" 본촌동농공단지 440번지	자동차부품
삼립정공	여선동	92. 6. 15	경산군 진량면 당곡리 산22-1	"
아세아종합기	윤태길	87. 6. 21	달성군 유가면 금동 168	농기계
영신정공	공석봉	89. 4. 14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408	자동차부품
일진단조	김규준	89. 7. 11	경주시 황성동 50	"
유진산업	김효연	93. 7. 15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 1700	"
영풍제관	김용태	89. 5. 31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42	병마개
전우개발	정영규	88. 12. 8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60	변압기수리
진영종합기계	한명진	81. 2. 10	김천시 대광동 1000-28	농기구
평화산업	신운섭	69. 7. 10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17	자동차부품
평화오일셀	정광진	79. 10. 17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88	"
한국블럭스위	정운락	90. 6. 7	경주시 용강동 800-6	콘테이너
한영전자	이호진	90. 5. 7	김천시 객옥동 241-3	전자
화신제작소	윤승오	88. 5. 4	영천시 언하동 412	자동차부품
화신테크	조동권	88. 4. 29	달서구 성서공단 44-2	"
한국브레트	김성진	92. 6. 10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103-21	주물
현대발브	이석곤	93. 8. 16	경주군 외동읍 개곡리 146-1	자동차부품

울산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9년 9월 1일.
-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7번지
- 3) 전 화 번 호 : (0522)76-5880, 74-9631 FAX : (0522)74-9631
-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오 진 현	한 국 프 랜 지 노 동 조 합	1992. 1. 23
부 의 장	김 복 천	정 일 공 업 "	1993. 8. 26
"	박 용 도	세 운 공 업 "	1994. 1. 21
사 무 국 장	이 용 우	현 대 알 루 미 늄 "	1993. 8. 26
회 계 감 사	기 한 도	고 려 아 연 "	1993. 1. 28
"	장 병 문	금 강 공 업 "	1993. 8. 26

5)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고 려 아 연	기 한 도	79. 10. 9	경남 울산군 온산면 대정리 505	아 연 피
금 강 공 업	장 병 문	91. 11. 6	"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전 설 자 재
덕 양 산 업	김 우 배	87. 8. 14	" 울산시 중구 연암동 945	자 동 차 부 품
동 회 산 업	노 현 돈	87. 8. 11	" 울산시 남구 황성동 218	"
대 한 알 루 미 늄	한 경 남	78. 8. 3	" 울산시 남구 여천동 1	인 코 트
대 일 공 업	전 행 태	86. 6. 7	" 울주군 두서면 전음리 두서논공단지	자 동 차 부 품
력 키 금 속	박 영 구	80. 5. 16	" 울산군 온산면 대정리 70	동 판 등
부 산 기 업	강 성 구	89. 5. 18	" 울산시 남구 여천동 750-2	자 동 차 부 품
세 종 공 업	이 태 환	88. 3. 24	" 울산시 중구 효문동 800-1	"
세 찬 산 업	윤 상 원	88. 2. 12	" 울산시 중구 연암동 496-1	"
세 운 공 업	박 용 도	87. 8. 13	경북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 1747-60	"
삼 주 기 계	이 채 영	88. 12. 12	경남 울산시 중구 효문동	"
우 영 산 업	연 기 섭	87. 8. 5	" 울산시 중구 연암동 741-15	"
정 일 공 업	김 복 천	87. 8. 10	" 울산시 중구 효무동 212-11	"
진 도	양 용 진	85. 1. 31	"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1-26	큰 테 이 터
현 대 강 관	남 상 철	87. 8. 5	" 울산시 중구 염포동 282	파 이 프
현대알루미늄	이 두 락	87. 8. 3	"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알루미늄샷시

포항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창립년월일 : 1991년 11월 23일.
- 2)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대도동 630-11번지
- 3) 전 화 번 호 : (0562)83-3728 FAX : (0562)83-3729
-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백 종 부	부 산 파 이 프 노 동 조 합	1993. 12. 8
부 의 장	강 학 중	성 립 기 업 "	"
"	정 용 근	동 부 제 강 (지 부)	"
사 무 국 장	김 상 달	강원산업삼표중공업	"
회 계 감 사	김 형 복	동 일 철 강	"
"	이 상 용	한 금	"
"	이 창 호	조 선 선 재	"

5)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강 원 산 업	김 상 달	87. 7. 19	경북 포항시 송내동 444	철 강 제 품
대 성 기 업	최 부 식	89. 2. 21	" 포항시 동촌동 5	포철중간공정
동 일 기 업	장 문 식	88. 7. 3	" 포항시 동촌동 138	"
동 일 철 강	김 형 복	88. 12. 26	" 포항시 장흥동 140-3	환 봉 · 철 근
동 성 철 강	박 정 국	90. 5. 6	" 포항시 장흥동 1866	철 판 기 공
동 양 석 판	배 상 일	88. 8. 5	" 포항시 장흥동 34	석 판 압 연
동 방 금 속	정 대 근	88. 7. 1	" 포항시 호동 567	특 수 선 재
부 산 파 이 프	정 해 용	74. 3. 11	" 포항시 장흥동 14-1	강 관
삼 정 강 업	김 영 곤	89. 2. 8	" 포항시 괴동동 967	포철중간공정
성 립 기 업	강 학 중	88. 8. 1	" 포항시 대도동 94-1	"
서 한 정 기	강 진 유	89. 6. 10	" 포항시 호동 포철제2단지 72	자동차부품생산
세 아 특 수 강	우 법 윤	89. 3. 20	" 포항시 장흥동 747	냉 각 압 조 용
서 울 용 접 봉	최 위 택	89. 3. 23	" 포항시 괴동동 558-1	포철중간공정
제 철 정 비	성 홍 석	88. 6. 26	" 포항시 장흥동 322-1	정 비
조 선 선 재	이 창 호	88. 12. 5	" 포항시 장흥동 865	선 재
코 스 텔	김 문 식	88. 4. 24	" 포항시 호동 286	철 근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거 양 로 공 업	정 용 길	88. 6. 29	경북 포항시 호동 611	고 로 보 수
홍 화 공 업	강 신 포	87. 8. 25	" 포항시 괴동동 24	철 골
한 금	이 상 용	91. 2. 20	" 호동 20 제2연관단지	냉 간 압 연
한 진 기 업	정 상 준	88. 12. 12	" 동촌동 5	포철중간공정
화 성 기 업	김 창 원	89. 3. 12	" 동촌동 5	"
현대종합금속	김 도 론	87. 8. 19	" 장흥동 90-5	선 재

광주·전남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80년 12월 30일.
 2) 소 재 지 : 광주직할시 북구 유동 40번지
 3) 전 화 번 호 : (062)524-8581 FAX : (062)528-8671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정 기 춘	화 천 기 공 노 동 조 합	1993. 1. 19
부 의 장	박 준 근	태 성 기 공 "	"
회 계 감 사	전 상 근	한 국 신 광 전 자 "	"
"	권 일 수	서 울 차 체 "	"
사 무 국 장	신 용 석	금 성 알 프 스 "	"

5)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안 실 업	예 정 오	88. 12. 24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1019	강 관 , 강 단
광 동 정 밀	김 영 주	91. 4. 24	" 승주군 서면 선평리 256-5	제 철
광양종합기계	국 선 호	90. 4. 26	" 목포시 석현동 1168-3	선박용디젤엔진
금 성 기 계	임 길 섭	78. 4. 4	광직시 광산구 장덕동 984	자 동 차 부 품
남 선 선 반	임 경 연	78. 7. 19	" 광산구 오선동 273-6	공 작 기 계
대 산 금 속	류 재 천	88. 6. 7	" 광산구 장덕동 984-1	자 동 차 부 품
대 아 산 업	김 관 호	87. 8. 21	" 광산구 안청동 729-6	자 동 차 시 트
대 우 모 터	장 중 섭	92. 3. 6	" 광산구 장덕동 988-1	"
대 창 정 비	김 대 학	80. 12. 26	" 북구 두암동 883-1	자 동 차 정 비
부 국 산 업	최 낙 중	88. 11. 1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627	제 철
부 국 철 강	정 남 제	88. 11. 6	광직시 광산구 안청동 738-1	"
서 울 프 레 스	김 현 주	81. 3. 28	" 광산구 장덕동 982-5	자 동 차 부 품
신 흥 금 속	유 영 선	92. 4. 15	" 광산구 장덕동 984-1	
아 룡 기 공	김 경 범	87. 8. 11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1	유 압 유 니 트
아 시 아 자 동 차	조 남 일	74. 3. 8	" 서구 내방동 700	자 동 차
제 철 설 비	장 욱 기	89. 8. 5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6-4	설비제작정비
천 기 제 강	이 은 정	85. 6. 10	" 승주군 서면 압곡리 291	와 이 야 로 프
케 엠 사	김 영 환	91. 1. 17	광직시 광산구 소촌동 854	밀 장비, 선구

구미 지역본부

- 1) 지역본부 설립년월일 : 1993년 2월 10일.
- 2) 소 재 지 : 구미시 비산동 26번지(광명정비 2F)
- 3) 전 화 번 호 : 464-3643 FAX : 464-3643
- 4)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년월일
의 장	박 병 도	금 성 정 밀 노 동 조 합	1993. 2. 10
부 의 장	신 승 근	동 국 종 합 전 자	"
"	이 병 균	대 우 전 자	"
"	김 장 수	일 성 기 계	"
"	김 종 국	금 성 전 선	1994. 3. 11
"	천 광 회	금 성 사 1 지 부	"
"	권 선 국	한 국 전 자	"
사 무 국 장	김 구 연	실 트 톤	"

5)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고 려 전 기	이 명 희	90. 11. 26	구미시 공단동 171	코 일
금성마이크로닉스	노 승 표	87. 8. 14	" 구포동 624	세도우마스크
금성일렉트론	이 진 석	90. 1. 3	" 임수동 171	반 도 체
금 성 정 밀	원 종 도	87. 8. 17	" 공단동 133	계 측 기
금성정보통신	김 문 섭	83. 7. 5	" 공단동 299	교 환 기
동국종합전자	신 승 근	87. 8. 13	" 공단동 321	카 세 트
두 고 전 자	김 경 환	89. 2. 24	" 공단동 163	P C B 히 터
두 산 전 자	오 재 두	87. 8. 20	" 구포동 644	기관원판제작
새 한 전 자	석 경 오	88. 6. 22	" 공단동 130-7	"
신 성 기 업	유 병 성	88. 10. 23	" 공단동 153	P C B
실 트 톤	김 구 연	89. 1. 6	" 임수동 274	반 도 체
오 리 온 금 속	최 인 환	88. 8. 8	" 공단동 158	C R T 부 품
오 리 온 전 기	최 창 기	82. 11. 3	" 공단동 129	CRT모니터
일 성 기 계	김 장 수	82. 9. 3	" 공단동 194	염색기, 건조기
정 화	김 상 일	74. 6. 3	" 공단동 169	P C B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클레스트라하우저만	한 경 석	89. 2. 24	구미시 황상동 502-4	철재칸막이
태 석 전 기	김 영 호	91. 4. 16	" 공단동 149	T V 부 품
태 평 양 금 속	정 의 용	88. 7. 26	" 공단동 298	영 구 자 석
한 국 대 화	김 현 철	89. 3. 20	" 공단동 128	샷 시
한국텔코전지	안 석 찬	87. 8. 19	" 황상동 495	자동차بات데리
한 국 신 영	김 진 섭	87. 8. 18	" 공단동 162	콘 덴 사
한국아이지모타	박 미 숙	89. 4. 6	" 공단동 142	소 형 모 타
한 국 전 차	권 선 국	88.10.22	" 공단동 149	반도체, TV

○ 전북지역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기 아 특 수 강	임 문 택	66. 5. 6	군산시 소룡동 1-6	철 도 차 량
동 양 기 업	양 남 용	88. 4. 28	" 경암동 486-7	재 단 가 위
우 민 주 철	강 승 흡	87.11.11	" 소룡동 466	상 수 도 관
고창기계시스템	오 감 동	93. 9. 15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 1-2블럭	

○ 강원지역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속 초 지 역	신 종 찬	88. 3. 18	속초시 금호동 482-5	조 선 신 조
한 일 전 기	장 석 응	74.10.24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블럭	가 전 제 품
21세기기계	최 명 순	91. 7. 11	강릉시 입암동 21-6	자 동 차 부 품
이 수 세 라 믹	정 규 문	93. 7. 14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5-12	세 라 믹 제 품
대우국민차정비	임 석 모	93. 7. 12	춘천시 근화동 786-1	정 비

2. 지 부 현 황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경 방 기 계			
반 월 지 부	강 영 석	88. 7. 13	경기 안산시 성곡동 644-2(B블럭)
금 성 사			
구 로 지 부	박 승 리	63. 5. 3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459-9
구 미 1 지 부	천 광 회	63. 5. 5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구 미 2 지 부	장 석 준	79.10. 9	경북 구미시 진평동 68
김 해 지 부	이 정 식	"	경남 김해시 인동 259-1
창 원 1 지 부	정 한 식	63. 5. 5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2
창 원 2 지 부	김 영 준	63. 5. 30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청 주 지 부	권 종 안	"	충북 청주시 향정동50 제3공단
평 택 지 부	나 찬 경	"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19-1
기 아 씨 비 스			
광 주 지 부	장 덕 남	81. 2. 14	광주시 서구 광천동 262
대 구 지 부	이 상 백	"	대구시 북구 노원3가 558
대 전 지 부	조 일 형	"	대전시 동구 대화동 1-15
본 사 지 부	홍 민 기	86. 2. 22	서울 구로구 시흥동 514-5
부 산 지 부	김 해 욱	81. 2. 14	부산시 북구 감전동 159-4
성 동 지 부	박 정 원	"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67-6
수 원 지 부	최 병 삼	91.10. 1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546
시 흥 지 부	신 부 호	81. 2. 4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514-5
영 등 포 지 부	박 성 근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16-2
원 주 지 부	최 명 호	83. 6. 25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
인 천 지 부	이 정 호	91.10. 15	인천시 서구 가좌동 106
창 원 지 부	장 정 면	85.10. 11	경남 창원시 대원동 78
청 주 직 할 시	김 홍 기	80. 9. 30	충북 청주시 신봉동 158
대 우 전 자			
광 주 지 부	최 석 호	85. 8. 1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1-1
구 미 지 부	이 병 균	83. 3. 28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6
인 천 지 부	박 성 구	"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
주 안 지 부	손 형 일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1-5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대 한 전 선			
시 흥 계 전 지 부	김 영 배	76. 6. 1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993-4
시 흥 전 선 지 부	김 형 식	"	서울시 구로고 시흥동 113-119
안 양 전 선 지 부	신 향 철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785
동 부 제 강			
부 산 지 부	이 양 우	66. 4. 29	부산시 북구 학장동 725-4
인 천 지 부	김 한 정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1
포 향 지 부	정 용 근	88. 7. 20	경북 포항시 괴동동 792-1
동 아 건 설			
미 사 리 지 부	민 병 용	74. 6. 29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5
부 산 지 부	김 덕 갑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37
천 안 지 부	김 상 수	"	충남 천안군 성거읍 선흥리 315-4
장 비 사 업 소 지 부	박 용 재	88. 6. 2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2-1
창 원 볼 트 지 부	박 종 찬	92. 12. 10	경남 창원시 삼동단지 제4블럭
로 움 코 리 아			
구 로 지 부	문 선 자	78. 6. 2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22
롯데 알 미 늬			
반 월 지 부	유 충 일	76. 4. 8	안산시 원시동 822
세 진 전 자			
오 산 지 부	유 재 열	88. 6. 1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7
국 제 전 선			
전 주 지 부	이 상 오	68. 5. 3	전북 전주시 팔복동3가 408
금 성 전 선			
구 미 지 부	김 종 국	67. 5. 12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0
군 포 지 부	이 우 창	87. 9. 24	경기도 군포읍 당정동 200
안 양 지 부	조 필 구	67. 5. 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
기 아 자 동 차			
아 산 지 부	손 승 수	61. 10. 24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122
대 우 전 자 부 품			
군 포 지 부	김 영 환	75. 5. 16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43
안 성 지 부	최 종 권	75. 5. 16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송두리 598-26
정 주 지 부	유 병 상	75. 5. 16	전북 정주시 망제동 19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두 산 기 계			
창 원 지 부	장 정 철	87. 8. 27	경남 창원시 대원동 82
쌍 용 자 동 차			
구 로 지 부	김 명 철	87. 7. 3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4-12
부 평 지 부	최 천 희	"	인천시 북구 효성동 395
판 매 지 부	권 용 호	89. 8. 15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48-2(기술연구소)
경 원 세 기			
서 울 지 부	정 선 재	89. 11. 1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
아 산 지 부	이 정 용	93. 6. 15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24-1
반 도 기 계			
반 월 지 부	이 창 재	89. 7. 3	안산시 신길동 1058-7
대 경 화 성			
제 2 공 장 지 부	정 근 화	93. 3. 31	안산시 성곡동 638
서 울 차 체			
광 주 지 부	김 홍 규	67. 11. 8	광주시 서구 내방동 643
시 흥 지 부	백 정 훈	67. 10. 3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272
창 원 지 부	선 종 현	"	경남 창원시 차룡공단 10-3블록
일 진			
통 산 지 부	성 정 규	87. 8. 22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2리 산7
경 동 산 업			
대 구 지 부	김 종 학	90. 10. 1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1-144
금 성 기 전			
김 포 지 부	최 용 호	87. 7. 25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367-1
보 수 부 지 부	김 회 석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원정B/D3층)
천 안 지 부	박 성 대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삼송리 27-1
대 립 통 상			
김 포 지 부	채 수 찬	87. 8. 13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 158-2
인 천 지 부	박 병 두	87. 8. 1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2
대 우 자 동 차			
동 래 지 부	최 병 규	81. 5. 18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5-11
부 산 정 비 지 부	허 근 명	87. 11. 20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586-3
부 산 지 부	구 자 훈	71. 5. 18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88-9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정 비 부 품 지 부	강 인 회	79. 9. 12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1
대 우 중 공 업			
안 양 지 부	조 인 근	61. 12. 10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462-2
영 등 포 지 부	조 권 식	"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 120-3
창 원 지 부	허 장 도	"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4
대 우 통 신			
구 로 지 부	유 건 준	93. 3. 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60-8
소 래 지 부	김 윤 제	81. 3. 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30-3
대 한 제 당			
울 산 지 부	이 종 규	91. 2. 13	울산시 남구 용잠동 480
동 양 철 관			
충 주 지 부	이 창 재	87. 8. 15	충북 충주시 용탄동 168
한 국 중 합 기 계			
창 원 지 부	장 준 영	77. 8. 26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한 라 중 공 업			
소 아 지 부	박 철 호	91. 11. 27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69
한 영 알 미 늬			
안 산 지 부	김 윤 식	86. 1. 18	안산시 원시동 833-2
해 태 전 자			
화 성 지 부	김 만 근	89. 12. 5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점2리 461
후 지 카 대 원 전 기			
구 로 지 부	김 종 일	68. 3.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1
동 양 강 철			
제 2 지 부	이 종 일	90. 9. 28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51
제 3 지 부	최 연 식	81. 2. 14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2
연 합 전 선			
목 천 지 부	최 기 섭	91. 7. 1	충남 천안군 목천면 소사리 24-2
금 성 통 신			
오 산 지 부	김 일 섭	91. 8. 14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79
고 려 제 강			
수 영 지 부	이 재 근	82. 6. 6	부산시 남구 망미동 475
양 산 지 부	홍 종 성	85. 6. 13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753-1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유 산 지 부	김 타 환	84. 8. 15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27-27
대 동 조 선			
진 해 지 부	빈 성 만	88. 8. 27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동 국 제 강			
인 천 지 부	지 원 철	93. 2. 20	인천시 동구 송현동 1
포 항 지 부	박 영 만	87. 9. 1	경북 포항시 포철2연관단지 18B
만 호 제 강			
부 산 지 부	정 석 영	73. 11. 21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30-1
양 산 지 부	김 석 태	76. 1. 8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59
상 농 기 업			
양 산 지 부	김 진 태	78. 8. 28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476-68
창 원 지 부	박 인 규	87. 8. 28	경남 창원시 성주동 50-1
한 국 철 관			
포 항 지 부	김 수 용	80. 4. 19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38
금 성 산 전			
서 울 지 부	박 기 준	87. 7. 1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65-1
오 산 지 부	유 태 승	87. 7. 27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
창 원 지 부	주 성 민	87. 7. 1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금 성 알 프 스			
광 주 지 부	김 용 표	85. 4. 1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853-8
삼 미 종 합 특 수 강			
울 산 지 부	김 규 섭	88. 11. 25	울산시 남구 여천동 250
삼 선 공 업			
구 로 지 부	박 춘 길	88. 6. 2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11
반 월 지 부	김 석	88. 6. 22	안산시 목내동 393-1
세 방 전 지			
광 주 지 부	정 용 석	89. 12. 16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4
한 국 철 강			
창 원 지 부	배 동 환	87. 8. 22	경남 창원시 신촌동 70
한 일 제 관			
수 원 지 부	박 하 영	87. 8. 17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2
효 성 중 공 업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영 등 포 지 부	이 형 기	71. 1. 2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
태 능 관 리 소	이 훈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48-1
대 일 공 업			
언 양 지 부	공 민 근	90. 5. 9	울산군 상북면 양등리 216
력 키 금 속			
장 항 지 부	김 용 겸	83. 1. 27	충남 서천군 창항읍 장암리 78
정 일 공 업			
평 택 지 부	정 기 열	87. 9. 21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울포리 28-5
진 도			
부 평 지 부	문 용 상	85. 1. 31	인천시 북구 작전동 505-7
언 양 지 부	박 원 문	"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1-26
인 천 지 부	김 성 찬	"	인천시 남구 도화동 1-46
삼 도 기 전			
안 산 지 부	이 경 모	88. 3. 24	안산시 신길동 1061
세 원 산 업			
논 공 지 부	이 인 철	92. 5. 30	여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580-35
경 신 공 업			
강 동 지 부	송 경 하	87. 10. 1	경북 경주군 강동면 오금리 산11
경 주 지 부	서 동 해	93. 11. 4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아 산 지 부	강 홍 진	89. 7. 13	충남 안산군 음봉면 덕지리 463-5
인 천 지 부	김 현 숙	87. 10. 1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8-3
화 신 제 작 소			
영 천 지 부	이 석 기	88. 5. 4	경북 영천시 도남동 도남농공단내3호
화 신 테 크			
대 구 지 부	이 광 수	88. 4. 29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44B-21
두 산 전 자			
증 평 지 부	변 대 영	88. 10. 15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산661
태 양 금 속			
부 평 지 부	신 용 일	87. 8. 17	인천시 북구 갈산동 14-3
거 양 로 공 업			
광 양 지 부	신 갑 식	88. 7. 23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7-12
부 산 파 이 프			

지 부 명	지 부 장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서울지부 삼정강업	마성숙	74. 3. 1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80-15
광양지부 기아특수강	정순종	89. 8. 5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5-1
서울지부	임승만	66. 5. 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13
인천지부	김부경	78. 2. 1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8

3. 신규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재지	주생산품
한신기계	노영만	93. 4. 8	안산시 신길동 1122-6	컴퓨터사
동영	이영재	93. 4. 7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0-6	엘리베이터부품
한국몰렉스	김춘태	93. 4. 13	안산시 원시동 726-3	전자제품
삼부정공	조병길	93. 4. 19	" 목내동 399-1	자동차부품
광진기계	김종철	93. 3. 3	" 목내동 394-1	"
명화공업	최인규	87. 8. 31	" 원시동 720-2	"
대길통상	안도영	93. 5. 8	시흥시 정왕동 2다 708호	
한국일측	김충식	93. 5. 17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	게이지
삼남전자	이호훈	93. 5. 19	안산시 성곡동 638-3	반도체리프프레임
신흥정밀	서재순	93. 5. 20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4-2	프레스금형
한일기업	김정호	93. 6. 14	" 원미구 도당동 182-2	그라비아인쇄제판
공성기업	김순만	93. 6. 14	" 원미구 도당동 182-2	"
썬엔지니어링	기세문	93. 6. 29	" 오정구 삼정동 48-18호	금속조립
현대표지	서성진	93. 8. 2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표시판
한국버그전자	한광수	93. 11. 12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245-4	전자부품
동회산기	마균용	94. 2. 17	안산시 성곡동 604-31	자동차라인
제일콘트롤즈	박병남	94. 3. 7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72	보일러
한라공조	김기덕	94. 3. 16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344-11	라디에타
진영공업	김종성	94. 3. 25	안산시 원시동 778-55	자동차부품
한일튜브	김도식	93. 5. 17	북구 작전동 871-17	브레이크제작
대한마이크로	안재영	93. 6. 20	북구 작전동 499-2	반도체
화성스텐레스	유병준	93. 9. 6	남동구 남동공단 148-11	스텐레스
한중기업	최부성	93. 9. 22	남구 학익동 468번지	중기사업부
극동산업기계	장성훈	93. 12. 11	남동구 남동공단 41-6	크레인
벤훅스	이현승	93. 9. 23	남동구 고잔동 716-2	콘테이너
한국특수정밀	이경복	93. 12. 23	서구 가좌동 602-22	기계가공
서흥가전	윤재원	94. 2. 4	서구 가좌동 525-5	가전제품
한일정공	한남석	93. 12. 31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45	자동차부품
대현정밀공업	이락원	93. 5. 18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46	"
대현정밀	최정섭	"	"	"

노동조합명	대 표 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유진전장		93. 7. 12	대구시 북구 검단동 777-1	전 장
유진산업	김효연	"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 1700	자동차부품
현대발브	이석곤	93. 8. 16	경주군 외동읍 개곡리 146-1	"
아성산업	이협규	93. 11. 27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95-15	"
대우산업기계	곽상희	94. 3. 3	달서구 성서공단 2차2지구 46/6	기 계
부산정밀	김용순	93. 11. 1	부산시 북구 학장동 271-11	신발금형
한창트랜스	박경덕	93. 4. 6	" 금정구 회동동 158-1	트 랜 스
대창크랭크	이준기	93. 10. 19	" 사하구 장림동 16번지	크 랑 크
부산선박목의장	박후철	93. 4. 18	" 영도구 남항동2가 77	선박목의장
동호기계	안재우	93. 6. 7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25번지	

4. 외국인 투자기업체 현황

기업체명	회사 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남성전기	윤봉수	일본	67	33	170억	카오디오	300	8	44
롬코리아	심장섭	"	13	87	200억	저항기	650	7	42
롯데알미늄	전제덕	"	15	85	33억	알미늄	550	8	44
롯데전자	김중기	네덜란드				오디오	500	8	44
한국시그네틱스	로버드	"		100		반도체	1,000	8	44
한국콘베어	김종연	일본	50	50	12억	콘베어	100	8	44
한국음향	배선갑	"	50	50	14억	스피커	150	8	44
카스톤발브	방철	미국	10	90		발브	30	8	44
선진대금	이기대	일본	49	51	300억	자동차부품	90	8	44
신라엔지니어링	박헌정	"	55	45	17억	자동차금속부속	50	8	44
신한일전기	정명식	"		100					
한국브레이크	강응식	미국	51	49		브레이크패드라이닝	255	8	44
동서공업	유홍우	영국	50	50	22억	키스톤핀	150	8	44
삼화제관	강병준	일본	80	20	110억	음료관	300	8	44
금성기전	김희수	"	89.82	10.8	210억	승강기	1,555	8	44
대동케이블	이중화	"	70	30	6억7천	케이블	215	8	44
로알동도금속	박신규	"	75	25	42억	수도꼭지	210	8	44
린나이코리아	최창선	"	50	50	6억	가스기기	320	8	44
코리아스파이서	유준기	미국	51	49	122억	자동차부품	500	8	44
한국샤프	이관진	일본	50	50	12억7천	오디오	400	8	44
A. M. K.	로버트시페트로	미국		100	117억	컴퓨터헤드	500	8	44
대한화학기계	이영호	일본	51	49	43억	화학프렌트	93	8	44
한국G. M. B.	구운모	일본	51	49	20억7천	자동차부품	100	8	44
아주금속	석성길	"	72	28	7억	"	200	8	44
풍성정밀	황규삼	"	50	50	19억3천6백	자동차기계류	500	8	44
한국시티즌	오나타가노구	"		100	40억	시계	400	8	44
태양코팅	천기승	"	49	51	10억	주방용기구	25	8	44
창원공업	정인섭	"	70	30	30억	자동차단조	196	8	44
한국동양유전	천전공	"	30	70	19억	전자부품	280	8	44

기업체명	회사 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한 일 제 관	정 호 발	미 국	60	40	59억7천	통조림용공관	720	8	44
한 국 카 시 오	소 리 다	일 본		100	35억	전 자 시 계	250	8	44
세 방 전 지	남 충 일	"	65	35	70억	축 전 지	755	6	44
금 성 알 프 스	이 종 수	"	51	49	250억	전 자 부 품	2,350	8	44
진 해 삼 미	모리베이찌오	"	10	90	50억	"	100	8	44
한 국 일 선	김 두 영	"		100	12억	자 동 차 부 품	288	8	44
평 화 발 레 오	김 상 태 아노르백 공동대표	프 랑 스	150	150	300억	"	700	8	44
평 화 오 일 썰	조 치 호	일 본	60	40	3억6천억	자 동 차 부 품	250	8	44
부 산 정 기	홍 순 명	"	56	44	27억	재 봉 기	56	8	44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임 원 (대 표 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대 아 산 업	김 판 호	고 인 봉		임 기 대 회
대 우 모 터	장 중 섭	조 인 섭		"
신 흥 금 속	유 영 선	전 백 수		"
아 시 아	조 남 일	김 종 식		"
제 철 설 비	장 옥 기	유 회 동		"
케 엠 사	김 영 환	배 영 철		"
화 천 기 공	구 명 주	최 광 현		"
기 아 씨 비 스	박 천 식	김 종 천		
도 신 정 밀	황 승 익	김 행 자		
롯데 알 미 늄	전 기 흥	이 근 덕		
한 국 마 벨	이 진 렬	류 용 모		
한 국 트 랜 스	김 완 귀	노 미 진		
한 국 컨 테 이 너	최 원 학	신 현 도	1992. 11. 23	임 기 만 료
동 원 산 업	박 병 모	김 세 월	1993. 1. 9	"
태 일 정 밀	송 기 선	권 준 호	1993. 1. 1	"
흥 진 정 공	이 정 한	권 봉 행	"	"
두 산 제 관	조 현 덕	이 재 용	1992. 2. 27	"
신 진 전 기	유 연 각	서 승 만	1992. 12. 9	"
강 진 공 업	이 강 훈	이 명 주	1993. 2. 27	"
서 울 차 체	이 쌍 봉	최 성 진	1993. 2. 4	
두 원 정 공	정 춘 식	정 의 희	1993. 2. 2	전 위원장 불신임
퍼 스피 와 꼬 전 자	최 금 순	임 호 남	1993. 1.	
제 원 전 자	최 향 란	박 동 규	1992. 10.	
대 우 전 자 부 품	유 병 상	양 규 현	1993. 2. 4	임 기 만 료
한 진 전 자	박 순 웅	원 용 출	1993. 4. 12	임 시 총 회, 사 임
삼 정 기 계	이 길 래	이 종 세		
한 도 정 밀	이 원 근	한 국 권		
대 양 물 산	김 창 석	신 동 호	1993. 2. 19	임 기 만 료
한 국 체 인	한 정 원	윤 봉 철	1993. 5. 14	직무대행(위원장사망)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개선일자	대회구분
	신	구		
신라엔지니어링	윤웅기	임갑병	1993. 5. 1	임기만료
대성전선	김완용	박광원	1993. 2. 18	"
삼천리열처리	이호성	백영민	1993. 6. 5	"
철도컨테이너	장강환	임승재	1993. 6. 21	"
경동산업	고봉석	윤한호	1993. 6. 30	승진으로인한자격상실
경용기계	유한국	함선남	1993. 3. 4	임기만료
대일	윤형택	홍성찬	1993. 6. 24	위원장회사사직
삼양중기	신규복	박시열	1993. 7. 20	임기만료
만도기계	김창환	김수진	1993. 7. 23	"
계양전기	김병주	이명복	1993. 7. 24	"
성진기공	정옥철	조은형	"	"
삼화콘덴서	조광용	김익년	1993. 7. 21	"
동양기공	김인종	주영준	1993. 7. 31	"
한국번디	왕태식	홍강표	1993. 7. 10	"
쌍용자동차	배범식	김명화	1993. 7. 27	"
삼아정공	선형규	한남환	1993. 7. 2	"
필립스	강운구	이정현	1993. 8. 21	"
삼우특수금속	민경민	이종출	1993. 8. 19	"
성안기계	최관섭	조용남	1992. 11.	"
동아정기	조동진	박정화	1993. 8. 28	"
두산기계	황준태	박진수	1993. 8. 21	"
화천프레스	김기섭	김인혁	1993. 9. 11	"
기아자동차	이재남	김관태	1993. 9. 11	"
우진전자	전경준	김문수	1993. 9. 9	"
반도기계	오광수	김영배	1993. 9. 21	임기만료
유성기업	이재운	김동암		
서진대금	박완수	김영원	1993. 9. 24	"
동성진흥공업	이상섭	오경생	1993. 9. 22	"
배명금속	김원덕	안상복	1999. 9. 24	"
철도컨테이너정비	임승재	장정환	1993. 10. 28	불신임
서울라디오타	박양기	백승철	1994. 12.	임기만료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임 원 (대 표 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태 광 예 로 이 카	윤 선 옥	오 희 창	1994. 1. 30	"
기 경 실 업	이 문 경	김 종 길	1994. 3. 1	"
동 양 특 수 기 공	양 신 원	김 윤 태	1993. 12. 20	"
고 신 열 관 리	경 명 권	김 명 수	1993. 12. 31	"
퍼 스피 콘 트 롤 즈	장 현 국	신 영 호	1994. 2. 6	임 기 만 료
동 서 기 공	최 광 식	장 전 호	1994.	"
대 덕 전 자	송 성 수	박 광 원	1994. 12. 28	임 기 만 료
해 성 공 업	김 광 수	조 준 행	1994. 1. 15	"
경 동 산 업	배 종 남	김 성 열	1993. 10. 1	정 기 총 회
금 성 기 전	이 중 교	김 광 준	1994. 3. 31	"
대 동 케 이 블	양 승 종	공 정 세	1993. 7. 11	"
대 한 제 쇠	한 해 근	김 희 봉	1994. 2. 28	"
덕 창 기 업	진 양 규	박 성 우	1994. 1. 1	"
동 광 화 성	황 승 오	한 기 영	1993. 12. 20	"
동 흥 전 기	이 완 순	김 영 한	1994. 1. 17	"
롯데 기 공	박 광 섭	김 상 보	1994. 3. 30	임 시 총 회
세 기 자 동 차	김 익 원	신 홍 균	1993. 8. 27	"
세 원 개 발	강 순 식	최 영 주	1994. 1. 5	정 기 총 회
영 창 악 기	장 태 훈	김 석 기	1993. 8. 16	"
창 성	이 승 태	이 계 봉		"
한 국 분 말 야 금	김 복 남	양 태 공	1993. 9.	"
한 국 종 합 기 계	박 광 실	김 덕 수	1994. 1. 27	"
한 성 실 업	박 근 수	김 찬 영	1993. 8. 19	"
한 양 공 영	정 윤 섭	이 정 복	1993. 8. 26	"
한 일 스 텐 레 스	경 지 수	이 치 남		"
해 태 전 자	김 과 한	노 진 호	1993. 9. 1	"
희 성 금 속	허 규 선	황 경 발		"
국 제 종 합 기 계	이 병 철	곽 운 섭	1993. 8. 18	총 회
금 성 통 신	조 동 철	박 찬 익	1993. 12. 23	임기만료 정기총회
삼 화 전 기	박 효 순	이 철 주	"	"
하 나 계 기	곽 한 규	김 효 원	1994. 1. 20	사 임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임 원 (대 표 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한 국 알 미 늬	김 영 호	이 준 영	1993. 8. 23	임 기 만 료
한 주 전 자	박 근 자	김 명 화	1993. 5.	사 임
아 주 금 속	김 상 권	강 기 수	1993. 7. 10	정 기 총 회
한 국 G M B	이 유 출	고 동 권	1993. 7. 20	임 시 총 회
삼 선 공 업	남 상 규	조 동 석	1993. 7. 22	정 기 총 회
금 성 산 전	송 용 환	전 병 만	1993. 7. 23	"
미 진 금 속	김 철 식	정 재 훈	"	임 시 총 회
동 명 중 공 업	송 균 호	임 흥 섭	"	정 기 총 회
영 흥 철 강	전 덕 봉	노 영 래	1993. 8. 23	"
삼 천 리 자 전 거	김 영 택	문 주 빈	1993. 8. 25	"
태 양 코 팅	김 정 국	이 순 호	1993. 9. 1	"
효 성 중 공 업	박 충 배	이 재 만	1993. 10. 23	"
금 성 알 프 스	김 종 국	김 홍 균	1993. 12. 15	"
범 한 금 속	이 치 권	김 대 근	1994. 1. 15	"
동 양 물 산	유 춘 식	문 종 용	1994. 1. 17	"
코 렉 스 스 포 츠	김 재 홍	박 상 수	1994. 1. 19	"
세 일 공 업	백 기 형	정 필 규	1994. 3. 18	"
경 창 와 이 퍼 시 스템	김 춘 길	박 무 수	1993. 11. 30	정 기 대 회
경 신 공 업	심 경 수	최 영 대	1993. 9. 30	"
경 북 대 우 자 동 차	이 예 식	송 삼 목	1993. 8. 16	임 시 대 회
남 종 농 기 사	박 태 용	이 장 옥	1993. 11. 2	"
동 협 제 작 소	차 광 열	송 하 진	1994. 3. 20	"
대 원 기 계	박 인 환	최 진 환	1994. 1. 1	"
동 해 전 장	이 신 렬	정 한 근	1994. 2. 26	정 기 대 회
대 건 기 계	우 정 훈	박 점 기	1994. 3. 25	임 시 대 회
대 성 정 기	이 종 규	장 병 국	1994. 3. 15	정 기 대 회
대 동 금 속	김 형 호	강 동 근	1994. 3. 1	"
대 한 소 결 금 속	김 철 봉	김 석 철	1993. 9. 18	"
삼 립 산 업	권 종 렬	이 봉 구	1993. 10. 1	임 시 대 회
세 명 기 업	박 윤 준	김 명 수	1994. 2. 10	정 기 대 회
삼 익 공 업	하 태 광	이 재 원	1993. 10. 5	임 시 대 회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임 원 (대 표 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상 신 브 레 이 크	김 형 계	김 외 진	1993. 8. 1	정 기 대 회
영 남 주 물	박 민 식	윤 형 준	1994. 3. 2	임 시 대 회
아 세 아 산 업	서 무 환	박 원 찬	1993. 7. 17	정 기 대 회
아 진 산 업	신 봉 식	정 재 화	1993. 7. 20	"
진 영 종 합 기 계	한 명 진	김 진 기	1993. 11. 27	임 시 대 회
전 우 개 발 용 역	정 영 규	허 영 광	1994. 1. 5	"
평 화 산 업	신 윤 섭	이 재 철	1993. 7. 15	"
평 화 정 공	김 순 창	정 문 수	1993. 7. 18	정 기 대 회
화 신 제 작 소 본 조	윤 승 오	김 명 수	"	"
한 국 브 레 트	김 성 진	곽 경 우	1993. 12. 19	임 시 대 회
대 한 중 석	김 득 수	김 범 섭	1993. 7. 10	"
강 남	문 정 도	김 중 호	1993. 5. 29	임 시 총 회
국 제 벨 브	정 영 제	이 상 오	1993. 9. 11	"
극 동 금 속	김 대 성	박 기 성	1993. 8. 1	정 기 총 회
대 선 조 선	황 대 선	조 성 봉	1993. 12. 1	임 시 총 회
대 일 공 업	전 형 태	이 재 화	1994. 2. 12	"
대 창 단 조	박 병 용	송 낙 근	1993. 4. 7	"
대 창 주 강	이 규 대	고 병 호	1993. 8. 31	정 기 총 회
동 승 기 업	백 진 현	배 공 회	1993. 8. 21	"
동 아 전 기	윤 춘 동	박 금 영	1993. 3. 1	"
동 영 공 업	박 재 호	김 종 기	1993. 10. 18	"
부 산 주 공	서 영 택	이 재 섭	1994. 2. 26	임 시 총 회
삼 공 사	류 국 부	문 판 술	1994. 1. 12	정 기 총 회
상 농 기 업	안 천 호	하 창 회	1993. 7. 21	임 시 총 회
성 광 벤 드	배 명 렬	조 용 석	1993. 11. 13	"
세 진	김 근 수	이 태 학	1993. 12. 30	"
연 합 철 강	강 진 호	구 성 완	1993. 12. 30	정 기 총 회
태 광 벤 드	양 재 권	김 상 복	1994. 1. 1	"
태 양 사	김 근 박	이 형 연	1993. 9. 17	임 시 총 회
한 보 철 강	김 종 감	양 정 식	1993. 4. 27	"
한 진 금 속	이 수 광	강 양 수	1993. 3. 6	"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임 원 (대 표 자) 개 선 일 자	대 회 구 분
	신	구		
한 국 선 재	최 성 진	최 상 용	1994. 3. 29	"
덕 양 산 업	김 우 배	신 성 건	1993. 8. 14	임기만료 정기총회
대 한 알 루 미 늄	한 경 남	김 성 관	1993. 8. 3	"
부 산 기 업	강 성 구	강 정 실	1994. 1. 1	사 임 , 임 시 총 회
우 영 산 업	연 기 섭	이 재 환	1993. 9. 1	임기만료 정기총회
현 대 강 관	남 상 철	정 철	1993. 10. 28	사 임 , 임 시 총 회
현 대 알 루 미 늄	이 두 락	이 용 우	1990. 8. 3	임기만료, 정기총회
한 일 이 화	이 경 해	박 상 근	1993. 8. 11	"
삼 정 강 업	김 영 곤	신 엄 현	1994. 1. 19	총 선
서 한 정 기	강 진 유	김 진 수	1993. 2. 16	"
현 대 종 합 금 속	김 도 환	조 명 봉	1993. 12. 24	"
홍 화 공 업	강 진 포	김 찬 규	1993. 7. 29	"
한 금	이 상 용	김 홍 진	1993. 7. 20	"
거 양 로 공 업	송 만 현	정 용 길	1994. 3. 31	"
국 제 특 수 금 속	이 병 현	이 홍 배		사 임
한 국 쌍 신 전 기	유 재 순	윤 영 절		총 선

6. 해산 노동조합 현황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결 성 일 자	해 산 일 자	조 합 원 수	해 산 사 유
남 성 전 자 부 품	이 영 숙				남성전기로 이전
시 그 너 스	유 병 렬				회사부도로 폐업
삼 흥 사	정 중 현				조합설립후해산
태 립 전 자	임 국 성				조합원감소, 해산
현 대 기 계	김 회 숙				조합원감소로해산
한 국 컨 테 이 너	이 윤 석				기 능 마 비
퍼 시 픽 닉 교 정 밀	최 원 학	89. 12. 2	93. 12.	220	폐 업
한 국 필 아 공 업	장 현 국	91. 2. 1	93. 11. 30	85	퍼시픽콘트롤즈합침
대 방 박 승 준	최 월 남	90. 1. 30	93. 8. 26	34	위 원 장 사 퇴
성 진 전 기	방 형 곤	88. 9. 30	93. 11. 1	60	자 진 해 산
대 영 전 자	박 승 준	89. 4. 12	93. 4.	60	"
중 외 메 디 칼	이 상 애	91. 6. 2	93. 5.	70	"
미 경 사	이 원 부	89. 4. 5	94. 3.	20	"
에 벤 에 셀	박 환 서	92. 11. 8	93. 3.	30	"
한 진 전 자	이 현 범	92. 8. 11	93. 5.	60	연 락 불 명
제 일 제 강	박 순 웅	88. 3. 25	93. 4.	50	"
정 원 실 업	이 상 영	93. 2. 4	94. 2.	25	자 진 해 산
해 주 조 기	육 심 정	91. 4. 23	93. 12. 22	33	해 산 결 의
태 화 기 계 양 행	김 영 식	89. 3. 17	93. 8. 9	12	"
벽 산 금 속	정 대 선	93. 3. 8	93. 3. 22	50	"
한 국 휘 녀 스	최 만 록	88. 4. 25	94. 3. 15	60	"
선 학 알 미 늄	손 인 수	89. 5. 23	92. 8.	52	자 진 해 산
(주) 아 신 권 영 만	이 영 희	69. 2. 5	93. 6.	80	해 산
대 한 주 물 공 업	권 영 만	85. 12. 19	93. 8. 15	80	자 진 해 산
금 정 산 업	최 종 하	89. 5. 31	93. 5.	150	해 산
신 일 금 속	최 기 원	93. 5. 3	93. 8.	40	"
한 국 기 계	이 정 영	75. 12. 12	94. 1. 31	320	"
성 요 사	이 한 용	89. 8. 2	94. 1. 31	150	"
대 보 산 업	이 범 수	87. 9. 12	94. 1. 31	190	"
	이 상 울	89. 3. 12	93. 5. 15	40	회 사 폐 업

노 동 조 합 명	대 표 자	결 성 일 자	해 산 일 자	조 합 원 수	해 산 사 유
동 신 금 속	유 성 근	88. 6. 4	93. 4. 20	26	"
우 일 중 기	김 봉 길	89. 2. 13	93. 11. 30	50	해 산
한 일 정 기	박 의 철	89. 2. 10	93. 1. 10	40	"
유 진 기 업	김 동 주	88. 7. 6		26	조 합 원 없 음
한국 산업 서비스	권 진 회	91. 3. 8	93. 9. 1	130	합 병
한 국 경 금 속	노 상 인	91. 3. 8		80	조 합 원 없 음

7. 지역별 조합원 월별현황

월별 성별 지역		93. 4	5	6	7	8	9
서울	남	29,536	29,476	50,653	50,505	50,605	50,605
	여	19,085	19,085	17,384	17,332	17,382	17,382
	계	48,621	48,561	68,037	67,837	67,987	67,987
경기	남	44,389	43,289	45,390	45,305	44,987	44,916
	여	10,860	10,760	12,464	12,069	12,059	12,009
	계	55,249	54,049	57,854	57,374	57,046	56,925
인천	남	31,385	31,385	34,332	3,414	34,287	34,287
	여	6,065	6,064	9,413	9,179	9,393	9,393
	계	37,450	37,450	43,745	12,593	43,680	43,680
충북	남	3,268	3,183	2,978	2,938	2,938	2,948
	여	2,946	2,931	2,676	2,682	2,702	2,702
	계	6,214	6,114	5,654	5,620	5,640	5,650
충남	남	2,725	3,825	2,555	2,527	2,527	2,527
	여	1,092	1,192	892	910	910	910
	계	3,817	5,017	3,447	3,437	3,437	3,437
대구·경북	남	14,658	14,658	13,091	12,876	12,876	12,876
	여	6,937	6,937	6,047	6,012	6,012	6,012
	계	21,595	21,595	19,138	18,888	18,888	18,888
경남	남	24,303	24,373	21,351	20,843	22,167	22,072
	여	5,793	5,793	5,681	5,573	5,593	5,649
	계	30,096	30,166	27,032	26,416	27,760	27,721
울산	남	7,252	7,252	7,403	7,381	7,369	7,369
	여	987	982	1,078	1,074	1,065	1,065
	계	8,239	8,234	8,481	8,455	8,434	8,434
부산	남	15,229	15,261	13,134	12,593	12,593	12,593
	여	2,142	2,142	2,825	2,761	2,761	2,761
	계	17,371	17,403	15,959	15,354	15,354	15,354
전남	남	3,818	3,818	2,373	2,373	2,318	2,318
	여	183	183	175	175	175	175
	계	4,001	4,001	2,548	2,548	2,493	2,493
전북	남	1,519	1,519	16429	1,429	1,429	1,429
	여	117	117	103	103	103	103
	계	1,636	1,636	1,532	1,532	1,532	1,532
강원	남	319	319	304	304	304	304
	여	280	280	220	220	220	220
	계	599	599	524	524	524	524
포항	남	9,085	9,085	7,055	7,005	7,005	7,005
	여	136	136	88	88	88	88
	계	9,221	9,221	7,143	7,093	7,093	7,093
계	남	187,486	187,443	202,048	169,493	201,405	201,249
	여	56,623	56,603	59,046	58,178	58,463	58,469
	계	244,109	244,046	261,094	227,671	259,868	259,718

10	11	12	94. 1	2	3
50,605	50,526	43,073	42,749	42,755	37,984
17,382	17,374	21,318	20,939	20,939	20,983
67,987	67,900	64,391	63,688	63,694	58,967
44,916	44,678	45,520	45,398	45,083	48,491
12,009	11,982	11,680	11,581	11,581	11,682
56,925	56,660	57,200	56,979	56,664	60,173
34,287	30,646	33,935	33,900	31,587	31,582
9,393	5,848	6,186	6,198	5,959	5,864
43,680	36,494	40,121	40,098	37,546	37,446
2,948	2,916	2,844	2,852	2,940	2,940
2,702	2,692	2,687	2,717	2,817	2,817
5,650	5,608	5,531	5,569	5,757	5,757
2,527	2,542	2,349	2,424	2,424	2,424
910	1,009	1,115	1,115	1,115	1,115
3,437	3,551	3,464	3,539	3,539	3,539
12,876	12,685	13,138	25,993	13,862	13,362
6,012	5,781	6,686	6,679	6,679	6,679
18,888	18,466	19,824	32,672	20,541	20,041
22,072	17,852	17,285	17,270	17,120	17,121
5,649	5,160	5,483	5,573	5,548	5,596
27,721	23,012	22,768	22,843	22,668	22,717
7,369	7,569	35,282	35,163	36,726	36,726
1,065	1,065	2,193	2,182	2,371	2,371
8,434	8,634	37,475	37,345	39,097	39,097
12,593	12,867	12,357	12,951	12,951	12,950
2,761	2,764	2,659	1,642	1,642	1,594
15,354	16,531	15,016	14,593	14,593	14,544
2,318	1,933	1,988	1,988	2,143	2,108
175	155	155	172	187	187
2,493	2,088	2,143	2,160	2,330	2,295
1,429	1,411	1,391	1,391	1,427	1,427
103	96	108	108	122	122
1,532	1,507	1,499	1,499	1,549	1,549
304	278	303	303	303	303
220	298	366	366	366	366
524	579	669	669	669	669
7,005	6,748	6,458	6,383	5,890	6,390
88	84	87	87	87	87
7,093	6,832	6,545	6,470	5,977	6,477
201,249	192,651	215,923	228,765	215,211	213,808
58,469	54,308	60,723	59,359	59,413	59,463
259,718	246,959	276,646	288,124	274,624	273,271

8.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구분 \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조직체수		529	1,324	1,295	895	817	700	641
조합원수	남	22,828	269,091	293,035	234,523	197,120	177,038	213,808
	여	67,583	87,809	96,025	78,027	64,958	55,436	59,463
	계	295,864	356,900	389,060	312,550	262,078	232,474	273,271
조합원증감		+156,874	+61,036	+32,169	-76,510	-50,472	-29,604	+40,797
조직체증감		+254	+795	-29	-400	-78	-117	-59

9. 기타활동

○ 경제개혁촉구 범국민대회 참석

- 일시 : 1993. 5. 22 14 : 30
- 장소 : 여의도 시민공원
- 참석인원 : 3,000명(금속)

○ 조직담당자 회의 참석

- 일시 : 1993. 6. 8 14 : 00
- 장소 : 노총 회의실
- 참석자 : 조직국장
- 내용 : 병노련 판결에 관한 사항 설명
주변정세 토의

○ 조직강화 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 : 1993. 6. 18 14 : 30
- 장소 : 노총 회의실
- 참석자 : 조직국장
- 내용 : 최근 조직 동향
조직강화 방안 및 대책협의

○ 조직담당자 회의참석

- 일시 : 1993. 7. 9 14 : 30
- 장소 : 노총 회의실
- 참석자 : 조직국장
- 내용 : 노총 및 산별 조직강화에 관한 건

○ 경제계 자정을 위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역할토론회 참석

- 일시 : 1993. 7. 23 14 : 00
- 장소 : 한국노총8층 대강당
- 내용 : 기업비리의 실태와 그 척결을 위한 노조의 역할
- 참석 : 경인지역 노조간부 25명

○ 조직강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 일시 : 1993. 9. 21-9. 23
- 장소 : 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자 : 조직국장
- 주요내용 : 조직운영의 민주화
조직체계 개편
교육 · 홍보 · 재정자립방안 강구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의식개혁

○ 조직담당자 회의참석

- 일시 : 1993. 12. 17~18
- 장소 : 용평리조트
- 참석자 : 조직국장
- 주요내용 : 조직강화 및 확대방안에 관한 건

○ 조직담당자 회의참석

- 일시 : 1993. 3. 14 14 : 00
- 장소 : 노총회의실
- 참석자 : 조직국장
- 주요내용 : 5.1 노동절행사에 관한 사항

○ 권리제한 및 비참여 노조에 대한 조직활성화 방안

- 일시 : 1993. 7. 23 14 : 00
- 장소 : 충남지역 본부회의실
- 참석자 : 지역본부 사무국장

○ 기타활동

-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행사 참석
- 지역본부 각종행사 참석
- 지역본부 대표자 간담회 참석
- 임투 및 쟁의사업장 방문 격려
- 단위노조 지역본부 교육지원

동부제강 노조간부 단식전

- 93년 8월 12일 개최된 7월 경영평가회에서 사장이 “인건비 반납을 지시(뒷면자료 : 사장 지시 사항)
- 그후 부산공장에서는 회사상무가 경영설명회를 통해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맞교대 해오던 작업량을 줄이고 위 기감 조성
그리고 직·반장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93년도 임금협약중 성과금 90%를 94년 1월부터 기본금(4.5%)으로 전환키로 한것을 반납한다는 서명을 받기 시작함
(93년 9월 22일까지 5명을 제외한 전사원 서명작업 완료)
- 93년 9월 23일에는 인천공장에서 직반장을 길병원 연수원으로 모아 유사한 방법으로 임금반납유도를 시도했고 11월 3일에는 포항공장에서 경주에 있는 모 호텔로 모아 똑 같은 시도를 행함
- 이에 노조에서는 회사 사장지시에 의해 임금반납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식확인하고 반납반대 서명작업에 들어감
- 회사측은 회사사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임금반납을 시도하였음에도 임금반납은 자 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설령 조합원들이 반납해 오더라도 반납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구두로 답변.
노조측은 공문으로 이를 확인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93년 10월 28일 포항공장에서 대의원으로 출마한 이종선에게 과장이 자기 허락도 없이 대의원에 출마하였다 하여 사내에서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히는 구타사건 이 발생
- 93년 11월 5일 안영환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 3명(부산, 포항, 인천)이 단식농성 돌입
- 93년 11월 10일, 회사측은 노조간부에게 임금협약 준수를 확인해 줬음에도 노조가 단식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공고문 게시, 그리고 외부(유관기관)에는 이 공고문 내용을 인용 하여 이미 임금반납이 없을 것임을 노조가 확인했음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지부장들이 단 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펼
- 조합원들이 11월 11일 중·석식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노조에서는 다음날부터 식사하도록 함
- 93년 11월 11일 부산지부장이 탈진하여 병원에 입원
- 93년 11월 12일, 인천, 포항지부 노조간부들이 서울로 와서 회사측에 항의, 인천간부들 삭발
- 노총과 본노련,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에서 중재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은 “임금을 반납해 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문서로 노조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

나 끝내 거절하고 안영환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

- 93년 11월 12일, 노조측이 기존의 요구안중 반납사실 확인 및 공개사과 부분을 빼고 “임금협약준수, 부당노동행위 근절, 민형사상 책임면책,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요구안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 대신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임금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

※ 민형사상 책임면책은 단식농성중 징계위에 회부된 부분

<본노련 대책>

1.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회의소집 대책강구
2. 임원, 지역본부의장, 노사대책국장 등 회사측 항의 방문
3. 단식투쟁 16일째인 11월 20일 1400, 동부제강 본사 사장실에서 박인상위원장과 회사 사장이 1시간 30분여에 걸쳐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단식농성을 연맹에서 풀도록 하겠다, 회사측도 징계문제를 동시에 철회하라)
4. 단식중인 위원장, 지부장, 노조간부와 박인상위원장과 협의
○ 노조에서 단식농성을 풀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이 합당하다면 연맹과 협의하에 농성을 풀겠다.
5. 박인상 위원장과 회사측이 다시 만나 징계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고 단식농성 철회
- 회사측에 통보
※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본노련과 노조가 협의하면서 대처키로 함
6. 단식농성을 끝낸 안영환 위원장 탈진상태로 덕산병원에 입원후 퇴원

포항제철 부당노동행위 현황

1. 회사현황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 설립년월일 : 1968. 4. 1
- 종업원수 : 21,000여명
- 업종 : 제철 및 제강(열연코일, 후판, 냉연강판, 선재등)
- 회장 : 김만제(사장 : 김종진)

2. 개요

- 포항제철은 대일청구권으로 1968년도에 설립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일관제철로써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해왔으며 21,000여명 노동자로 조강생산능력은 약 2,

100만톤으로써 연간 순이익이 93년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철강회사이다.

3. 노동조합 결성과 기능마비 과정

- 88년 6월 28일 박태준 전 포철회장이 노조인정담화문 발표이후 이명승외 26명이 사내에서 노조 결성(88.6.29)
 - ※ 당시 노동조합위원장 : 이명승
- 본노련에서 동년 6월 29일 가맹인준증을 발급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 교부
- 88년 8월 17일 임원개선 - 최창립위원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집행부 출범
- 90년 7월 27일 직선제에 의해 박군기 집행부 출범
 - ※ 재야노동계와 연계되어 민주노조로 출범하면서 급진적 노동운동으로 전환
- 90년 10월 13일 - 91년 1월 31일까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서 활동
- 90년 12월 20일 포항제철 작업환경조사에서 화성부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발견된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회사측이 은폐하려 했다하여 노조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리본패용, 사복 입고 출근하기 투쟁을 전개 - 투쟁과정에서 2,000여명 조합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경고조치등의 불이익이 초래됨
- 91년 1월 18일, 사복출근 투쟁으로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도 불신이 가중되어가는 과정에서 직원생일 선물을 선정하던 산업안전 범제차장 서상섭이가 뇌물사건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합탈퇴가 시작됨
- 91년 1월 22일, 노조의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집행부 간부 22명이 스스로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박군기 위원장이 삭발투쟁에 이룸
 -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포항제철노사협력위원회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조직외해 작업에 돌입
- 91년 2월 8일, 대의원 53명 이름으로 박군기 집행부 비난설명 발표
- 91년 2월 23일, 대의원 45명이 박군기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섬, 이날부로 박군기 위원장이 사퇴하고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대현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노동조합 정상화를 모색하였으나 계속된 조합원 탈퇴로 91년 2월 27일 직무대행 체제 사직
- 92년 6월 24일,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조합원 49명중 15명만이 참석하므로써 대회가 무산되었고, 7월 6일 김연모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였으나 노조의 정상활동이 어려워짐
- 92년 8월 1일, 집행부에 남아 있던 8명의 간부가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부터 노조가 기능마비 상태로 들어감
 - ※ 조합기금 3억8천7백만원은 노사가 공동관리
 - 노조측 : 이상준 회사측 : 관리부장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여 4억3천만원에 이름)

- 92년 11월 17일, 부서단위 직장간담회 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현재 직장노사협의회 상태로 남아 있음

{ 포항제철소 위원 : 9명
광양제철소 위원 : 7명
포항제철소 부단위 : 195명

※ 노동자 대표는 50개 단위공장에서 선출

- 91년 1월 27일,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탈퇴를 선언하고 와해되어가는 조직을 희생시키려 하였으나 불가능해짐

- 91년 2월 1일, 주임·반장급 500여명이 동시에 집단 탈퇴

※ 탈퇴이유(아래내용은 조합원들이 탈퇴서에 기재한 내용중에 몇가지 선정하여 그대로 옮긴 것임)

-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회사의 탄압으로 희생되어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91. 2. 13 김 ○ ○)
- 관리자들의 잦은 탈퇴 권유가 귀찮아서(91. 2. 18 하 ○ ○)
- 사복 출퇴근으로 주택자금을 받을 수 없음(91. 2. 9 신 ○ ○)
- 현 시점에서 조합원 권익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주택융자금 상환등 개인사정(91. 2. 13 임 ○ ○)
- 특례관계로(91. 2. 12 이 ○ ○)
- 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추구하지 못함은 물론,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사측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의 해결은 차치하고 책임만 회피함(91. 2. 9 이 ○ ○)
- 현장 각부서 관리 감독자들의 음으로 양으로의 탈퇴압력과 회사를 구성하는 직원이기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함부로 구사하는 그런 조직체계에서 더이상 견디지 못할뿐 아니라 조합을 탈퇴시키는 능력이 곧 업무능력이라는 기회주의적 속성에 기인한 현장관리자들의 행위등 포항제철이라는 회사의 조직에 회의를 느끼며 이에 탈퇴서를 제출(91. 7. 1 진 ○ ○)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위의 압력을 못이겨서((91. 2. 19 박 ○ ○)
- 환경측정 조사건에 대한 사복출근 문제로 조합과 회사와의 대립, 조합원 경고건에 대한 해결등 조합에 대한 불만(91. 2. 2 이 ○ ○)
- 현장 관리자들의(주임, 선임반장) 여러차례 면담을 통한 탈퇴권유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압력, 예를들면 현장 작업지시등의 무뚝뚝함등(91. 4. 25 이 ○ ○)
- 짐승같이 살기 위하여(91. 2. 25 김 ○ ○)
- 회사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91. 2. 11. 장 ○ ○)

4.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율 변동사항

년 월 일	가입대상인원	조합원수	가입율
88. 6. 29	17,781명	27명	결성당시 0.2%
91. 1.	21,263명	19,028명	89.4%
91. 2.	21,313명	3,476명	16.3%
91. 12.	22,646명	102명	0.4%
92. 8.	22,349명	35명	0.1%
92. 9.	21,658명	14명	0.06%

※ 91년 2월중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16,000여명의 집단탈퇴가 이루어짐

5. 노조활동 현황

- 현재 전체노조임원이 사퇴한 기능마비 상태에서 과거 1,2대에서 노조대의원과 간부를 역임했던 조합원 14명만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는 노조재건보다는 해산했을 경우 신규조직을 막아 보자는데서 나온 발상으로 판단되며 92년 8월 1일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1조 4호에 의거 94년 7월말 이후 해산사유가 발생되므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조치후 신규조직

6. 조합원의 집단탈퇴 배경

- 회사측의 조직적인 탈퇴압력과 조합원,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예: 상기 탈퇴원서에 기재된 바대로 회사관리자들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탈퇴압력과 조합원인 경우 주택자금 용자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임)
- 조합집행부의 부도덕성과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 미흡
- 비제도권 노조와의 계속적인 연대투쟁, 대기업연대 회의에 가입하느로서 보수적 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반발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해 리본폐용, 사복출퇴근 시키기등 대안없는 투쟁을 하다 2,000여명 조합원이 경고등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 미비로 무능한 집행부로 낙인 찍힘

7. 포철노조 정상화(재건)를 위한 대책

- 1) 제1단계(대화를 통한 해결모색 단계)

- 대정부 건의
- 회사측과의 대화 추진
 - 1차 : 노총 및 금속노련
 - 2차 : 노총, 금속노련, 노총포항지부, 금속포항지역본부 협력사 노조
- ※ 정부관계자 참석
- 회사측 반응에 의해 제1단계는 무시될 수도 있음
- 2) 제2단계(기존노조 해산추진 및 신규결성 단계)
 - 94.7.31 이후 노동조합법 제31조 4호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조치
 - 조직구성원 사전분석 및 교육철저(보안유지)
 - 결성시기, 장소, 주변여건 등 분석
 - 신규결성 전후로 한국노총 산하 전조합원들이 포철의 신규결성시 파생될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대응키위해 서명운동 전개
 - 신규결성후 국회, 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포철노조 결성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전예방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강구
 - 포철의 부당노동행위(신규결성방해 등)는 곧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회에 여론화 시키는 각종 유인물 배포 및 홍보
 - 전국의 노동조합신문에 포철상황 보도 및 연대서명운동 참여에 대한 홍보
- 3) 제3단계(공동투쟁단계)
 - 포철상황에 대해 언론 보도
 - 포철상황 대자보 작성, 전조직 배부
 - 한국노총 산하 전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 노총대표단 청와대 방문 - 대통령 면담하여 포철문제 건의
 - 국회, 노동부, 노총(금속노련)의 3자 공동조사단 구성
 - 사회단체와의 연대 개설
 - 대중집회 조직
 - IMF, ILO, ICFTU 등 국제노동단체와의 연대개설로 국제압력 가속화

동양정밀노동조합 구사운동 전개

1. 연혁 및 경과

- 성남시 상대원동에 소재한 동양정밀공업은 1953. 10. 1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설립된 이래 전화기, 전화기부품, 자동열차정지 장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73년도 기업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장비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성장해 옴

1977년에는 전자식 사설교환기 E-PABX를 개발하여 1980년도에는 상공부로부터 농어촌전자식 사설교환기 생산업체로 지정받았고, 1983년도에는 스웨덴 LME사와 동양정밀공업(주)이 50 : 50으로 투자하여 전전자교환기 제조업체인 동양전자통신(주)을 설립하였음

- 1983년에는 일본의 TEAC와 기술제휴로 국내최초로 FDD를 개발, 출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5천만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한바 있음

최근 주력사업으로서 역무자동화시스템, 교통신호제어기 전전자교환기 부품, V/P, CCTV, HDD 건강상품 및 군통신 장비등을 생산, 납품하여 1986년부터 매년 1천억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등 국내전자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기업임

- 그러나 1983년 주력사업이던 전자교환기 사업은 동양전자통신(주)을 설립·이양함으로써 동양전자통신(주)는 급성장하였으나 동양정밀공업(주)는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HDD및 KEY PHONE 사업이 1989년부터 급격한 수출감소로 인하여 무리한 시설투자 및 재고로 자금회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운전자금이 막히고 급기야는 약 1,500억원의 부채로 인하여 1989년부터 20%를 상회하는 금융부담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어렵게 되어감

- 이에 박용선 회장은 기업을 포기하고 1991. 4. 6 한화그룹의 고려시스템산업(주)의 이동훈회장에서 모든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나 이동훈회장 역시 회사를 갱생시키지 못하고 1991. 9. 2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 신청을 제출하고 기업을 떠나므로써 다시한번 난관에 봉착

- 그러나 당시 1,800여명의 종업원과 성남지역 각기관장, 300여개의 협력업체에서는 동양정밀공업(주)이 만약 파산된다면, 성남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약 40여년동안 투자하여 쌓아놓은 생산설비 및 기술인력 그리고 5만여명의 가족의 생계등을 고려하여 구사운동을 전개, 1991. 9. 11 재산보전처분 명령과 1992. 3. 31 회사정리 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현재의 관리인(김동포)가 선임되어 1992. 5. 29 제1차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정리담보권 및 채권을 신고받아 확정시키고, 1993. 9. 11에는 마침내 한화그룹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및 담보권자로부터 회사의 정리계획을 인계받게 되므로써 회사갱생의 기반을 구축하게 됨

- 한화그룹은 이와같이 회사의 주인이 없는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당시 한화그룹에서 임명한 대표이사 양희재와 공모하여 동양정밀공업(주)에 임명한 동양전자통신(주)의 이영만사장 및 관리상무등 주요임원및 사원들을 몰아내고 한화그룹에서 임명한 요원으로 주요보직을 일제히 교체하고 동양정밀공업(주)와의 관계를 차단하는등 동양정밀공업(주)이 고려시스템산업(주)에 담보로 제공한 동양정밀공업(주) 소유의 동양전자통신(주) 주식 50만주를 회사정리법을 위반하면서 탈취하였고,

- 1992. 2. 28,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우리가 매수한 LME사 보유주식 50만주마저 한화그

룹이 탈취하여 동양전자통신(주)의 경영권을 100% 행사하자 한화그룹을 상대로 동양전자통신(주)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2.5월부터 현재까지 부인청구소송, 주총무효소송, 업무정지 가처분신청등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화그룹의 학연, 인맥 및 금전등에 의한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일부 사법기관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실정임

- 그러나 동양정밀공업(주)의 임직원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내적으로는 노사가 화합하여 지난 과거의 불신을 일소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등 경비절감과 영업활성화를 통한 물량확보에 주력하여 1992년도 약 600억, 1993년도 약 500억원의 물량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설비 기술인력 및 생산인력등을 완전히 갖추고 회사경생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경영주가 없는 현실에서 자금유입이 어렵게 되자 1992년 2차례, 1993년 1차례에 걸쳐 청와대및 정부 각기관에 자금지원을 호소하였으나 끝내 지원되지 않아 대부분의 물량을 포기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현실임
- 그러나 동양정밀공업(주)의 전사원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94년도에 약 410억원의 물량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비및 계약보증금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상여금을 유보시키는가 하면 임금지급 유보, 냉온방 공급을 중단, 600원짜리 중식을 먹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4.1.10에는 회사경생을 위하여 OPC회사 살리기 노사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 전지역 근로자 및 시민으로부터 격려와 13,000여명의 동참서명을 받는등 노사가 단결하여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2. OPC가 정상화 되어야 할 이유

- 지난 53년에 설립하여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기관 중추산업인 통신기기 전문 방위 산업체로서 과거 성남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룬 성남의 대표적 상장기업으로 생산설비 및 기술인력과 300여 중소 협력업체 600여 전종업원과 가족,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때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함

3. 동양정밀의 요구사항

- 회사경생을 위해 410억원의 물량확보, 이 물량을 계약하고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보증금 및 자재구입비 190억 지원 요망
- 위의 자금지원이 어려울 경우 국내 타대기업에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화그룹과의 소송관계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요망

4. 동양정밀 전사원의 실천결의 사항

- 노사가 합심하여 회사경생을 위해 1,800여명의 종업원중 1,200여명이 퇴사를 하여 현재 580여명 정도로 인력감축이 완료되었고 노사가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회사살리기 노

사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회사를 갱생시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산업역군으로서 전종업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구사결의대회 결의문

우리 OPC 전임직원 및 가족일동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갱생을 최우선 과제로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조속히 회사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41년동안 피땀으로 투자하여 쌓아온 최선의 생산설비, 생산인력 및 물량등을 포기하지 않고 노사가 단결하여 기필코 회사를 갱생한다.
1. 우리는 회사 살리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 및 임금등을 유보하여 자재구매에 자금을 투입하고 확보된 물량을 조속히 납품하여 회사갱생을 앞당긴다.
1. 우리는 생산성을 배가하고 모든 물자를 절약하여 회사갱생을 앞당긴다.
1. 우리는 동양전자통신의 경영권을 탈취한 한화그룹의 김승연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동양전자통신의 경영권을 되찾아 회사정상화를 앞당긴다.
1. 우리는 회사 살리기 노사공동대책 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우리는 회사 갱생을 위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필코 회사를 살려 성남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앞장선다.

1994. 1. 28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임직원일동

진행일지 (중요부분만 요약)

93. 11. 5 제6대 이운희 집행부 출범

12. 21 OPC회사 살리기 노사공동대책위원회 구성

94. 1. 6 김원술반장 현장에서 음독자살 사건발생

○ 유서내용 : OPC 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죽는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디 건강한 몸으로 회사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신세만 지고 갑니다

김 원 술 1. 6.

“동양정밀은 꼭 살아야 된다”

- 1. 12 고 김원술반장 영결식 거행
- 1. 17 성남지역 시민, 근로자 서명 참여인원 12,518명
- 1. 24 회사살리기 노사공동대책 위원회 공식 발족
- 1. 28 회사 살리기 결의대회 개최(전사원 및 가족관계기관, 인근노동조합 관계자 등 2,000여명 참석)
- 1. 29 SBS에서 구사운동에 대한 취재
(출발! 새아침에서 방영 예정)
- 2. 3 긴급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전노협을 탈퇴하고 금속노련으로 가맹 결의
- 2. 4 청와대에 호소문 제출
- 3. 2 청와대 면담(15:00~16:40)
회사살리기 운동,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등 협의
- 3. 17 강봉균 노동부차관 면담(09:00~10:30)
OPC 현안문제와 지원대책 논의
- 3. 21 한화그룹(현암빌딩) 1차 항의 방문
청와대 재면담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현재까지 진행상황임)

필립스 소유권 이전의 부당성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380

회사대표: 전사장: 제이 폴만 현사장: 윤철중

종업원수: 320명(조합원: 230명)

제품: 콘덴사

현황

- 필립스는 세계 70여개국에 공장을 둔 대기업으로서 한국에는 필립스전자, 필립스산업, 시그네틱스가 있다.

필립스전자는 수원시 원천동에 소재한 콘덴사 제조업체로서 1974년 6월 10일 설립되었다. 그간 계속되는 생산라인의 축소와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320명 전종업원들이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동남아시아 총책임 반게이츄라로부터 필립스전자 주식 100%를 한국인 윤철중에게 넘겼다는 동경에서의 FAX 한장

으로 야간도주 하므로서 필립스의 전종업원은 물론 한국의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극명하게 내보인 사건으로 필립스의 전조합원들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필립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불매운동도 불사할 계획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필립스노조의 활동일지

- 1) 1994. 3. 5(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호소문 등 발표 및 배포
- 2) 1994. 3. 6(일) 1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4:00~18:00)
비대위 구성표 작성, 목표설정, 투쟁방향 설정
- 3) 1994. 3. 7(월) 2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2:00)
조합원 교육 실시
- 4) 1994. 3. 8(화) 3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2:00)
1인 1벽보 붙이기(식당 및 휴게실)
- 5) 1994. 3. 9(수) 4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2:00)
식당에 필립스제품 불매운동 실시 현수막 및 2차 벽보 붙이기
- 6) 1994. 3. 10(목) 5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2:00)
호소문 발표, 서울산업 사장에게 면담요청 전화
- 7) 1994. 3. 11(금) 6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2:00)
이정현씨 해고로 인한 대책 논의, 서울산업 사장에게 전화
- 8) 1994. 3. 12(토) 7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8:00~21:00)
호소문 수원시 배포(역전, 터미널 등), FAX 동경으로 발송
- 9) 1994. 3. 13(일) 8차 비상대책위원회 실시(12:00~18:00)
차량시위 - 수원시 일대, 호소문 배포(납문 등)

(현재까지의 상황)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요구사항

1. 고용보장
2. 93년도 희망퇴직제도(퇴직금 + 기본급 × 근속년수) 만큼의 정리 요망
3. 필코제품 납품보장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필립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다국적기업 필립스는 70여개국에 문어발식 경영을 이끌어 가는 대기업으로서 한국에는 필립스전자, 필립스산업, 씨그네틱스가 있으며 그중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한 필립스 전자의 상황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필립스사가 한국의 전자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고 최초로 설립한 날이 1974년 6월 10일 당시 국내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필립스사가 80년대에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3류회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고 단행했습니다. 계속되는 생산라인의 축소와 인원감축에도 “필립스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기계의 가동속도를 더 높혀야 한다” 간부들의 말을 믿으며 이제는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하는 화공약품속으로, 사다리를 타며 타위위로 오르내리며 의자와 집념과 인내로서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도 잊은 채 열악한 작업의 여건속에서 참고 견디며 인원부족을 잔업과 특근으로 채우며 아연가루가 휘날리는 현장에서 일회용 마스크로 코를 가리며 작업을 하다보니 아연가루가 부작용으로 온몸에 반점이 생겨도 말은바 임무를 충실했으며 그 어느것 하나 필립스전자에 대한 애착과 살리겠다는 집념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93년 11월에 박헌준이라는 부사장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부임하여 실오라기라도 잡고싶던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94년 2월 28일 오전 10시

수탈에는 익숙하나 노동자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다국적기업의 본색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견되어온 철수의 위험속에서도 온몸을 바치며 생활임금에 매달렸던 우리 필립스 노동자들에게 필립스사는 물론 국내 책임자까지도 단한마디 예고도 없이 일본 동경에서 FAX 한장으로 국내인에게 인수되었음을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투정대던 아내를 도닥거리던 우리 투박한 손에 대한 보답입니까?

이것이 장장 19년동안 울며 웃으며 작업장에 살을 붙이던 우리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예의입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고 허탈감에 빠진 우리의 비통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란 집단이 형성되고부터 동서양이 있기전에 각기다른 민족문화와 전통과 생활풍습이 있기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 도덕적 양심과 기업으로서 의무와 지켜야 할 인간관계가 있어야 서로가 신뢰하고 돕고 이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FAX 한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책임을 다 한 것입니까?

분명 단체협약에도 6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것을 무시하고 야밤도주 했습니다.

이에 필립스노동조합에서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걸고 필립스에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의 길로 나아감을 알려 드립니다.

한없이 억울하고 치가 떨리고 배신감과 증오심에 가득찬 우리 마음을 필립스제품 불매운동으로 승화시켜 수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한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울 우리에게 수원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1994. 3. 11

필립스전자코리어(주) 철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내가 산 필립스제품 민족자존심 피명든다.

노총활동 참여

1. 한국노총 '94정기 전국대의원 대회 참석

○ 일시 : 1994. 2. 24 10 : 00

○ 장소 : 한국노총 8층 대강당

○ 참석대의원

순 번	소 속	성 명	순 번	소 속	성 명
249	본 노 련	박 인 상	275	금 성 전 선	도 정 복
250	금 성 사	유 재 섭	276	한 샘	권 석 정
251	화 천 기 공	정 기 춘	277	금 성 통 신	김 길 동
252	대 동 조 선	정 학 군	278	경 원 세 기	장 진 수
253	삼 미 종 합 특 수 강	제 선 수	279	금 성 사	나 찬 경
254	력 키 금 속	박 영 구	280	성 신	이 종 진
255	현 대 전 자	김 영 철	281	대 우 중 공 업	전 재 환
256	금 성 계 전	김 홍 수	282	대 우 통 신	전 병 순
257	인 천 제 철	김 동 교	283	한 영 알 미 늄	한 상 환
258	금 성 전 선	하 영 일	284	대 립 통 상	이 은 물
259	쌍용중공업대구공장	김 경 조	285	한 국 샤 프	박 재 혁
260	대 성 공 업	김 두 형	286	맥 스 전 자	박 재 형
261	한 국 프 렌 지	오 진 현	287	금 성 알 프 스	신 용 석
262	부 산 파 이 프	백 종 부	288	한 진 섬 유 기 계	오 봉 출
263	코 리 아 스 파 이 서	박 한 주	289	일 진	최 진 하
264	금 성 사	강 영 섭	290	고 려 제 강	박 갑 철
265	"	박 승 리	291	코 리 아 스 파 이 서	박 남 수
266	대 우 전 자	이 해 석	292	금 성 사	정 한 식
267	연 합 철 강	강 진 도	293	대 우 중 공 업	허 장 도
268	동 부 제 강	안 영 환	294	신 한 일 전 기	유 병 류
269	동 아 건 설	박 한 섭	295	삼 미 종 합 특 수 강	김 동 철
270	룸 코 리 아	박 순 자	296	고 려 아 연	기 한 도
271	오 트 론	신 성 군	297	동 회 산 업	노 현 돈
272	한 국 시 그 네 틱 스	서 민 애	298	경 창 산 업	장 지 태
273	신 한 주 철	윤 무 영	299	평 화 크 랫 치	김 무 호
274	본 노 련	최 웅 길	300	금 성 사	천 광 회

순 번	소 속	성 명	순 번	소 속	성 명
301	오 리 온 전 기	최 창 기	305	한 국 주 철 관	조 덕 래
302	한 국 전 자	권 선 국	306	한 일 전 기	장 석 웅
303	대 우 전 자	황 창 배	307	기 아 특 수 강	임 문 택
304	강원산업삼표중공업	김 상 달			

○ '94 노총대의원 대회 분과위원

규약 및 자격심사위원 - 박인상 위원장

의사운영위원 - 김장선 부위원장

○ 표창자

울산지역본부 조직국장 - 하영주

로움코리아 위원장 - 박순자

○ '94 정부포상자

대구 경북지역본부 의장 - 김경조(석탑산업훈장)

국 제 활 동

국 제 부

- I. '93 한일금속노조 고위 간부회의
- II. 해외인사 초청
- III. 해외 파견
- IV. 해외노조간부 방문
- V. 발간 사업
- VI. 관련 자료
 - '94 IMF신년사
 - IMF소개 및 IMF활동계획 해설(세이고 고지마)
 - 방콕리포트(제23차 IMF여성·청년심포지움)
 - 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회의 보고자료
(한국보고서 및 일본보고서)

I. '93 한일 금속노조 고위간부회의

1. 일정 : '93년 10. 4-5
2. 장소 : 일본. 동경
3. 안건 : ① 각국별 보고 (Ⅵ. 관련자료 참조)
② 양국 금속노조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강연 : “한일경제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준코 미즈노, 아시아 경제연구소.
4. 참석자 :
 - ① 한국측 : 위 원 장 박인상
 부위원장 김장선, 정창영, 유재섭, 김영철
 사무처장 최웅길
 - ② 일본측 (IMF-JC) 의 장 데루히토 도꾸모토
 부 의 장 이와야마 와시오 (전기노련)
 에쓰야 와시오 (철강노련)
 타다오 미에가와 (긴조꾸 기카이)
 크니미쓰 기꾸찌 (젠텐센)
 쇼조 히메노 (비철금속)
 사무국장 시로 우에하라
 사무차장 도시오모리 (IMF-JC 기획국장)
 카르지 시오모로 (IMF-JC 조직국장)
 마사루 오카다 (IMF-JC 기획국장) 외 3명
 ※ 12명 방청.

II. 해외인사 초청

1. 본노련 93년도 정기대회에의 초청

1) IMF-JC 대표

- ① 초청기간 : '93. 5. 19~21
- ② 참석대표 : 시로 우메하라

2) IMF-ROCC 대표

- ① 초청기간 : '93. 5. 19~21
- ② 참석대표 : 장가천, 손영명, 조능건.

3) 「신노동정책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강의 초청

- ① 강의주제 : 「일본의 임금제도 및 고용대책과 경영참여」
- ② 강 사 : 시로 우메하라(IMF-JC 사무총장)
- ③ 일시 및 장소 : '93. 11. 10 한국노총중앙교육원

Ⅲ. 해외파견

1. IMF 100주년 기념총회 및 중앙위원회

(1) 기간 : '93. 6. 13~6. 18

(2) 장소 : 스위스 쾰리히

(3) 참석자 : 위 원 장 박인상
 부위원장 김장선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4) 회의안건

① '92년 체코프라하 중앙위 의사록 승인

② 서기국 활동보고

③ IMF 가맹신청 승인

-불가리아 정보, 전자연맹(PODKREPA, 6,000명)

-불가리아 "Metallurgy"-CLPODKREPA, (5,000명)

-칠레 Sindicato de Trabajadores del Establecimiento

Huachipato de la Compania Acero del Pacifico, S.A.No(3,600명)

-아이보리 코스트 syndicato National des Travailleurs des Industries.

-전노협 금속협의회. (일본 기권, 가입반대 없었음. 가맹 승인)

-나미비아, MANWU(나미비아 금속, 연합노조 : 6,000명)

-슬로베니아, SKEI(128,000명)

-이집트, 기술·금속·전기노조(50,000명)

④ '92 결산보고

⑤ '92 회계 감사보고

⑥ 의장 및 사무총장 선임

- 의 장 : Klaus Zwickel(IG Metall, 독일금속노조)

- 사무총장 : Marcello Malentacchi

⑦ 의장 및 사무총장 선임

⑧ 차기 중앙위원회 장소, 일시 결정

- '94중앙위원회 : '94. 5. 26~27, 프랑스 마르세이유.

2. '93 근로자해외연수

① 기간 및 참석자

- 3기 : '93. 6. 15 기아자동차 노조 강일규

- 5기 : '93. 6. 29~7. 7 본노련 사무처장 최웅길, 현대전자노조 김원희

3. 스웨덴 금속노조 총회

① 기간 : '93. 8. 28~9. 8

② 장소 : 스웨덴

③ 참석자 : 금성사 노조 위원장 유재섭

4. IMF-JC 제32차대회

① 기간 : '93. 9. 5~9. 9

② 장소 : 일본 동경

③ 참석자 : 위원장 박인상

5. IMF-ROCC 제21차대회

① 기간 : '93. 10. 4~10. 7

② 장소 : 대만 타이베이

③ 참석자 :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이해석

일진전기 노조위원장 가재두

본노련 노사대책부장 이경훈

6. 일본 조선중기노련 초청 제6차 금속노련 조선분과 일본연수

① 기간 : '93. 11. 1~11. 9

② 장소 : 일본

③ 참석자 : 본 노련 조선분과 의장 정확균
대 동 조 선 노조 위 원 장 윤정일
" " 조사통계부장 김현규
울산한진중공업 노조 위 원 장 윤용하
범 한 금 속 " " 김대근
태 광 기 계 " " 표세봉
세 진 " " 이태학
세 응 종 합 건설 " " 오태일
부 산 수 리 조선 " " 하봉남
강 남 조 선 " 부위원장 신화선
" " " 정훈철

7. '93 IMF-JC초청 신임대표자 일본연수

① 기간 : '93. 11. 14~11. 21

② 장소 : 일본

③ 참석자 : 연수단장 본 노련 사무처장 최용길
대신산업 노조위원장 강준호
성림기업 " " 강학중
범양냉방 " " 경홍식
고려아연 " " 기한도
한 독 " " 김동영
태주실업 " " 김명현
현대전자 " " 김영철
맥슨전자 " " 박재형
풍성전기 " " 이대영
영창악기 " " 장태훈
두원정공 " " 정춘식
현대공업 " " 최상돌
간 사 국 제 부 정석민

④ 연수일정 : 가. IMF-JC방문

(IMF-JC 및 일본노조운동 소개)

- 나. 자동차 총련 방문
- 다. 자동차 총련산하 칼소닉 공장 방문
- 라. 일경련 방문
- 마. 령고 방문
- 바. IMF-JC 27차 동부지구 리더쉽 강좌 참가자와의 간담회
- 사. 전기노련 방문
- 아. 전기노련 산하 이와사끼 전기노조 방문
- 자. 조선중기노련 방문
- 차. 조선중기노련 산하 IHI노조 방문

8. 일본노동재단(JILAF) 초청 연수

- ① 기간 : '94. 1. 24~2. 5
- ② 참석자 : 본노련 총무국장 윤창열

9. '94 IMF-JC초청 신임대표자 일본연수

- ① 기간 : '94. 1. 30~2. 5
- ② 장소 : 일본
- ③ 참석자 : 연수단장 본노련 부위원장 정창영

필립스 노조위원장	강운구
금성사 노조청주지부장	권종안
금성정보통신노조위원장	김문섭
금성사노조 창원2지부장	김영준
한국샤프노조위원장	박재혁
화신제작소노조위원장	윤승모
부산주공노조위원장	이재섭
대우전자노조구미지부장	이병균
간 사	홍보차장 민한홍
- ④ 연수일정 : 가. IMF-JC 방문
 - 나. 철강노련 방문
 - 다. 전기노련 방문
 - 라. 전기노련 산하 도시바노조 공장방문
 - 마. 자동차총련 방문

- 바. 자동차총련 산하 닛산자동차 무라야마 공장방문
- 사. 일경련 방문
- 아. 령고 방문

10. 제23차 IMF아시아 청년, 여성 심포지움.

- ① 기간 : '94. 2. 26~27
- ② 장소 : 태국, 방콕
- ③ 참석자 : 본노련 여성국장 정영숙
국 제 부 정석민
- ④ 심포지움 일정 :
 - 가. IMF소개 및 IMF활동계획
 - 세이고 고지마(IMF동아시아 사무소장) : Ⅶ. 관련자료 참조.
 - 나. ILO와 UN가족의 해
 - 강의 : ILO, 린립린
 - 그룹토의
 - 다. 아·태지역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균등”의 문제
 - 강의 : 수과 차이
 - 그룹토의
 - 라. 종합토의
 - 마. 리포트 채택(Ⅶ. 관련자료 참조)

11. IMF세계 자동차부품업체 회의.

- ① 기간 : 1994. 2. 28~3. 2
- ② 장소 : 스페인 마드리드
- ③ 참석자 :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 ④ 회의 내용 : Ⅶ. 관련자료 참조.

Ⅳ. 해외노조간부 방문

1. 중화전국총공회 주석단 위원 풍조춘 외 5명

- 연맹방문 및 본노련 산하영창악기 방문('93. 7. 21)
2. IMF 히로시 가마다. 한국실태 파악차 방문('93. 9. 8~9. 9)
3. 스웨덴 금속노조 국제국장 야콥슨 외 2명 방문('93. 10. 9)

V. 발간사업

1. FKMTU News Release(보도자료)발간
2. 금속노련 소개 영어·일본어 팜플렛 발간.

VI. 관련자료

1994, 국제금속노련 신년사

1994년은 우리 IMF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균등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우선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IMF는 이에 관련한 정책토론과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난 93년 6월 쥐리히에서 개최된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채택된 IMF활동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우선과제들은 세계 도처의 정책입안자들이 말하는 바와 더욱 일치해가고 있다. 이 활동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4가지 주요목표를 정했으며, 이는 금년동안 전개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로는, 조직화작업의 추진이다.

우리 모든 활동의 목표는 세계 모든 곳의 금속노동자들이 사회, 경제적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있다. IMF는 강력한 조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계 금속노동자들의 일부분만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선과제중 첫순위는 아직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금속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들중 특정 그룹, 특정 지역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향후 12개월동안, 우리는 여성노동자들과 비육체노동자들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이 두 그룹은 여태까지 국제적수준에서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중요한 그룹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이 조직화작업에 장애물로 남아있다.

두번째 중점사항은, 노동조합권의 수호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싸움은 승리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남아공화국은 금년 94년에 사상 최초로 자유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투표를 한번 치른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노동조합없이 그리고 단결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ILO의 핵심을 이루는 두가지 조약은 바로 조약 87호와 98호,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조약인데, 이 두조약은 노동조합권 수호를 위한 우리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IMF집행위원회는 ILO개혁안을 채택,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ILO의 작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회·경제문제에 관한 삼자협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는 경제국제화에 대해 주의깊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 국제화는 해외 직접투자의 팽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외 직투는 88년 이래 연간 20%씩 증가하여 연간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막대한 해외 직투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본, 고용문제는 어떤 통제, 계획도 없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속노조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국제화가 되고, 행동도 국제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업, 환경, 빈곤문제에 대한 조치는 일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회의를 조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강하고 책임감있는 세계 노조를 건설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IMF의 활동계획은 개도국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MF는 제3세계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을 원을 발굴하고, 가맹조합들이 이 작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외에도 OECD회원국은 아니지만, 금속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범주의 국가들이 있다.

아시아에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기타 공장들이 설립됨에 따라, 수십만에 달하는 금속산업 관련 고용들이 창출되고 있다.

IMF는 구매력을 상승시켜 국내수요를 높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 안정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IMF 활동계획-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

세이고 고지마(IMF 동아시아 사무소장)

IMF 활동계획-요약

(1993. 스위스 쥐리히, IMF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채택)

1. 급변하는 세계속의 금속노동자들과 IMF
2. IMF의 역할과 우선과제
3. 1993-1997, IMF의 목표와 임무

(1) 4가지 주요 목표 :

- 미조직부문의 조직화
- 노동조합 기본권수호를 위한 투쟁
- 평등의 추구
- 여러지역 금속노동자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 해소

(2) 위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실현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연대사

-작년 1993년 6월 스위스 쥐리히에서 IMF는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00년전, 유럽 각국의 금속노동조합들이 모여 IMF를 창립하였고, 몇년후 미국 금속노동자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수십년후 라틴 아메리카와 일본,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IMF는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조직도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다. 1989년 코펜하겐 총회 이래, 동유럽의 구공산국가 금속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연대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IMF는 동유럽으로도 진출하게 되었다.

-IMF는 금속노동자들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100년동안 투쟁해왔고, 각 가맹노동자들은 많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창립 100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IMF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미래는 아직도 건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 IMF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는 실업, 노동조합권에 대한 억압, 작업장 민주주의의 결여, 세계적 빈곤,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에서의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IMF산하 노동자들중, 대규모의 전통깊은 노동로부터, 최근에 설립되고 재정이 빈

약한 노조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은 노조는 하나도 없다. 과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금속산업이 글로벌(Global)화 되었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이나, 투자, 생산, 인사관리전략을 볼때, 금속산업의 기업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초국적인 힘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노조도 국내적인 문제에만 활동을 한정시켜, 활동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국제활동은 국내활동의 부속물이 아니며, 국제주의는 금속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내전략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오랫동안 금속노조들간의 활동을 조정해왔던 IMF는 세계 각지의 노조들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메카니즘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IMF는 OECD회원국과 같은 부유한 선진국들의 노조와 성장과 개발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빈국들의 금속노조들을 연결하는 남북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MF는 구공산국가의 신규노조들과 다른 지역의 금속노조를 연결하는 동-서간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IMF-구조와 활동

-IMF는 1983년 쾰리히에서 국제 사회주의자 회의(International Socialist Congress)에 참석한 금속노동자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회원 : 현재, 전세계에 걸쳐 1,800만이 IMF에 가입해 있다.

자동차, 항공, 전기, 전자, 엔지니어링, 조선, 철강, 정밀 기계, 일반 금속산업의 생산직, 사무직노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조직구조 : (1)총회(4년에 1회), (2)중앙위원회(매년 개최), (3)중앙집행위원회(년 2회), (4)서기국, (스위스 제네바)

분과 : 자동차/항공/전기, 전자/기계공학/철강(비철 포함)/조선/사무직

(업종별 분과체계내에, 24개의 세계 기업체 협의회가 존재 : 동일한 다국적 기업에 속해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는 것이 목표 : IMF GM 세계 자동차 협의회 등)

지역사무소 : 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카라카스), 서아시아(뉴델리), 동아시아(동경)-훈련과정과, 지역차원 및 국제차원의 연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아시아 사무소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 동아시아 사무소 :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1990년대에 노동계는 전례없는 발전을 하고 있다.

- (1) 북반구의 대량실업과 남반구의 비참한 가난은 금속노조들이 새로운 정책과 활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냉전종식은 구공산국들에서의 산업발전과, 자주적, 독립적인 금속노조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 제조업의 아시아지역 이전으로 인해, 역동적인 아시아 경제에서 금속노조의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 (4) 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 단일시장의 형성 (NAFTA)은 금속노조들간의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 (5) 다국적기업에 의한 제조업 통제 확대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전선을 형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93년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IMF는 97년 샌프란시스코 총회까지의 활동방침으로 100개항의 활동계획을 채택했다.

- 1990년대 IMF의 새로운 과제는 구 소련제국과 동유럽, 중유럽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도입으로 인한 혼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접촉을 강화하는 것이다.

- IMF는 ILO와 OCED, UN,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속에서 금속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국제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작업장에서의 권리 :

IMF는 작업장에서의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 조직이다

IMF는 국제사면위원회를 지지한다.

IMF는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억압당하거나,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항상 항의를 표시하고, 연대행동을 취한다.

가맹조직과 더불어, IMF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IMF출판물은 다수의 언어로 되어있다. IMF는 전세계의 방송매체들에 제조업부문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IMF의 위원장은 340만의 독일 금속노조, IG Metall 위원장인 Klaus Zwickel이며,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17세에 스웨덴 볼보에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바 있는 Marcello

Malentacchi이다.

IMF재정은 1,800만 회원의 멤버로 충당된다. (1인당 연간 1스위스 파랑 10상팀)

IMF수입은 일반 운영비와 개도국 금속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연대지원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IMF는 14개의 ITS(국제산별)들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3. IMF 활동계획

- IMF활동계획은 가맹조직의 활동지침으로 IMF총회에서 채택되는 여러개의 결의안을 대체한 것이다. 이 결의안들은 문체는 화려했으나, 실제적이지는 못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채택한 것은 대표적인 국제노동운동에 의해 취해진 진실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 '93년에서 '97년까지 향후 4년동안의 IMF활동방침이 될 IMF활동계획은 93년 6월 IMF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활동계획은 원래 1992년 프라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세계 각지의 가맹조직들과 협의를 거쳐 입안된 것이다. 이 활동계획은 아래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첫째, 정세분석-급변하는 세계속의 금속노동자들과 IMF

(2) 둘째, 향후 4년간 IMF의 전략적 목표-금속노조 강화에 있어서 IMF의 역할과 우선과제

(3) 셋째, 현재부터 '97년 총회까지의 IMF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전술

마지막으로, 부록-IMF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국제 사회현장

- IMF 사무총장 마르첼로 말렌타키의 94년 신년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4년은 IMF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 세계경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균형을 이룩하는 것은 현재 중요한 사안의 하나가 되고있고, 이에 관련된 정책토론의 장에서 IMF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 IMF 활동계획에서 규정한 우선과제들은 세계 도처의 정책입안자들이 말하는 바와 더욱 더 일치해가고 있다.

- 활동계획 69번이 분명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연대와 세계 금속노조들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IMF는 아래의 4가지 주요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제금속노조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1. 미조직부문의 조직화

2. 노동조합 기본권을 위한 투쟁

3.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동등한 권리, 동등한 임금, 동일 노동조건의 추구

4. 서로 다른 국가 금속노동자들 사이의 경제, 문화적 차이 해소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첫번째는 미조직부문의 조직화이다.

- 우리 모든 활동의 목표는 세계 모든 곳의 금속노동자들이 사회, 경제적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있다. IMF는 강력한 조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계 금속노동자들의 일부분만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1,800만은 강하지만, 세계에 있는 금속노동자들 전부는 아닌 것이다.

- 첫번째 우선과제는 아직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금속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들 중 특정 그룹,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향후 12개월동안, 우리는 여성노동자들과 비육체노동자들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이 두 그룹은 여태까지 국제수준에서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중요한 그룹이다.

-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이 조직화작업에 장애물로 남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구조 자체가 부적당하고, 노동조합이 분열되어 있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2. 두번째 중점사항은, 노동조합권의 수호이다.

-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싸움은 승리를 거두었다. 필리핀 민중들은 80년대 후반 평화혁명을 이루어 냈으며, 남아공화국은 금년 94년에 사상 최초로 자유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그러나, 투표를 한번 치른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노동조합없이 그리고 단결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산업민주주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 ILO의 핵심을 이루는 두가지 조약은 바로 조약 87호와 98호,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조약인데, 이 두 조약은 노동조합권 수호를 위한 우리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1994년, 금년에 ILO는 75주년 기념제를 할 예정으로 있다. IMF집행위원회는 ILO개혁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ILO의 작업을 현대화하고 사회, 경제문제에 관한 삼자협회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 금속산업과 관련하여, ILO에는 철강위원회와 금속산업 위원회만 있는데, 후자는 철강부문을 제외한 다양한 금속산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IMF는 ILO에 전기, 전자산업 위원회, 자동차산업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조합권과 관련하여, 저는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의 경우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외화 획득원이었던 고무, 주석산업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려는 정부가 25년전 전자산업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정부는 전자산업이 노사불안없이 번영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노사분쟁이 없어야 했고, 산업발전을 해치는 파업을 벌일지도 모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 그리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통적인 말레이시아 전국 노조가 전자부문에 조직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 그러나, 1988년에 정부는 놀랍게도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전자부문에 노동조합을 승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여기에 숨겨진 이유는 바로, 미국 금속노조들이 GSP를 다루는 USTR소위원회에 미국에 수입되는 말레이시아 상품에 대해 특허 대우를 철폐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미국 무역법 502조 A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 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GSP혜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노조들은 이를 이용하려 노력했고, 미 의회 국제 무역위원회에 출석하여 말레이시아의 노동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자산업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을 승인하겠다고 선언했다.
- 그러나, 다국적기업 연합은 이런 정부 선언에 대해 그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노동조합 조직화 허용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했으며 정부성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장 문을 닫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 그후, 정부는 다시 정책을 바꾸어, 정부가 말한 것은 기업별 노조는 허용하지만, 전국노조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 그리하여, 현재 서, 너개의 기업별 노조가 승인되어 있으나, 우리 동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은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 어쨌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노조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는 정부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역과 노동조합권을 연계시키는 것은 노조의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IMF와 국제 노동운동은 GATT협정에 사회조항(Social Clause)을 삽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조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자들의 기본권-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소년 노동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은 ILO가 망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ILO협약은 진실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셋째, 우리는 “만인의 평등”을 강력하게 추구할 것이다.

-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권리, 동등한 임금, 동등한 노동조건을 의미한다.
- 각 노조는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성, 연령, 지역, 국적등에 따른 차별에 대처해야 한다.
- 산업 민주주의, 즉 노동자 참여는 모든 국가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각 노조들간의 국제 협력, 국제연대는 현재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 장기적으로, 우리는 국제 경제관계의 글로벌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경제 국제화는 해외 직접투자의 팽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외 직접투자는 88년이래 매년 20%이 증가하여 매년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다. 물론, 이 막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 그에 따라, 자본은 어떤 통제, 계획도 없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속노조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국제화되고, 행동도 국제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실업, 환경, 빈곤문제에 대한 조치는 일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회의를 조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강하고 책임감있는 세계 노조를 건설해야만 한다.

4. 마지막으로, 넷째, 각국 금속 노동자들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 IMF 활동계획은 개도국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각국간에 노동조건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 IMF는 제3세계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원을 발굴하고, 가맹조합들이 이 작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외에도 OECD회원국은 아니지만, 금속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범주의 국가들이 있다.
- 아시아에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기타 공장들이 설립됨에 따라, 수십만에 달하는 금속산업 관련 고용들이 창출되고 있다.
- IMF는 구매력을 상승시켜 국내수요를 높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 안정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이 민주 노조없이 자유로운 해방된 세상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IMF 활동계획에서 세운 목표들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 IMF 활동계획에 우리는 어떤 목표들을 수립하였는가?

- IMF 활동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활동계획은 각 개별 가맹조직들이 활동계획과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목표들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활동계획은 밝히고 있다.

(1) 실현가능하고, (2) 구체적이며, (3) 실현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 : IMF 활동계획에 대한 평가

금속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정확히 분석되고, 대중화되기만 한다면, 금속노조가 사회진보와 균등한 경제발전을 위한 선봉에 서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막대한 지식의 저수지이다. IMF의 제네바 세계총회에서, IMF의 활동과 IMF가 세계금속노조의 연대에 대해 한 기여를 말이나 경의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과 행동들으로써 판단할 것이다. 이 활동계획은 보다 나은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될 것이다.

제23차 IMF아시아 청년·여성 심포지움

1994. 2. 26-27. 태국방콕

방콕 리포트

제23차 IMF 아시아 청년·여성 심포지움이 IMF타이 협의회(IMF-TC)의 협조하에 UN가족의 해인 1994년 2월 26-27일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의 청년, 여성 금속노동자들을 대표하는 120명의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자유, 평등, 인권과 노동조합권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한 관심과 신념의 표현으로써, 그리고 각 나라와 아·태지역에서 IMF활동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재확인하며 이 “방콕 리포트”를 채택한다.

ILO사무차장인, 타다시 나카무라씨는 개회연설에서 노동조합 내외에서의 청년, 여성노동조합활동가들이 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이 사회정의의 위해 아·태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IMF의 역할과 국제연대를 위한 IMF활동계획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그후 아래와 같은 두개의 주요한 강의를 들었다.

(1) ILO와 UN가족의 해(ILO, 린 립 린)

(2) 아·태지역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평등의 문제(수파차이)

위의 두 강의 후, 참석자들은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그룹토론을 가졌다.

(1) -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한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 및 이 변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 이 변화가 남성 및 여성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

- 노동조합의 역할

(2) - 교육, 훈련기회의 평등

- 고용기회의 평등

- 고용안정 기회의 평등

- 임금 및 승진 기회의 평등

그룹토의와 본회의에서는 진지하고, 우애에 찬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아래와 같다.

-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자유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 사회내에서 사회, 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자각이 필요하다.
- 국가정책과 제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활동해야 한다.
- 정부는 ILO협약 87, 98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과 156호(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남녀 노동자에 대한 기회 및 처우균등에 관한 협약)를 비준해야 한다.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공장내외의 육아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노령화 문제
- 가족 중 병자 간호에 대한 문제
- 산전, 산후휴가와 이와 관련한 차별
-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동조합에 참여해야 한다.
- 임금 등을 비롯한 노동조건 차별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ILO를 활성화하기 위한 IMF의 노력은 타당하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룹토의와 본회의 토론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균등 처우의 문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각국 조직 노동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되었다.

우리는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균등처우를 위한 과거의 모든 선언들과 UN헌장, 인권선언에 포함된 원칙들을 재확인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권은 이 인권의 중요하고 집약적인 부분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 인권협약, 특히 시민권,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시행하기를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인권, 노동조합권과 무역·개발원조를 연계시키는 것이 ILO기준의 중요한 부속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넉리 언급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는 균등처우, 인권·노동조합권이라는 사회적 관점에 서지 않고, 또한 노동자들이 이를 향유할 수 없다면 우리와는 무관한 시대가 될 것이다.

IMF연대의 깃발아래, 그리고 IMF활동계획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청년, 여성노동자들과 우리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본 심포지움은 IMF활동계획, 특히 82항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IMF가 아,태지역을 위한 대규모 심포지움 대신에 네트워크나 실무 작업진을 설치하고 이런 형태의 대규모 심포지움은 4년에 한번씩 개최할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심포지움은 성공적인 토론을 가졌고,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상호우애를 돈독히 했으며, 참석자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폐회한다.

'93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회의 한국보고서

보고자 :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정치정세

금년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군부정치가 등장한 이래 32년만에 민간정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정부 자체가 군부정치 지배의 보수세력의 여당을 기반으로 해서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정부의 개혁성향에 대해서 당초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현 민간 정부는 상상 이상으로 정치경제적 개혁을 단행해오고 있다. 현정부는 부패관료와 정치인 및 군장성과 법조인을 축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한편 군부정치의 권력기반을 약화시켜 가고 있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부패경제권력에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역시 구 보수권력의 물질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의 정치경제적 개혁이 군부정권세력을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축출해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신정부의 개혁정책은 그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인 중산층의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한국경제가 악화된다면 노동자·농민층의 이탈이 불가피해 신정부는 정치적 불안정속에 빠져들수 있고 과거 군부정치하의 보수세력들의 재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정부는 정계를 재편하여 새로운 권력기반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을 지지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암울한 시대가 오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개혁세력의 개혁을 뒷받침하여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2. 경제정세

한국경제는 현재 산업구조재조정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투기와 정치적 특혜에 의존하던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고 경제의 국제화와 그에따른 문명국제도의 정착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각종개혁과 민주적 제도 및 정치세력이 정착키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발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경제전망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92년도 2/4분기부터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예년에 10%전후를 기록했던 2/4분기의 성장이 92년도에는 6%선으로 떨어지고 있어 3/4분기에 3.3%, 4/4분기에 2.8%로 현저한 저성장을 기록했고 93

년에 들어서서도 1/4분기 3.4%, 2/4분기 4.2%로 작년동기에 비해서 훨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92년도 상반기의 성장을 평균이 8.6%였는데 비해 금년 상반기에 1.8%성장에 그쳤다. 이런 경제정세의 원인 및 결과로서 투자마인드의 위축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 10%를 웃돌던 고정투자 증가가 92년엔 마이너스 1.8%, 93년 상반기에 2.4%상승에 그치고 있다. 주식가격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적 주식매입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으로부터의 회복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특히 금융실명제 도입이후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에 투입된 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킬 장치는 가지고 있음에도 실명화에 따르는 소득원 추적과 추정과세의 위험때문에 실명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투자마인드 위축과 중소기업의 자금난등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가불안의 문제이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7월 현재 4.1%가 올라 금년도 정부억제선인 5%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냉해현상으로 곡물이나 채소가의 상승이 예상되며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현금인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용자증대로 통화증가량이 정부 억제목표선인 18%선을 넘어 2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같은 저경제성장 및 기업의 적극적인 감량경영과 비정규고용 선호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문제가 대폭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의 실업율은 작년 상반기 2.55%에 비해 0.45%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실업문제뿐만 아니다. 기업들이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사내외하청,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을 날로 증대시키고 있어 고용불안이 날로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합원수를 잠식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는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위한 강력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3. 노동조합운동

우선 정부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두가지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소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 정상화와 회생을 이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사관계제도를 근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목표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정부는 신경제 성공이라는 목표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난 반년동안 명확히 보여주었다. 노동부가 노동부의 지침을 대법원의 기존판례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파업기간의 임금에 대해 종전의 무노동 무임금에서 부분임금으로 원칙수정을 했는데 결국 경영자단체나 경제부처 장관, 그리고 여당내 보수세력에 의해 좌절됐다. 또 현대그룹의 노동쟁의에 대해 당초 정부는 노동부장관이 직접개

입하여 개인적인 조정을 행했으나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가장 전근대적인 법 제도인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긴급조정 조항을 활용하였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연기함에 있어서도 역시 그 이유를 신경제나 금융실명제등 경제문제로 들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반대이다. 때문에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관계는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하고 또 경제파탄이 가져올 수 있는 보수회귀를 막기위해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전향적 노동정책을 포기하거나 반노동자적 정책을 취할 경우 적극 반대해나갈 것이다.

다음은 현재 당면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동법개정문제이다. 정부는 당초 금년도에 노동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노동법개정연구회에 초안 작성을 위임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우려한대로 노동법개정 과정을 통해 국론이 분열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금번 노동법개정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자, 정부도 일면으로는 강력히 바라왔기 때문이다. 또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제도가 재편되어 나갈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노동법개정이 반드시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정될 것이냐에 대한 강한 우려도 있다. 정부나 경영자측은 노사관계제도를 전향적으로 푸는 대신 노동기준을 저하시키고 고용계약제도를 악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경영자는 고용과 노동시간의 탄력성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개정연기에 대해 한국노총은 즉시 반박성명을 낸바 있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복수노조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직간에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노동자의 대동단결이라는 전망하에 상호 합리적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노동조건을 저하를 막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인 93년에서 97년간에는 경제의 완전한 국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전망한다. 현재 비록 노동법개정은 연기됐지만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법개정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고용관계법의 완벽한 제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관계법은 공청회등 과정을 거쳐 법안이 준비중에 있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용관계법만 가지고는 오히려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파견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금년도 임금교섭은 7월말로 해서 대체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 금속노련은 지난9월 10일 93년도 임투를 평가하는 모임을 가진 바 있으나 산하노조들의 평균요구가 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임금보다는 고용문제가 더 심각히 대두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가 대조합원 선전용의 무리한 요구보다는 달성가능한 요구안을 제시하자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보다 합리화되어가는 경향성도 반영하고 있다. 교섭

은 실질적으로 4월에 개시되어 2-3개월의 교섭기간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가능하면 대화로써 평화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해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우리 금속노련 산하노조의 경우 31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쟁의건수가 작년도 146건에 68건으로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금속노련 산하노조들의 교섭성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38,000원 수준인 8.6%인상을 달성했고 다수의 노조들이 저율인상대신 수당인상이나 성과급지급을 획득해냈다.

한편 금년도 임금교섭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현대그룹 노동쟁의는 언론에 의해 과장보도되고 국민으로부터 고립화가 시도된 바 있지만 그룹노조간에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으로 울산지역에 밀집해있거나 또 현대그룹의 권위주의적 하향식 경영방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는 노사 양당사자가 모두 비판된 바 있고 결국 이번 쟁의과정을 통해 정부 및 정치권의 보수세력이 공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금년도 임금교섭에 있어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한국노총이나 한국경총이나 정부가 독자의 임금지침을 내는 대신에 노사의 내셔널 센터간에 교섭을 하여 단일지침을 냈다는 점이다. 이 지침은 금년도 4월 1일에 합의 조인되어 4.1합의라고 불리우는데 이 합의서는 임금을 4.7%-8.9%범위내에서 인상하되 업종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금융실명제 조기도입과 근로소득세 감면, 고용보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한다는 부대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중앙단위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강하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이러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금교섭에 직접 개입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형성과정에서의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보나 금년도 경험을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진영의 보다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우리 금속노련의 정책방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 금속노련은 금년도 8월 25일 창립32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는데 우리 금속노련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군사독재의 통제하에서 매우 어려운 노동운동을 전개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경쟁력의 기초로 한 경제정책하에서 활동을 전개해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군사정부대신에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산업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에 수반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에 수반하여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리던 방식에서 노동자의 기능과 창의를 존중하는 인사관리방식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의 생활도 87년이후의 대대적인 투쟁으로 일정 수준에 올라서 노동자들의 관심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고 새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젊은 노동자들은 매우 개인주의적 성향

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노동력공급과잉시대에서 공급부족시대로, 그리고 다시 구조적 실업이 일반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와 정규사원 위주의 고용체제에서 직능급체제를 향한 움직임과 비정규고용의 증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도전에 대응키 위한 토론을 광범히 조직하여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련은 새로운 정책수립과 이의 확산에 역점을 두어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93한일금속노조 고위간부회의 일본보고서

1. 정권교체

금년 1년간에 있어서의 일본의 동향을 설명할 때, 우선 첫번째로 거론해야 할 것이 정권 교체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38년이란 장기간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93년 6월 미야자와 수상이 공약하고 있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을 계기로 자민당은 분열, 국회는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을 가결했다. 7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에 대신해서 소위 기성정당인 일본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에 더하여, 작년 결성된 일본신당, 그리고 자민당으로부터 분열된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의 8당파가 정책합의를 보아서, 8월 호소가와 일본신당 대표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내각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자민당정권은 붕괴하고, 우리들 노동조합과 협력관계를 갖는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자민당정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가 부패하고, 독직사건이 빈발하는데 있었다. 정치부패는 일본의 독자적인 소위 중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에 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여, 미야자와 내각도 이 선거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자민당 내부의 심한 저항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경위가 있어서 호소가와 내각은 정치개혁을 우선 첫째 목표를 내걸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도입, 부패방지를 위한 연좌제 확대나 벌칙의 강화, 정당에 대한 공비조성(公費助成)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93년중에 실현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그리고 오래가는 불황과 국제수지 불균형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엔고”를 배경으로, 불황의 조기극복, 국민생활증진의 예산배분, 규제 완화 등 행정개혁, 국제경제 마찰 해소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2. 만성적인 불황

일본경제는 91년 봄이후, 장기간에 걸쳐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85년 9월의 프라자합의에 의한 엔고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금융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폭적인 내수확대가 실현되었으나, 반면 소위 버블경제를 초래하여 지가(地價), 주가(株價) 앙등과 그로 말미암은 자산격차의 확대 등, 국민생활면에서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때문에, 금융당국은 90년 중반 이후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을 전개, 이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91년 봄이후엔 경기후퇴국면에 돌입했다.

90회계년도에는 5.1%였던 경제성장률은 91년도에는 3.4%로 둔화, 92년도에는 0.8%로 떨어

어저 제1차 석유위기때 이래의 낮은 성장율로 되었다. 93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후퇴는 이미 2년 반을 경과하였는데 이는 전후 두번째로 오래가는 불황이다.

금융계는 93년 봄 이후 완화의 방향으로 들어섰으며, 93년 1-3월에는 경기도 바닥시세였는데, 급격한 엔고의 진행으로 금속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기에 여전히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93년 4-6월의 실질경제 성장율은 전년 동기비로 0.8%로 되어 있으며, 광공업 생산치수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3. 엔고에 관한 문제

93년 1월 탄생한 미국의 클린턴정권은 중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관계의 경제적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표명했다. 93년 2월에는 미국의 벤젠 재무장관이 엔고유도 발언을 하고 이를 계기로 엔시세는 급등하여 1월엔 평균 $1\$ = 125.01$ 엔이었던 것이 8월에는 한때 100.40엔의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는 약간 안정을 되찾아서 1달러 = 105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채산수준은 1달러 = 124엔 정도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수준은 우리나라의 실력을 넘은 이상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없다.

금속노협으로서도 이러한 엔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금속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기에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했다. 노동성 장관, 대장성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통상성 장관과 직접 간담회를 가져, 외환시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를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엔고에 의한 수입품 가격저하의 이점이 일부 산업내부에 국한되어 널리 국민일반에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확대나 공공요금제도의 재검토, 각 사업분야에의 투자규제 철폐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그위에 유통 등 저생산성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엔고의 이점이 널리 파급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전개했다.

정부는 경기후퇴국면을 맞이하여, 92년 3월, 8월, 93년 4월, 3번에 걸쳐 대형 종합 경제대책을 내놓았으며, 금년 9월 호소가와 내각은 오래가는 불황과 엔고의 타개책으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 내수확대책과 규제완화를 내세웠다. 공정금리도 동월에는 사상 최저인 1.75%로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역과 관계되는 아시아 지역 동향으로서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ل 수상이 제시한 EAEC(동아시아 경제협의회)구상에 대해, 7월 일본의 무토외상은 조기참가 의욕을 표명했는데, 금후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둘러싸고, 아시아 제국가들과 미국과의 대립이 발생되는 것도 우려되는 문제이다.

4. 고용문제

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고용문제는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는데, 엔고는 여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완전실업률은 90, 91년도에는 2.1%, 92년도에는 2.2%였는데 93년 8월에는 2.5%로 악화되고 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을 보아도, 92년 9월까지의 구직자수보다 구인수가 많았는데, 93년 8월에는 구인수는 구직자의 70%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번 불황에서는 당초, 특히 사무, 기술직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클로즈업됐다. 이것은 버블 경제시대에 과대한 설비투자가 행해졌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이 불황의 영향이상으로 압박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경영측이 인건비, 특히 간접부문 인건비의 삭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또 버블 경제시대에는 일손 부족이 심해서 각기업이 사무, 기술직 근로자를 대량 채용하여, 그 반동이 나왔다는 점 등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엔고의 영향도 더하여 생산직도 포함하여 고용과잉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노동성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용조정책으로는 잔업규제, 중도 채용의 삭감, 정지, 배치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일시 귀휴, 희망퇴직자 모집, 해고 등의 중대한 고용조정책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후 동향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IMF-JC로서도 고용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업종에 있어서, 사업활동의 축소가 여의치 못하게 된 사업소가 휴업, 교육훈련, 출항을 행할 경우, 대상 고용자의 임금일부를 조성(助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이란 제도가 있다. 고용정세의 악화에 따라 정부는 지정업종의 확대, 절차의 간소화, 조성률 인상을 해 왔는데, JC로서도 수급요건의 완화,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외에, 이러한 소위 긴급적인 고용문제와 동시에, 엔고에 대응하여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동화되고, 국내고용이 상실되는 것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JC는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노사간 협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고용문제에 관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외의 노동조합을 존중하여 적정 임금, 노동조건을 확보해 나가도록 경영자 단체에 요망하고 있는 바이다.

5. IMF-JC의 활동

JC는 작년 9월에 대회에서 1993년부터 94년에 걸친 2년간의 운동방침을 책정했는데, 금년 9월에는 94년도에 대해 이를 보강하는 활동방침을 결정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투쟁, “매력있는 제조업, 금속산업 만들기”를 위한 산업정책활동, 대금속산업별로서의 조직강화 활동, 국제경제 시대에 있어

서의 국제노동운동의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회의 특징으로서는 JC산업정책위원회가 행해온 일본의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 만들기”를 위한 검토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세계가 “시장경제화”라는 큰 흐름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도, 관행이 국제적으로 보아서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또 기업·생산자·정부에 대해 근로자, 소비자, 납세자가 비교적 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문제때문에 일본의 생산력과 국민생활 사이에 현저한 괴리를 가져왔다는 점 등에 대한 기본인식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경제, 사회시스템에 있어서의 폐해, 왜곡을 구체적으로 추출하여 금후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93년 봄에 행해진 투쟁의 결과로서는 우선 임금인상에 대해 JC로서는 “뱅크”의 요구에 입각하여 7% 기준의 임금인상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집계대상 85개 조합평균 3.64%, 전년 대비 1.04포인트의 마이너스라는 6년만의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

한편,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JC에서는 89년 이후, 연간 총실노동시간을 독일, 프랑스의 노동시간과 미국, 영국 노동시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1,800시간으로의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5개년 계획”을 위해 노력해왔다. 93년은 그 결말을 짓는해였지만, 93년 투쟁이 종료된 후를 보면 JC집계대상 조합 85개 조합가운데 27개 조합이 연간 총실노동시간 1,800시간을 향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얻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JC 전 가맹조합으로 더욱 널리 전파해 일본 전체로 1,800시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

노동시간 단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초과 노동 할증률 인상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싶다. 일본에서는 법제상 시간외·휴일·심야 노동 할증률이 각각 25%로 되어있고, 협약상에서도 예를 들어 JC에 있어서의 시간외 할증률은 3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아 낮은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다. JC에서는 92년의 투쟁에 할증률 인상에 통일적으로 대처했으며,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 이리하여 일부 조합에서 휴일의 할증률을 중심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노동기준법 개정에서도 휴일 노동에 대하여는 할증률이 인상되는 공산(公算)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내셔널 센터인 뱅고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싶다. 뱅고는 금년 발족 이래 만 4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조직인원은 93년 9월 현재 785만명으로 되어 있으며, JC는 그중 3할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대를 이루고 있다.

뱅크는 지금까지의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 정부, 대 자채활동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려왔는데, 특히 호소가와내각의 발족에 있어서는 뱅고의 존재가 그 후원자의 하나가 됐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뱅고는 신정권 발족에 즈음하여 이것을 진심으로 기대, 환영하는 것을 표명하고,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뱅고는 9월 호소가와 수상에 대해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이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중심과제로서 정치부패 방지법 제정이나, 유권자의 1표의 격차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본적인 정치개혁의 조기 실현, 규제완화, 시장개방, 공공투자에 있어서의 새로운 중점목표 설정 등의 경기, 엔고대책, 납세자 번호제의 도입, 소비세에 있어서의 명세서 도입 등의 세제개혁과, 당면한 5조엔 규모의 소득세 감세, 고용대책 강화, 노동시간 단축 추진, 연금제도 개혁, 중소기업 노동대책 추진, 여성정책, 행정개혁의 단행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별 보고(일본)

1. 전기산업

1. 전기산업의 동향

전기산업은 회복의 징조를 보이지 않은채 최근에 급진전한 엔고와 냉해 때문에 장기 저미를 계속하는 일본경제 가운데 예전에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비율이 높은 전기산업에 있어서(92년 수출비율 50.8%) 현재의 엔고는 업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전기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1엔의 엔고로 183억엔(21사 합계)의 이익감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주요 17개사의 94년 3월기의 결산은 내수부진과 겹쳐서 4년 연속의 감익(減益)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산업의 각 기업은 경기 저미속에서 버블기를 통하여 계속돼온 과잉 투자(사람·설비)에 의한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산업으로서의 성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찌기 없었던 구조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은 전기산업의 해외진출(89-92년간, 기업수로 287개 기업 증가, 종업원수로 약 98,000명 증가: 전기연합 조사)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산업의 공동화→고용에의 영향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기산업은 이제야말로 지금까지의 성장제일주의, 시장점유율 제일주의로부터의 전환을 도모하여, 양으로부터 질에로의 경영정책에 의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운동테마

덴끼 령고(전기연합)는 1992년 7월의 제40차 대회에서 새로운 운동이념 “아름다운 지구, 행복한 생활”을 채택하여, 매력있는 전기산업 만들기를 향해 각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100만 조직실현을 향한 조직확대 운동
 - 현재 85만 조직, 금세기중에 100만 산별조직 목표
- (2) 노동시간 연간 1,800시간 실현을 위한 운동
 - 시간단축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실현을 지향
- (3) 전기산업의 “새로운 기업행동의 바람직한 모습”을 향한 운동
 - 분배 시정, 시간 단축,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소비자와의 상호이해를 위한 키 워드(Key Word)로 시장점유율 제일주의, 지나친 기업간 경쟁을 시정하여 완만한 성장을 지향함.
- (4)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 환경에 대한 의식양과 환경에 친화력있는 제품생산 지향
 - 10억엔으로 “지구 사랑기금”창설, 지구환경보호에 노력

2. 자동차산업

1. 자동차산업의 동향

(1) 생산, 판매, 수출

- 92년도 생산은 1,250만대(-5.7%, -75만대)로 2년 연속 감소.
 - 불과 2년동안 100만대 수준의 생산감소는 과거에 유례없는 사항
 - 1993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減産기조가 계속, 93년 1-6월까지의 생산
 - 누계는 588만대(-7.2%), 이대로 가면 1984년 이래 9년만에 1,200만대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3년 연속으로 전년도 실적을 하회할 전망
- 92년도 신차 판매대수(등록, 신고)도 696만대(-7.5%)로 2년 연속 감소.
 - 판매 대수로서는 사상 세번째 수준인데 피크시와 비교하면 91년, 92년 감소폭은 확대, 93년도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반전 징조 없음.
- 92년도 수출대수는 567만대(-1.4%)로 소폭이지만, 1987년 이후 7년 연속감소
 - 해외 현지생산의 확대에 따라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엔고가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자동차 제조업의 기업실적

-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92년 기업실적(15개사, 93년 10월까지의 본결산, 일부예측)은 매상고는 약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격감
 - 매상고 27조 2,600억엔(2.1%증가), 영업이익은 1,990억엔(-67.7%)로 격감,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여 0.73%로 심각한 상황
 - 93년도 실적예측은 각사 발표수치를 합계하면 매상이 보합상태,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의 전망인데, 외환시세가 1S=100엔대로 정착하면 수익은 한층 저하하고 대

부분의 메이커가 영업적자가 되는 것이 걱정된다. 다만, 이번 엔고로 인한 악영
향 및 고액의 설비투자의 감가상각부담은 93년 피크가 되기 때문에, 금년이 수익
구조 개혁의 중대한 국면

2. 자동차총련의 최근 활동상황

(1) 93년도 생활투쟁

- 임금인상 요구 7%, 결과 3.84%(11사 평균)
- 일시금 요구 5.51개월분(11사 평균), 결과 5.36개월분(11사 평균)

(2) 노동시간 단축

- 노동성 조사 1992년 실적(전산업, 30명 이상) : 1,972시간/년
- 자동차 메이커 평균 : 92년 실적은 총노동시간 2,101시간으로(-93시간), 시간외는 2,556시간으로(-81시간)
- 93년 총노동시간은 2,025시간 정도 될것으로 예상

(2) 산업구조개혁의 진행상황

- 92년 2월의 산업정책 답신, 부품정책, 판촉정책답신으로 산업 구조개혁을 향한 활동을 전개, 급격한 내외환경 변화속에서 금후 고부가가치 산업을 향한 다음 단계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3. 철강산업

1. 철강산업의 개황

우리나라의 철강경제는 정체를 계속하고 있어서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조강생산 동향을 보면 1992년도는 9,848만톤으로 6년만에 1억톤 수준을 하회했다. 1993년도에 들어온 이후의 조강생산은 상반기가 5,180만톤 정도로 작년도 하반기를 상회하는 수준이 전망되고 있으나, 여기엔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급속한 확대 이외에 오래가는 내수의 하향에 기다리다 지쳐버린 끝의 증산이라는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철강경제 전체 기조는 결코 좋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수요의 저성장, 오래가는 재고조정, 한층 저하한 강재 시황, 그리고 수출의 불투명이라는 요인에다가 최근의 지나친 엔고는 철강산업을 강타하고 있으며, 수익을 극도로 악화시킨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실태를 반영하여 기업수익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지표로 되는 종합철강 5사의 1992년도 경상이익은 전년도 대비 77.6% 감소인 604억엔에 머물고, 결산 발표시에 각사가 발표한 1993년도의 전망도 순조로운 개선이 기대될 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철강 각사는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새계획의 책정과 실행에 착수했으

며, 앞으로 시간에 따라 그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당면 주요운동 테마

철강노련은 지난달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1년간의 활동방침을 결정했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추진한다.

첫째, 종합적인 생활개선 운동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극히 어려운 환경아래서 운동이 되는데,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간다.

둘째, 산업정책 및 직장활동의 충실 강화이다. 산업실태가 어려움을 더하면 더할수록 환경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활동, 특히 노동조합으로서의 경영체크기능의 발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셋째, 산별조직의 확대와 기능의 강화이며, 특히 복합산별로서의 조직 확립을 위한 실천을 중시해 나간다.

넷째, 정책·제도 과제의 실현을 령고를 중심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정치정세에 대응한 운동이다. 우리는 새로운 연립정권의 탄생을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삼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치분야에 대한 실천을 강화해 나간다.

4. 조선산업

1. 조선산업의 동향

1992년도의 신조선 수주실적(건축허가 베이스)은 전년도비 36% 감소인 518만 GT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유조선의 감소를 중심으로 순수출선이 60% 감소인 165만 GT에 머물렀던 것이 특징입니다. 92년도의 준공실적은 전년도비 8% 증가인 771만 GT로 되었기에 93년 3월 말의 수주잔고는 20% 감소인 1,059만 GT로 1.5년분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요기업의 실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습니다만 엔고와 불황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당면 주요운동테마

(1) 산업정책

정부에서는 93년 3월 23일 해운조선 합리화 심의회 조선대책부회가 개최되어 조선중기노련에서는 적정 조업, 적정 가격을 두루 미치게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① 당면의 조업대책으로 현재의 수중에 있는 공사를 가능한 범위내로 다음으로 미루고, 노동시간 단축, 특히

잔업을 대폭 감축하여 자주적인 조업조정에 노력할 것. ② 관민이 협력하여 노후선 대책을 추진할 것. ③ 수송상의 안전 코스트를 확보하는 관점에서의 운임 설정 등의 요망을 제출했습니다. 또 업계 단체인 일본조선공업회에 대해서는 92년 12월 17일의 제32회 조선산업 노사회의에 있어서 국제 협조의 추진, 적정 선가(船價), 적정 조업의 확립, 쾌적한 직장환경, 부채(浮體) 구조물 등의 직장환경, 기술자 육성, 조업순연에 의한 경영 안정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 말 예정되어 있는 제33회 조선산업 노사회의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여 엔고대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2) 노동조건 향상

93년 봄의 교섭에서는 ① 임금인상 : 정기승급 5,000엔+베이스업 7,200엔(12,000엔, 4.27%) ② 연간 일시금 : 51만+3.5개월(평균 151만엔, 전년비 3만엔, 2%증가) ③ 노동시간 단축 : 1995년도 1,900시간대, 휴일 1일 증가 ④ 퇴직금 40만엔 증가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94년 봄에는 임금인상, 일시금, 퇴직금, 시간단축 등에 노력하기로 하고 요구내용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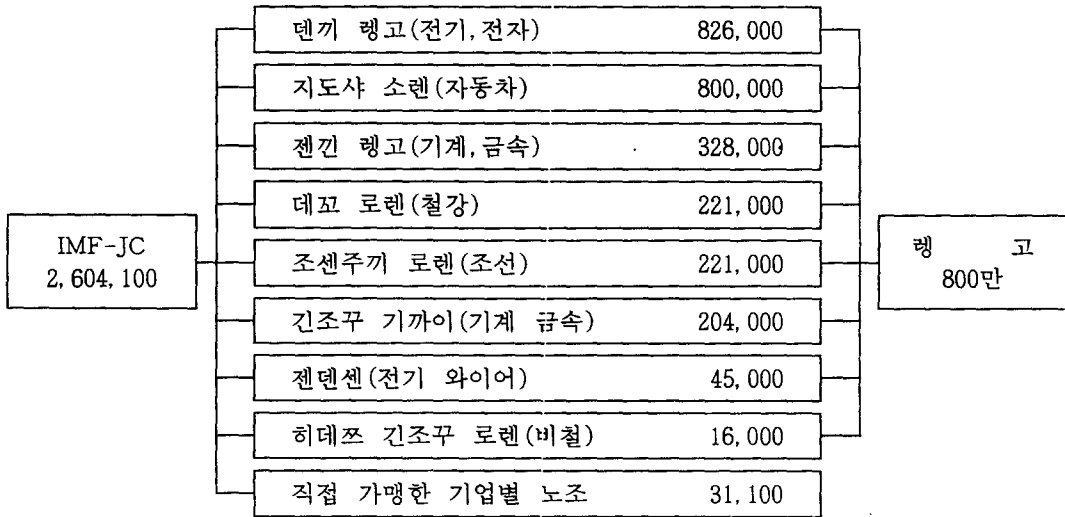
(3) 국제활동

금년 1월의 제6회 IMF아시아 조선작업부회(싱가포르)의 성과를 기초로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촉진시켜 세계의 조선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94년 5월에는 IMF세계조선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MF-JC조직표

산 별 연 맹

전 국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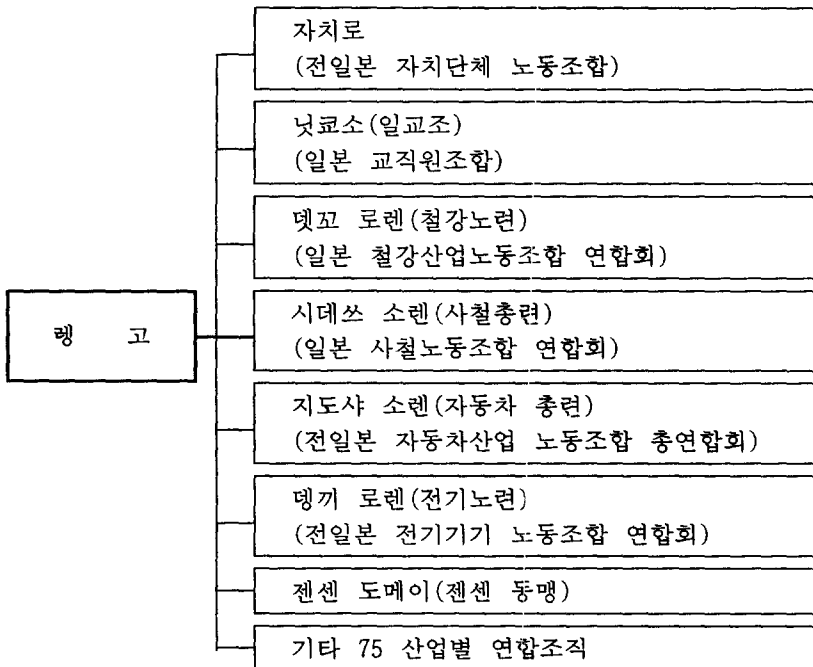


일본의 노동조합 구조

내셔널 센터

산업별 연합조직

기업별 조합



랭고 : 78구성조직 (4 우호참가조직 포함) 약 800만명

민간조직 62(4 우호참가조직 포함) 약 570만명

관공로조직 16 구성조직 약 570만명

일본 노동운동의 전개와 통합과정

일본의 노동조직은 1989년 11월 21일 구연합과 관공노조가 하나의 조직인 연합(레고 :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으로 통일되었다.

이 연합은 우호참가 4조직을 포함하여 78조직, 800만명의 거대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총평(소효), 동맹(도메이), 중립노련(추리쓰 로콘), 신산별(신산베쓰) 노동 4단체 체제에서 1987년 구연합과 총평의 병존체제로부터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노동계의 틀이 바뀌게 되었다.

한편 연합의 노선에 반대하는 좌파계 그룹은 전노련(젠로렌 :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노협(젠로쿄 : 전국노동조합연락회의)를 결성하여 이 연합에 대항하고 있다.

일본 노동조직이 하나의 조직체 연합으로 통일된 과정을 살펴보면, 1868년 명치유신으로 일본의 공업화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1897년에 노동조합기성회 및 철공조합 우애회가 결성되면서 노동조합 조직화 및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이후 2차대전중에는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었으며, 45년 8월 종전과 함께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한 노조활성화 조치에 따라 1년만에 1만여개 이상의 기업내 조합과 360만명의 조합을 조직하게 되었으며, 이들 조합이 산업별조직으로 1946년에 [산별회의 : 산베쓰 카이기]와 [총동맹 : 소도메이], 뒤를 이어 [일노회의] (1950년 해산)가 결성되었다.

이후 이합집산이 반복되다가 1964년에 [동맹 : 도메이]이 발족(동맹회의를 개조함)하면서 [총평 : 소효] (1950년 결성), [동맹 : 도메이], [중립노련 : 추리쓰 로콘] (1956년 결성), [신산별 : 신산베쓰] (1952년 결성)라는 “노동 4단체 체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중앙조직이 분립되게 된 원인의 하나로는 사상 및 노선상의 대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중반 이후에 경제가 안정성장기로 이행함에 따라 임금투쟁이 어렵게 되고,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 제도투쟁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사상과 노선차이를 뛰어넘어 노동전선을 통일하여 조직역량을 충실,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 이후 몇번의 노동전선 통일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선 민간노조만이라도 먼저 통일해야 한다는 [민국선행]방침이 합의되게 된다.

그 결과 1982년 12월에 노동 4단체의 틀을 넘어 민간노조의 느슨한 협의체로서 전민노협(젠민로쿄 : 전 일본 민간노동조합협의회)가 41개 단산(산별조직), 423만명으로 결성되어 정책, 제도 요구투쟁을 비롯하여 임금투쟁에도 관여하면서 일본노동운동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전민노협은 협의체로서 발족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 4단체는 계속 존속하였다.

그 이후 전민노협을 민간부문의 전국적인 중앙조직인 연합체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1987년 11월 민간의 노동전선통일체로서 구(연합)(전일본 민간노동조합 연합회)이 읍저버 및 우호참가를 포함한 62조직, 555만명으로 조직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맹(도메이), 중립노련(추리쓰 로콘)은 바로 조직을 해산하였고, 신산별(신신 베쓰)도 1988년 10월에 조직을 해산하였다. 다만 남아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맹은 [우애회의 : 유아이 카이기], 중립노련은 [중연 : 츠렌](중립노조 연합회)을 설치하였다. 한편 총평(소효)은 산하의 민간조합의 대부분이 구연합에 가맹하였지만, 다수의 관공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조직을 유지시켜 나갔다.

즉, 1988년 2월 이후 구연합을 중심으로 총평(소효), 관공노 및 우애조직, 전광공의 수뇌회의가 10여차례 개최되면서, 1988년 12월에는 [1989년 가을에 통일대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1989년 5월에는 [연합의 진로]등 통일을 위한 강령과 사안들이 마련된다.

이리하여 1989년 9월에 구연합과 19개의 관공노조에 의한 [통일준비회]가 결성되고 구체적인 통일대회준비가 끝나면서, 11월 21일에 관민의 주요조합을 결집한 연합이 결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총평(소효)은 같은 날 조직을 해산하고 남아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총평센터]를 설치하였다.

한편, 하나의 노동조직으로 통일된 [연합 : 랑고]의 강령이나 운동방침 등은 구연합에 기초, 계승하고 있지만 관공노가 새로이 참가함에 따라 개별과제에서는 노동기본권 확립 등이 종래보다 강화되고 있다.

연합은 출범당시 10개의 운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정책제도 요구투쟁], [종합생활 개선투쟁], [미조직 중소기업노조 대책], [국제연대활동], [정당과의 협력], [정치활동]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직으로 통일된 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구성조직의 이질성-총평(소효)출신과 동맹(도메이)출신-을 잘 극복해야 함은 물론 1,200만명의 조합원중 연합소속은 800만명이어서 나머지 조합원 조직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밖에 민간과 관공노조의 통합이어서 정책건의 등에서 공통과제, 전략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당지지 문제도 아직 미결사항으로 남아있다.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570-2, Sahn-dong Kwang-su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FKMTU NEWS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ki Chul

Editor Jin-Kwi Noh

FKMTU NEWS RELEASE

September 15 1993

No. 93-1

'93 Wage Struggle Evaluated FKMTU Unions Request 15.9% Up And Gain 8.6% Up

FKMTU had the regional officers meeting Sept. 10 1993 to evaluate '93 wage struggles of the affiliated unions. The evaluation covered the following topics: (a) the report on the regional evaluation (b) the examples of the successful wage negotiation (c) the activities of the regional office for '93 wage negotiation (d) the examples of combined wage struggle (e) the strikes (e) the evaluation on FKMTU-KEF Agreement of Wage Guideline and FKMTU guideline.

'93 wage negotiation started with FKMTU-KEF guideline. Of course, many unions arranged and submitted their own wage raise request before FKMTU(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KEF(Korean Employers' Federation) came to agreement, but did not go forward in negotiations due to the expectation that FKMTU and KEF would sign the wage guideline soon.

What is the FKMTU-KEF Wage Guideline ? In the past, Korean government, FKMTU and KEF have issued their own wage guideline separately. Government's guideline has not taken neutral line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nd fundamentally has played a role of restraining wage raise. Government announced at the end of last year that it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ir wage limitation policy, called 'total wage system'. However,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a little. Government pressed FKMTU and KEF to negotiate the single guideline if they would avoid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wage negotiation. FKMTU was authorized by its member organizations' representatives meeting to start negotiating the single wage guideline. It was reported by newspapers that FKMTU and KEF would lead to a compromise of around 8 - 9 percent wage raise guideline. However, KEF changed its position suddenly after government started ' One Hundred Days New Economy Plan'. KEF announced wage freeze. However, the negotiation resumed again and came to agreement April 1 1993. The agreement set not only the guideline of 4.7 percent to 8.9 percent wage raise, but but also common efforts for employment security, introduction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lower inflation and income tax cutdown for workers.

FKTU-KEF guideline has taken a significant effect upon wage negotiations in fact. The evaluations of the guideline are different industry by industry or organization by organization. The unions, operating at government-invested establishment utilized it in the breakthrough of wage freeze guideline, already set by the authority. To the contrary, the unions with lower wage members criticized harshly FKTU because the fixed percentage of the guideline meant the lower wage hike to those members. Major Non-FKTU unions also accused FKTU. Many unions criticized about the process rather than the meaning of top-level negotiation about wage guideline. FKMTU set its own guideline of 15.38 percent wage raise prior to FKTU-KEF guideline being set, with the average wages of metalworkers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FKMTU unions requested 15.9 percent wage hike which amounts to 70,331 Won. This figure is lower by 6.1 percent point than in 1992. It can be evaluated that most of FKMTU unions accepted the guideline of FKMTU. Most of unions completed wage negotiations in July with 8.6 percent wage increase on the base of basic wages. This rate is lower by 3.84 percent point than in 1992. Instead, most of unions gained additional benefits as a form of bonus and allowances. In reality, more and more unions tended to accept the temporary incentive bonus in return for the lower wage contract. This is a new phenomenon because Korean trade unions have so far involved majorly only in the increase of the fixed wages. Korean wage schemes are basically based upon seniority and age. This sort of wage scheme is not good for employers. Korean employers are trying to negotiate a new wage system which will be based upon personnel merit or ability rating. Government also hopes that the nationwide spread of the temporary incentive bonus system could help a new wage system take root as soon as possible. By the way, there are several unions which accepted wage freeze. 31 FKMTU unions appealed to strikes during negotiations.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strikes in all unions reduced from 146 in the first half of 1992 to 68 in the same period of 1993, strikes in FKMTU unions increased from 30 ones in the first half of 1992. Generally speaking, Korean workers tend to refrain themselves from taking collective action in recent times. There is no sufficient consensus about the reason for it. However, there must be no opposition when it is pointed out that economic recession in some industries and employment unsecurity are constituting one of most important reasons. Some people are warning the relative intensity of the conservatism among rank and file members. There are a controversy over this opinion.

Anyway, many unions are showing more rational, in other words, less emotional attitude in wage struggles. Hyundai unions' struggle are one exception. It is a fact that Hyundai unions' struggle were exaggerated by mass media to isolate strikers from Korean people. However, Hyundai unions showed good coordination of schedules of negotiation and actions between unions and their efforts to avoid the isolation from people. Government tried to show a new attitude towards industrial disputes this year. It refrained itself from involving its security forces in industrial actions if they meet the legal requirements. It kept the same position and tried to adjust disputes, but at last appealed to its conventional way to settle disputes. Instead, government condemned Hyundai employers, too. In fact,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he continuous Hyundai unions' disputes is known as authoritarian style of management. Government is now going to review Hyundai industrial relations thoroughly.

FKMTU with really unsufficient staffmembers could afford to give more time and more assisting service to affiliated union this year. FKMTU has supplied materials all year around and organized regional rally before starting wage negotiations. Particularly this year, FKMTU visited most of affiliated unions in negotiation to help them on the individual union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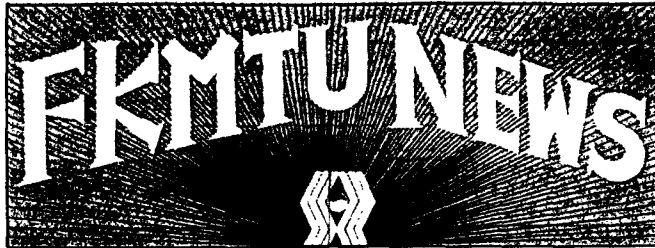
Request and Gain in '93 Wage Struggles of FKMTU Unions

Sector	Request		Gain	
	Amount (Won)	Percentage (%)	Amount (Won)	Percentage (%)
Metal Goods&Mechanical Eng.	74,503 Won	15.95 %	40,796 Won	8.66 %
Electrical & Electronics	63,847 Won	15.40 %	36,626 Won	8.95 %
Automobile	70,484 Won	16.53 %	39,611 Won	9.16 %
Non-ferrous	69,581 Won	16.66 %	36,271 Won	8.71 %
Shipbuilding	90,887 Won	16.15 %	38,691 Won	7.09 %
Iron & Steel	66,717 Won	14.48 %	31,446 Won	7.12 %
Others	69,880 Won	16.89 %	38,015 Won	9.16 %
A V E R A G E	70,331 Won	15.92 %	37,953 Won	8.62 %

Source : FKMTU

Note : The above figures are the averages of 512 FKMTU unions

FEDERATION OF KOREAN LABOURERS' TRADE UNIONS
1570-2, Sinlim-dong Kwanak-ku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kil Choi
Editor Jin-Kwi Noh

FKMTU NEWS RELEASE

September 28 1993

No.93-2

FKTU Decides to Submit A Petition for Labour Laws Reform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FKTU) executive body, composed of 20 industry-based member unions' representatives decided to submit a petition for the reform of labour laws to the parliament September 23 1993. Accordingly, the FKTU is now getting the supporting signature from parliament members. The FKTU is foreseeing that it will be able to submit it in the early October. The reform petition covers Trade Union Law, Labour Disputes Adjustment law, Labour Committee Law, Labour Standard Law and Workers' Day Law. The FKTU also submitted the tax law reform petition. The major labour laws requests by the FKTU are as follows:

< Trade Union Law >

1. Guaranteeing the basic trade union rights of below-grade-6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2. Deleting the prohibition of trade union political activities
3. Modifying the prohibition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by allowing the intervention of such third party, approved by the union member or union.
4. Introducing the provisions for the industry-based union system
5. Deleting the inspection of the authority
6. Enfor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of labour committee concerning unfair labour practice

< Labour Law Adjustment Law >

1. Expanding the definition of 'labour disputes' by including the breaking of the contract into the object of labour disputes additionally.

(continued)

2. Excluding taxi services, banks, broadcasting establishments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whose labour disputes can be brought to the compulsory arbitration and are dealt with longer cooling-off period.
3. Modifying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of public servants and defense industry by extending the provisions for public interest establishments to those workers' labour disputes.
4. Modifying the prohibition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by allowing the intervention of such third party, approved by the union member or union.
5. Shortening the cooling-off period (changing 10 days into 7 days for the ordinary establishments and 15 days into 10 days for the public interest establishment)
6. Prohibiting the new subcontracting of the employer during collective actions.
7. Integrating the role of conciliation into that of mediation.
8. Deleting compulsory arbitr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establishment.
9.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decide the emergency labour disputes adjustment from the minister of labour to the president.

< Labour Committee Law >

1.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Labour Committee from the ministry of labour in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hierarchy, nomination of committeeman and budgeting.
2. Upgrading requirements of a candidate of public interest committeeman.
3. Granting the authority of labour laws interpretation to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man.
4.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orders of the labour committee with severer punishments.

< Labour Standard Law >

1. Including all allowances into the definition of 'the ordinary wage' upon

(Continued)

which the calculation of overtime premium is based.

2. Lengthening the period of prior notification of dismissal from one month into 3 months.
3. Providing for a compulsory consultation with trade union prior to redundancy.
4. Providing for allowance of plant closure or redundancy which corresponds to 70 percent of the average wage of the concerned worker times his/her service years.
5. Enforcing the depositing of the retirement allowance into the outside financial establishments.
6. The automatic change of the over 3 months lasted temporary employment into regular one.
7. Guaranteeing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ithout loss of 'the ordinary wage'.

< Workers' Day Law >

1. Changing the date of Workers' Day from March 10 into May 1.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570-2, Seohui-dong, Kwangju-kyo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il Choi
Editor: Jin-Kwi Noh

FKMTU NEWS RELEASE

October 21 1993

No.93-3

Tripartite Committee Decides '94 Minimum Wage - 7.96 Percent Up -

The Minimum Wage Committee which is tripartite and has the authority to recommend the minimum wage to ministry of labour decided October 11 1993 to recommend the following minimum wage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1 1994 and August 31 1994: " The hourly minimum wage shall be 1,085 Won which is 7.96 percent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1993." According to Korean Minimum Wage Law, minister of labour should give both labour and management the opportunity of appealing against the recommendation by giving notice of it and then should notice the minimum wage as noticed without any appeal. The minimum wage should be decided until November 30 and be noticed until December 15. However, any appeal is not expected because a consensus was made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although any significant satisfaction is not seen from the viewpoint of labour. If '94 minimum wage will be decided as recommended by the Minimum Wage Committee, it is estimated that 102,321 workers who make up 2.1 percent of the whole workers at over 9 employees establishments will be covered by it. Of course, metalworkers are outside of its coverage. But metalworkers also will be affected significantly by it. The raise of minimum wage used to take a important effect upon wage negotiation.

(continued)

In Korea, minimum wage is decided once every year. But the Minimum Wage Law was revised August 1993. The minimum wage year was change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into September 30 to August 31.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year-by-year trend of minimum wage from the starting year on

Trends of Minimum Wage

Year	Hourly Minimum Wage	Monthly Minimum Wage	Increase Rate
1988	Group 1 462.50 Won	111,000 Won	
	Group 2 487.50 Won	117,000 Won	
1989	600 Won	144,000 Won	29.7 % to Group 1
			23.1 % to Group 2
1990	690 Won	165,000 Won	15.0 %
1991	820 Won	192,700 Won	18.8 %
1992	925 Won	209,050 Won	12.8 %
1993	1,005 Won	227,130 Won	8.6 %
1994	1,085 Won	245,210 Won	7.96 %

노사대책 · 법규활동

노사대책 · 법규부

1. 포항제철 협력사 통폐합에 관한 대책
2. 자동차 부품등 하청관련 정책건의
3. 신노동정책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4. '94노동대의원대회에의 의안제출
5. 특보제작
6. 질의회시

노사대책 · 법규활동

1. 포항제철 협력사 통폐합에 관한 대책

활동일지

93. 10. 29 : 포항제철에서 93. 10. 26 조말수 사장이 협력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협력작업 구조개선과 협력사의 자체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을 설명했다는 보도자료 배포(아래 자료1)
93. 10. 4 : 본노련 포항지역본부는 시청, 노동부, 포철에 노사정 간담회 요청공문 발송하였으나 포철측의 협조가 없어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음(자료 2)
93. 10. 11 : 시장을 면담하여 간담회 독촉
93. 11. 1 : 본노련 포항지역 본부 대책회의 개최. 본노련 노사대책국장 참석
93. 11. 2 : 시청, 노동부 방문하여 간담회 독촉
93. 11. 5 : 본노련 포항지역본부는 협력사노조 대표자회의 개최하여 포항지역대표자회의 구성기로 함
93. 11. 8 : 노총 포항지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화학지부, 택시지부, 대표자회의로 고용안정대책 위원회 구성
93. 11. 10 : 고용안정대책위원회 명의로 포철 사장에게 노사정 간담회 요청(자료 3)
93. 11. 12-11. 5 : 공대위 실무회의 4회 개최
93. 12. 9 : 노동부 항의방문
93. 12. 24-94. 1. 10 : 포철관련 정책건의를 위한 서명 작업(자료 4)
94. 1. 14 : 본노련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회의에서 특별결의(자료 5)
94. 1. 27 : 노총, 본노련, 노총 포항지부, 본노련 포항지역본부, 포항지역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 개최(결의문 자료 6). 이 회의 이후 포철측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됨(포철이 이와 관련하여 관련 회사에 보낸 공문 자료 7)
94. 2. 2 : 본노련은 노총 대표자회의에서 포철 관련 특별결의 안건 상정(자료 8)
94. 2. 3 : 노총 제153차 대표자회의에서 포철관련 특별결의(자료 9)
94. 2. 4 : 포철의 관련사 억압행위와 관련하여 노총, 금속, 화학, 노총 포항지부, 노총 금속본부, 화학 포항지역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하여 자료 10의 보도자료와 같이 행동방침을 결정.

포항제철, 협력작업 구조개선 추진

- 유사작업 일원화, 업체전문화, 1공장 1개사 전담화 등 협력구조 개선
- 세계 2위 제철회사 위상에 걸맞는 협력회사의 전문성 확보노력
- 협력회사 자체경쟁력 강화위해 공동 노력키로

포항제철은 신POSCO 창조를 위한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2위의 제철회사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회사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사·연계작업의 회사별 일원화, 업체전문화 등을 골자로 한 협력작업 구조개선과 재무구조 개선,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협력회사의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은 10월 26일 본사 대회의장에서 趙末守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력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협력작업 구조개선과 협력회사의 자체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협력회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포항제철은 물품가공, 제품포장, 구내운송, 실비수리, 부대작업 등 철강제조주공정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작업을 전문협력회사에 위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포철의 협력회사는 포항제철소에 30개사, 광양제철소에 22개사로 모두 52개사가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협력작업은 동일설비나 공장의 유사한 작업을 여러회사가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작업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작업관리가 복잡해질 뿐만아니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가 10%미만의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50%미만의 퇴직적립금 보유율을 보여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협력작업의 구조개선과 자체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연계작업을 각 회사별로 일원화 하고 공장 부대작업을 1공장 1개사로 전담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노사화합 차원에서 정년퇴직한 포철과 협력회사의 유경험자를 활용하는 소사장제도의 확대 운영, 지역협력차원의 구체적인 실현 등 협력작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경영혁신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제철은 협력회사의 자체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협력회사 임원들의 자율적인 현장 밀착관리를 유도하여 작업효율을 제고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협력회사 종업원수를 직접관리 규모인 500명 정도로 운영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전문분야별로 전환·조정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포철의 전문기술 이전과 선진제철소와의 기술교류 정례화를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전문기능인력 양성방안과 移職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경영평가 우수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철강업계에서는 철강업의 저성장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원가경쟁력을 무기로 도전해오고 있는 미니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코스트 절감노력과 아울러 경영합리화를 통한 기업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회복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엔고와 미국의 반덤핑 제소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을 맞고 있는 일본 철강업계는 인원과 설비합리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신일철의 경우 일부 설비를 휴지하거나 91년부터 93년까지 철강부분의 인력을 15%나 줄일 계획으로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나라와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제철을 비롯한 협력회사의 자체 경쟁력 확보와 경영합리화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생존문제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포항제철은 지난해 2천만톤 생산체제 완성으로 양적성장을 마무리하였고 신경영진출범이후 질적성장을 위한 신POSCO창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기업체질 개선을 위해 출자·협력회사를 망라한 전부분에 걸친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작업 구조개선과 협력회사의 자체경쟁력 확보노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윤리강령에도 명시했듯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한 협력회사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회 사 명		작 업 내 용	대표자	작 업 개시일	인 원 (직접)
포	포장	삼 정 강 업	제품포장작업	권 오 훈	76. 8. 12	443
	가공	삼 풍 공 업	스카핑 및 부대작업	박 영 식	73. 2. 24	411
		대 성 기 업	SCRAP 조작작업 및 부대작업	정 윤 종	76. 12. 1	290
		서 울 용 접 봉	주형수리 및 부대작업	박 성 길	76. 6. 1	204
		선 일 기 업	새류처리 및 부대작업	윤 종 구	81. 5. 21	149
		신 립 공 업	사분암 미파쇄작업	최 찬	86. 4. 1	54
		거 양 상 사	STS 부산물 처리작업	김 동 섭	89. 4. 1	88
항	노무	동 일 기 업	열연제품 및 스라브조직작업	김 점 조	71. 12. 1	772
		성 립 기 업	선강 및 압연지역 노무작업	박 성 록	79. 6. 1	970
		화 성 기 업	강판제품 결속 구내조직	김 광 삼	78. 6. 1	333
		(주)대 농	부산물 조직작업	박 영 석	77. 3. 1	113
		(주)대 원	형석파쇄 및 청소작업	이 원 국	78. 1. 1	351
		대 한 B O C	산소 및 ARGON 충전작업	김 영 진	76. 12. 7	14
		동 원 개 발	환경록회 관리작업	홍 대 원	88. 1. 21	150
제	수리	제 철 정 비	기계 및 전기정비 작업	연 상 우	82. 4. 1	1,246
		거 양 로 공	고로 COKE로 및 연와보수	인 순 일	73. 4. 10	842
		포 스 콘	전기제어 정비작업	장 문 현	79. 11. 10	84
		한 전 기 업	기계 전문정비작업	이 두 훈	75. 6. 1	676
		동 성 정 비	전기 전문정비작업	유 철 부	73. 5. 3	111
		(주)K I C	H/F및 기기보온작업	최 내 전	75. 4. 10	80
		대 신 공 업	표면경화 육성작업	박 영 석	83. 10. 1	81
		(주)공 영	집진설비 성능측정 및 정비	정 봉 규	89. 6. 21	198
		영 남 통 신	통신보수작업	정 하 현	90. 4. 1	137
		신 진 기 업	고로수재설비 수리	송 칠 룡	92. 2. 10	20
철	성	진 기 업	압연 Roller루 전문수리	이 상 윤	92. 4. 1	19
	운송	(주)한 진	구내운송작업	황 창 학	72. 4. 9	56
		(주)동 방	분과 CROP 운반작업	하 양 학	72. 4. 9	23
		삼 일 기 업	형선 및 부원료 운반작업	윤 도 원	79. 3. 30	57
		영 일 기 업	구내운송작업	정 봉 화	86. 2. 11	100
	소계	3 0 개 사				8,174
소	포장	삼 정 강 업	제품포장작업	권 오 훈	86. 4. 1	540
	가공	부 국 산 업	지금회수 및 SCALE조작작업	남 상 규	87. 5. 1	238
		삼 진 기 업	SCRAP 조작작업	소 상 진	86. 12. 1	207
		태 금 산 업	사분암 미파쇄작업	박 근 수	90. 7. 2	266
		삼 풍 공 업	연주 SCARFING 작업	박 영 식	86. 10. 1	266
	노무	광 양 기 업	공장지역 환경관리 작업	강 순 행	85. 4. 1	714

구 분	회 사 명		작 업 내 용	대표자	작 업 개시일	인 원 (직접)
광 양 제 철 소		삼 화 산 업	제품 구내조작 작업	김 재 복	86. 10. 1	528
		정 화 산 업	제강공장 부대작업	이 동 신	90. 11. 16	115
		광 양 조 경	환경녹화 관리작업	김 용 서	90. 9. 1	115
	수리	제 철 설 비	기계정비 작업	송 경 섭	89. 8. 1	1,156
		포 스 콘	전기제어 및 계장정비작업	장 문 현	89. 12. 1	778
		거 양 로 공	고로 COKE로 및 연화보수	인 순 일	87. 4. 1	657
		대 양 통 신	통신보수작업	김 용 태	92. 2. 1	98
		케 도 공 영	철도보선작업	김 영 길	87. 4. 1	82
		(주)공 영	집진설비 성능측정 및 정비	정 봉 규	89. 7. 1	114
		대 신 공 업	표면강화 육성작업	박 영 서	89. 7. 1	39
		(주)K I C	H/F 작업 및 기기보온작업	최 태 전	89. 7. 1	101
		혁 성 실 업	련주공장정비 및 기기도장작업	황 의 빈	91. 10. 1	246
		성 원 기 업	발전, 송풍설비전문수리	이 병 정	92. 4. 1	41
		해 정 산 업	항만, 하역, 설비, 수리	남 상 태	92. 8. 1	36
		경 진 공 업	수재설비 운전, 정비작업	구 자 동	93. 4. 1	36
	운송	성 암 산 업	구내운송 및 부대작업	김 양 주	85. 1. 21	270
	소계	2 2 개 사				6,542
계	52개사					14,716

• 인원 : 하도급 포함 실투입 직접인원

〈 자료 2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항지역본부

(83-3728)

금 포 본 : 제 93-45 호

1993. 10. 4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관련부서장

제 목 :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요청건

1. 국가 번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포항시, 노동부 포항사무소, 포항제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본부에 가맹된 포항제철 협력회사 및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충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입니다.

3.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이는 포항제철의 기업 경영채신을 위한 신POSCO정책의 일환으로 자회사 및 협력회사 기업통폐합 및 인원감축설로 인해 각단사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및 고용과 산업평화안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어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통해 포항 철강공단의 노·사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및 산업평화정착을 이루어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요청하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끝.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포 항 지 역 본 부
의 장 백 종 부

수신처 : 포항시장, 노동부포항사무소장, 포항제철대표이사

포항지역 노동조합 고용안정 대책위원회

(직 인 생 략)

발 신 : 포노대

1993. 11. 10.

수 신 : 포항제철 사장

참 조 : 노무이사

제 목 : 노사정 간담회 요청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항제철의 기업경영 쇄신을 위한 신POSCO 정책일환으로 협력 및 자회사 기업
통폐합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포항지역 전체 근로자들이 사기저하 및 고용에 관한 불안
감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산업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므로 포항지역 전체노동조합 대표자
들이 포항지역 고용안정 대책위를 구성하여 노동부 포항사무소에 노사정 간담회를 요청하였
으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지역노동조합고용안정대책위원회

공	동	의	장	이	상	철
				백	종	부
				배	상	일
				김	재	호

정책건의를 위한 포항지역 철강노동자 서명 돌입하면서……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이다. 특히 철강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포항제철은 우리나라 경쟁력의 심장부며, 그 경영방침에 따라 우리 철강산업의 미래가 좌우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강고히 발전하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발전이 있어야 하고 사기 충천한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이다. 기술은 돈으로 사오면 되지만 노동자의 마음은 돈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노사관계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도처에서 소사장제·용역 등 고용불안이 기업주 일방적 조치로 야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업 포항제철은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전근대적 독재적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ILO가입으로 대한민국 어느 회사보다도 먼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함에도 포항제철은 87년 노동자대투쟁시 위기를 한순간 넘기기 위해 노조가 세워졌다가 정부와 자본측의 노동탄압으로 자신을 얻자 하루아침에 노조가 무력화되고 지금 사전에도 없는 '휴면노조'상태에 들어갔다. 이것은 국제적 수치이며 분명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문민정부가 되면 포철에 정상적 노사관계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의 포철은 지금 한술 더 떠서 노동자에 대한 혹독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조말수 사장은 '신포스코 창조를 위한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협력사 통폐합 계획을 통보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금 성립기업, 체철정비등에서 통폐합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타사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3개년 계획은 상당수의 인원감축과 임금억제, 능률급도입에 의한 노동자간 경쟁강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분명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민적 기업인 포철은 당해 노동조합들과는 일체 상의없이 자본관계가 없는 협력사에 까지 통폐합을 사실상 '강요·지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는 93년 10월 4일 협력사 통폐합에 관하여 협의키 위한 회의를 갖자고 요청했음에도 100여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실현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철정비에서는 회사측이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지금까지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회사측의 경영합리화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상호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만 후유증도 없을 것이고 노동자의 사기도 유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 일이 더이상 방치되면 결국 포철과

포철협력사 그리고 여타 철강업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에서 합리화계획이 무자비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지금 내문제가 아니므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머지않아, 그 화살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94년도 임금교섭부터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포항지역의 철강노조부터 일치 단결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와 포항제철, 그리고 각 철강업체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면서 본 서명서에 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 포항제철은 현재 진행중인 통폐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당해 노조들과 충분히 합의한 후 원만히 처리토록 하라 !
- * 포항제철은 일방적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속에 수정하여 실시하라 !
- * 정부는 포항제철에 노조가 설립되어 정상운영 되도록 지도하라 !
- * 정부는 포항제철이 협력사 통폐합등 3개년계획 실시와 관련하여 노조와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 !
- * 각 철강업체 경영진은 고용불안을 일방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이상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포철 및 각 철강사 경영측에 있음을 밝혀두면서 철강 노동자가 뚫뚫 뭉쳐 요구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993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조합원 일동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연석회의 특별결의 사항(94. 1. 14)

포항제철 조직 및 협력사 통폐합건에 관한 결의

1. 결의안제출 배경

포철 노동조합은 91년 1월 조합원 집단탈퇴건으로 현재 조합원 14명의 휴면노조상태에 있으나 자체역량으로는 노조재건이 어려운 상태이며 연맹 및 노총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으며 포철노조의 휴면화에 따라 매년 연초에 임금동결등을 선도함으로써 특히 철강 부문과 포철협력사의 임금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포철경영합리화 3개년계획에 따라 현재 협력사 통폐합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취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임. 본노련 포항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포철에 대해 노사정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왔으나 포철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있는 상태임. 포항지역본부는 93년 12월 하반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의 일환으로 조합원 서명을 받은 바 있음(서명지 별첨). 국민적 기업인 포철에 노조가 부정되고 있고 협력사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노조와 전혀 상의없이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저하를 수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행위는 노동3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총력적 활동이 요청되고 있음.

2. 결의내용

1. 포항제철은 현재 진행중인 협력사 통폐합을 중단하고 노조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하되 어떤 경우라도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2. 포항제철은 정상적 노조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정부는 상기 1항 및 2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4. 연맹은 위의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노총 및 포항지역노조, 그리고 국제노동조직과의 긴밀한 연대체제를 구축하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포항제철 및 협력사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 의 문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민적 기업 포항제철이 문민을 표방하는 현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가장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강제로 악명을 떨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91년의 조합원 집단탈퇴건과 함께 노조를 사실상 매장한 포항제철은 선도적이고 기만적인 임금동결로 정부 및 자본측의 임금억제정책에 봉사하는가 하면 자본관계도 없는 협력사에 대해 계약상의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경영 및 노사관계에 깊숙히 개입하여 지시와 명령을 일삼고 있고 협력사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노사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노조의 대화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한 채 일방적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의 이와 같은 반노동자적 정책은 여타 철강업체로 확산되어 철강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포항제철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때문에 포항제철의 경쟁력향상을 부정하지는 아니하지만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체의 합리화 방안은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노사문제가 포항제철의 노동3권 무시의 경영방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포항제철에 정상적 노조를 구축하고 노동3권 무시의 초헌법적 경영방침을 분쇄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공통된 인식위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다 음

1. 포항제철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정부는 포항제철 노동조합을 즉각 정상화 시키라
1. 정부는 포항제철의 반노동자적 경영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1. 포항제철은 일방적 협력사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포항제철은 노조와해 목적으로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키라
1. 정부는 철강산업의 반노동자적 고용정책을 즉각 중단시키라
1. 국회는 국정감사 불참석 관계자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
1. 우리는 위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 노동조직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한다.

1994년 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포항지부	금속노련포항지역본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경화학동해지부	경북포항지역택시분회

강원산업, 삼정강업, 성림기업, 서한정기, 현대종금, 흥화공업, 동부제강, 동일기업, 동일철강, 동성철강, 대성기업, 동방금속, 서울용접봉, 동국제강, 조선선재, 제철정비, 부산파이프, 한금코스틸, 세아특수강, 한국주철관, 거양로공업, 삼화화성, 경안실업, 애경공업, 영일기업, 제철화학, 조선내화, 제일중공, 아주시멘트, 고로시멘트, 포항시청, 동영, 삼화백토, 대한BOC, 평해광업, 거양개발, 서라벌식품, 안성교통, 영광교통, 육일교통, 동해교통, 대동운수, 태경산업, 한국협화

〈자료 7〉

노무기 : (220 - 0480)

94. 2. 2

수 신 : 대표이사 :

제 목 : 당사 비난결의 참여경위 회신요청

내 용 : 1. 평소 철강산업 발전에 대한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94. 1. 27(목). 금속노련 포항지역 본부가 주관이 되어 소위 “포항제철 및 협력 회사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형식으로 당사의 경영 정책을 극렬히 비난하고 개입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당일 저녁지방 TV방송(KBS, MBC)에 보도 하였는 바

3. 이는 형법 제307조,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및 노사자치 존중이라는 노동법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사 명의를 적시된 동 결의참여 경위에 대하여 '94. 2. 5(토)까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유인물 사본 1부.

끝

포 항 중 합 제 철 주 식 회 사

사 장 조 말 수

〈자료 8〉

금속노련노사	제197호	1994.	2.	2.
수	신	노총위원장		
제	목	노총대표자 회의안건	상정	

1. 일천만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소위 국민적 기업인 포항제철에서 지난 91년 조합원 집단탈퇴건으로 노조가 휴면상태에 들어간 이후 포철은 매년 임금동결등으로 정부의 임금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포항지역노조 및 철강산업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쳐왔고 93년 10월 26일에는 협력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포항제철 사장은 경영합리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2개 협력사를 19개사로 통폐합한다는 일방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입수한 본노련 포항지역본부는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요청한바 있으나 포항제철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노조측에서 경영합리화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합리화가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가 사전 협의하는 가운데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은 협력사 노조들과의 대화를 무시한 채 일방적 합리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제철노조가 휴면상태(현재 조합원 14명으로 일체의 기능이 없음)에 있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는 일반적 분석에 따라 본노련은 포항제철의 조직재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지난 1월 27일 포항에서 노총, 본노련, 노총 포항지역본부, 본노련 포항지역본부, 포항지역 노조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별첨과 같이 결의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가 있자 포항제철측은 동 회의에 참석한 노조의 회사를 대상으로 납품계약을 끊겠다는 등 협박과 3자 개입, 명예훼손, 명의도용등으로 문제삼겠다는 등 파렴치한 협박을 극심히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업이라는 포항제철에서 노조가 부

정되고 무시되는 처사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명예를 해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매운동 등을 야기하여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노련은 94.2.3.일 개최되는 노총 대표자회의에서 다음사항을 결의하고 뒷받침해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요청하는 결의사항 －

1. 우리는 정부와 포항제철이 포항제철노동조합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포항제철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즉각 철회하고 당해 노조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국회의 증언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포항제철 관계자를 즉각 고발조치하라.
4. 포항제철은 노조재건활동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압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5. 노총은 상기사항의 실현을 위해 대정부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원장 박 인 상

포항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노총)

국제화, 개방화, 문민화와 민주화의 전세계적 추세속에서, 국민적 통합과 노사협력을 통한 정의복지 사회구현을 해야 할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그것도 국민적 기업, 세계적 기업임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포항제철에서 일시에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이 과정에 회사의 개입 의혹이 짙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기업과 사회발전의 건전한 균형추인 노동조합의 와해와 더불어, 다수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경제적 폭력이나 다름없는 포항제철의 협력사에 대한 무자비한 합리화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후 노동기준의 국제화 추세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노동과 환경을 이유로 예견되는 통상마찰의 심화속에서 국익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일동은 200만 조직 노동자와 더불어 포항지역 노사관계 안정화와 포항제철 노동조합 조직 복원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 결의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정부와 포항제철이 포항제철 노동조합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포항제철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즉각 철회하고 당해 노조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포항제철 노동조합의 유명화와 관련,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짙으므로 정밀근로감독 등을 통하여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의법 조치하라.
1. 우리는 포항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항제철 노동조합 조직 복원을 위해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보 도 자 료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7일 개최된 포철 및 협력사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 이후 포철에 의해 협력사등 관련회사에 가해지는 압박행위에 대처키 위해 노총 포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논의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민적 기업인 포항제철은 노사화합원년을 기록하려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정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 현재 포항제철이 1월 27일 개최된 포철 및 협력사 노사관계 정상화 회의 참석을 이유로 협력사, 자회사, 출자회사 및 거래회사에 가하고 있는 압박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총의 전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직적,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고 94년도의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중앙교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총은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여 이 문제를 국익과 관련된 문제로 제기할 것이며 전조합원 서명 및 집회 개최와 국회 국정감사 요구, 외국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 :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남 일 삼
한국노총 포항지부 지부장 이 상 철
금속노련 조 직 국 장 이 진 우
금속노련 노사대책국장 노 진 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 백 종 부
화학노련 노사대책국장 서 정 진
화학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 박 영 수

2. 자동차 부품등 하청관련 정책건의

'94 노총, 경총, 정부간 정책, 제도개선 협의와 관련하여 94.1.25 개최된 본노련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문제를 공식안전으로 제기키로 결의한 바 있고 94.2.3 개최된 노총 대표자회의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공식안전으로 채택, 이의 구체적 대안마련을 위해 본노련은 94.3.11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노총에 정책건의 하였다.

자동차부품 하도급거래실태 및 대책

1. 원사업자(또는 모기업) 부당행위 실태

가. 제품단가 부당결정

- (1) 생산성향상운동등으로 향상된 생산성만큼 제품단가 삭감
갑 자동차는 94년에 2%정도 공제될 것으로 보이며 을 자동차는 부품회사측이 단가를 써내도록 함으로써 부품업체는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93년도 생산성 상승분인 10%정도를 줄여서 단가를 제시하고 있음(하도급거래공정법 제4조, 계열화촉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배)
- (2) 가격인하효과를 노리기 위해 부당하게 일방적인 불량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있음(하도급거래공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계열화촉진법 제11조)
- (3) 갑 자동차는 95년부터 모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하청기업이 선택토록 할 예정임(하도급거래공정법 제4조)

나. 부당한 계약

- (1) 부품업체의 납품중단에 따른 배상금은 무거운 반면 모기업은 그런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음
- (2) 부품업체의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고용안정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계약물량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모기업의 이원화정책등으로 물량이 불안정하여 하청업체는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고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제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하도급공정거래법 제8조, 제19조, 계열화촉진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제11호)

다. 하청업체 노사문제에의 부당개입(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8조, 노조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

- (1) 일상적인 하청업체 노조활동 파악
- (2) 임금인상시 인상분을 조사하여 하청업체에 압력을 가함
- (3) 모기업보다 임금인상을 낮게 하도록 압력을 가함
- (4) 을 자동차는 계약조건으로 “앞으로 노사분규를 안겠다”는 노조측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시 물량을 빼가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회사 및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음

라. 모회사 차량 강매

- (1) 모회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청업체에 배정하고 그 대금을 납품대에서 공제함(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17조, 계열화촉진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마. 납품대금 결제

- (1) 신부품 가공을 위해 모기업이 제시하는 설계에 따라 금형을 가공했으나 무책임한 설계변경등으로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의 손해 발생

바. 모기업 전도금의 문제

- (1) 모기업이 제공하는 전도금의 이자율이 높고 기간이 단기간임

사. 모기업측 외주관련요원의 횡포 및 비리

2. 모기업의 부당행위에 따른 영향

- (1) 부품업체 자본축적 결여에 따라 자체 기술개발의 여지가 없음
- (2) 부품업체가 낮은 단가때문에 기준이하의 원자재를 사용케 되어 제품의 질을 악화시킬 소지가 큼
- (3) 커다란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
- (4)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제약

3. 대책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강구

현재 하도급거래나 계열화의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으나 하청업체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사에 대해서도 하청업체들이 모기업의 보복을 두려워 하여 진실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다음 몇가지 조치들이 선택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 (1) 계열화나 하도급거래에 따른 계약서나 납품단가명세서가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점검되도록 해야 함 .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소, 신고된 기업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추출한 기업에 대하여 거래관련 서류를 조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여부와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야 함

나. 모기업의 하청업체 노사문제 개입사항에 대한 노총 및 산별노련의 동시적 고발조치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

다. 하청업체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

라. 업종별 하청업체 연대기구 형성후 모기업 노조와의 협력체제 구축

마. 모기업 외주요원 윤리의식 제고 및 비리에 대한 처벌

3. 신노동정책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

- (1) 일시 : 93. 11. 9 - 11. 11
- (2) 장소 : 한국노총 교육원
- (3) 참가자수 : 가맹노조간부 150명
- (4) 세미나 목적 : 문민정부의 등장과 공산권 붕괴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책을 논의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둠
- (5) 세미나 일정 : 아래 자료
- (6) 참석자대상 실태조사 : 아래 자료

일 정 표

93. 11. 9(화) 12:00-13:00 중식
 13:00-14:00 등록
 14:00-14:30 개회식, 생활안내 및 기념촬영
 (이주완 노총사무총장)
 15:30-15:40 휴식
 15:40-17:00 신노동정책과 노동운동 정세(본노련 김장선 부위원장)

 17:00-17:10 휴식
 17:10-18:30 임금구조 및 직능급에 대한 해부(노동연구원 이선 박사)
 18:30-19:30 석식
 19:30-22:00 단결의 밤
93. 11. 10(수) 07:00 기상, 세면, 운동
 08:00-09:00 조식
 09:00-10:20 노조의 경영참여와 각국사례(김상곤 한신대 교수)

 10:20-10:30 휴식
 10:30-12:00 고용불안에 대한 노조의 대책(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2:00-13:00 중식
 13:00-14:50 일본의 임금제도 및 고용대책과 경영참여
 (우메하라 IMF-JC 사무국장)
 14:50-15:00 휴식
 15:00-16:30 전환기의 노조운동 방향(섬유노련 기획실장 이원보)
 16:30-16:40 휴식
 16:40-18:00 노동법 개정의 방향(원정연 노총 부실장)
 18:00-19:00 석식
 19:00-22:00 연맹과의 대화
93. 11. 11(목) 07:00 기상, 세면, 운동
 08:00-09:00 조식
 09:00-11:00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석자 발표)
 11:00-11:10 휴식
 11:10-12:10 위원장 총평 및 특강(본노련 박인상 위원장)
 12:10-12:30 폐회식
 12:30-13:30 중식

종합토론을 위한 설문지

1. 귀 동지는 신노동정책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좋은 것이 더 많다(23.9)%
 - (2) 나쁜 것이 더 많다(76.1)%
2. 귀 동지는 임금에 직능급제도의 일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5.3)%
 - (2) 반대이다(46.3)%
 - (3) 노조의견이 반영되면 찬성이다(47.9)%
3. 귀 동지는 현행 노사협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32.3)%
 - (2) 반대이다(20.8)%
 - (3) 독일식 공동결정제로 바뀌면 찬성이다(46.9)%
4. 귀 동지는 QC활동이나 제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45.8)%
 - (2) 반대이다(8.4)%
 - (3)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찬성이다(45.8)%
5. 귀 동지는 성과배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34.3)%
 - (2) 반대이다(24.2)%
 - (3) 집단평가에 의할 경우는 찬성이다(41.5)%
6. 귀 동지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84.3)%
 - (2) 반대이다(25.7)%
7. 귀 동지는 경총, 노총합의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찬성이다(3.3)%
 - (2) 반대이다(35.9)%
 - (3) 민주적 절차로 결정한다면 찬성이다(45.7)%
 - (4) 부대조건 실현이 보장된다면 찬성이다(15.1)%
8. 귀 동지는 노총의 노동법개정 청원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좋다고 생각한다(40.0)%
 - (2)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46.3)%
 - (3)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13.7)%

4. '94노총 대의원대회에의 의안제출

의 안 명	의 안 내 용	제 출 이 유
개방화에 따른 노조의 대응방안 수립	개방화에 따른 자본측의 합리화 공세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전조직적으로 확산시킨다. 특히 경쟁력강화의 경우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바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각 주체의 책무를 정확히 분석하여 요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	개방화를 이유로 한 경영합리화 및 이데올로기 공세가 급강화되고 고용문제, 자본측을 위한 규제해제등 험난한 노동운동정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수립, 실천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심각할 정도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별노조 강요지침 철폐	노조를 법인단위로 하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을 현행 노조법에 맞도록 개편	현행 노조법은 단위노조의 형태에 대해 규제가 없으나 이행안됨
포철, 삼성등 주요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및 유령노조해체활동 전개	포철, 삼성등 주요 사업장 조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유령노조를 해체해 나간다.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 노동기준 이행여부가 조만간 국제무역 규제의 요인으로 등장할 것인 바 정책적으로 문제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노동조합들을 결성하며 자주적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있는 유령노조해체를 추진한다.
표준생계비 모델 작성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노조의 임금요구를 위해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생계비 모델을 작성	최저생계비에 접근하거나 상회하는 노조들이 임금요구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산업안전활동에의 노조 참여권 강화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여 노조측 산업안전담당에게 기업규모에 따른 유급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위험작업 중지권을 노동자 대표에게 부여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공동결정 기능으로 바꿀 것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사상 및 회사비용증대를 막아야 하나 현재 거의 경영측에 산업안전활동권이 부여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노사협의회법을 경영참여법으로 전환	현재의 노사협의회법을 사안에 따라 노사협의, 합의등 공동결정이 보장되고 노조의 정보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영참여법으로 개편	경영참여없이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나 현행 노사협의회법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영참여법의 제정이 시급함

5. 특보제작

- (1) 노동법개정관련 특보
 - 근로기준법 (93. 10. 16)
 - 노동쟁의조정법 (93. 10. 23)
 - 노동조합법 (93. 10. 30)
 - 고용관련법 (93. 11. 6)
 - 근로자 파견법 (93. 11. 13)
- (2) 신년사(94. 1. 1)
- (3) '94입투관련 1호(94. 3. 5)

1993년 10월 16일 제93-1호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정해설 I>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 인 상

근로기준법

이렇게 고쳐야 한다 (한국노총 국회청원내용)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해야한다.

제27조의 4 신설요구 :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토록 의무화하라 !

제27조의 5 신설요구 : 정리해고나 폐업시 정리수당(근속년수×평균임금 70%)을 지급하라 !

기업도산으로 퇴직금 못받는 것 막자.

제29조의 2 신설요구 :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케 하라 !

임시직제도 악용을 막자.

제29조의 2 신설요구 : 임시직도 3개월 지나면 자동 정식사원 되게 하라 !

임금깎아먹는 노동시간단축 막자.

제42조의 2 신설요구 : 노동시간단축시 월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말라 !

결근 하루로 연차 2일 깎이는 것 막자.

제48조 1항 개정요구 : 9월이상 출근하면 연차 10일을 보장하라 !

모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제19조의 2 신설요구 :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키로 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라 !

해고예고수당을 3개월분으로 하라.

제27조의 2 개정요구 : 해고예고를 90일전에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으로 3개월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

이것만은 막자(경총의 요구)

경총은 잔업수당 깎아먹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하자는데…… “기업은 월 500억원의 이익을 본다”

경총은 4주단위 기준근로시간 44시간×4주(중소기업 46시간×4주)의 범위내라면 특정일에 8시간 이상, 특정주에 44시간(중소기업 46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켜도 잔업수당을 지급안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잔업수당이 깎여 월간 10시간만 변형시켜도 500억원의 돈이 기업주에게 넘어가고 몸은 몸대로 녹초가 된다. 그리고 친구 만나는 일과 가정 생활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경총은 잔업수당, 특근수당을 25%로 낮추자는데…… “기업은 월 700억원의 이익을 본다”

현재 통상임금 50%이상 지급하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근수당을 25%로 낮추자는데 이렇게 법이 개악되면 10인이상 사업장만 하더라도 월 700억원이 노동자의 월급봉투에서 기업주의 금고로 들어간다.

경총은 주휴를 무급으로 하자는데…… “기업은 월 4,000억원의 이익을 본다”

현재 유급으로 주던 주휴를 무급으로 하자는데 그 경우 월간 4,000억원의 돈이 노동자에게서 기업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총은 월차휴가를 없애자는데…… “기업은 월 1,000억원의 이익을 본다”

현재 월만근시 1일주던 월차휴가를 없애자는데 이렇게 되면 1,000억원의 돈이 노동자에게서 기업주의 손으로 넘어간다.

경총은 생리휴가를 없애고 그 일수를 산전산후 휴가로 하자는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는 대신 산전산후휴가를 현행 60일에서 72일로 늘린다는데 이 경우 기업주는 미혼여성의 경우는 미혼기간 근속월수 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고 기혼여성의 경우는 기혼기간 근속월수에서 24일을 뺀 일수(2자녀 출산의 경우)의 이득을 보게 된다.

경총은 휴업지불을 통상임금 70%로 깎자는데……

현재 평균임금 70%인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70%로 깎자고 한다. 현재 평균적으로 볼 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70%밖에 안된다.

경총은 퇴직예고제를 도입하자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시 1개월전에 기업측에게 예고토록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에 잔업, 특근을 안시킬 것이고 그러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대폭 줄게 된다.

경총은 파트타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깎자는데……

경총은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휴일, 휴가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파트타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열악해지고 따라서 기업주는 정식사원대신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게되어 고용이 불안해지고 정식사원도 피해를 본다.

저지하자 노동법 개악! 고치자 독소조항!

1993년 10월 23일 제93-2호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정해설 Ⅱ>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 인 상

노 동 쟁 의 조 정 법

이렇게 고쳐야 한다(한국노총 국회청원내용)

단체협약 불이행시도 쟁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제2조 개정요구 : 단체협약을 안지킬 때도 쟁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주가 단체협약을 지키도록 보장하라 !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보장하자.

제12조 2항 개정요구 :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고쳐 적어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쟁의행위할 수 있도록 하라 !

노조가 인정하면 누구도 지원가능토록 보장하자.

제13조의 2 개정요구 :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고쳐 당해 노조가 인정하면 누구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브로커등의 개입은 단호히 엄금토록 하라 !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냉각기간을 단축하자.

제14조 개정요구 : 기업주가 쟁의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악용되는 냉각기간을 일반사업은 종전 10일을 7일로, 공익사업은 종전 15일을 10일로 단축하라 !

쟁의중에 하청빼돌리는 것을 막자.

제15조 개정요구 : 쟁의중에 금형을 빼가고 하청으로 돌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자 !

일방중재제도를 없애자.

제30조 개정요구 : 일방중재 떨어지면 쟁의도 못하고 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하며 따라서 일방중재조항이 있는 회사는 기업주가 아예 노조
요구를 묵살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바 이를 완전
철폐하라 !

긴급조정 결정의 신중성을 보장하자.

제40조 제1항 개정요구 : 지금 노동부장관이 내리는 긴급조정 결정권을 헌법상 긴급명령권
자인 대통령에게 맡겨 보다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라 !

이것만은 막자(경총의 개악요구)

경총은 쟁의를 막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에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방해키 위해 쟁의행위 돌입시 3일전에 사전 기업주에게 신고토록 요구하
고 있다.

경총은 경영·인사권으로 노동자의 코를 꺾기 위해 근로조건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쟁의
행위를 금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쟁의에 사전 대비하여 제품·금형을 빼내고 하청으로 빼돌리기 위해 냉각기간을 20
일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쟁의신고를 가능한한 반려시켜 쟁의를 막기 위해 쟁의 적격여부 심의 제도를 부활하
자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자유 봉쇄보다 노동자우대 먼저하라 !

1993년 10월 30일 제 93-3호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정해설 Ⅲ>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 인 상

노 동 조 합 법

이렇게 고치자 (노총 국회청원내용)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자

제8조 개정요구 : ILO조약에 맞게 6급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정권시녀화를 막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 하라 !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자

제12조 삭제요구 : 노조 정치활동금지조항의 전면 삭제로 노조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노동자가 천대안받는 민주정의사회를
만들자 !

노조가 인정하면 누구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제12조의 2 개정요구 : 현행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고쳐 노조가 인정하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게 하되 노동브로커등의 개입을 차단하라 !

산업별 노조체제를 확립하자

제13조 1항 신설요구 : 법개정으로 가장 강력한 노조체제인 산업별 노동조합체제 건립을
조속히 보장하라 !

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자

제27조 개정요구 : 2개사업장 이상 노조는 총회소집기간이 현재 15일인데 이를 10일로 단
축함으로써 노조활동의 기동성을 보장하라 !

행정관청 개입과 자의성을 중단시키자

제30조, 제34조 개정요구 : 행정관청이 노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단체협약중 “부당한”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권은 행정관청이 반노동자적 관점에서 악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라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단축하자

제35조 제1항 개정요구 : 현재 임금이외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최고 2년인 바 이를 1년으로 단축하라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시키자

제46조 개정요구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불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이행일수 1일에 1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을 대폭 강화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예방되고 구제명령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하라 !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경총의 개악요구)

해고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요구

노조핵심세력을 일단 해고해버리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되어 제3자가 되므로 기업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요구

현재 상급단체는 가맹노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급단체까지 가맹노조 사업장에 찾아가서는 활동못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기업별 단위노조를 더욱더 고립하자는 발상이다.

단체협약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요구

현재 최고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없앴으로써 노사가 5년만에 한번 교섭기로 하면 5년마다 한번씩 교섭하고, 10년으로 되어있으면 10년에 한번씩 교섭하자는 것으로 교섭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다. 물론 유효기간내에는 쟁의를 못하므로 사실상 파업권도 유명무실해진다.

인사·경영권은 명시적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요구

기업의 이전, 인수, 합병, 인사이동, 상벌등은 기업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설 땅이 없어지고 기업주가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노예로 전락케 된다.

유니온숍 도입을 더욱 어렵게 하자는 요구

현행의 유니온숍도 조합가입대상 2/3가 조합에 가입한 후에야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데 2/3를 3/4로 강화하자는 것은 유니온숍을 사실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제를 철폐하자는 요구

현재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주는 1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조항으로 구속된 기업주는 없고 고작 몇푼의 벌금형이 떨어지는데, 돈밖에 없는 기업주가 그런 벌금형을 두려워할 리가 없다. 경총은 현행조항을 삭제하자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 천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노사협조 주장전에 노조인정 먼저하라!

1993년 11월 6일 제93-4호

금속노련특보 <노동법개정해설 IV>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 인 상

고 용 보 험 법

(1995년 시행예정)

고용보험이 하는 일

고용안정사업

- 산업구조조정, 경기변동에 의한 사업축소·폐쇄·전환의 상황에서도 회사의 휴업이나 동일회사내 배치전환으로 해고를 자제한 기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기회 증대가 필요한 지역에 공장을 신설, 이전시켜 그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주에 대한 지원
- 고령자·장애자등 취직이 곤란한자를 기준이상으로 채용한 기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촉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구직·구인정보 취급 및 직업소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종업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 구직자나 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사외교육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
- 공공직업훈련소 설치·운영비 지원 및 직업훈련 시설비 용자

급여

구직급여

①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노동자는 ② 회사사정으로 해고(감원)된 2주후 부터 ③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고 7개월 최저 1개월의 범위내에서 ④ 하루에 대해 급여 기초임금일액(실직전 12개월간의 임금÷365일)의 50%를 지급받는다. 단 징계해고자, 의원퇴직자,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를 거부

한 자나 파트타임 노동자는 이 혜택을 못받는다.

〈외국의 예〉

급부기간 : 영국(52주), 미국(26주), 스웨덴(300일), 캐나다(25주), 오스트리아(12-30주), 독일(4-32개월), 일본(90-300일), 프랑스(3-60개월), 스위스(85-200일)

급부금액 : 일본(60-80%), 독일(68%), 미국(50%), 캐나다(60%), 덴마크(90%), 스웨덴(90%)

취직촉진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이상이 남았음에도 취직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취직하려는 경우 구직활동비나 이주비의 지원

보험료 부담은 누가하는가?

노동자 :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임금의 0.3%정도)부담

기업주 :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비 부담.

정 부 :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부법안의 주요 문제점

실업보험 핑계로 정리해고 자유화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기업주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는 ③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④ 감원대상선정이 합리적 이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실업보험이 도입되면 그것을 핑계로 경영합리화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법 입법에 관계한 고용관계법 기획단 역시 고용보험법이 도입되면 감원이 현재 16.5%에서 35%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및 전제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법”이 아니라 “고용불안법”이 된다.

정리해고 자유화되면

“기업주는 행복! 노동자는 고통!! 노동조합은 약화!!!”

정리해고가 자유화되면 기업은 ① 실업수당 핑계로 보통 몇개월분 주던 정리수당 안주려

할 것이고 ② 1개월전에 해고 예고하여 해고수당을 안주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잔업을 안시킴으로써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③ 고임금 고참자를 목자르고 대신 저임금자로 채우게 되며 그것도 정식사원이 아니라 임시직, 파트타임, 용역등으로 채우게 되어 정식사원은 항시 불안하여 회사눈치를 보게되고 그러다 보면 근로조건 저하도 감수하고 일도 힘들어진다. 또한 비정식사원은 밑바닥 떠돌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줄게되며 노조활동으로 회사에 미운털박히면 감원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

- ◎ 해고 강력구제장치 마련
- ◎ 보험관리·운영비 국가 전액 부담
-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 기초임금일액은 실업전 3개월전임금으로 계산할 것
- ◎ 실업급여를 기초일액 50%에서 60%로 올릴 것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할 것
- ◎ 실업후 1주일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 ◎ 실업급여 기간을 조정할 것
- ◎ 실업보험을 이유로 기존 퇴직금에는 손을 대지 말 것

고용보험법에 해고 규제장치 못박자!

근로자 파견법

근로자 파견사업이란?

노동자를 채용하여 타회사에 파견, 일하게 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그 댓가를 받아 일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파견업체의 비용과 이윤으로 챙기게 되는 일종의 “중간착취제도”이며 “합법적 인신매매제도”로도 악용될 수 있다.

정부의 법안 내용

파견사업이 가능한 분야

-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
- (2) 다음의 경우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면 전직종에서 가능
 - 근로자가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휴업한 경우
 - 계절적 업무
 -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책임소재

임금, 재해보상, 건강진단등은 파견사업체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안전보건은 파견을 받는 회사가 책임짐.

파견법의 문제점

중간착취제도의 합법화이다.

회사업무에 일시적, 임시적으로 소요되는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정식채용이 아니라 일시의 파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중간착취의 파견사업이 아니라도 그 문제는 해결가능하다. 고용보험이 실시되면 전국 곳곳에 공공직업소개소가 설치되므로 여기를 통해서 알선이 될 수 있고 또 전문직 스스로 민주적 협회를 조직함으로써도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구태어 중간착취의 파견제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파견제의 경우 파견노동자는 보통노동자의 60-70%밖에 못받는다.

고용불안이 가중된다.

현재 파견제도가 불법임에도 30만명 정도의 파견노동자가 있고 파견노동자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작업현장까지 파고 들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는 노동부도 아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다. 이런 파견제가 법으로 보장되면 기업주들은 최대한 이 제도를 악용하게 될 것이다. 고임금의 정식사원은 목잘라 몰아내고 골치 안아픈 파견노동자로 대신 채우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정식사원 고용도 위협받으며 노동자의 “뺨”인 노동조합도 약화된다.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도 안맞는다.

철새처럼 옮겨다녀야 하는 파견노동자가 애사심이나 소속감을 가질 수도 없고 장기근속에 따르는 기능축적도 있을 수 없다. 또 생소한 파견노동자가 들락날락하면 종업원간의 인화도 조성되지 않는다.

“노조의 의견청취”란 전제조건은 기만술에 불과

노조의 의견만 들으면 노조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조의 의견청취”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조집행부와 조합원을 이간시키는 역할만 한다.

파견기간 1년 제한은 “눈가리고 아웅”식 장치에 불과

파견기간이 1년 넘으면 파견받은 회사 종업원으로 간주한다 하는데 가령 364일만 파견받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파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

파견법 제정 절대반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파견사업 엄단

필요업종 및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중간착취를 배제할 수 있는 타제도 연구개발 필요

“고용불안·중간착취” 파견법을 반대한다!

조합원에게 결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왜 '93노총, 경총 임금합의를 반대했는가?

우리 금속노련은 93년도에 이루어진 노총, 경총 임금합의를 반대하면서 15.3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금속노련 독자의 인상안을 중심으로 93임투를 전개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첫째 조합원 공감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둘째 사실상 임금억제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총에 이러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었다.

밝지 않은 '94임투정세

94년도에도 정부는 노총, 경총의 중앙단위 임금권고안 합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재등장할 것이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을 수단으로 삼아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제판을 감행할 것이고 노동법을 개악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중앙단위 합의로 우리처럼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임금이 동결, 억제되는 곳은 오히려 중앙단위 합의를 선호하고 있어 노동자 스스로도 분열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자!”

94.1.25일 개최된 우리 금속노련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는 냉혹한 현실을 분석한 뒤에 93년도식 임금억제의 중앙단위 임금권고안 합의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만약 중앙단위 임금권고안 합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정부참여에 의한 정책, 제도개선의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는 투명한 과정속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일정 시한내에 교섭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런 전제조건이 이행되도록 본노련이 적극 노력할 것이 아울러 요청됐고 전제조건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않을 시 중앙위원회의의 판단을 거쳐 금속노련 독자의 임투체제를 갖추어나가기로 했다. 노동자의 세금을 깎아라! 임금격차를 해소하라!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라! 노조의

산업안전활동을 사실상 보장하라!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라! 노동법개악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 등이 우리의 중점적 정책, 제도개선 요구였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결의에 따라 우선 섬유, 화학등 타제조업 노련과의 공조체제하에서, 우리 금속노련의 위 결의와 기조를 같이하는 제조업 3개노련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였고 94.2.3 개최된 한국노총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이들 공동 요구를 반영키 위해 분투하였다. 한국노총 대표자회의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94임금권고안 중앙단위교섭을 개시키로 결의하였다(노총 요구안은 아래와 같음).

이제 우리 금속노련은 뒤에서 반대나 하고 비판만하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비록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교섭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중앙단위교섭이 잘못되는 것을 막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임금권고안 및 정책, 제도개선을 따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교섭이 일정 시한내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독자적 방안을 세워 산하 노조의 교섭에 한 점의 피해도 가지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결코 상황을 탓하고 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피하고 반대하더라도 중앙단위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일단 이루어지면 93년도에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하여 충분한 정책, 제도 개선없는 합의를 막아내자!!

정부와 기업측의 과감한 사고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와 기업측은 우리 노동자가 경쟁력 저해요인인 것처럼 악선전하지 말라! 우리 노동자는 지금 이 시간도 열악한 작업조건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면 국가 경쟁력강화와 진정한 고통분담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머슴부리듯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어떠한 경쟁력 강화방안과 일방적 임금억제강요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임금억제에 앞서 과감히 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대우하라! 이것만이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신뢰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94년도 중앙단위 교섭을 위한 노총의 공식 요구안

주요 정책, 제도개선 요구사항

- 소비자물가를 5% 이내로 억제하라

- 고용안정 제도화
 - 고용보험제를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근로자파견법과 파트타임법 제정 포기
 - 감원에 대한 사전적 노사협의 실시
- 형평과세 실현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35%로 인하
 - 학자금 비과세
 - 무주택 근로자 공제대상 확대
 - 3D업종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
- 복지확충
 - 정부 및 대기업 출연의 복지기금 조성
 - 500인 이상 사업장 탁아소 설치 의무화
 - 근로복지회관 확대
 - 노조산업안전담당의 유급활동 보장
- 주거안정의 실현
 - 근로자 주택금융 확대(1조원 기금조성)
 - 근로자 주택조합에 택지 제공
- 경영참가법 제정
- 중소기업 보호
 - 하청단가책정의 공정성 보장
 - 대기업의 국산부품 사용비율 제고
 -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 보장
- 산별체제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 업종별 노사단체 모임 개최
 - 산업별 체제 도입 위한 법개정
- 노동법 개악시도 포기
-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 해고자 복직, 구속자 석방
- 직업훈련 강화 확대

**정책,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임금인상요구(노총)**

잔업수당 제외한 월평균 임금총액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월할액)	임금인상 요구율
53만원미만 사업장	10.8%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53만원 - 88만5천원 사업장	10.8%
88만5천원 - 115만원 사업장	6.6% - 10.8%
115만원 이상 사업장	6.6%

*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는 임금인상외에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다.

신 년 사

국제화, 개방화, 약육강식의 시대가 왔다
단결, 사고전환, 이해로써 대처하자

친애하는 30만 금속노련 조합원 여러분 !

갑술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통상 새해 새아침을 맞이해서는 보기좋은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만 금년도 새아침은 그 어느해보다도 우리에게 각오와 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보름전인 작년도 12월 15일, 그간 7년 3개월동안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됐습니다. 대부분 농촌과 관련이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슴속으로부터 솟구치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만 실제 농업뿐만 아니라 광공업, 서비스업, 지식산업등 모든산업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고 농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농업이외의 부문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의 경우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내수산업이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빠른 시간 내에 대응책이 서지 않는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르과이 라운드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본질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약육강식의 시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해주던 온상이 다 철거되어 헤비급이니 플라이급이니 제한하지 않고 링위에서 싸우는 '자유로운' 경쟁이 시작되는것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선진제국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모순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고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어떤 신문은 "21세기 세계 경제대전은 시작됐다"고 제목을 크게 뽑았지만 지난 1차대전이나 2차대전처럼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전쟁이 치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가 추진되는 이면에서는 국가간 경제전쟁으로 국가이기주의와 극우적 보

수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

이러한 거센 물결의 흐름을 어느 한나라가 바꾼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국제적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전국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협심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외제가 아닌 국산품을 애용하는 소박한 애국심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이익을 팔아먹는 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축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취약하고 기생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중에 정부특혜와 부동산투기와 노동자착취로 기업을 운영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지탄하고 배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구태의연한 노동정책을 우려합니다. 특히 우르과이라운드를 빌미로 세상을 얼어붙게 할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해 우려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여전히 노동자를 이윤추구를 위한 소모품이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도구로 취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정치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열심히 일하고 옥박지르기에 앞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각히 고민하여 줄 것을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나 기업이나 언론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푹푹 뭉쳐 이들과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도 이제 보다 높고 넓은 시야에서 우리의 운동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싫든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하고 기생적인 기업가정신과 독점적 경제구조를 고쳐야 하고 인력개발을 통해 노동자의 능력을 높여야 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으로부터의 고립을 면하여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해 고립시킬 것이고 나아가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기들식의 반노동자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적 차원을 떠나 우선 외국과의 경쟁에서 민족이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정부나 기업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타성을 실질적으로 버려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윤증진보다 노동자나 국민의 복지후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생산이나 경영결과와 정부의 주요정책결정에 노동자와 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

새해 벽두부터 무거운 애기로 시작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우리의 기능을 더욱 연마하고 우리의 정성을 더욱 쏟아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를 척결하고 민주화를 생활의 밑바닥까지 정착시키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상을 만들도록 다짐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있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갑술년 새아침에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위원장 박 인 상

6. 질 의 회 시

(1) 병역특례자 노조가입권여부

〈질의〉

병역특례자도 노조법상 노조가입가능 근로자라 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로부터 허용된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예로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속노련법규제86호 93. 7. 30)

〈회시〉

병역특례자는 병역의무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노조01254-991 93. 8. 14)

(2) 병역특례자 쟁의행위참가가능여부

〈질의〉

병역특례자도 노조법상의 조합원이라면 노조의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련법규제85호 93. 7. 30)

〈회시〉

1. 현행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2. 따라서 귀문의 조합원인 병역특례자(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특례보충역)가 “1”과 같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정당하게 행사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다만 병역특례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쟁의행위의 참여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인 바,
-그 제한 규정의 존재여부 및 존재시 제한의 형태등은 병무청에 다시한번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사68140-268 93. 8. 20)

노총질의에 대한 병무청 회시(특자34810-86 94. 3. 4)

〈질의요지〉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이 의하여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연구요원 또는 전문요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및 이유〉

특례보충역은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연구요원 또는 전문요원으로 근무중인 자[현행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특례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중인 사람은 위 병역법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본 회신 내용이 적용될 것임]로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사료됨.

한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제3항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제한의 대상이 되는 방위산업체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이고, 제한이 되는 권리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근거한 법률인 방위산업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8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외 달리 현행 법률상 특례보충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소정의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보충역을 제외한 일반 특례보충역 편입자의 경우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들은 위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정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 연구업무 혹은 해당 기술·기능분야에 종사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는 외에는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제2조제1항12호, 1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하고 있으므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지나친 노동쟁의행위 등을 행하여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업체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면 관할지방방무청장이 판단해서 그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 할 것임. 끝.

(3) 병역특례자의 쟁의행위가능여부

〈질의〉

본노련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행정해석권자인 노동부에 병역특례자가 노동쟁의행위

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별첨과 같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회시하고 병역관계법상 제약이 있는지는 귀 병무청에 질의토록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병역특례지도 근로자인 이상 헌법상의 단체행동권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체행동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시를 바라며 병역특례자의 쟁의행위가 병역관계법에 의해 규제가 된다면 그 규제범위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련법규제99호 93. 8. 24)

〈회시〉

특례보충역의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단체행동권 여부는 병역법 및 병역특례법령에 따라 규정된 바 없음. 다만,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기능)자격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에서 기능요원은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소정의 의무를 부과함. (병무청 특자34820-270 93. 9. 7)

(4) 조합원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갑노조의 규약에는 비조합원의 범위로 “노조법상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에는 월급자의 경우 비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자란 지금까지 사무관리직에 한하였는데 이제 회사가 일반 생산직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직 월급자의 경우는 당연히 조합가입자유가 보장되고 단체협약조문에 의해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한 가입자유제한이 된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은 여하한지 회시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속노련법규제102호 93. 8. 27)

〈회시〉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3조 단서 1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용자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노조01254-2642호('88. 2. 1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사 사용자의 노동조합가입 방해행위가 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시 사본 1건. (노조01254-2642 88. 2. 19)

(첨부)

노 조 01254-2642

50-9734

1988. 2. 19.

수 신

제 목 질의 회시

1. '88.1.29. 귀하가 제출한 조합원 자격등에 관한 질의회시입니다.

2.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가. 동 조합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 지사등의 장을 말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 고용, 해고, 승진, 전보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을 말하며

나. 동법 제3조 단서 1호 후단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의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3.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임.

4.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의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 여부는 실제문제와 관련되므로 노사공동으로 판단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사주가 같은 2법인의 1노조가능에 대한 회시

〈회시〉

'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에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설립은 반드시 기업별로 하도록 강제하였으나 87년 11월 28일 법개정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강제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복수노조금지)에 저촉되지 않은 한 근로자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조직형태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회시에서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은 산업별 조직이나 지역별 조직에서도 가능한 것이며 기업별 조직에서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면 교섭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지 교섭가능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단위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단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그 노조의 교섭권은 그 노조의 규약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대창단조 노동조합 규약에 (주)대창크랑크 종업원까지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주)대창크랑크 종업원은 (주)대창단조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대창단조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동노조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면 (주)대창크랑크소속의 조합원들도 당연히 그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금속노련법규 제122호 93.10.5)

노동조합 조직, 운영 관련 노총 회시

〈회시〉

1. 노동부의 질의 회시(노조 01254-1172, 93.9.23)에 대해 검토하면,

- 1) 질의 '1'의 내용은 (주)대창크랑크 조합원이 (주)대창단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조합원인가 여부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는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해 조합원이 될 수 없

다”고 하였으나,

- 2) 노동자는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법의 취지인 바, 이러한 원칙과 취지, 학설 및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 (1)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 (2) 단체교섭이 가능한 범위 및 이에 따른 조직 범위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노동부가 “단체교섭이 가능한 기업별”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 월권적 행정해석이며,
 - (3) 아울러, 조직 대상에 대해서도 법인의 형식적인 동질성 여부만을 가지고 노동조합 조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며,
- 3) 따라서, 질의 ‘2’에 대한 회시 “3자 개입 운운”도 잘못된 행정해석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 한편, 행정관청의 노동관련 업무는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정부의 위법, 월권적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 1) 현실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업무지침이 가지는 현실규정 및 규제력을 감안하여 보건대,
 - 2) 귀 연맹 산하 (주)대창크랭크 노동조합의 문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노조 또는 산별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운동의 조직노선 및 향후 산업구조조정과정의 사용자측의 분사화 전략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되며,
 - 3) 이에 대해서는 귀연맹과 당연맹이 모든 조직적,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해결하되,
 - 4) 당해 노동조합의 질의전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
 - (1) 동일한 법인이며 동일한 사용자인 점,
 - (2)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로 법인간의 구별없이 인사가 교류되고 임금노동조건이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점,
 - (3) 구 법인하에서의 고용종속관계가 퇴직금 미청산등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노동조합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 가. (주)대창단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여, (주)대창크랭크 노동자까지 포함하거나,
 - 나. (주)대창단조노조를 본조로 (주)대창크랭크노조를 그 지부로 하거나,
 - 다. 지역노동조합 형식으로 (주)대창노동조합으로 하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도바라며,

3. 향후 당연맹은 이번 사안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관청과 적극적인 협의 및 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지역노동조합 설립 관련 자료, 1부

유 첨 : 〈지역노동조합 설립 관련 자료〉

- 1) 1987년 11월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종래 기업별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던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업무지침 (1990.2)」을 통하여 지역별 노동조합을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 단위로 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노조설립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으나, 전국금용노련 산하 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지역 노동조합 사건(대판, 1993.2.23. 93누 712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으로 노조조직 형태에 관한 관련법 규정의 해석이 명확해 졌다.
- 2) 한편, 노동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 들여 일정지역내의 동일 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역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직원의 채용 및 배치,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의 제출, 사업장간의 직원 이동 발령등 사업장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운영될 때는 기존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위와 같이 직원의 인사고과 제출, 직원의 이동 발령 등 도내 단위 사업장간 유기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 노동조합 결성범위를 도단위까지 가능하도록 보완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노조 01254-269, 1993.3.19)
- 3) 이보다 앞서, 이른바 소사장제도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단연맹은 소사장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질의(노총 노사 제537호, 92.10.3)를 한 바, 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 단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고용주 단위로 조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사장제” 채택이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른바 소사장제가 기존의 노동조합 운영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회시를 한 바 있다. (노조 01254-1032, 1992.11.17)
- 4) 참고로 법원 판례와 노동부 업무편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원 판례
 - 가. 고등법원
 - ① 전국금용노련 산하 농업노동조합 경기지역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91구 8489호, 서울고등법원) 경기도는 경기

도내 각 단위농협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각 별개의 법인이고 독립된 사용자여서 경기도 지역을 단위로 하여 그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섭을 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단위농협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단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의 업무지침도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성범위는 시, 군, 구 등 행정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 단위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설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 ② 노동조합측은 노동조합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없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을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각 단위 농협은 농협중앙회의 통제아래 도 단위로 인사교류 및 징계등을 하는 등 통일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도단위의 지역노동조합의 결성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경기도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한편, 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 노조법과 달리 노동조합 조직 형태를 기업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장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 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며,
- ④ 경기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농협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곧 노동조합설립의 장애 사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나 다만, 노동조합법 제8조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동법 제3조 5호가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⑤ 나아가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직되어야 할 것인 바, 1990. 2.경 노동부 장관이 이에 관하여 앞서 주장과 같은

취지의 업무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부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할 것이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위에서 본 노동조합의 규정취지 등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

- ⑥ 그런데, 농협노동조합은 각 단위농협, 특수농협 및 위 단위농협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협중앙회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자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협중앙회가 모든 직원의 채용시험을 일괄 실시하여 이를 각도에 배치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도 지회는 각 단위농협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평정) 결과를 제출받고, 도내 단위농협간의 직원이동 발령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두어 도내 단위농협 소속 직원의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등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는 사실, 이들이 단일 지역 노조를 설립한다하여도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조의 규정 취지등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등을 종합하면 위법 사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위와 동일

- ① 노동부 지침은 외부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 내의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
- ② 노동조합의 조직과 이에의 가입등 노동자의 단결권은 기존조직과 중복 또는 기존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의 방해 등을 규정한 노조법 제3조 5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되면,
- ③ 노동조합 조직의 범위도 형식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④ 사용자단체의 존재와 권한 및 기능 등이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나) 노동부 업무 편람

가. 노동조합 조직의 형태인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부의 '노동조합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단위노동조합)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하는 것보다 노동조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함. 일부에서는 법 제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노조 설립은 임의대로 하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조의 뜻을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임.

나. 노동부는 또,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노동조합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 조직이라는 당위성의 범위내에서 자유설립을 인정

할 수 있다」며, 「지역노조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일부 집행부를 위한 조직 또는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고 하였다.

- ① 지역적 구성 범위는 단체 교섭 가능범위, 경제활동 영역, 근로자 분포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 단위로 한정하여야 함
- ② 업종별, 직종별 구성범위는 택시업, 자동차 제조업 등과 같이 동일, 유사업종, 직종별로 조직되어야 하며, 막연히 금속(바늘제조, 자동차 제조, 전자제품 제조 등)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함
- ③ 기존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3조 단서 5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이하 “령”이라함)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반려조치 (예 : 지역 건설노조의 경우)
- ④ 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조로서 설립 신고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기업별 단위노조는 조직 대상 중복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며
- ⑤ 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이 가능함

◆ 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이 있는 사용자단체가 있거나 관행적으로 공동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사용자단체 및 지역노조이므로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예 : 택시, 버스업계, 항만 하역요율, 운송요율 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업계 등)－ 노동부, 「노동조합 업무편람」, 1990.2., 11~13면 참조. (노총노사 제557호 93.10.16)

(6) 경영상 이유의 인원정리

〈질의〉

당사는 1975년 9월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정밀기계제조업체 및 방산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설립당시 17억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1993년 현재 80억 5천만원 자본금으로 유지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생산품목으로는 방산 및 민수(COMPUTER 주변기기) 두 분야로 '88~'93년(자료첨부) 매출액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자료첨부에 의하면 '91년 한해에 적자 한 적은 있었습니다 만 그 당시에는 여의도 사옥(연건평 3,016평) 건립과 함안법수공장(2공장) 건립을 위해 소모한 것으로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회

사측에서는 1993년 4월에 사옥준공식과 함안법수공장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창원공장 70~80% 방산물량과 함안공장 민수품목으로 생산가동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재 방산물량 감소로 인해 창원공장 인원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결산 처리는 방산과 민수 분야를 합계하여 결산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당기순이익도 가져온데다가 '91년 적자에서 '92년도 흑자 전환한 사실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도 작년도 비해 10% 감소 하였고 함안공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충원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단순히 방산물량만 수주 감소로 인해 인원정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적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시〉

1.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또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는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고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는가 여부,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유무 (3) 합리적인 해고자 선정기준의 존재여부 (4) 노동조합, 근로자와의 협의 유무에 따라 그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위의 네가지 기준중 (2), (3), (4)의 기준은 실제 첫번째의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정밀은 첫번째 요건에 부합하는가가 중심문제임.
3. 첫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경영위기 (기업도산이 예상될 정도의 위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영상태 악화 및 수주감소라든가 장래의 경영실적 증대를 겨냥한 소위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한 인원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포함되지 않음.
4. 첨부자료에 의하면 제일정밀의 경우 설립당시 17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93년 현재 80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성장하였고, 매출액 증가율이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식 배당률 등을 볼때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했다 볼 수 없으며, 91년의 적자도 사옥건립과 함안 법수공장 건립을 위해 소모한 것으로 추측(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필요)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ATM, CD기의 국산화 성공, 각종 전송장비를 개발 한국통신에 납품하는 등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보장자료 필요함)되어, 컴퓨터시장 경쟁격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더보드 등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영업신장에 주력할 경우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전체로 볼때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상의 위기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5.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방산물량 수주감소로 인한 방산부문에 국한된 인원정리이나,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란 회사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하고 일개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1990. 3. 13. 89다카24445)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나아가 “회사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회사의 영업부분중 중기관리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제일정밀의 경우 결산처리가 방산과 민수분야를 함께하여, 결산처리하고 있고, 또 91년도 적자에서 9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함안공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충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방산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정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6. 첨부자료에 의하면, 방산실적의 경우도 비록 그 증가율이 9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 해고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영여건의 악화로 볼 수는 없어 정리해고를 정당화해줄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7. 이상을 종합해볼때 창원공장에 대한 인원정리는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판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종전에는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정도의 경영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생산성 향상, 경쟁력회복, … 신기술도입이라는 이유와 …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미루어 볼때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91다25284/91다8647/93다16973 등)는 것으로 그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창원공장의 70~80% 가동”이라는 부분과 “방산부문의 매출액 증가율 감소”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일정밀의 경우 창원공장의 70~80%가동과 매출액증가율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방산부문 수주감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부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는가 그리고, 유희인력의 존재여부와 전직노력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더 보장되어야 그 정당성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금속노련법규 제108호 93. 8. 31)

(7)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질의회시

〈질의〉

1. 당 사업장에서는 3교대를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같은 근무자 중에서 휴가나 기타 결원시 기본 8시간과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하여 1일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일 16시간 연장근로를 무려 1주일씩 연속

적으로 근무하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조차도 돌볼 시간도 없이 내일의 재생산에 임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채 피로가 겹친 상태로 근로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관련법규 내용.

- ①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 1항, 3항, 4항.
- ②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근로시간연장 신청) .

3. 당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조항.

- ① 단체협약 제22조(근로시간) 제1항 :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주 44시간)에 준한다.

단, 라인의 연속성, 생산성을 감안하여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되 1주간 48시간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서는 법적근로시간 초과부분을 휴일근로에 준하여 처리한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② 당 조합 단체협약 제24조(시간외 및 휴일근로)

제1항 : 회사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요할 시 무단결근, 대근을 제외하고는 1일 전에 본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본인이 사유가 있어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강요하지 못한다.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요할시에 본인과 협의 후 실시한다.

상기관련 규정도 무시한채 발생하는 과다잔업으로 인하여 당사 조합원들의 건강관리와 생체리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에서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홍보하는 실정이고 보니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4. 당사 3교대 근무 현황(1일 24시간 연속가동)

종류 \ 시간	갑 반	을 반	병 반
출근시간	06 : 30	14 : 30	22 : 00
퇴근시간	15 : 15	22 : 30	익일 07 : 00

6. 질의내용

- 1) 1일 16시간 연장근로를 며칠씩 계속해서 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나 사전승인없이 연장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에 상당한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2) 당일 병반 근무자가 22 : 00시 출근하여 기본 8시간 근무후 익일 07 : 00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익일 기본근무인 07 : 00 - 15 : 15시까지 연속으로 휴식도 없이 16시

간 근무를 했다면 연속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정도.

예 : 8월 23일 병반 22 : 00 - 07 : 00 (8시간)

8월 24일 갑반 07 : 00 - 15 : 15 (8시간) 16시간 연속근무

8월 25일 병반 22 : 00 - 07 : 00 (8시간)

(전금련연철노 제93-18호 93. 8. 26)

〈회시〉

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1주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2시간의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관한 취업규칙등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1일의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하에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이고 1주 연장근로도 본인의 동의하에서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1일 연장근로에 대한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1일 16시간근로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같은 장시간 근로나 기타 연장근로로 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2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위법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0조1호에 의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비록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범위배로 그 약정은 12시간 초과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하는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게 됩니다. 질의 2의 경우 부산지방노동청의 회시(감독32105-3095) 중 질의 1에 대한 회시와 같이 기본근로시간 8시간 (주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수는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 (이를 상회하는 별단의 규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련법규 제110호 93. 9. 8)

(8) 고정 특근수당

〈질의〉

당사업장에서는 3교대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생산라인 연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기준에 월급제사원, 시급제사원, 별정직 월급제사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월급제사원(트럭기사)은 현장 3교대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트럭기사(별정직 월급제사원) 사원도 현장·기능직사원과 동일하게 현장수당, 근로시간 주 44시간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 48시간 근무하면 근무조정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고정특근수당이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월 74,7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고정특근은 무엇무엇이 구분되어 있지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없습니다. (차량트럭기사)

2) 고정특근수당이란? 특근날(공휴일, 휴일)만 해당하는 것인지 1일 8시간 근무후 연장도 해당되는 것인지?

3) 야간근무(22:00 - 익일 07:00) 심야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관련법규참조〉

1) 근로법 제42조 (근로시간)

2) 근로법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3) 당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참조

(사) 취업규칙 제20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월급제사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 20시간내외로 한다.

제25조 특수사원의 취업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 적용의 제외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계 트럭기사는 월 심야를 10일이상씩 근무하고 특근시간외 근무도 월 20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수당과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전금련연철노 제93-23호 93.11.18)

〈회시〉

질의 23호의 경우 고정특근수당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주근무에서 3교대근무로 전환된데 따르는 임금수입격감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정특근수당이 신설·지급되었다면 3교대에 따르는 야근이나 특근에 대한 통상임금 150% 상당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50%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정특근수당이 3교대로의 전환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므로 그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된 것이라 하면 실제로 행한 야간근로, 특근, 연장근로에 대한 총수당에서 고정특근수당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정특근수당이 휴일근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연장근로도 대상으로 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나 통상 특근이란 휴일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를 해석하는데는 그러한 구별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든 야간근로든 휴일근로든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사전에 고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금속노련법규 제167호 93.11.26)

(9) 퇴직후 타회사 취업제한 약정의 적법성여부

〈질의〉

회사는 근로 계약서를 받고 입사시키고 있으며 별도로 (93.12.24일) 서약서 (첨부)

받으려고 하는 바 이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또는 다른 사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시 부탁드립니다. (대노 제93-60호 93.12.27)

〈회시〉

회사 기밀유지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은 가능하나 퇴직후 타 회사에의 취업을 금하는 약정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문제의 서약서는 결국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노조와 사전협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되는 경우는 노조의 동의)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금속노련법규 제180호 94.1.4)

(10) 노조전임자처우

〈질의〉

1.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처우규정이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때 이 조항이 전임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이 조항에 대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조합원과 같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관례적으로도 전임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연월차수당은 지급되어 왔고 전임자가 연월차 사용시 사전에 회사측에 통보하여 왔기 때문에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회사귀책 사유로 7일이상 30일이내의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주휴일의 임금을 100분의 7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무급처리하는 것인지의 여부(전금동노 제93-07호 93.4.14)

〈회시〉

귀 질의 1의 경우 단체협약상 “전임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토록되어 있고 “전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임기간에 대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 2의 경우 회사귀책 사유로 휴업하였을시 휴업기간 사이에 들어있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할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단체협약등에 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속노련노사 제18호 93.4.19)

(11) 육아휴직자 평균임금산정에 대한 회시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 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 기간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반만 근무한후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끝.
(부소 68247-112 93. 4. 10)

(12) 노조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1. 규약상 본노련을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 본노련 규약의 정함에 의해 그 가맹노동조합 형태중 본조와 지부로 되어있는데 이중 지부로부터 맹비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하여도 가한지 여부.
2. 규약에 의해 당연직 대의원제를 둘 수 있는지 여부.
3. 본노련의 현행 규약은 가맹동조합이 본노련에 납부한 조합비를 기준으로 하여 250명당 1명씩을 배정토록 되어 있고 251명~500명미만 조합에도 1명을 배정하며 250명이하의 노동조합은 본노련 지역본부단위로 해당노조들이 모여 250명당 1명기준에 의해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50명이하의 조합들이 그들의 파견대의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1) 그들 조합들중 어느 조합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조합원을 파견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본노련 규약으로 250명이하 노조들이 본노련 파견대의원을 결정할 시 그들 조합에 속하지 않은 지역본부 의장)를 파견대의원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규약으로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속노련법규 제 37호 93. 4. 28)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기업별 노조의 경우 지부·분회는 자체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단위노조의 지부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대의원은 당해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조01254-539. 93. 5. 14)

(13) 토요일근무의 처우

〈질의〉

1. 토요일 18시 혹은 22시 출근자가 익일(일요일) 14시까지 근무할 경우 할증임금 적

용 기준은?

- 근로시간은 근무시작 시간부터 산정함으로 토요일 18시 혹은 22시 출근자의 경우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임으로 토요일까지의 법정연장근로 1주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토요일 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50%, 휴일연장근로 50%를 적용해서 200%를 적용해야 하는지.
- 3교대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 정상출근이 22시 임으로 사측의 사정으로 18시에 조기출근할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에 대해서는 토요일 조출 특근으로 인정해 150%를 지급함으로, 22시부터 익일 02시 까지는 토요일 정상근무로 봄, 02시부터 06까지는 일요일 특근으로 보아 특근 150% 특근잔업 50%를 가산하여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기본근로 8시간외에 1일 연장근로를 8시간 또는 12시간을 하였을 경우 위법 여부는 ...

-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는 경우 사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으로 위의 절차 규정과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연장근로는 불법부당하다고 봄.

주) 당사자 합의란 문서에 의한 확실한 것만을 말하며 구두약속은 해당안됨.

3. 상기와 같이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 없이 본인(작업자)과 협의만으로 법정 외 연장근로가 가능한지의 여부...

- 단체협약 제57조에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되 문제가 있을 때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질의 2의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어긋난 합의는 할 수 없다고 봄. (금전노 제93-164호 93.10.27)

〈회시〉

○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아야 하고

○ 연장근로에 대하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정하고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토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소정의 근로시간 즉 4시간 이후 부터이며
-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 하였다고 해서 초

- 과된 연장근로시간을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독68207-3549 93. 11. 8)

(14) 선거관리규정 배치된 선관위의 결정

〈질의 1〉

1.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당조합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결의 하였는바 타당한지,

가. 결의 내용

현재 당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선거후보자로 입후보 등록할시 현직을 사퇴하고 등록하여야 함.

나. 사 유

- (1) 선거가 본격적으로 집행되자 조합원 상호간, 간부간 또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간의 의견차이로 시비가 계속되어 조합원의 분열의 조짐이 나타난점
- (2) 현재 임원이 현직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시, 임원은 기회 특한 기득권을 이용하므로 타후보간 형평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조합비의 남용이 우려된 점.
- (3) 위 (1), (2)항의 문제는 운영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는 없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제25조(미비사항)으로 보아 통상관례를 적용, 위 결의 내용으로 결정하였음.

다. 목 적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상호간 시비가 계속되어 선거의 과열된 양상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상호간 분열의 조짐이 야기돼 이대로 둘수가 없어 위 내용과 같이 또는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준하여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특정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을 목적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상호간의 형평의 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결의하였음.

〈질의 2〉

당조합에서는 위 선관위 결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본바 타조합에서도 위와 같이 실시하는 곳이 다수가 있었으며, 규약이나 제규정에 위 결의 내용은 없으나, 만약, 선거실시전 다수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과반수이상)의 결의에 의한다면 어떠한지 여부,

〈질의 3〉

당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5조(미비사항) 본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규약,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 운영위원회의 결의, 통상관례순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조합의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위결의 내용이 미비된 사항으로 해석하여, 각종 의결기

관을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관례를 적용하였다면 가능한지의 여부, (전금노 대일 제94-04호 94.2.1)

〈회시〉

1. 질의 1의 경우 귀 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비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피선거권은 동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다면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규약이나 규정의 개정은 규약 또는 규정상의 유권기관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하며 개정된 규약이나 규정은 불소급원칙에 따라 개정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피선거권의 경우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갑 선거의 경우 그 갑선거를 위한 후보등록공고 시점이전의 규정에 의해 후보등록 공고 이후에 개정된 피선거권 규정은 갑 이후의 선거부터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 3의 경우 전 2항에서 회시한바와 같이 피선거권에 대한 부분은 미비 사항이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위반하여 시행한다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금속노련 법규 제198호 94.2.3)

(15) 토요일격주 근무자의 월차2일 공제의 적법성여부

〈질의〉

1. 갑회사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근로를 하는 주의 토요일에는 08:30-17: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는 주의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2일 쉬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중 하루를 월차처리하고 하루를 무급처리합니다. 결국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에 월차 1일을 사용하면 월차 1일 사용과 무급 1일로 처리됩니다. 월차휴가에 있어 1일이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역일(曆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할시 월차 1일과 무급 1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되는데 귀견은 여하한지?
2. 전항 질의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 근무의 절반이 일하지 아니한 주의 토요일 근로의 대치근무라 하더라도 08:00-17:00까지의 근무는 계속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계속근로의 1근로일 간주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한 근무로 간주되어 토요일 기준내근로시간인 4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여하한지? (금속노련 법규 제156호 93.11.13)

〈회시〉

○ 격주 토요일 휴무제에 대하여

- －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바, (이하생략)
- － 격주 토요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는 변형 근로시간제도로 현행 법상 부합하지 아니하나 노사합의로 이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휴무시의 임금지급문제, 토요일 근무시의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와 월차유급휴가시의 문제점 등 범위만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 68207-3683. 93. 11. 26)

(16) 자격박탈된 후보의 재입후보 가능 여부

〈질의〉

1. 갑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정함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B, C후보의 등록서류를 보고난 뒤 허위기재가 들어간 A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나서 치뤄진 선거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재입후보 등록을 받아야 할 때 자격 박탈당한 A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1차 위원장 선거에서 B, C후보가 경선을 치루고 난 뒤 B, C후보 모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낙선하였을 때 새로히 입후보를 등록받을 때 B, C후보가 재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1차 위원장 선거때 A, B, C후보가 약정서를 쓴 것이 새로히 입후보를 등록받을 때 도 그 약정서가 유효한지 여부(전금노부지역 제55호 1993. 8. 27)

〈회시〉

질의 1의 경우 A후보의 자격박탈의 효력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입후보등록이전까지만 유지된다고 사료되며, 질의 2의 경우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B, C후보도 재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질의 3의 경우 새로히 입후보등록을 할시는 새로히 등록하는 후보에 대해 선관위의 결의에 의해 새로운 약정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기존의 약정서가 새로운 선거시까지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속노련법규 제103호 93. 8. 30)

조 사 통 계 활 동

조사통계부

- I. '93임투자지원활동 - 임투자사업장방문
- II. '93임투평가
 - 1. '93임투의 특징과 임투를 둘러싼 정세
 - 1) '93임투의 특징
 - 2) 국제경제 동향
 - 3) 국내경제 동향
 - 2. '93임투진행 현황
 - 1) 요구현황
 - 2) 타결현황
 - 3) 쟁의현황
 - 4) 성과급 및 일시금지급 현황
 - 3. '93임투에 있어서의 노련의 활동
 - 4. 금속노련의 15.38%의 평가
 - 5. 4.1노사합의 관련사항
 - 6. 향후전망
- III. "최근동향" 발간
- IV. 4.1합의 평가 실태조사
- V. 근로조건·복지·교섭관련 조사분석
- VII. '94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 VIII. '94임금인상활동 지침발간

I. '93임투지원 활동

1. 임투사업장 방문

1) 방문기간 : 1993년 6월 9일 ~ 6월 24일

2) 소요인원 : 연맹의 임직원(연인원 : 34명)

3) 소요일수 : 34일(연소요일수로 계산)

4) 방문결과요약

- 노총·경총합의안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전국적으로 임투가 어려움을 겪음.
- 임투초반에 일부사업장의 동결과 고통분담의 내용을 담은 교섭으로 임투가 동결 내지는 4.7%에서 많으면 8.9%에서 회사제시안이 멈추는 결과를 가져옴
- 금속의 15.38%에 대한 찬반양론(주로 적절하게 사용됨)
- 대부분 사업장이 임기가 되어 임투와 병행하거나 임투를 마무리하고 선거에 돌입하는 관계로 '93임투가 더 어려워짐
- 소사장제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이 '93임투를 어렵게 하였으며 임투보다는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교섭으로 각 노동조합이 출혈을 해야만 했다.
- 철강업계는 포철의 임금동결로 그 계열사들의 운신의 폭이 없어지게되고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 할수 없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쪽에도 모기업체의 횡포로 해마다 임투를 올바로 전개 할 수가 없어 대기업의 그늘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여러각도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5) 향후방안

- 쟁의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쟁의 행위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방문)하여 일선 단위노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로 담당했던(방문했던) 사업장중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품의후 재방문하든지 전화로 관리한 후 주무부서에 통보함.

Ⅱ. '93임투평가

1. '93임투의 특징과 임투를 둘러싼정세

1) '93임투의 특징

'93임투는 작년의 총액임금으로 인한 위축된 분위기와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통분담론이 제기되었고 노총의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경총과의 합의안이 나오는 문제로 단위조직에서는 임투가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91년의 임투는 약 한달간 늦어지고, '92년임투는 약 2개월 늦어졌으며 '93년에는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임투를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3개월에서 4개월정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고통분담을 강력하게 부르짖자 일반기업 및 공기업에서는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과 일부 주도사업장 임금동결을 통한 억제 분위기 유도도 '93임투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으며 금속산하에서도 임금을 반납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여 금속산하 사업장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염려 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선도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노사자율을 주장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독려 했으나, 결국은 현대그룹 분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활용하는 등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93임투 종반에 혼미한 상태로 가고 말았다.

'93년 임투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단위조직에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중에 하나는 4.1노사합의의 파장이다. 4.1합의가 '93년도 임금교섭에 미친 영향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단위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어 4.1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② 4.1합의가 이루어지자 일부 기업에서는 노조측이 이미 제출해 놓은 요구안을 4.1합의에 맞도록 변경하여 올 것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③ 공무원의 경우 당초 3%인상기로 되었던 것이 동결로 바뀐 사례들이 있다. ④ 정부투자기관은 3%임금인상을 고수했다. ⑤ 총액 89만원 이상의 기업에서는 4.7%인상을 끝까지 고수하여 노조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들 기업에서는 대신 성과급등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임금체계를 더욱 왜곡시켰다. 성과급의 경우는 형식상 성과와 연계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능률급적 성격은 약하다. ⑥ 저임금업종에서는 8.9%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⑦ 다수의 경우 교섭에서 기업측이 4.1합의를 이유로 버티기 때문에 고생한 노조들이 많아 조직적으로는 노총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특히 거대한 조직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경우 대부분 4.7%에 걸렸기 때문에 노총에 대한 강한 원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총이 4.1합의의 부대조건을 가시적으로 실현하지 않는 한 커다란 조직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향후 조직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노련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긴급 중앙위원 및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금속자체 임금인상안(통상임금 기준 15.38% 79,742원)을 제시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금속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고통분담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단위조직에서 임금교섭 석상에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교섭의 무기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93임투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아폴로산업이나 거대분규로 인한 납품업체의 어려움이었다. 지역으로는 경북, 부산, 경인 일원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현대사태와 임금인상이 맞물려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사업장들은 도산위거나 인원감소 등과 같은 고용불안으로 연결되어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2)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는 '91년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92년의 1.0% 대외 경제성장율을 고비로 경기가 다소 회복될 전망
- 최근 3년만에 개도국의 수출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 뛰어 20%가 되었다. 구공산권들과 개도국들에서 밀려들어오는 값싼 재화나 노동력의 홍수로 충격을 받은 선진각국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인원을 정리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음.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간에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유리한 만큼 북미와 아시아의 공동경제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중임.
- 유럽권(EC와 동구권)은 유럽통화제도(EMS)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고속전철을 유치하려는 프랑스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유럽권의 경제통일과 유럽환율 조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럽공동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는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기록, 전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통독이후 악화일로로 치닫던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 고성장으로 저개발국가들의 성장모델이 되고있는 네마리 호랑이(한국·홍콩·싱가포르·대만)와 동남아 3대 신흥공업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이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고성장국"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이같은 고성장국은 ① 높은 교육열에 따른 인적 자원의 증대 ② 높은 국내저축률 및 국내총생산의 2%에 달하는 투자를 ③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신속한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집약투자 등에 따른 높은 요소 생산성 ④ 인구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3) 국내경제 동향

-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7% 내외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93년~'97년)
- 이상저은 현상으로 올가을 농작물의 흉작이 예상되고 있고 신경제 1백일 계획과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많은 돈이 풀려 올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억제선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시중자금 경색을 막기위해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통화량급증이 예상되어 물가제어선 5.0%의 고수는 불가능함.
- 신정부가 들어섰으나 경제는 아직 호전 안되고('92년 상반기 경제성장 7%, '93년도 상반기 3.8%)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6%에서 5.9%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함.
- 실업률은 '92년 2.4%이고 '93년 1.4분기 3.2%로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10분의 1, 일본에 비해 8분의 1수준으로 기술후진국이다. 그런데도 기술도입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이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선진기업은 철수러시를 이루고 있어 첨단기술의 도입촉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은 '88년을 고비로 증가추세가 둔화된 반면 중국·홍콩 등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89~92년 : 한국-60%, 중국-15.6%, 홍콩-17.3%, 싱가포르-12.8%)
- 수입은 '92년 수준(3.0~4.0%)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증가요인은 유가등 원자재 가격상승,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요인으로 나타남.

2. '93임투 진행현황

1) 요구현황

'93임투요구에 있어서는 '92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한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적대상(본조기준) 679개 노동조합중 512개 노동조합 75.41%가 임투에 임하였고, 요구한 금액으로는 70,331원(15.92%)이다. 이는 '92년의 요구 88,262원(21.98%)과 비교했을때 23% 정도 낮은 수준인 것이다.<표1>

분과별 임투현황<표2>를 보면 요구에 있어서 '92년과 동일하게 조선분과가 90,887원(16.15%)으로 제일 많이 요구했으며, 작게는 전기전자분과가 63,847원(15.40%)으로 요

구하였다. 현재 조선분과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가 어느 산업보다 자동화 하기가 어려워 조합원들의 욕구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임금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92년의 경우 103,823원(23.77%)을 요구하게 되고 올해도 다른분과보다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고 반대로 전기전자분과는 노동강도가 약하기 때문인지 가장 적게 요구한 것이다.

액수별로 보면 45,000원 이하로 요구한 노조가 8.79%, 45,000~60,000이 22.27%, 60,000~80,000까지는 40.6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80,000원 이상이 24.01%로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92년에 80,000원 까지의 %는 37.7%이고, 80,000원 이상은 53.19%나 차지한 것으로 보아 '92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한 것을 <표3>을 보아 알 수 있다.

요구기준별 현황을 보면 '92년과 동일하게 주로 기본급 기준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92년에 비하여 1.2%정도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고용보장을 하려는 조직도 눈에 보였다.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임투를 시작한것은 신정부의 신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고통분담을 내세운 것과 노동운동의 침체로 노동조합 조직내부에 과거와 같은 힘이 약화되었고 고통분담이나 기업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같은 암적인 존재가 조합원 내부에 깊숙히 파고들어 집행부의 임투 성취욕구가 저하되었고 조합원 스스로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타결현황

본 노련 분석결과 '93년 타결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37,953원(8.62%)로서 '92년보다 3.84%가 작은 수준으로 끝이 났다. 이는 앞에서 말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자체적인 역량부족과 노련의 역할분담의 한계로 인하여 요구도 작게 했을뿐 아니라 타결 또한 작은수준으로 종결지은 것이다. 또한 '92년에 정부가 총액임금제도 도입으로 그 여파가 '93년에도 간접적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4.1노사합의로 인하여 4.7%에 걸려 더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어야 했다.

타결현황을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임금을 올린 지역이 경인지역과 충북지역이다. 경인지역에는 노동조합이 본조중심으로 되어있고 공단의 밀집화 현상이 있으므로 다른지역보다는 다소 많은 임금을 인상하게 된것으로 분석되고, 작게는 구미지역(기본급 7.25%)과 포항지역(기본급 5.66%)으로 나타났다. 타결수준이 가장 낮은 포항지역은 모기업체인 포스코가 임투가 시작되기전에 상여금 100%와 기타수당을 선지급하고, 임투가 시작될 시기에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협력업체가 고전을 하게 된 것이다.

'93임투 타결에 있어서 특이한 사실은 임투초반에는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4.7%~8.0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고 중반전으로 해서 중반전에는 4.7%~3.0%까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고 조합원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성과급이나 일시금등으로 임투를 마무리 한것이다. 특히 일시금중에는 “조인기념비” 형식의 일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리고 임투를 끝낸 사업장이 ‘내부발표용’과 ‘외부발표용’을 작성하여 타결내용을 은폐하고 있어 기업별노조의 임투의 단편적인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3) 쟁의현황

금속산하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임투를 끝낸 사업장이 1993년 8월 30일 현재 41개 사업장이었으며 쟁의발생 및 행동신고를 하고 하루라도 행동을 하고 임투를 마무리 한 사업장이 31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표5〉 쟁의행위를 가장 길게 한 사업장은 대구의 동협정밀과 경남 창원에 있는 삼송 노동조합이다. 쟁의 신고를 필한 사업장중 임금인상을 쟁점으로 싸운 노동조합이 54개 조직이었으며, 임투와 단투를 병행하여 싸운 노동조합이 15개 조직으로 파악되었다. 임단투를 병행한 조직들은 고용문제, 퇴직금누진제, 성과급투쟁, 해고자 복직문제등이 쟁점이 되었고, 조합원 총회로 임단투를 결론 맺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통과하는 조직이 눈에 많이 보였다.〈표7〉 올해의 쟁의사업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문제 즉 소사장제도나 해고자 복직문제를 껴미한 임투이고, 둘째는 노사간의 감정으로 인한 감정싸움의 임투이었다. 세째는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기존의 기업별 체계의 방식으로 개별단위노조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투쟁에서의 임투이었으며, 네째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기업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값싼 노동력에 대한 투쟁의 임투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아직도 구시대적인 기업의 중간관리층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분개하여 임투의 중요성마저 버리고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받으려는 투쟁(쟁의)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를 하고 싶어도 단체협약의 일반중재 조항으로 말미암아 쟁의를 할 수 없는 이유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 사례도 눈에 보였다. 이는 5~6년전에 단체협약 체결시 일반중재 조항을 금전과 관련하여 눈에 당장보이고 효과적인 요소와 바꾸어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일반중재 조항에 대한 단위조합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4)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현황

타결현황에서 언급 한것처럼 '93년 임투에서도 역시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으로 임투를 끝내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수치적으로는 지난해는 연맹에 접수된 성과급 및 일시금으로 타결된 조직이 46개 사업장이고 '93년에는 86건으로 505 정도가 증가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유행되는 이면계약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 이면계약도 주로 성과급이나 일시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공동임투로 임투를 마무리하고 이면계약 형식으로 휴가비를 추가로 받아 노동조합간에 금이가는 현상도 있었다.

앞으로 임투전개시 성과급 지급이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임투 마무리의 무기로서 노사 모두가 공감할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임투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일시금 역시 4월부터 임투가 시작되어 7월경에 끝이 나기때문에 휴가비 명목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조기타결되는 사업장이나 7월 이후에 타결되는 사업장은 '생산장려금', '조인기념금', '추석특별상여금', '아무런 명목없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표6참조>

이러한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임투 타결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안정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으로는 ① 지급조건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올바른 경영참가가 이루어진 상태의 성과급이나 하는 것 ② 전반기 및 후반기로 나뉘어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표를 수정 할 수 있는 조항을 합의했는가? ③ 집단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인가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차등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하는점. ④ 일시금이나 성과급의 타결이 노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과 부합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만 키워주는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조합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과급이 확실한 보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없이 일시금으로 타결을 보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93임투에 있어서 노련의 활동

1) 금속노련의 임투활동

- 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법 개악부분도 노총에 정책건의 또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모색
- 일련의 임투지원 활동으로 적극대처
 - 임투사업장 순회방문
 - ① 소요일수 : 연 34일
 - ② 소요인원 : 연 34일
 - ③ 방문기간 : 1993년 6월 9일 ~ 6월 24일
 - ④ 방문결과 요약
 - 노총·경총 합의안에 대한 피해의식 팽배

- 금속의 15.38%에 대한 찬반양론(주로 적절하게 사용)
- 대부분 사업장이 위원장 임기와 병행
- 고용불안과 임투진행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출혈이 심함
- 쟁의사업장 적극지원 : <표7>과 같이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31개 사업장을 연인원 42명이 지역본부와 함께 방문하고 각 회사와 논의를 하는 등 '93임투성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각 지역의 임투 현장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단위조직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역본부와 같이 지원
- 임금교섭에서의 필요한 자료를 단위사업장에 지원
- 교섭위원 교육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요청시 지원
- 고용안정,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기에 보고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지원
- 근로소득세 면제점 인상 및 세율인하, 고용보험제 조기실시로 인한 실직근로자 생활보장 및 실직근로자 전직훈련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활동.
-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정부예상수준인 4~5%수준을 상회 할 경우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임금보전에 대한 활동을 비롯하여 합의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계속적으로 촉구

2) 각 지역본부 임투활동

(1) 서울지역

- 임투사업장 및 쟁의사업장 지원
- '93임투결의대회
 - 일 시 : 1993. 4. 24
 - 참석인원 : 1,000명
 - 장 소 : 구로공단 가로공원
 - 대회내용 : 경제개혁과 고용안정 촉구, 4.1노사합의 반대
- 4.1노사합의 철회를 위한 노총항의 방문
 - 일 시 : 1993. 4. 13 15:00
 - 참석인원 : 100여명

(2) 경북지역

- '93임투결의대회
 - 일 시 : 1993. 4. 3
 - 장 소 : 대구역 광장

- 참석인원 : 2,000명
- 대회내용 : '93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결의대회, 4.1노사합의 반대
- 임투상황실 운영
 - 3월말부터 시작
- 쟁의사업장 적극지원
 - 지역본부에서 임투 및 쟁의 사업장 방문시 '금속대구지역본부'를 홍보 할 수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방문지원
- 임투 및 쟁의사업장 지원
- 인천지역 간부 수련회
 - 일 시 : 1993. 3. 16~3. 17
 - 장 소 : 대 성 리
 - 안 건 : 임투대책 및 임투상황실 설치

(4) 충북지역

- 임투사업장 지원
- 임투승리를 위한 공개 세미나
 - 일 시 : 1993. 3. 15~3. 16
 - 장 소 : 울 진
 - 참석인원 : 16명
 - 참석대상 : 충남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5) 경남지역

- 임투 및 쟁의사업장 지원
 - 현장속보 발행
 - 악성쟁의 사업장 탄원서 제출
- 임투교육 실시
 - 일 시 : 1993. 3. 9 15 : 00
 - 장 소 : 경남지역본부 강당
 - 참석인원 : 80명
 - 참석대상 : 경남지역 대표자 및 조사통계부장
 - 교육내용 : '93임투지침서 설명, 교섭위원의 자세
- 노조대표자회의
 - 일 시 : 1993. 3. 18
 - 장 소 : 지역본부 강당
 - 인 원 : 80명
 - 회의내용 : '93임투지침서 설명

－ '93임투순회교육

- 일 시 : 1993. 4. 21
- 교육내용 : '93임투의 전망과 과제

(6) 부산지역

- － 임투사업장 및 쟁의사업장 지원
- － 임투관련내용 전산화
 - 단위노조 근로조건 및 기타
 - 단위노조 임금교섭실태
 - 회의시 “'93년도 임투상황” 회의자료제공 및 공유
- － 임투평가 분석집 발간예정

(7) 울산지역

- － 임투사업장 및 쟁의사업장 지원
- － '93임투평가 및 하계수련대회
 - 일 시 : 1993. 8. 26~8. 27
 - 장 소 : 경 주
 - 참석인원 : 26명
 - 참석대상 : 울산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8) 경기, 전남, 충남지역

- － 임투사업장 및 쟁의사업장 지원

(9) 포항지역

- － 포철 협력업체 공동임투 및 쟁발결의
 - 주1회 12개사 포철협력사 대표자회의 실시 상호 정보교환으로 임투 진행을 맞추어 나감으로서 포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독단적인 체결을 거부하는 기틀을 마련함.
- － 임투승리를 위한 단결의 밤 개최
 - 지역본부 산하조직 간부 및 비참여조직 간부들의 모임으로 '93임투승리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및 포철의 일방적인 협력회사와의 단기계약 철회를 요구 및 제도권 비제도권의 연대문제등을 주제로 철야토론으로 결의문을 채택 각 언론사에 배포하여 지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의 위상을 드높이는 개가를 올렸음.
- － 언론사 기자 간담회 수시 개최
 - 지역언론사를 이용하여 포항제철의 일방적인 행위 및 철강공단의 사업주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서 사업주들의 운신의 폭을 좁혀 단사 노동조합들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함. 언론사(KBS, MBC, 영남일

- 보, 경북매일, 대동일보, 한겨레신문, 노동자신문)
- 포철 사장단 면담요청 : 포항시장, 노동부소장(협력사 노조 대표자)
 - 하계 수련대회 개최
 - 일 시 : 1993. 9. 1
 - 인 원 : 40명
 - 대 상 :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4. 금속노련의 15.38%의 평가

1) 요구지침내용

(1) 산출전제

- 가. 임금자료는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였고 생계비통계는 한국노총의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그리고 부양가족수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이용하였다.
- 나. 임금은 '92년도 임금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이 거의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92년도 9월분을 기준으로 했고 금속산업의 임금평균을 구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조합원만을 한정키 위해 생산직 전체와 사무·기술·관리직 20%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액급여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의 '92년 9월 통계를 그 대로 인용하였으나 특별급여(주로 상여금)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월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91년 12월에서 '92년 11월까지의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의 비율을 구하여 (33.3867%임) '92년도 9월분 정액급여에다 이 비율을 곱하여 산출했다.

(2) 일반사업장 산출근거

가. '92년도 임금산출

'92년도 9월 정액급여 : 518,643원

'92년도 9월분 특별급여 : $518,643원 \times 33.3867\% = 173,158원$

계(고정적 임금) : 691,801원

나. '92년도 생계비 산출

<기초통계>

'92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 3.89인(통계청)

'92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취업인원수 : 1.44인(통계청)

'92년도 12월 현재 3인가구 최저생계비 : 974,485원(노총)

'92년도 12월 현재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265,060원(노총)

① 3.89인 최저생계비('92년 12월)

$$974,485\text{원} + (1,265,060\text{원} - 974,485\text{원}) \times 0.89 = 1,233,097\text{원}$$

- ② '93년도 물가상승분 반영(3% 이내로 억제했을때의 6월까지의 물가상승은 매월 동율로 인상된다 가정할때 1.49%)

$$1,233,097\text{원} \times 1.0149 = 1,251,470\text{원}$$

- ③ 최저생계비 충족을 위한 가구주의 필요소득

$$1,251,470 / 1.44\text{인} = 869,076\text{원}$$

다. 임금인상 요구액 산출

- ① 생계비 부족분

$$869,076\text{원} - 691,801\text{원} = 177,275\text{원}$$

- ② 생계비 부족분 60% 획득목표시의 금액

$$177,275\text{원} \times 0.60 = 106,365\text{원} (\text{통상임금} + \text{상여금})$$

- ③ 임금인상총액의 항목별 분해

통상임금 : 79,742원

상 여 금 : 26,623원

※ 인상요구 : 통상임금 15.38%(79,742원)

2) 요구지침을 내게된 동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금정책이 불투명한 상태이었으며 노총이 노총선거와 맞물려 임금가이드라인이 늦어짐은 물론 임금정책 또한 경총과 합의설이 있었기 때문에 금속자체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위조직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중앙·중집회의 결의를 거쳐게 되었고 향후 각 분과별 임투요구안이 제시 되어야 하는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3) 금속지침의 의의

해마다 노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다가 '93년에는 금속 별도의 안을 내게 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늦어지고, 일선 조직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임금이 많이 올랐다 하나 조합원들의 생활에 비하여 임금보전이 안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부 임금통계 기준으로 15.38%를 '93년도에 요구 한 것이다.

이 요구지침은 각 단위사업장별 임금수준이 기업간, 업종간, 학력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대로 한다면 금속산하 6개 분과가 있어 이를 더 세분화해서 자료수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요구안이 나와주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와 모든 조건이 허락이 안되어 금속 전산업기준으로

하였고, 특히 사무직을 20% 가미 시켰다.

그러므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최소한의 6개분과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정보교류 또는 임금인상을 위한 회의를 열어 보다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4) 금속지침의 평가

일반적으로 금속지침은 '93년 임투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지침이 단위조합에서 사용하는 것과 연맹이나 지역본부에서 지도하기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보면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4.1합의 내용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간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금속의 상급단체인 노총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위조직에서 반대를 하고 금속의 15.38%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응을 하지 못해 고전을 하게된 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금속의 15.38%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4.7~8.9%와 근접한 요구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하는 말도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는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에서는 15.38%를 강력히 주장하며 요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하면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총안(4.7%)대로 임금을 끌어 내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성을 들으며 연맹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세번째로 15.38%를 전산업 기준으로 산출을 하다보니 금속산하 단위노조 전체가 수치적으로 맞지 않아 요구안 작성시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그보다 '93년의 임투를 마치면서 또하나의 걱정은 내년의 노총과 경총의 단일합의안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금융실명제' 기타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이루어 진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 다수 있는데 노동계에서 해준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서 노총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노총에서는 방법이 없을것 같아 염려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의 금속요구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단위노조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총에서 내년도 노사 단일안이 나오지 않도록 금속에서 제도적으로 막아 줄것을 단위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 4.1노사합의 관련 사항

1) 4.1노사합의의 문제점

노총뿐 아니라 경총에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일부 산별이나 일부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이 문제이고 노총이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정부와

기업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합의를 한것은 “권고”이든 “권장사항”이든지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때 호시탐탐 노리는 공휴일 축소, 변형근로제, 근기준법 개악과 같은 노동법 개악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기타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보장성이 없으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또한 노총은 지금까지 임금인상 요구에 있어서 생계비를 근거로 생계비확보를 원칙으로하여 왔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4.7%~8.9%를 합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생산성 임금제나 지불능력론, 경쟁력 약화론등을 전면 거부해온 것에 비하여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와 자본가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고 일선 단위조직의 교섭척상의 어려움 또한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임금인상은 단순히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력 강화와 조합원 의식성장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실질적인 교섭권이 박탈된 것이며 상급단체, 단위조직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불신과,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 무용론”, “노동조합 해체론”과 같은 패배의식의 위험성이 앞으로의 문제이다.

2) 설문지 분석내용

한국노총에서 '93년 7월에 「임금교섭제도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전 산별에 배부하여 4.1 노사합의, 임금교섭제도 등 '94년 임투의 방향을 모색코저 조사 분석하게 되었다. 이 설문은 전수조사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조직인 샘플형식으로 조사되어 많은 조직이 답을 한 것이 아니다. 노총에서는 이 설문지를 분석하여 향후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단위조직은 설문지에 접하면서 이번 임투에서 4.1노사합의로 인하여 고전을 하였기 때문에 500여부를 단위 조직에 보냈으나 수거된 갯수는 80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총에서는 다른 산별까지 집계하여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단위조직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본 노련에서는 이번 설문지에서 '93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1노사합의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재한다.

- ① 한국노총 20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난 4월 1일 노총과 경제 단체는 금년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4.7%~8.9% 범위내에서 타결할 것을 권고하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 합의의 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정하다고'고 답한 조직이 9(11.25%)개, '낮은편이다' 71(88.75%)개 조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에서 단위조직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② 금년도 노총과 경제단체의 임금인상을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단위노조의 임금교섭을 제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약을 했다’ 54(67.5%), ‘어느정도 제약을 했다’ 22(27.5%), ‘제약을 하지 않았다’ 4(5.0%) 개 노조로 파악이 됐다. 응답자의 95%가 임금인상을 권고안으로 '93임투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③ 금년도 노총과 경제단체의 임금인상을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조합원 및 일선 노조간부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느정도 반영되었다’ 26(32.5%)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3(66.25%)개 사업장으로 나타나 금년도 노사합의안이 조합원 저변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대단히 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청취), 토론 등으로 단위조직에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있는 노조간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않아야 할 것이다.

④ 금년도 노총과 경제단체의 임금인상을 권고안에 대한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금인상률이 낮다’ 12(7.5%), ‘단위사업장 노사교섭의 폭을 제한하였다’ 62(38.75%), ‘조합원 및 일선 노조간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1(13.13%), ‘합의사항에 포함된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다’ 39(24.38%), ‘산별연맹의 임투지원 및 지도 기능을 약화시켰다’ 8(5.0%), ‘단위노조의 임투를 통한 단결 및 조직강화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18(11.25%)개 사업장으로 파악되어, 노총과 경총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산별 연맹의 기능약화, 단위노조의 조직약화 등의 이유보다는 단위노조에서 노사간의 교섭을 전개하여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3) 진정한 합의를 위해서는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4.1노사합의는 위의 설문지 분석을 보아도 단위조합에 교섭상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노사 자율교섭을 주장하는 노동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역할을 한것이 되고만 것이다.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의 각 주체가 의의를 느끼고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현실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나 기업의 선행적인 전향적 조치와 양보가 매우 중요하다. 노사정간에 불신이 큰 것이 사실이고 그 책임이 그간 사회를 관리해온 정부나 기업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나 기업이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한 노동자측은 그들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오랜기간 당해오기만 한 노동자측의 피해의식이란 깊기 때문이다. 실제 임금에 대해서 합의하기 전에 4.1합의의 부대조건과 같은 것들이 선행적으로 결정·시행되었다면 임금합의

에 대한 노동자측 저항은 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대조건들의 실현은 기존에 우리측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시행에 옮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나 실지로 서민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없었다. 둘째 세제의 개선은 기초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하여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는 안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꼬박꼬박 내었던 세금의 환불보전 차원에서 보면 극히 미미한 것이라 하겠다. 세제 성과급 및 실적급에 대한 면세조치는 지급에 따른 기업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류시키고 있는 점. 네째 고용보험제를 요구한대로 실시할 하겠다고 했으나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을 들수 있다.

진정한 합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정부정책결정 및 경영에의 노동자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결정에의 전문적 참여는 아직 부분적으로 밖에 보장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부처는 노동부의 정책 등에 대해 반노동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에의 참여는 기업 측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사회적 합의형성이 상대편을 속이기 위한 전술로 악용되어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인상이 사회적 합의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이다. 최근 임금인상액이 전에 비해 매우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단위노조에서는 여전히 '1년 농사'로 규정될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임금의 산업간·업종간 기업간 격차가 크고 임금체제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획일적 합의안은 반발을 가져오기가 매우 쉽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임금억제용 소득정책의 수단으로만 생각치 않는다면 가령 산업안전문제나 고용문제, 사회보장제나 사회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형성해냄으로써 합의형성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노동시장과 임금의 왜곡을 가져오는 소득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한편 노총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정한 절차와 전망을 가지고 해내느냐의 문제가 있다. 어느 조직이든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고 일을 하다보면 비판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하지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사고보다는 정확히 재평가하여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합의형성이 힘의 대등성을 밑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노동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 향후전망

— 신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94년 입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

용실명제, 재산공개와 같이 사회부조리 척결 등이 그동안 노동자층의 요구 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주었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94년 임투에 '93. 4. 1 노사합의와 같은 노사합의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 노동법개정 연기로 인하여 '94임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고용불안이 확산되어 파트 타임제, 정리해고, 기업의 합병, 소사장제 등 고용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고용관계법 재개정을 하여 기업에 유리한 조건들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퇴직금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부과시키더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은행이자 주고 쓰겠다는 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은 물론 조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신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고속전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서민의 주머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안)을 제정키로 하여 연금기금의 전액 예탁을 세입예산으로 전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서민경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음.
-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베푸는 듯 하지만 전임자 임금 등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사항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은 내년도 임투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 금융실명제 도입의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는 상승세를 보여 봉급생활자의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된다.
- 이와같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 문제를 산너머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련에서도 정책대결로 정부와 투쟁을 전개 하여야 하며 단위노조에서는 조직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훈련 등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다.

〈표 1〉

지역별 요구 및 타결현황

단위 : 원, %

구분 지역	조직대상	요 구			타 결		
		노 조 수	요 구 액	요 구 율	노 조 수	타 결 액	타 결 율
경 기	207 (188)	150 (151)	91,370 (71,170)	22.45 (16.23)	147 (148)	58,687 (41,616)	14.67 (9.23)
경 남	84 (77)	78 (62)	79,802 (68,136)	20.69 (15.01)	74 (61)	44,799 (36,519)	11.14 (9.43)
경 북	82 (79)	57 (58)	91,546 (77,392)	26.23 (18.12)	53 (58)	58,971 (37,226)	16.63 (8.61)
구 미	24 (23)	15 (14)	71,257 (56,264)	19.03 (15.17)	14 (14)	90,258 (30,258)	9.86 (7.54)
부 산	94 (77)	91 (64)	99,943 (73,867)	24.02 (15.80)	85 (63)	57,857 (37,996)	14.40 (8.34)
서 울	50 (46)	28 (30)	90,053 (73,578)	18.96 (15.44)	28 (28)	52,645 (43,756)	12.06 (9.41)
울 산	31 (23)	15 (20)	94,004 (77,467)	23.99 (16.43)	14 (20)	51,298 (36,144)	12.28 (7.25)
인 천	68 (69)	41 (59)	83,553 (64,052)	20.58 (14.60)	38 (57)	48,942 (37,265)	11.85 (8.43)
전 남	29 (23)	20 (7)	89,327 (53,240)	24.76 (13.28)	18 (7)	39,692 (29,067)	10.88 (7.24)
충 남	28 (25)	16 (11)	79,381 (68,701)	24.97 (17.70)	16 (11)	46,077 (35,245)	15.54 (9.58)
충 북	23 (21)	14 (17)	76,330 (57,766)	21.34 (17.64)	14 (17)	43,092 (34,818)	12.68 (10.08)
포 향	28 (21)	24 (1)	80,844 (64,133)	17.08 (13.44)	24 (18)	37,042 (24,096)	7.47 (5.66)
계	754 (679)	549 (512)	88,262 (70,331)	21.98 (15.92)	525 (502)	50,034 (37,953)	12.46 (8.62)

* 조직대상 : 본조기준 가맹노조수

* 조직대상에서 '92년은 전북3, 강원3, '93년에는 전북4, 강원3개 노조는 제외

* ()안은 '93년도 수치임

〈표 2〉

분과별 임투진행 현황

법례 : '92년, '93년 단위 : 원, %

구 분 지 역	요 구			타 결		
	노 조 수	요 구 액	요 구 율	노 조 수	타 결 액	타 결 율
기 계 금 속	172	92,805	22.33	164	57,298	13.29
	149	74,503	15.95	148	40,796	8.66
전 기 전 자	115	76,765	20.94	110	47,370	12.57
	107	63,847	15.40	104	36,626	8.95
자 동 차	118	89,896	20.31	113	56,840	13.83
	113	70,484	16.53	113	39,611	9.16
비 철 금 속	43	86,444	22.35	41	51,335	12.87
	48	69,581	16.66	46	36,271	8.71
조 선	12	103,823	23.77	11	59,379	13.03
	14	90,887	16.15	14	38,691	7.09
철 강	64	88,874	20.71	62	42,094	9.90
	68	66,717	14.48	64	31,446	7.12
기 타	25	82,608	22.21	24	49,625	13.23
	13	69,880	16.89	13	38,015	9.16

〈표 3〉

액수별 현황

법례 : '92년, '93년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요 구		타 결	
	노 조 수	%	노 조 수	%
45,00 이하	23	4.19	172	32.76
	45	8.79	381	75.90
45,000 ~ 60,000	47	8.56	163	31.05
	114	22.27	96	19.12
60,001 ~ 80,000	137	24.95	146	27.81
	208	40.63	19	3.78
80,001 ~ 90,000	96	17.49	16	3.05
	61	11.91	1	0.20
90,001 ~ 110,000	126	22.95	12	2.29
	42	8.20	1	0.20
110,000 이상	70	12.75	10	1.90
	20	3.90	-	-
기 타	50	9.11	6	1.14
	22	4.30	4	0.80

〈표 4〉

요구 및 타결기준별 현황

법례 : '92년, '93년 단위 : 원, %

구 분 기 준 별	요 구		타 결	
	노 조 수	%	노 조 수	%
기 본 급	473	86.16	466	88.76
	423	82.62	423	84.26
통 상 임 금	47	8.56	15	2.86
	59	11.52	48	9.56
평 균 임 금	15	2.73	11	2.10
	3	0.59	3	0.60
총 액 기 준	1	0.18	18	3.43
	-	-	-	-
동 결 (기 타)	6	1.09	5	0.95
	11	2.15	12	2.39
무 응 답	7	1.28	10	1.90
	16	3.12	16	3.19
계	549		525	
	511		502	

〈표 5〉

지역별 정의신고 현황

지 역	갯 수	%	지 역	갯 수	%	지 역	갯 수	%
서 울	8 (1)	9.57 (1.39)	충 북	2 (1)	2.38 (1.39)	구 미	1 (2)	1.19 (2.78)
경 기	22 (22)	21.4 (30.55)	부 산	15 (9)	15.4 (12.5)	포 향	4 (5)	4.76 (6.94)
인 천	5 (6)	5.59 (8.33)	경 남	15 (15)	17.8 (20.83)	전남북	2 (-)	2.28 (-)
충 남	3 (1)	3.57 (1.39)	경 북	9 (7)	10.71 (9.72)	울 산	- (3)	- (4.17)
						계	84 (72)	100 (100)

(표 6)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현황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성과 일시금
경기	금 성 전 선	2,100	성과급 : 상반기-최고30만원, 하반기-100만원
	대 광 다 이 케 스트	290	성과급 : 62%달성시 20%, 매년 3월31일 지급
	대 봉 전 선	50	성과급 : 목표달성시 50%
	대 신 기 계	100	성과급 : 생산성 100%-50%, 95%-100% 지급
	대 한 전 선	1,139	성과급 : 기존에 받던것을 인상
	대 한 제 작 소	50	성과급 : 기본급 100%+200,000원
	두 원 정 공	600	성과급 : 성과급 받던 내용을 기본급화
	만 도 기 계	1,000	성과급 : 상여금에 100%
	반 도 기 계	320	성과급 : 120%
	삼 아 알 미 님	400	성과급 : 92년 성과급 6억 기본급화
	서 울 주 철	100	일시금 : 특별휴가비 50%
	한 국 가 구	150	성과급 : 기본급에 50%
	한 국 번 디	150	일시금 : 격려금(기본급에 50%)
	한국캠브리지필터	20	일시금 : 특별상여금10만원, 장려금 1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517	성과급 : 연말에 지급
	현 대 전 자	4,255	성과급 : 연말에 지급, 일시금 : 30만원
경남	금 성 산 전	970	성과급 : 400,000원
	금 성 알 프 스	1,150	성과급 : 기본급 100%+30만원
	제 일 정 밀	150	일시금 : 추석특별상여금 10만원
	태 양 코 텅	27	성과급 : 당기순이익 1%-20%지급
	한 국 중 공 업	3,560	성과급 : 연말에 지급
	한 국 지 엠 비	188	일시금 : 특별상여금 55,000원, 휴가비 1%
	화 천 기 계	164	일시금 : 하기휴가비 50,000
경북	효 성 중 공 업	1,233	일시금 : 하기휴가비 50,000-100,000원으로 인상
	남 양 금 속	140	성과급 : 40,000원
	동 원 금 속	40	일시금 : 150,000원
	동 협 정 밀	60	성과급 : 목표달성시 성과급지급(파업기간의 임금보전)
	삼 협 산 업	118	일시금 : 120,000원
	세 왕 금 속	60	성과급 : 통상임금에 60%지급
	평 하 발 레 오	530	일시금 : 250,000원
	평 하 정 공	135	일시금 : 250,000원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성과일시금
경북	평화크릿치	280	일시금 : 250,000원
	화신제작소	500	일시금 : 1차, 2차 - 각 220,000원
구미	금성마이크로닉스	248	성과급 : 통상급 100%+30만원
	금성일렉트론	240	성과급 : 지급합의
	금성정밀	270	성과급 : 100%+30만원
	금성정보통신	250	성과급 : 100%+40만원
	실트론	102	성과급 : 지급합의
	한국아이지모타	100	성과급 : 지급합의
부산	대선조선	450	일시금 : 특별상여금 50%
	대성사	150	일시금 : 100,000원
	동국제강	1,151	일시금 : 100,000원
	상농기업	160	일시금 : 생산격려금 100,000원
	성요사	192	일시금 : 특별상여금 30만원
	세진	44	성과급 : 성과수당 25,000원, 일시금 : 구정상여금 50%
	한보철강	800	성과급 : 230%
	한진중공업	2,200	성과급 : 50%, 일시금 : 특별상여-100%
서울	금성사	5,020	일시금 : 생산성 향상, 지원금 30만원
	대우전자	5,000	일시금 : 200,000원
	동부제강	500	성과급 : 연말 100%, 일시금 : 400,000원
	동일철강	100	일시금 : 추가비 20,000원
	신명전기	150	일시금 : 200,000원
	신진밸브	75	성과급 : 목표달성시 상여금 50%
	큐닉스컴퓨터	140	성과급 : 50%
	한국키스톤발브	30	일시금 : 100,000원
울산	고려아연	500	성과급 : 목표달성 5억-50%, 80억-100%, 100억-150%
	력키금속	625	성과급 : 연말 100%
	풍산금속	615	일시금 : 생산장려금 20,000원
	한국프렌지	900	성과급 : 150%, 일시금 : 추석 10만원
	현대강관	645	성과급 : 150%, 일시금 : 구정·추석 10만원
인천	경동산업	650	일시금 : 김장-150,000원, 하기휴가-80,000원
	금영실업	60	성과급 : 연말에 지급 합의
	대우자동차	7,000	일시금 : 생산장려금 150%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성과일시금
인천	대우중공업	1,320	성과급 : 100%, 일시금 : 품질향상 격려금 20만
	대한제당	273	일시금 : 상여금-10만원
	대한제철	60	일시금 : 특별상여-150%
	영창악기	3,250	일시금 : 추석·구정 각 10만원
	영풍기계	87	일시금 : 하기휴가비 20만원
	우일정밀	45	일시금 : 특별상여금 30%
	인천제철	2,302	성과급 : 100%
	창성	45	성과급 : 50%
	한국종합기계	370	성과급 : 100%
	한라중공업	1,000	성과급 : 100%, 일시금 : 격려금 200,000원
	회성금속	160	성과급 : 100%+10만원
전남	부국산업	105	일시금 : 하기-10%, 월동-20%, 격려금-20만원
	제철설비	400	성과급 : 100%, 일시금 : 격려금 30만원
포항	강원산업	1,700	일시금 : 30만원, 성과급 : 100%
	대성기업	200	일시금 : 조인금 50%
	동일기업	533	일시금 : 격려금 50만원
	부산파이프	400	성과급 : 50%
	삼정강업	600	일시금 : 격려금 100,000원
	성립기업	700	일시금 : 조인 기념비-10만원
	세아특수강	45	성과급 : 100%(전반기, 후반기 각 50%)
	제철정비	75	성과급 : 100%
	한합산업	300	일시금 : 상여금 600%+40,000원

〈표 7〉

쟁의발생 및 쟁의행위현황

'93. 8. 30현재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발생	행위	쟁점	사항	비고
경기	동산유물산	95	5/30		임금문제		5/11타결
	산창전기	300	5/24		임금문제		6/10타결
	해성공업	50	5/31		임금문제(기본 34,500 8.2%)		6/12타결
	삼화콘덴서	637	6/7		임금문제		6/15타결
	신한주철	308	6/10		임금문제		6/19타결
	서원풍력기계	54	6/21		임금문제(6/17, 7차)		6/30타결
	한국채인	145	6/15		임금 + 단협(지무대행))		6/30타결
	한일씨키트	100	6/7		임금문제		6/말타결
	현대엘리베이터	517	7/6		임금문제(4.7%타결, 성과급)		7/13타결
	반도기계	320	6/29		임금문제(7/14투표, 4.7%합의)		7/15타결
	동서공업	230	6/22		임금문제(13.11%에 투표결과 찬성 53%타결)		7/3 타결
	두원정공	600	5/7	5/17	단협 + 임투		6/12타결
	대길통상	20	6/7	6/15	단협인정 및 13개항 타결		7/6 타결
	한국브레이크	300	6/9	6/21	임금 + 단협문제		6/22타결
	지남전기자	90	6/10	6/21	고용문제(소사장제)		단협타결
	동아정공	125	6/10	6/23	임금문제(기본급 7.08%)		7/1 타결
	에벤에셀	23	6/16	6/29	단협 및 임금체불		7/6 타결
	삼아알미늄	400	6/11	6/29	임금문제(부분과업), 잔업20시간 계산차이(통상)		7/8 타결
	대아정밀	50	5/24	6/4	임금문제(기본급 42,000원 7.05%타결)		6/5 타결

지 역	노 동 조 합 명	조 합 원	발 생	행 위	쟁 점 사 항	비 고
경기	경 인 세 기	500	6/25	7/12	임투+단투(기본급 60,900원 4.7%타결)	7/말타결
	신 한 일 전 기	1,200	6/30	7/13	임금문제(기본급 2,110원 타결)	7/23타결
	배 명 금 속	96	6/22	7/2	임금문제(기본급 9.4%타결)	6/30타결
경남	코 렉 스 스포 츠	280	7/1		임금문제	타 결
	한 국 씨 티 즈	230	7/2		임금문제(노조 : 78,722원 22%제시)	타 결
	세 신 실업 창 원	340	6/7		임금문제	6/25타결
	태 양 코 텅	25	6/17		임금문제	6/29타결
	동 양 물 산	400	6/18		임금문제	7/1 타결
	제 일 정 밀	150	6/29		임투+단투	7/12타결
	태 광 특 수 기 계	100	6/22		임금문제(통상급 35,000원 8.3%타결)	7/2 타결
	한 일 제 관	350	7/3		임금문제(노조 : 기본 67,854원 18% 퇴직금누진제)	7/8 타결
	풍 성 전 기	600	6/26		임투+단투 노조 : 15% - 회사 : 6%(7/2현재)	7/9 타결
	효 성 중 공 업	1,269	7/5		임금문제(노조 : 통상 80,758원 15.40% - 회사 : 4.2%)	7/9 타결
	한 국 금 속	142	5/22	6/2	임금문제(기본급 39,000, 단협인상, 생활보조금)	7/2 타결
	진 흥 철 강	110	5/24	6/3	임투문제	6/28타결
	범 한 금 속	303	6/15	7/1	임투+단투, 노조 : 통상 60,000(11%)/회사 : 29,700원	7/10타결
	삼 송	30	6/28	7/12	임투+단투(6/17 1차교섭), 노조 : 48,000원 15%제시	미 타 결
	대 한 화 학 기 계	93	7/12	7/28투표	임투+단투(기본급 58,890원 요구)	8/말타결
경북	남 양 정 밀	150	7/2		임금문제(통상 27,523 8.0% 타결)	7/16타결
	남 양 금 속	147	7/8		임금문제(기본급 37,000, 성과40만원 타결)	7/16타결
	동 국 강 제	60	7/2		임금문제(기본급 38,400원 요구)	7/9 타결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발생	행위	쟁점사항	비고
경북	동협정밀	60	5/25	6/18	임금문제(기본급 1,400원, 상여20%)	7/16타결
	대동공업	860	6/21	7/2양함	임투+단투(기본급 40,500 상여 100% 복직1명 타결)	7/14타결
	광진상공	121	6/22	7/5	임금문제(기본급 48,000원 타결)	7/15타결
구미	한국 I. G 모터	100	6/2		임투+단투	타결
	새한전자	140	5/26	6/8	임금문제	6/9 타결
부산	대립전기	32			임금문제(5%타결)	4/12타결
	대립철공장	33			임금문제(5%타결)	4/12타결
	부산주공	250	6/5		임금문제	6/18타결
	극동금속	30	6/2		임금문제	6/21타결
	대동조선	326	7/3		회사 : 45,000원 제시, 노조 반대(쟁발의기)	7/12타결
	동아전기	100	신고		임금문제(기본급 40,170원 타결)	7/26타결
	삼농기업	160	신고		임금문제(기본급 40,350원 타결)	8/24타결
	한국주철관	388	6/25	7/8	임금문제(7/1 3차) 기본급 99,224(24.90%)	7/30타결
	대선조선	476	7/27	태업	점심시간 집회, 회사와 위원장의 감정싸움	7/30타결
	동부제강	1,511	7/2		임투+단투(기본 4.7%, 성과급 100%타결)	7/15타결
울산	풍산금속	616	6/30		임금문제(통상 4.7% 28,500원 생산 20만타결)	7/21타결
	현대강판	1,100	6/7	6/17	임금문제(위원장 구속 및 석방)	7/24타결
	한국프랜지	900	6/16	6/28	임금문제(기본급 46,800원 성과급 150%타결)	7/28타결
인천	진도	1,274	5/25	6/18	임금문제	6/30타결
	롯데기공	164	6/30	7/12	임투+단추(기본 3.9%, 가족수당, 생산장려인상)	7/22타결
	동양철관	360	6/23	7/8투표	임금문제(기본급 5% 생활보조금 70%)	7/14타결

지역	노동조합명	조합원	발생	행위	쟁점사항	비고
인천	한라중공업	1,000	6/27	7/8투표	임금문제(조합원 총회투표로써 결말 58% 찬성)	7/21타결
	대우자동차	7,000	6/29	7/9투표	임금문제	7/14타결
충남	F K L 동 하	170	7/6	7/19	임금문제(기본 1,200원 13%타결)	7/23타결
충북	백승전자	1,000	5/25		임금문제	냉각타결
포항	부산파이프	400	6/22		임금문제(기본급 32,000원타결)	7/19타결
	동일철강	115	6/24		임금문제(기본급 45,000원타결)	7/3 타결
	홍화공업	280	7/1		임금문제(기본급 36,000원 4.7%타결)	7/9 타결
	강원산업	1,650	7/26		임금+단협	진행중

Ⅲ. “최근동향” 발간

1. 발간부수 : 100부씩
2. 발간횟수 : 1~5호 (5호 발간후 예산부족으로 중단)
3. 배 부 처 : 1,000명 이상 사업장 및 지역본부
4. 내 용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편집

1) 1호 ('93. 4. 26)

- 고용 동향
- 실업자 동향
-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안)
- 노동부 “단체교섭 지도지침”
- 노동일수와 휴일수 국제비교
- 신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 토지이용 규제 완화정책의 비판과 대안
- 최근 무역외수지 악화의 원인

2) 2호 ('93. 5. 10)

- 노동법 개정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 노동법이 개악되어서는 안된다
- 파트타임 고용 실태 조사
-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93근로소득자의 세금 부과 내용

3) 3호 ('93. 7. 10)

- 금속노련 '93임투진행 현황
- 노동부 행정지침 정비에 대한 노총의 주장
- 고용보험제는 이렇게 도입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제도 실시 방안 연구
- 국민연금의 정부의 불인가

4) 4호 ('93. 8. 2)

- 대법원 판결과 노동행정 지침
- 정리해고
- 인사·경영사항과 노동조합
- 고용차별규정 개선 지도지침

5) 5호 ('93. 9. 10)

- 연금기금의 재정 투·융자 활용에 대한 문제와 대책
- '93세제개편 방안 (한국 노총)
- 노동관계법 개정안 (한국 노총 개정안)

IV. 4.1합의평가 실태조사

1. 목 적 : 4.1합의에 대한 금속자체 여론조사

2. 기 간 : '93. 9 - 10월

3. 수 거 : 200부

4. '93. 4. 1합의평가 실태조사서 분석

본노련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조직을 대상으로 4.1합의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으로 4.1합의에 반대하는 조직이 98%로서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98%안에는 절대반대가 62.3%,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35.7%로 나타났다. 또한 4.1합의가 임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 88.8%로서 그 구체적인 영향의 내용으로는 ① 단위노조 교섭의 자율성 침해 ② 경영성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릴수가 없었다는 점 ③ 정률로 합의되어 임금이 낮은 곳의 임금격차 확대 ④ 회사가 4.7%의 범위내에서 교섭하려 함 ⑤ 회사가 교섭도중 교섭안을 하향조정하는 사례들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대조건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할 때 4.1합의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조직은 25.%, 그래도 반대하는 조직이 17.6%, 부대조건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56.6%로서 현장에서는 부대조건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원 대회로 4.1합의 방식이 통과될 경우의 입장도 반대가 62.1%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아 4.1합의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단위 조직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V. 근로조건 · 복지 · 교섭 관련 조사분석

1. 조사기간 : 1993년 8월~11월
2. 조사방법 : 전조직을 우편으로 2회 발송
3. 분석갯수 : 670개 노조중에서 344개 (51.35%)
4. 조사목적
 - 1) 연맹내부의 현황유지 및 정책개발
 - 2) 단위조직의 단체교섭자료 제공

5. 조사결과

1) 복지관련사항

(1) 성과급 지급내역

조사서 344개에서 106개 (30.81%) 노동조합이 '93년도에 성과급 내지는 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표달성시 지급되는 조직이 28.30%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63.2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성과급보다는 일시금지급으로 임투를 마무리 하려는 조직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생산성 임금제'는 이 성과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과급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가시적으로 목표 달성을 했을때 노사간의 약속에 의한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경우 노사간의 신뢰속에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져 있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급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되려면 노사간의 신뢰는 물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과급 지급유형별 현황

지 급 유 형	갯 수	%
목 표 달 성 시	30	28.30
일 시 금 형 식	67	63.21
성과가 있을 경우	9	8.49
계	106	100

(2) 사내용자제도

조사서 344개에서 136개 (39.53%) 노동조합이 사내용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내용자제도는 6.29선언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그 규모 자체도 많은 금액이 회사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다. 조사서에 나타난 지급현황을 보면 300~500만원을 용자해주는 조직이 41.18%이고 600만원 이상을 용자해주는 조직이 31.62%나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조합원의 이자부담율은 4%~6%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직이 34.56%, 3%는 16.91%, 무이자의 혜택을 보는 조직이 23.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한도 용자지원 현황

지 원 현 황	갯 수	%
300만원 이하	21	15.44
300~500만원	56	41.18
600~700만원	15	11.03
800만원 이상	28	20.59
퇴직금 한도	12	8.82
기타(사우회 등)	4	2.94
계	136	100

사내용자에 대한 이자율

이 자 율	갯 수	%
무 이 자	32	23.53
3% 이하	23	16.91
4% ~ 6%	47	34.56
7% ~ 10%	14	10.29
11% 이상	18	13.24
은행이자	2	1.47
계	136	100

2) 고용관련 사항

이번 조사에서 고용의 증감은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감소는 50.29%가 9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고용변화가 없는 조직과 늘고 있는 조직이 45%정도로 금속산하의 고용증감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금속 대기업 사업장이 시설투자를 하지않을 경우 94년도에는 더욱 심화되어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 말해주듯이 “자동화로 인하여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2.33%밖에 되지않으므로 각 기업에서 시설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다 보니 하청, 용역, 소사장제도등의 도입으로 기존에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주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에 대하여 조직적인 힘으로 강력저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사장제도와 같은 경우 344개 설문지에서 36개조직(10.47%)이 응답하였는데 그중 10개조직(27.78%)이 ‘방해공작’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으로 사용자들의 행각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동향에 대한 응답

구 분	갯 수	%
고용이 늘고있다	68	19.77
고용이 줄고있다	173	50.29
고용이 변화가 없다	87	25.29
무 응 답	16	4.65
계	344	100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응답

내 용	갯 수	%
정식사원을 줄이는 대신 임시직, 비정식직원 늘림	40	11.63
하청·용역·소사장제 이용으로 종업원수를 줄임	67	19.48
정식사원은 일정하나 신규채용시 비정식직원 채용	58	16.86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여 인원을 이원화	3	0.09
자동화로 인하여 자연감소	8	2.33
해당사항 없음	168	48.84
계	344	100

3) 단체교섭 관련 사항

(1) 임금 및 단협안 결정과 체결방법

임금 및 단협을 체결 할시 조합원 인준투표(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끝을 내는 사업장이 43.03%나 되었다. 이들 사업장은 선거공약시 조합원 투표로서 임투를 끝낸다는 약속을 한 사업장이다. 반면에 교섭위원이 임투나 단투를 끝내고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마무리 하는 사업장이 37.50%나 되고 있는데 노·사관계가 양호하든지 아니면 노·노관계에 있어서 단결이 잘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단협)안 결정방법

결 정 방 법	갯 수	%
집 행 부	77	32.22
총 회	49	20.50
확 대 간 부	28	11.72
대 의 원 대 회	70	29.29
운 영 위 원	9	3.77
교 섭 위 원	5	2.09
소 위 원 회	1	0.41
계	239	100

※ 1인 1요구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4개 노동조합에 해당

임금(단협)교섭결후의 체결방법

체 결 방 법	갯 수	%
조합원 인준투표(총회)로 최종결정	83	24.13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최종결정	65	18.90
확대간부 회의의 결의로 최종결정	40	11.63
운영위원 회의로 최종결정	11	3.20
상집간부 회의로 최종결정	16	4.65
교섭위원이 체결한 후 보고로 끝냄	129	37.50
계	344	100

(2) 단체교섭(임금교섭)시 회사측의 태도

해마다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 갱신때 정부의 개입으로 단위노동조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과 노사자율의 실효성에 대

해서 비교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 회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럽지만 대체적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시 노사간에 제시하는 안은 회사가 안을 내놓는 경우(45.5%)가 노동조합의 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하는 경우 (15.1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금정책에 있어서도 기업별 체제하에서는 '노사자율'로 노사간에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임금격차나 근로조건 격차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거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단체교섭의 개악안 보다는 줄려고 하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교섭에 임하는 회사의 태도

회사측의 태도	갯 수	%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편	179	52.03
그저 그렇다	114	33.14
불성실하다	35	10.17
노동조합에 적대적이다	6	1.74
무 응 답	10	2.91
계	344	100

단체교섭시 회사측 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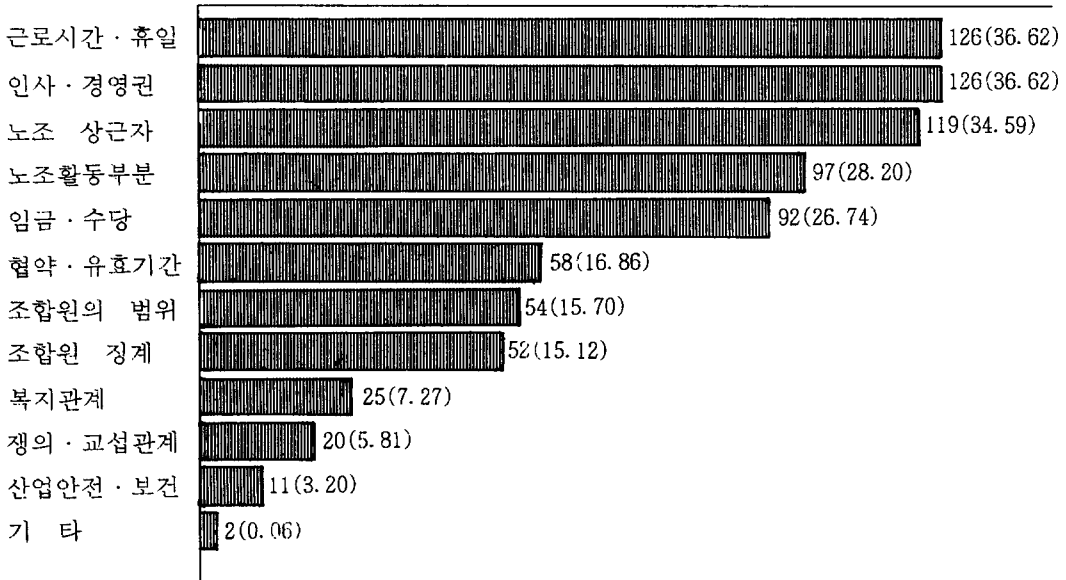
내 용	갯 수	%
단체협약 대부분 개악시킬 안을 내놓음	27	7.85
단체협약 일부조항에 대하여 개악안을 내놓음	130	37.80
회사의 특별한 안대신 노조의 안을 중심으로 교섭	176	51.16
무 응 답	11	3.20
계	344	100

(3) 회사측이 개악시키려고 하는 부분

앞에서 '단체교섭시 회사측의 안'에 대해서 개악을 시키려는 안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45% 정도로 나타났다. 그 개악시키려는 단협의 세부조항은 근로시간과 휴일(36.62%), 그리고 인사·경영권(36.62%), 한글날 삭제(43.31%), 국군의 날 삭제(40.99%),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축소문제(34.59%) 등의 내용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조합활동 부분(28.20%), 임금 및 수당(26.74%)이고 제일 적게 거론되는 부분이 산업안전보건 이다. 그러므로 향후 투쟁의 방향을 조합원의 복지와 안전부분인 산업안전보건 쪽으로 선화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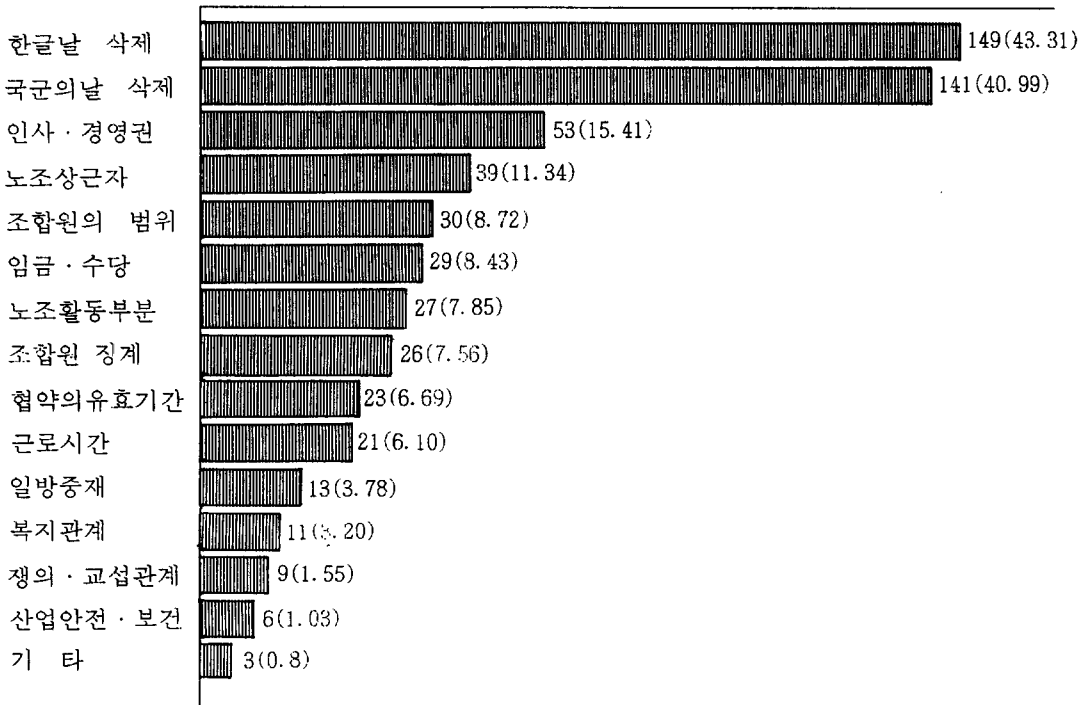
회사측이 가장많이 개악시키려는 부분

응답갯수(응답노조 비율)



강한주장으로 단협조항이 개악된 부분

응답갯수(응답노조 비율)



VI. '94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1. 목 적 : '94임금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단위조직 의견수렴

2. 조사방법 : 전수조사

3. 조사기간 : 1993년 11월 15일~12월 15일

4. 수거수(율) 240개(38%) - 620개노조 기준

5. 설문조사 내용분석

1) 조사서집계

① '94년도 금속임금지침에 독자의 임금인상요구율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문 항	갯 수	%
제시하여야 한다	204	80.5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21	8.8
노총요구안을 따라야 한다	15	6.2
계	240	100.0

② 본노련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문 항	갯 수	%
분과별로(6개) 제시	154	64.2
분과관계없이 단일안	86	35.8
계	240	100.0

③ 규모별(가이드라인 제시)현황

(단위 : 원, %)

문 항 인원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면 얼마나?	'94년도 희망 임금 인상액(율)	'94년도 임금인상 실질타결 예상
100명 이하	69,829 (14.80)	68,791 (14.58)	51,428 (10.90)
101~500명	64,522 (14.34)	60,922 (13.54)	45,354 (10.08)
501~1000명	63,609 (13.37)	62,182 (13.07)	39,392 (8.28)
1000명 이상	66,760 (13.66)	63,388 (12.97)	41,542 (8.51)

* 기본급 기준

④ 근속년수별(가이드라인 제시)현황

(단위 : 원, %)

문 항 근속년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면 얼마나?	'94년도 희망 임금 인상액(율)	'94년도 임금인상 실질타결 예상
3년 이하	65,307 (14.08)	62,941 (13.57)	40,214 (8.67)
3.1~7년	65,983 (14.09)	64,391 (13.75)	48,422 (10.34)
7.1~10년	64,737 (14.05)	63,124 (13.70)	43,910 (9.53)
10년 이상	70,115 (14.00)	67,110 (13.40)	47,428 (9.47)

* 기본급 기준

⑤ 연령별(가이드라인 제시)현황

(단위 : 원, %)

문 항 년 령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면 얼마나?	'94년도 희망 임금 인상액(율)	'94년도 임금인상 실질타결 예상
30세 이하	61,862 (14.27)	60,735 (14.01)	42,555 (9.82)
31~40세	68,266 (14.29)	64,874 (13.58)	48,536 (10.16)
40세 이상	70,340 (14.38)	64,470 (13.18)	46,736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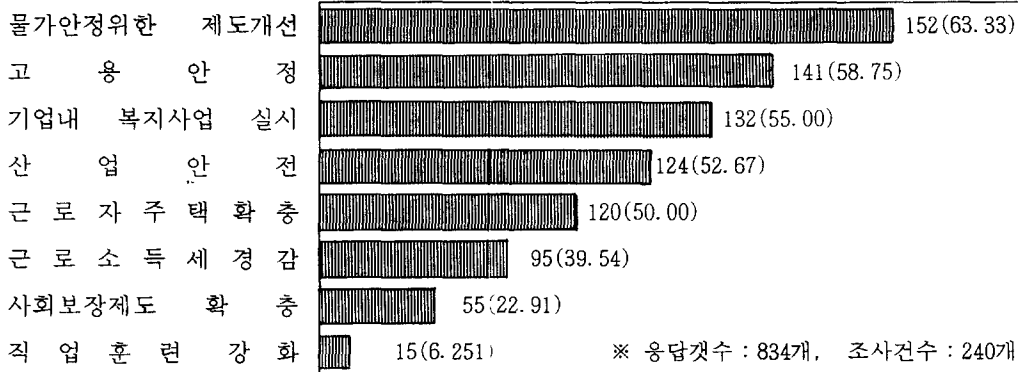
* 기본급 기준

⑥ 지역별(가이드라인 제시)현황

(단위 : 원, %)

문 항 지역	갯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면 얼마나?	'94년도 희망 임금 인상액(율)	'94년도 임금인상 실질타결 예상
강 원	2	87,500 (17.50)	75,000 (15.00)	61,250 (12.25)
경 기	82	68,264 (14.79)	66,874 (14.42)	48,925 (10.60)
경 남	30	70,052 (14.68)	65,900 (13.81)	42,184 (8.84)
경 북	24	64,979 (14.11)	63,045 (13.69)	44,440 (9.65)
구 미	14	56,000 (13.78)	55,837 (13.74)	42,102 (10.36)
부 산	18	64,890 (14.11)	60,337 (13.12)	46,816 (10.18)
서 울	11	59,545 (13.93)	55,869 (13.07)	38,470 (9.00)
울 산	13	71,654 (13.36)	67,654 (12.61)	52,507 (9.79)
인 천	25	55,788 (13.80)	54,899 (13.58)	39,254 (9.71)
전남북	6	61,667 (13.67)	57,878 (12.83)	39,340 (8.72)
충 남	6	67,833 (14.67)	66,261 (14.33)	53,175 (11.50)
충 북	6	76,833 (12.50)	65,830 (10.71)	51,200 (8.90)
포 향	3	81,307 (13.50)	60,000 (10.00)	49,980 (7.75)
계	240	66,007 (14.30)	63,237 (13.70)	45,004 (9.75)

⑦ 부대조건(임금이외의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2) '94년 임금정책조사서 분석결과

1994년도 임금정책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93년도 금속노련이 단독으로 안을 제시한 것 처럼 94년도에도 역시 80.5%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노총요구안을 그대로 하자는 단위노조가 6.2%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속자체안을 제시한다면 6개분과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가 64.2%가 되어 분과별 제시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그것은 각 분과모임이 1년내내 활동으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이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정책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조사에서 94년도 연맹에서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집계결과 나왔다. 그 내용은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 기준으로 66,007원 14.30%로서 작년보다 다소 낮은 %로 조사되었고, 94년도 얼마나 되었으면 좋은가? 하는 응답에는 63,237원 13.70%, 94년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는 10%의 미만인 9.755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94임투에 있어서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0명이하 단위사업장과 500명 부터 대기업 사업장들의 생각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수 있다. 500명이하 사업장은 요구-15%, 타결-10%선 이며, 500명이상 사업장부터 대기업 사업장은 요구-13%, 타결-8%선에 머무르고 있다.

근속년수별 타결예상현황을 보면 3년이하가 8.67%, 7년까지가 10.34%, 7년부터 장기근속자들은 9%선에서 타결을 점치고 있다. 연령별 타결예상현황을 보면 40세 이상되는 조합원들이 40대 이하되는 조합원보다 다소 낮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앙노사합의를 할 경우 부대조건으로 전체 응답자중 50%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고용불안으로 부터 오는 고용안정, 기업내 복지사업 실시, 근로자 주택확충 등을 지적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소득세 경감, 사회보장제도 확충등이 각각 40%, 23%를 지적하였고 그 밖에 직업훈련강화로 지적되었다.

Ⅶ. '94임금인상활동지침 발간

1. 발간사
2. '94임금인상 활동의 목표

제1장 '94경제정세와 국내외 동향

1. 세계경제정세
2. 국내정세 및 경제
3.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이 주는 영향

제2장 '94임금인상 활동목표의 근거

1. 주44시간으로 생계비확보
 - 1) 생계비의 의의
 - 2) 생계비 보장의 보장성
 - 3) '94노총생계비 내역과 그 합리성
 - 4) 최저생계비 활동상의 주의할 점
2. 임금구조의 개선
 - 1)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 2) 임금체계의 개선
 - 3) 직능급의 문제점과 대응
3.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전개
 - 1) 문제의 제기
 - 2) 주44시간 노동의 완전관철과 임금보전
 - 3) 시간외 노동 규제방안
 - 4) 교대제 노동의 개선
4. 고용안정의 확보
 - 1) 문제의 제기
 - 2) 고용불안정의 요인
 - 3) 고용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5. 인사·경영참여 확보
 - 1) 정부 사용자의 경영권 주장
 - 2) 경영권에 관한 관례
 - 3) 경영권 주장의 부당성

- 4) 노동조합의 대응 및 요구
6. 복지후생제도의 신설 및 확충
 - 1) 복지후생제도의 신설 및 확충
 - 2) 복지후생제도에 관한 요구
 - 3) 주거생활 안정
 - 4) 주택문제 해결방안

〈참고〉 중소기업근로자 복지 진흥법
7. 산업안전의 확보와 작업장 환경개선
 - 1) 문제의 제기
 - 2) 어떠한 활동을 해야하는가?
 - 3) 우리의 요구

제3장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 및 사례

1.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
2. 단위노조 임투요구안 사례

제4장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폐업
2. 기업의 합병·양도
3. 용역
4. 시간제 노동(파트타임)
5. 배치전환등 노동력 재배치
6. 정리해고
7. 공장이전
8. 공장 자동화
9. 외국인 노동자

제5장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

1. 철강
2. 비철금속
3. 기계
4. 중전기
5. 전선
6. 가전

7. 컴퓨터
8. 반도체
9. P.C.B.
10. 통신기기
11. 조선
12. 자동차
13. 자동차부품

제6장 정부·사용자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대응

1. 우르과이 라운드와 임금
2.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3. 소사장제도의 대응방안
4. 성과배분제의 본질과 대응
5. 변형근무시간제 비판
6.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인가
7. 고충분담론의 허구성과 대응

제7장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 도시근로자 생계비 산출의 개요
 - 1) 소비자물가 조사방법
 - 2) 가구모형별 생계비
 - 3) 가구모형별 항목별 생계비
2. 비목별 생계비 모형설계 및 산출
 - 1) 가족구성모형의 설계
 - 2) 식품비
 - 3) 주거비
 - 4) 광열비 및 수도비
 - 5) 가구 가사용품비
 - 6) 피복 신발비
 - 7) 보건위생비
 - 8) 교육비
 - 9) 교통통신비
 - 10) 교양·오락·잡비
 - 11) 저축

12) 조세공과금

부록 : 자료편

1. '93년도 임금교섭 진행현황
2. 임투·단협안 결정방법
3. 단위노조 근무형태
4. 단위노조 초임실태
5. 성과급 지급현황
6. 변형근로에 대한 사항
7. 사내용자 제도
8. 사내복지기금 현황
9. 소사장제 도입사업장
10. 파트타임 실시 사업장

발 간 사

'94년도 임투정세가 매우 엄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르파이 라운드를 빌미로 하여 노동자에게 공세가 강력히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임금을 억제할 것이고 노사화합의 원년을 만든다는 실적주의에 빠져 노동자의 파업권을 대대적으로 억제할 것이며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정상적인 노동3권행사 자체도 죄악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전면화될 것이다. 여기서 불행히도 우리 노동조합 진영은 정부와 자본측의 공작으로 국민으로부터 별 신뢰를 못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때문에 보다 유연한 전술구사가 요청된다 할 수 있다.

금년도 임투의 과제는 여전히 생계비 확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행히도 임금의 현 실태에 대해서는 관념들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임금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그릇된 관념이 있다.

물론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임금수준 상승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일부 지배적 대기업의 경우 임금이 생계비 수준에 접근할 것이 사실이나 아직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는 생계비에 훨씬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비 수준에 비교적 접근한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잔업을 해야 생계비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마치 임금이 정상수준에 올라섰으므로 임금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누구든 현실을 왜곡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얼마 안가서 커다란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수준의 현 실정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계비를 밀도는 노조의 경우는 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임금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잔업수당등을 포함하여 생계비가 어느 정도 접근된 노조는 노동시간단축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비에 접근한 노조는 표준생계비나 아니면 생계비상승율과 생산성 상승을 감안하여 임금조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심각한 임금격차의 해소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마땅한 해결장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금억제정책일뿐이고 업종간 격차와 기업규모간 격차가 해결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 임금격차 축소에 약간 기여를 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문제해결은 하청단가 결정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바 제도개선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체계문제인데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능급체제로 고쳐나가려는 기업이나 정부측의 의지가 강하다. 또 기업들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용

역 등 고용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임금체계문제는 노동조합측도 연구를 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개편은 막아야 한다.

네째 임금이외의 근로조건, 즉 고용안정, 기업내 복지, 사회보장, 경영참여, 인력개발등의 문제를 기업단위 노조와 지역적·전국적 노조가 입체적으로 풀어가는데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법 개정이나 반노조 정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표명을 임투와 결합시켜야 한다.

여섯째 임투는 조합원의 관심이 가장 고양되는 투쟁으로 많은 경우 임투를 통해 조직이 강화되기보다는 약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 문제의 소지는 회사측이나 조합원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어차피 책임져야 할 것은 조합 집행부이므로 최대한 조합원들과 논의하면서 임투를 진행해야 한다. 이상 여섯가지가 금년도 임투에서도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단위노조에서 교섭하는데 필요한 원칙이나 대응방안, 그리고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현재 기업별 교섭체제에서는 생생한 자료란 기업단위에서 나오기 마련이지만 본 지침도 충분히 활용하여 '94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본 노련에서는 산하 각노조의 임금교섭진행에 따라 추가적 자료제공, 조합원공감대형성을 위한 특보 시리즈 배부, 금속노련 특보를 통한 임투진행자료 제공, 각 사업장방문을 통한 현장지도를 대폭 강화해갈 방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94임금인상 활동의 목표

1) 주44시간으로 생계비확보

- ① 조합원의 생산을 위한 재생산 비용의 최소한 요구
- ② 물가인상과 생계비인상으로 임금의 부족분의 요구
- ③ 노총 최저생계비의 정당성 주장 및 요구

2) 임금구조의 개선

- ①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 축소
- ② 임금의 총액중에서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점
- ③ 상여금 제도의 개선 : 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지고 관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그리고 지급을 등을 단협에 명문화
- ④ 임금체계개편

3) 노동시간 단축운동

- ① 주5일제를 목표로 삼고 우선 주44시간제를 정착
- ② 잔업없는 날을 확대하여 시간외 노동을 규제하고 유급휴일을 확대
- ③ 교대근무에 있어서는 2교대를 3조 3교대제로 변환

4)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전개

- ① 고용안정은 임금교섭보다 더욱더 중요함
- ② 고용보험제도는 최소한 10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투쟁
- ③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 사용은 근절되어야 하며 기술연수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 ④ 경영사정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임금자제를 조건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해고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토록 함.
-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요구

5) 인사·경영참여 확보

- ① 경영참가는 노사신뢰 확보와 산업평화를 위해 반드시 실시
- ② 신기술 도입과 교육훈련 및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의 협의와 합의를 의무화
- ③ 노사간 인사위원회 설치 및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가를 의무화

- ④ 경영참가법 제정요구(노사협의회법 폐지)

6) 복지후생제도 확충

- ①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장내에 복지가 미흡하므로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 ② 중식 및 작업복지급을 의무화 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며 휴양 시설을 설치하여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함.
- ③ 교육비 및 의료비의 지원으로 조합원의 생활안정에 기여
- ④ 기업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노사가 공동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⑤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근속자에게 주택마련의 길을 열어주어야 함.
- ⑥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활용방향 정립

7)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장환경 개선

- ① 인간생명의 존엄성 주장
- ② 사용자의 법준수 여부를 임금교섭과 병행하여 그 중요성을 제시
- ③ 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의 방법

산 업 안 전 활 동

— 산업안전부 —

I. 산업안전보건 교육활동

II. 기타 산업안전보건 활동

I. 산업안전보건 교육활동

1. 스웨덴 지원교육

- 일 시 : 1993. 10. 12 ~ 10. 15
- 장 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 참석인원 : 18명
- 교육프로그램
 - 10월12일 - 자기소개 및 산업안전 활동보고
 - 10월13일 - 스웨덴 금속노조의 산업안전 활동 및 단협내용
 - 우리나라 산업안전 관련 단체협약 실태 및 개선방안 : 박은주(노건연)
 - 단체협약안 작성
 - 10월14일 - 코리아 스파이서 노조 사례발표
 - 분임토의
 - 10월15일 - 분임발표
 - SMU, FKMTU 강평

II. 기타 산업안전보건 활동

1. 산업안전편람 제작 준비

1) 편람의 목표

- 현장 실무자의 실무지식제공
- 노동조합 산업안전 활동의 방향제시

2) 추진 일정

- 실무자회의 : 1994. 3. 15 단위노조 실무자 3~4명
- 자료수집 : 1994. 3. 9~3. 15
- 집 필 : 1994. 3. 15~4. 15
- 내용검토 및 정정회의 : 1994. 4
- 인 쇄 : 1994. 4

2. 단위조합 산업안전관련 활동지원

- 1) 대우전자 견경완장애 발생 건
- 2) 산업안전관련 질의회시 활동 및 지원

교 육 활 동

교 육 부

○ 개 요

I.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

1. 신입/신규 대표자 교육
2. 신입/신규 사무국장 교육
3. 상집간부 실무 전문교육

II. 노총주관 노조간부 위탁교육

1. 정기 노보간부 교육

III.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 현황

개 요

교육부에서는 '93년도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교육사업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교육사업은 신임/신규 대표자 교육 2회, 신임/신규 사무국장교육 2회, 상집간부 실무전문교육 1회등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과 노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에 교육생을 파견하였으며,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의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파견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사업의 목표는 신임/신규 간부에게 꼭 필요한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단체교섭능력 강화, 조직운영 및 실무행정 능력강화, 간부의 자세확립 및 조직간의 연대 및 정보교류 등에 그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인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년도에는 편람드 지원으로 강사양성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 교육계획만 세우고 실시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 노총위탁 간부교육에는 326명이 수료하여 각산별 전체 수료자 951명중 34%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도 전년도 대비 144건에서 159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여 전반적인 교육성과 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됩니다.

더욱더 분발 노력하여 차기 교육사업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

1. 신입/신규 대표자 교육

가. 목 표

- 노동조합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 능력 강화
- 조직운영 및 관리능력 강화
- 정보교류 및 지도자의 자세 확립

나. 개 요

- 교육기간 : 2박 3일 합숙교육
- 대 상 : 93년도 신규 및 신입대표자 (지부장 포함)
- 참 가 비 : 15,000원 (숙식, 교재, 문구 일체지급)

다. 교육계획

횟 수	계 획 일 정	대 상 지 역	대 상 인 원	비 고
1 차	93. 10. 12~10. 14	전 지 역	60	
2 차	93. 10. 19~10. 21	전 지 역	60	

라. 교육 실시 현황

횟 수	실 시 일 정	교 육 장 소	참 석 인 원	비 고
1 차	93. 10. 12~10. 14	노총 중앙교육원	30	
2 차	93. 10. 19~10. 21	노총 중앙교육원	36	

마. 교육내용

- | | |
|-------------------------|----------------|
| ○ 금속노련 현황 및 교육원 소개 | 박 인 상 위원장 |
| ○ 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최 웅 길 사무처장 |
| ○ 노동조합 일상활동 및 회계실무 | 윤 창 열 총무국장 |
|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 이 진 우 조직국장 |
| ○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 | 김 문 수 인권회관소장 |
| ○ 고용불안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단체협약 | 박 석 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 ○ 단체교섭 이론 및 실습 | 김 장 선 수석부위원장 |
| ○ 노동관계법 개정, 쟁점사항 설명 | 김 순 호 조직부장 |
| ○ 노동운동사 | 김 성 문 부위원장 |

- 지도자의 자세
- 연맹과의 대화
- 교육집행

정 학 군 부위원장
박 인 상 위원장 및 의장단
김 홍 통 교육부장
김 정 완 총무차장

바. 평 가

수강생 참여율 저조로 인한 교육집행상 애로가 있었으며 금년에는 노총 중앙교육원 완공으로 교육원 소개 및 신입 대표자들에게 본노련 소재지 활동상황을 직접 현장 학습케하여 성과가 있었음. 연맹과의 대화시간에는 노동법 개정문제, 연맹의 의무금등 제정에 대한 문제와 교육사업 확대등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음.

2. 신입/신규 사무국장 교육

가. 목 표

- 노동조합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 능력 강화
- 조직운영 및 행정실무능력 강화
-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 간부로서의 자세확립

나. 개 요

- 교육기간 : 2박 3일 합숙교육
- 대 상 : 93년도 신입/신규 사무국장 (지부사무장 포함)
- 참가비 : 15,000원 (숙식 및 교재, 문구 일체지급)

다. 교육계획

회 수	계 획 일 정	대 상 지 역	대 상인원	비 고
1 차	93. 11. 2~11. 4	전 지 역	60	
2 차	93. 11. 30~12. 2	전 지 역	60	

라. 교육 실시 현황

회 수	실 시 일 정	교 육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1 차	93. 11. 2~11. 4	대전 유성 경하장	50	
2 차	93. 11. 30~12. 2	대전 유성 경하장	39	

마. 교육내용

-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 장 선 수석부위원장

○ 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최 응 길 사무처장
○ 노동조합 일상활동 및 회계실무	운 창 열 총무국장
○ 단체교섭 이론 및 실습	김 홍 룡 교육부장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이 진 우 조직국장
○ 노동운동사	김 성 문 부위원장
○ 간부자세	정 학 군 부위원장
○ 고용불안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단체협약	박 석 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노동관계법 개정, 쟁점사항 설명	김 순 호 조직부장
○ 연맹과의 대화	의장단
○ 교육집행	김 홍 룡 교육부장
	김 정 완 총무차장

바. 평 가

2회에 걸친 교육을 통하여 핵심간부인 사무국장들에게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하고자 노력하였다. 수강생 참여율도 괜찮았으며, 특히 대사업장 노조의 사무국장들이 참석하여 교육분위기 안정 및 경험 사례등 참석자들에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

3. 상집간부 실무전문 교육

가. 목 표

- 노동조합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 조직관리 능력 배양
- 교육활성화 및 수행능력 배양
- 조사통계 업무능력 배양
- 여성간부의 권리의식 함양 및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간부로서의 자세확립
-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나. 개 요

- 교육기간 : 2박 3일 합숙교육
- 대 상 : 단위조합의 조직, 교육, 조사통계, 여성담당자 100명
- 참 가 비 : 20,000원 (숙식, 교재, 문구 일체지급)

다.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일시	장 소	참 석 자	비 고
1993. 12. 14~16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166명	

라. 교육내용

* 공통과목

- | | |
|-------------------|----------------|
| ○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 김 장 선 수석부위원장 |
| ○ 노동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최 응 길 사무처장 |
| ○ 노동법 해설 | 박 석 운노동정책연구소장 |
| ○ 노조간부의 자세 | 이 운 용 노총중앙교육원장 |

* 전문과목

- | | |
|-----------------------------|--------------|
| ○ 조직국 | |
| - 조직이론 및 실제 | 김 순 호 조직부장 |
| - 조직관리에 대한 사례 | |
| ○ 노사 대책국 | |
| - 통계자료 보는법 | 노 진 귀 노사대책국장 |
| - 조사통계 활동의 실제 | 이 경 훈 노사대책부장 |
| - 각사업장 조사통계 활동 사례 | |
| - 조사통계 활동의 기획 | |
| ○ 교육국 | |
| - 효율적인 노동교육방법 | 김 홍 룡 교육부장 |
| - 노동교육 강의 방법과 강사의 자세 | |
| - 조합원 교육 사례 | |
| ○ 여성국 | |
| - 노동조합과 여성간부의 역할 | 정 영 속 여성국장 |
| - 여성노동운동의 과제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향 | |
| - 토의 및 질의 | 문 광 주 여성부장 |
| - 여성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 | |
| - 종합평가 | |

마. 평 가

- 교육인원(166명)이 많았지만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므로서 통제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시행이 되었다고 판단함.
-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노총교육원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으며 향후에도 장소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교육시기 조정문제와 관련 많은 요구가 있었음. 내년도 교육사업은 실시 시기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장이 멀고 교통불편 호소

Ⅱ. 노총주관 위탁교육

1. 정기 노조간부 교육

- 일 시 : 1993. 5. ~ 93. 10월
- 장 소 : 노총중앙교육원
- 교육기간 : 4박5일

기수	배정인원	추천인원	전체참석자/금속참석자	비 고
251	50	37	64/21	93. 5. 10~ 5. 14
252	50	46	73/32	93. 5. 17~ 5. 21
253	50	36	78/17	93. 6. 7~ 6. 11
254	50	40	107/22	93. 6. 21~ 6. 25
255	50	36	107/21	93. 7. 5~ 7. 9
256	50	35	96/19	93. 7. 19~ 7. 23
257	50	54	132/50	93. 8. 30~ 9. 3
258	50	64	136/46	93. 9. 13~ 9. 17
259	50	51	87/25	93. 10. 4~ 10. 8
260	50	54	114/30	93. 10. 18~ 10. 22
계	500	453	951/326	

※ 500명 배정에 453명을 추천, 326명이 참석하여 72%의 참석율임.

※ 전체 교육 수료자 951명 중 금속간부가 326명이 수료하여 34%를 차지함

Ⅲ.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 현황

강 사 년 월	94년도			93 년 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김장선 부위원장			2	1				2	3	1	3	2	14			
김성문 부위원장	1												1			
사 무 처 장	1	2	3	4	3	2	3	4	2	4	3	4	35	중앙교육원출강포함		
조 직 국 장	5	5	3	3	2	1		1		4	1	2	27			
총 무 국 장												1	1			
여 성 국 장	2	1	2	4			1			2	2	2	16			
조 직 부 장	1		2						1	1	2	2	19			
교 육 부 장	4	3	9	1		3	2	2	1	2	2	2	31			
여 성 부 장				1	1						1		3			
홍 보 차 장			1										1			
노 총 강 사	3	2	4				1	1	1		3	1	16			
기 타	2			1	1							1	15			
계	19	13	24	15	7	6	7	10	8	14	17	17	159			

※ 본노련 주관 교육 강의는 산입하지 않음

※ 전년도 대비 144건에서 159건으로 10% 정도의 교육증가 되었음.

※ 교육내용 들은 3,4월(임투관련), 10~12월(이론, 정신교육) 집중됨.

홍 보 활 동

홍 보 부

- I. 금속노보 발행
- II. 홍보선전교육 실시
- III. 기타 선전활동

I. 금속노보 발행

— 관 형 : 신문판 4면

— 발행부수 : 1만부

— 발행실적 :

1993년 6월 3일 제107호

7월 24일 제108호

9월 17일 제109호

11월 4일 제110호

12월 4일 제111호

1994년 1월 29일 제112호

3월 8일 제113호

II. 홍보 선전 교육

— 일 시 : 1993. 12. 7~12. 9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가인원 : 전국 75명

— 교육내용 :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 활동의 의의

홍보활동 사례 발표

기사작성요령 및 실습

그림 연습

편집이론 및 실습

노조간부의 자세

III. 기타 선전홍보활동 및 홍보물 발행

○ 기타 홍보선전활동

— 각종보도자료 및 속보 제작배포

— 가맹노조 노보 수집분류

— 현장사진작업 실시 (1993년 6월~1994년 4월, 2차)

서	출	(102)	693	1963
경	기	(1034)	42	3666
인	현	(1032)	437	8505
노	련	(1042)	273	8766
련	지	(10431)	67	1419
지	역	(10511)	84	4021
부	본	(1061)	844	4813
본	부	(10822)	74	9631
부	현	(1093)	564	0128
현	황	(1082)	524	8561
황		(10562)	83	3728

〈비매출〉

상집간부 실무교육 실시
상집간부의 역량제고에 큰 도움

연병에서 주관한 4위조
한 삼작간부 실무전문교육
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여주에 있는 한국

고종안정 ⑦노동관계 개악인정 ⑧약속 ⑨노조 조각에 따른 부당해고자 인복지 쉼이다.	고종안정 있었다. 전국 조작 유부 서 조종 과 잊 참가 목으로 위협 과 과 이
--	--

저 지난해의 임금협약의
단위조합의 외견을 보
저 지난해의 임금협약의
대한 외견은 다음과 같

4. 1항의가 임금교

지 지난해의 임금합의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
선 4·1합의가 임금교
계약이 되었다고 답한
88.29%였으며 공정
작용을 했다고 답한 경
2.58%에 불과하였다.
한 4·1 합의에 대한 인

들은 질문에는 절대반
52.33%였으며, 겹치
가 있어 반대한다는 조
35.7%였으며, 찬성은
1.94%였다.

③합의가 불가능한 정, 고
상 등 부대조건을 전제
의의 실현이 있을 경우
의와 같은 방식을 찬
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다가 25.32%였으
현되지도 찬성 못한다

53%. '부대조건이 사실 실현될 수 없으므로 반'가 56.49%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용자측이 제시한 노총이 단서조항으로 사항의 실현가능성에 깊은 회의를 나타내고

차 노동 일부에서 유성 경 노동문 석한 기 지난 육은 '0

1990년 도입인상
 대한 단죄조합의 의견
 먼저 임금인상안의 제
 부에서 급속노선이 독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건이 84.14%로 가장
 8.94%가 노총의
 따라야 한다고 대답하
 그리고 6.50%가 상급
 인상제시를 반대한
 대답하였다.

정 !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the entrance to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in Seoul. The building has a modern architectural style with a large central archway. Above the entrance, there is a sign with Korean text.

조사통제 활동의 기동 및 감 령'에성국의 '노성공화 여성강국의 연호' 여성노 동운동의 기동과 노년고 령을통제기전발한' 여성 부활성의 기동과 대한 도 의' 교육국의 '효율성의 노동공공화법' '노동공공	강의 방법과 강사의 자세', '조화한 교육자세' '통과 도 의 및 집의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노성노동정책 구차 법은노성노동의 구차 법은노성노동의 강의와 노성노동의 기동과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	--

본노련에서 실시하는 제2 차 노동문화교육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에 대한 교섭이 있었으며 최
영익 연평사무처장의 '공동
체통치' 및 '단국통치'의
'민속무용 및 전통의식, 투
정놀이', '민화유래 및 민
화 작품'을 다루는 지었다.



문화주어성부장이 문화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임투 승리!

노동자의 실질생활 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굳게 단결합시다.
'94 임투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들 가다(12) 구미지역본부



최대임장으로서 포부가 있는...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영차 영차 머리를 보아는 법...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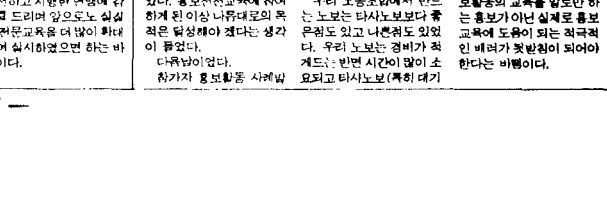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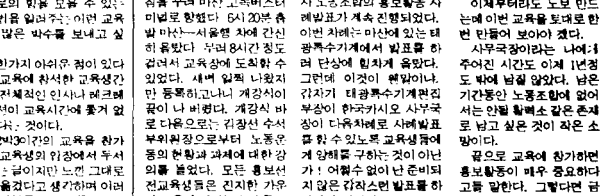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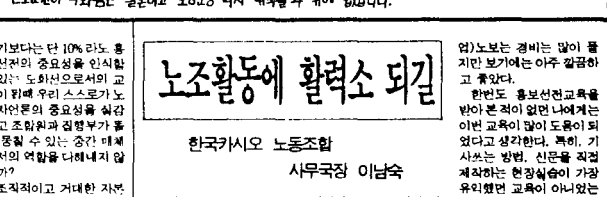
한가한 겨울 풍경이 아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구미에서 내려 공단...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최대임장으로서 포부가 있는...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작은것으로부터의 시작...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 구미지역본부의 조직 현황은 어떠합니까?

쌀개방과 농자



노동옹어해설

강제조종 '노사당사자의...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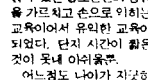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 노동옹어해설...

홍보선전 교육을 참가하고

실습을 통한 감각이

현실로



홍보부장 하현진

연에서 주관하는 홍보...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무엇으로 조합원과 하나...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 홍보선전 교육...

노조활동에 활력소 되길

한국기소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남숙

12월 7일 남이 반을 부...
* 한국기소 노동조합...
* 한국기소 노동조합...
* 한국기소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활력소 되길...
* 한국기소 노동조합...
* 한국기소 노동조합...
* 한국기소 노동조합...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라-3708호

제23차 국제금속노련 (IMF)
아시아 청. 부인 심포지움개최

이들은 성공적인 토
를 맺고, 상호이해를
산후유예를 도모하

이 찬석자들은 국경
하여 협력할 것을 결
정 폐회하였다.
에서는 정영숙여성
정성민국제부차장
하였다.

개최

경남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개최

의제로는 그동안 지
의 활동을 하는데 원
산의 부족으로 활발
을 하지 못한 것들
고 1994년도부터는

금을 인상한다는 것
에 참가한 대의원들
제에 대하여 충분한
거쳐 현행 240원인
국 300원으로 인상하
설하였다.

둘러싼 논의는
인적·노사관계
국제노동기준
으며, 기업의
이에 우리는
제도를 구축하
조리·가맹의

고노사당사자
산업사회에
노력을 다하

3권의 확고한
정책이 노동
과 줄지하라.

유일한 길이며

총동원하자.

2월 24일

이 단락을 보라

주장 개혁의 걸림돌과 싸우자!

—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저항을 보면서 —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아울러 이러한 부정부패척결은 성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체 불로소득자와 탈세자, 정경유착의 반칙적 기업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경제정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관심을 시기 위한 어떠한 반쪽 개혁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개혁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면 개혁을 두 번 다시 할 것이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불복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변함없이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변함없이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변함없이 동의한다.

부 언론들이 노동부의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도대체 반에 맞겨 지지를 손꼽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행정정책은 반에 가깝지만 바로 그에 맞겨 고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 아닌가? 그간 정경유착하에 입회하여 온갖 특혜와 영화를 누려온 이들 가족권 세력에게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앞에서 온갖 법을 다지키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들 세력에게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없는 것이다. 법정의 원칙이지만 우리는 노동부장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가 법치주의의 이념에 맞겨 지지를 손꼽히는 데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없다. 신정부는 이러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고 분명한 개혁의지를 전제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오히려 개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동자들의 신정부에 대한 환란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지만 방대한 세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93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



한국노총은 제28회 여성 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조기간을 맞이하여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93년 전국 여성노동자 대회를 개최 하였다. 5월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된 여성 노동자 대회는 모범여성노동자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으며 본노에서는 한국시

경제개혁촉구 결의대회 열려 시민단체와 연대, 총체적 개혁촉구

20여개의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개혁촉구 전국민 대회의가 주최하고 한국노총총합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경제개혁 촉구 범국민대회'가 5월 22일 여의도 시민공원 금성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민대회는 노동자, 시민 및 1만여명이 참가하여 정부의 근본개혁과 구조

적인 경제개혁을 촉구하였다. 대회는 노동자 및 농민들을 시전행사로 시작되었는데 시전행사는 본노연 모트론노조의 노래를 '하나로'와 공동노련을 통해, 상업은행노조 노래 '일선서'가 울려 퍼졌다. 본대회는 개최선언과 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치러진 경제개혁촉구 결의대회. 본노연 및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포철협력업체 간담회 임투에서 공동대응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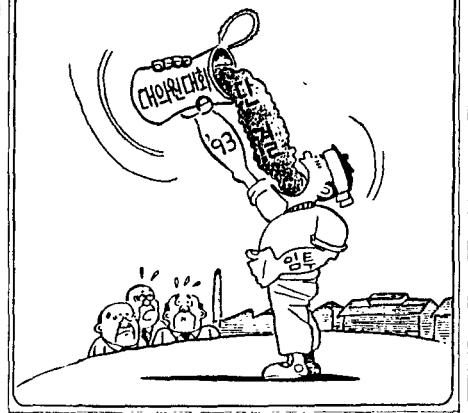
포철계열 협력업체 조한 대표자 간담회가 5월 26일 10시 본노연 포철지역본부에서 본노연 임투 및 본노연 고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성립기업, 삼정기업, 영일기업, 동일기업, 계동기업, 거창기업, 거창로공업, 서울동철, 대성기업, 한건기업, 제철정비 노조 등 11개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임투로 구인 발송 및 타협내용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공동대응 방법을 확정하여 결의하였다.

충남지역본부 대표자 총회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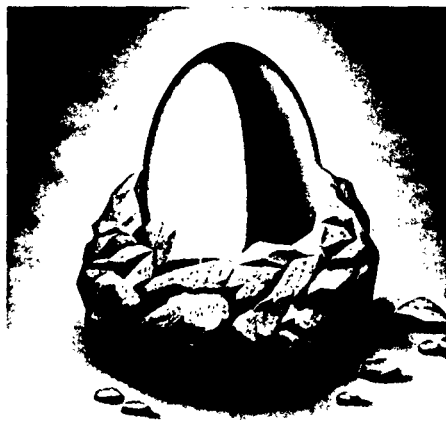
본노연 충남지역본부(위원장 김두형)의 대표자총회가 5월 11일 대전 한국노총 3층 회의실에서 본노연 3층 회의실에서 노조대표자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는 개최사에 이어 표

창제 수어, 충남지역본부 김두형의 대표사, 최용길 연맹 사무처장의 격려사와 활동사항보고, 회계감사보고, 9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연맹 파견대원 임명, 기타토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금속 만평



평화은행은 바로
노동자 여러분의
은행입니다.



무인장시대를 연 평화은행이
혁신적인 신상품을 다시 내놓습니다.

항금일저축통장
높은 이자와 대조는 동시에 보장해 드립니다.
● 수익률: 연 14.2% (세후 13.89%)
● 대: -부분예치금(잔액) 50만원 이상
-계좌이체: 원금의 10% 이내 (최고 3천만원)
-계좌금대출 지원
노사평화협력계대출
기업에는 대조예약을,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드립니다.
● 이: 연 10% (세후 9.55%)
● 대: -부분예치금(잔액) 50만원 이상
-계좌이체: 원금의 10% 이내 (최고 3천만원)
-계좌금대출 지원
평화은행 금융혁신사업 기금(1993년 2월 1일)
● 이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대출금이 가능합니다

새롭고 정다운
평화은행
112-222-2000

금속노동조합연맹 '93임금타결현황 (6월1일 현재)

지 역	분 과	노동조합명	요 구			타 결			비 고		
			기 준	요 구액	상 여금	기 준	타 결액	상 여금	기 준	타 결액	상 여금
경 정	기 기	기 기	70,000	15.00	50%	기 기	56,000	12.00	5/25 4차타결		
		기 기	63,000	10.00		기 기	51,000	8.00	3/2타결 상여금 50% 유예1만 (통상임금)		
		기 기	78,000	15.00		기 기	60,000	11.80	본인 2만부가 김장12만, 휴양소설치, 퇴직누진5년후가, 주택자금 800만		
		기 기	130,000	25.00		기 기	60,000	11.80	5/13타결		
		기 기	71,250	15.00		기 기	19,000	4.00	수출수주 상여부 10% 추가		
		기 기	78,000	18.00		기 기	30,000	7.00	3/16 타결 19차		
		기 기	181,500	35.00		기 기	48,870	9.00	1,200원 일률적용 429원 차등적용		
		기 기	100,000		100%	기 기	70,000		상여금 50% 차등수당 인상		
		기 기	105,500			기 기	66,000		정액: 92알이전 입사자 남: 2,200 82.10월이후 남: 2,200 1/11타결		
		기 기	21,000	4.00	20%	기 기	21,000	4.00	3/18 타결 2차		
경 정	기 기	기 기	84,000	23.23		기 기	47,000	13.00			
		기 기	56,700	13.00		기 기	33,000	9.00	생산장려/1만, 경조사, 휴일추가, 4/21일 타결(9차)		
		기 기	78,636	20.00		기 기	51,000	9.50	4/1타결		
		기 기	57,000	13.20		기 기	39,150	9.00	5/15 6차타결		
		기 기	59,100	13.00		기 기	57,000	13.20	4/30 7차		
		기 기	81,600	15.38	50%	기 기	25,500	5.50	5/17 타결(10차)		
		기 기	56,790	14.00	50%	기 기	62,000	10.40	3/12 타결		
		기 기	80,000	17.90		기 기	38,370	9.40	5/11 5차타결		
		기 기	80,000	17.00		기 기	54,000	14.30			
		기 기	42,000	14.58		기 기	53,000	13.00	5/20 5차 금속산업 7-9년 35,000-40,000		
경 정	기 기	기 기	67,520	6.70		기 기	45,000	5.00	기본급 대비 8.6%, 4/18일 타결		
		기 기	111,600	24.00		기 기	50,000	5.00	4/24 타결		
		기 기	57,147	13.70		기 기	65,100	14.00	5/21(입+월)현정2천, 금속4천, 생산성향상지원금, 용자성444만		
		기 기	14,536	4.00		기 기	32,536	7.80	5/20 타결(노사협의회 운영)		
		기 기	82,000	14.63		기 기	23,854	5.00	5/16 타결(노사협의회 운영)		
		기 기	70,332	10.83		기 기	14,536	4.00	5/6 3차 타결 효용승급분 포함		
		기 기	75,032	13.27		기 기	53,424	4.60	5/15 7차 타결, 파장금 이상 통제		
		기 기	67,059	12.00		기 기	30,085	4.60	5/17 5차 타결(입+단), 생산성향상 지원금 30만 금속인상		
		기 기	88,000	19.40		기 기	35,000	6.19	4/23 타결(6회) 상여 50%, 금속수당 500원		
		기 기	89,834	18.00		기 기	28,500	5.10	4/30 타결(4회)		
경 정	기 기	기 기	85,711	17.40		기 기	31,680	7.00	5/3 타결(4회) 생산장려수당 5,000		
		기 기	74,769	15.00		기 기	54,000	10.82	3/25 타결(3회) 생산장려수당 5,000		
		기 기	93,035	22.07		기 기	47,289	9.60	3/24 타결(6회)		
		기 기	87,197	18.50		기 기	64,800	13.00	3/20 타결(5회) 가족/3천, 직책/5천, 주택자금 3,000만원		
		기 기	64,853	14.70		기 기	54,000	12.81	3/3 타결(7회)		
		기 기	52,038	12.00		기 기	42,420	9.00	5/8 타결(3회)		
		기 기	77,220	22.00		기 기	30,000	6.80	4/28 타결(5회)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전환		
		기 기	109,296	20.36	100%	기 기	50,000	11.53	5/18타결(10회), 하계휴가비 10만, 만근 1만		
		기 기	59,218	11.04		기 기	49,350	16.00	3/22 9차타결(10회) 특별상여금 300,000		
		기 기	50,990	12.64		기 기	44,556	8.30	5/18 타결(4회) 상여금 30% 금속 1,500 직책 1.5천		
경 정	기 기	기 기	95,130	17.50	50%	기 기	42,000	7.83	5/3 타결(6회)		
		기 기	75,600	17.30		기 기	24,000	5.94	4/22타결(4회), 가족수당 5천, 공해 5천		
		기 기	48,865	14.63		기 기	80,000	14.70	6차 타결		
		기 기	73,920	16.00		기 기	57,000	13.00	평균 12.9%, 호봉 75-110원, 배우자1만, 만근 13,000, 9차타결		
		기 기	103,000	26.00		기 기	39,000	9.90	만근 5천 기본급 전향 2,200, 보직 18,000, 직책/2만		
		기 기	82,824	11.08		기 기	32,000	7.00	1인: 200,000원임금 지급		
		기 기	37,500	8.30		기 기	67,346	17.00	8차 타결		
		기 기	57,800	13.00		기 기	37,375	5.00	임원층제 삭제, 특별달성 50%-50%, 80%-100%, 100%-150%		
		기 기	1,800	15.00		기 기	51,000	10.00	특별상여금 150% 지급		
		기 기	1,000			기 기	25,500	5.00	여: 1,300, 연발성과금		
경 정	기 기	기 기	45,000	9.60		기 기	48,000	8.00	여: 10.6% (1,060)		
		기 기	58,650	15.00		기 기	1,200	10.00	정액인상 타결		
		기 기	123,453	29.00		기 기	64,200	12.00			
		기 기	52,000	13.49		기 기	800	8.90	일금조절 12,000 직책단원 5천, 직책 14,000원		
		기 기	38,500	8.00		기 기	39,000	8.90	일금조절 12,000 직책단원 5천, 직책 14,000원		
		기 기	76,500	18.70		기 기	43,500	11.00	상여금 130%		
		기 기	53,700	13.10		기 기	44,760	13.53	금속수당 인상		
		기 기				기 기	53,000	15.00	호봉 2 3%포함 5/20 5차타결, 직무수당2만-2만5천, 주택자금한도인상		
		기 기				기 기	25,600	8.10	3/12 타결		
		기 기				기 기	38,370	9.40	5/18 호봉금 제외, 수습사원 초임: 11,500, 정액: 12,500		
		기 기				기 기	39,000	9.50			

임금체계가 바뀌고 있다!!!

노동자 목취기의 한 방편임은 분명한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금체계의 새로운 논의

노동조합과 임금체계연구회 지음 / 값 6,500원

“

이 책은 임금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에서 임금체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능급의 실효라는 것이 무엇이며, 직능급이 과연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임금제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나름의 해답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노동조합의 마땅치 않은 임금체계의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응력을 높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임금체계개혁의 시도와 사례에 관한 분석을 풍부하게 제공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책의 장점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체계란 것이 무엇인지부터는 임금체계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당면과제라고 노동조합을 위한 최초의 임금체계연구회 지음이다

일본의 임금체계와 같은 능력이 위약이제도의 도입은 아니지만, 임금개혁, 노동조합의 마땅치 않은 임금체계의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응력을 높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임금체계개혁의 시도와 사례에 관한 분석을 풍부하게 제공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책의 장점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임금체계연구회 는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협회의 연구회와 노동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5천 200원 1천 원 5천 200원 2천 원 1천 500원

노동조합

도시본의 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협회의 연구회와 노동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매품〉

- 346 -

가금속

의 하나

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정부기구또는 공단형태로 하되 기존기구와의 통합가능성 검토)	형정사항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획단 설치('83년 하반기)	다. 물론 근본적으로 고용안정을 확 실히 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의 능력개발 을 지원하는 것이 실업을 방지하고 복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빠른 고용보험제가 정착되어 노
--	---	---

— 348 —

삼목감업 노동조합<동대>

충분히 토론과정을 거쳐 다
수 조합원의 뜻에 따라 결
정하고 일단 정해진 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이라도 다같이 따르
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
고, 부분은 전체에 복종하
고, 하부는 상부에 복종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일단

결정받아야 할 사항들이
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회
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
다. 노동자가 잘못된 것
을 버리고 노동자로서의
인간과 권리의식을 가질
지나고 싶어 함을 보다 잘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문의 (은행장 박종 | 감사부 내발산부 723-9

그런데 조금 더 알고싶고 조합활동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기회도 없었고 자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에서 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됐고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쟁의타결후 교섭재개

구로공단에 있는 범한정기노조조합의 정외가 7월 6일 타결되어 정상조업에 들어갔으며 노사합의는 7월 13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간부 몇 사람이 아닌 조합원 전체의 뜻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조화롭게
적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특히 결정과
정서에서 소수의 의견을 가졌
던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의사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
여 조합의 입장에 불복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 단체의 두 의견을 가졌던
조합원들도 무조건 다수결
로 밀려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소수의 의견을 최대
로 존중하여 조합에 본인이
생각 지니고 추구하며 정제
이 될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서로 우
호한 정서에 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합원들 간
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
이 잘못과 본인이 접이
할 수 있다. 반대로
불협화음에 바탕이 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도 참
을 가지고 또한 다른
대에게 주고 받는 대하
나 다른 개인적 의견
차이는 아무런 해가 되
지 않을 것이다.

노름조합이 만능이 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광남)은 7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단공원에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

주머니속의 진료실

[illegible]

우려 노동자들은 의학 지식에 기초하고, 그것은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이나 기술을 전혀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이인 사립의 건강도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과 정확성의 부재에 의해 비롯된다.

그러나 사실 참비문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질문을 방형받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왜곡이나 전진기사를 다시 일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립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노예제와 건강권투는 산업제도와 착취를 추구하고 일하는 사람이 인간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예제는 전진보통의 방법이다.

1988년에 참비문과 산업

직업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홍보활동, 조사, 연
합률, 상담, 대학입학에
참여해 펼치고 있다.

“노동과 건강이라는 사
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책이 주
내 속의 전교생이나, 산
업을 위한 노동전문가나
다양한 생활에서 대면
하는 집안에 있는 대학
예람 등 간단한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부문까지 심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책
이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노동과 순수한 직업에서
건강과 기호적인 취미를 통
선 건강하고 튼튼한 몸
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하는 것을 생활적인 관
점을 소개한다. 『노동과
건강생활』에서 소개
서울만 ‘장미’에서 펴
본다 (4,500원)

위원장 선거

서울에 있는 통조리식품조합 위원장선거가 7월 16일에 실시되어 현 박순재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위원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노동조합을 이끌게 되었다.

심규오현 대화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6월 30일 10시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임기대회였는데
수일 현위원장이 총218명
대의원 중 125표를 획득

위원장 선거

울산에 위치한 정일공업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가
월16일 실시되었다.
선거에는 현위원장인 김
복천위원장이 단독출마
어 당선. 정일공업노동조합
을 위해 활동하게 되었다.

통신노련 대회

전국통신노동조합연맹
6월 25일 93년도 정기대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입금체계가 바뀌고 있다!!!

노동자 목죄기의 한 방편임은 분명한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입금체계의 새로운 논의

노동조합과 임금체계연구회 지음/값6,500원

이 책은 임금제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에서 임금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층금의 실행에
는 것이 무엇이며, 적층금이 과연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임금제인가에 관한 전지한 고민과 나름의 해답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노동조합의 빠질 수 없는 임금제에 대한
모색하여,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응력을 높이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본축의 임금체계개편의 시도와 사례에 관한 분석을 풍부하게 배울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인상노선은 임금제도의 문제와 연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과 임금제도의 노선은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 강화와 연고 문제이다. 이 노선과 연고에 따라 자본주의 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자본주의 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노동조합과 임금제도의 노선은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 강화와 연고 문제이다. 이 노선과 연고에 따라 자본주의 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자본주의 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 성 활 동

— 여 성 부 —

1. 제28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2. '93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3. 남녀고용 평등법 인지도 조사
4. 여성간부 교육
5.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활동
6. 회의활동 및 각종 토론회
7. 직장 탁아소 관련 추진활동
8. 금속노련 통신제작 발송

1. 제28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 목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의 능력과 가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명되고, 여성노동자의 평생 평등노동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의
복지사회건설 추진을 위하여 범조직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 방침

- 1)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불평등한 차별철폐제도
- 2) 여성노동의 기회균등의 참여와 고용안정보장의 노동환경
- 3) 노동조합 여성활동 활성화 촉진 및 여성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한 여성위원회 설
치
- 4)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적 공동과제로 부각시켜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 전개
- 5) 노동은 산업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자주 의식과 권리의식 함양을 고양, 기존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연합활동을 형성한다.

○ 행사기간

1993. 5. 1~5. 31(1개월)

2. '93 전국 여성노동자 대회 -노총주관-

○ 대회의 목적

여성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성취하고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모성보호, 탁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력을 강화하고 단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

○ 대회의 주제

“여성노동의 고용안정과 탁아시설 확충 실현”

— 일시 : 1993. 5. 26(수) 14 : 00

— 장소 : 노총회관 8층 강당

— 참석자 : 시그네틱스 위원장 외 70명

— 표창자 : 한국시그네틱스 위 원 장 서민애 공로상

3. 남녀고용평등법 인지도 조사

○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행('88. 4. 1. 시행) 6년 경과에 따른 동법의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 여성노동자의 인지여부 및 활용가치

○ 기업에서의 인지 결과에 따른 변화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활용

○ 동조사 결과 분석

○ 조사기간

9. 1-9. 4 충남, 충북, 전남지역

9. 6-9. 18 서울지역

4. 여성간부 교육

○ 목 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간부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 목 표

－ 노동조합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 여성간부의 책임의식 고취와 조직력 강화

－ 노동조합내 여성간부의 역할확립

－ 여성노동자의 평생노동권 확립

1) 일시 : 1993. 10. 26~10. 28(2박3일)

2)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3) 참석인원 : 59명

여성간부 교육시간표

제1일 (10월 26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10 : 00 ~ 11 : 00	60	참가자 소개	집 행 부
11 : 00 ~ 12 : 00	60	노동가 및 울동	"
12 : 00 ~ 13 : 00	60	점 심 식 사	
13 : 00 ~ 13 : 30	30	개 강 식	
13 : 30 ~ 15 : 00	90	금속노련 운동방침 및 노동운동의 현황과제	연맹 부위원장 김 성 문
15 : 00 ~ 15 : 20	20	휴 식	
15 : 20 ~ 17 : 30	130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노동정책연구소장 박 석 운
17 : 30 ~ 18 : 30	60	저 녁 식 사	
18 : 30 ~ 20 : 30	120	노 동 문 화	연맹 사무처장
20 : 30 ~ 21 : 00	30	현장토론에 대한 설명	최 용 길

제2일 (10월 27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08 : 00 ~ 09 : 00	60	아 침 식 사	
09 : 00 ~ 11 : 10	130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노총 교육부장 김 순 희
11 : 10 ~ 11 : 20	10	휴 식	
11 : 20 ~ 12 : 00	40	강의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
12 : 00 ~ 13 : 00	60	점 심 식 사	
13 : 00 ~ 15 : 00	120	사 례 발 표	한국화장품 위원장 문 춘 화
15 : 00 ~ 15 : 20	20	휴 식	
15 : 20 ~ 16 : 50	90	노동조합과 직장탁아소	여노회 사무국장 왕 인 순
16 : 50 ~ 18 : 00	110	분 입 토 의	
18 : 00 ~ 19 : 00	60	저 녁 식 사	
19 : 00 ~ 21 : 00	120	현 장 토 론	집 행 부

제3일 (10월 28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09 : 00~11 : 00	20	노동조합과 여성간부의 역할	연맹 여성국장 정 영 숙
11 : 00~11 : 20	20	휴 식	
11 : 20~12 : 00	40	분임토의 발표	
12 : 00~13 : 00	40	종합평가서 작성 및 수료식	
13 : 00~		점 심 식 사	

본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느낀점

- 서로 이야기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지 못한 점
- 노조에 대한 신임을 하게 해주신 점
- 많은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
- 나 자신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
- 같은 금속이면서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며
- 노동조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을 하셔야 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시간 강의는 무리
- 교육일정표가 너무 짝딱하다.
- 여성의 소외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
- 노동조합에 관한 기초부터 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좋았으나 시간이 부족했다.
- 여성에 대한 의식개혁 필요
- 역시 백번 책보는 것보다 한번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
-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 아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다. 걱정은 내가 배운 것을 과연 사업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을까.
- 교육은 좋았으나 서로 다른 사업장의 의견을 듣지 못해 아쉽다.
- 노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되고 교육내용이 대체로 좋아서 많은 것을 배웠다.
- 강의시간이 좀 딱딱하다.

- 살아있는 교육이었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었어서 가슴이 벅찼다.
- 교육마치는 시간이 너무 늦다.
- 휴식시간이 없다.
- 교육과정이 생소했고 현실이 많이 잘못된 점
- 너무나 무지한 자신을 느꼈고 새로운 다짐을 갖고 내가 깨우치는 자신이 되겠다.
-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좋다.
- 참다운 노동을 알 수 있고 노동조합에 대해 인식을 다시하게 되었다.
- 신선한 교육을 받은 것 같고 연맹 또는 조합에 적극 협조할 것임
-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부당한 점을 해결해야겠다.
-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점

본 교육과정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 쉬는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체육시간이 좀 있었으면
- 교육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 교육일정을 좀더 길게
- 노동운동사례 등에 좀더 긴시간을
- 일정이 너무 팍팍하다.
- 노동조합 활동이 잘되는 사업장과 잘 안되는 사업장의 사례 발표
- 한가지라도 정확하게 머리에 남는 교육
- 여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 교육 책자 발간
- 강의식 교육보다 토론식으로
- 강의시간에 여담도 섞어가며 해주셨으면
- 분임토의 시간을 늘려주었으면
- 교육일정을 늘려주었으면
- 타사업장 간부들과 체험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부여
-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시간 할애
- 좀더 많은 토론시간 부여
- 교육일정이 짧다.

금속노련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 많은 조합원, 간부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자주 실시
- 홍보활동 강화

- 금속노련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많은 노력 요망
- 간부교육 뿐만 아니라 조합원 교육
- 여성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좀더 있었으면
- 전국 체육대회 개최
- 교육 활성화
- 교육장 건립운동 전개

5.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활동

1)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활동계획 (안)

○ 목 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및 모성기능, 모성건강을 악화시키는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에 대하여 범조직적 활동을 전개함

-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 보호 및 건강보장
- 여성고용 기회균등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 모성보호 관련법 준수촉구 및 복지제도 확충

○ 방 침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추진위원회 설치

- 노총위원장, 산별위원장, 산별 여성국(부)장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 구성 : 노총 및 산별 여성국(부)장으로 한다.

○ 노총 추진위원회 활동계획

- ① 성명서 발표('94. 1. 5 발표)
- ② 건의서 작성('94. 2. 15 관련부처, 기관단체) 발송
- ③ 각부처 방문 계획

1차-일시 : '94. 2. 21. 11 : 00

노동부장관, 상공부장관, 보사부장관, 경제기획원

2차-일시 : '94. 2. 22. 11 : 00

정부2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3차-일시 : '94. 2. 25. 11 : 00(각정당)

민자당, 민주당

4차-일시 : '94. 3. 2. 11 : 00

국회노동분과 위원장

④ 노총대의원 대회 결의문 채택

⑤ 생리휴가 폐지반대 가두서명

3.8 세계 여성의 날 가두서명 실시

가두서명장소 : 명동, 구로공단 전철역, 각사업장

⑥ 프랭카드 부착, 설문서 작성

⑦ '94. 5. 1절 행사 결의문 채택

⑧ '94. 5월 강조기간 : 여성대회

— 활동결과(평가)

— 향후 투쟁계획 수립(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속)

2)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활동상황

'94. 1. 4 노동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발표

(주요내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

— 출산휴가 60일에서 12주로 연장

— 유급 태아검진 휴가 신설

— 남편 출산 간호휴가 허용

1. 5 노총 성명서 발표

—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

1. 10 노동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입수

1. 12 직장 탁아소 추진 활성화 회의에서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을 강력히 반대키로 결의

1. 14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여성기본계획(안) 문제점 토론회에서 유급생리휴가 방침을 강력히 반대키로 결의

1. 28 노총 여성국(부)장 대책회의

— 건의서 작성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 반대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

2. 3 여성대표자 회의 개최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에 대한 대책논의

(강력히 반대키로 결의함)

2. 4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에 대한 반대항의 방문(노동부)

(금속, 화학, 섬유, 고무, 연합, 출판)

— 산별 여성간부회의

2. 14 산별 여성국장 회의

- 2.15 산별 여성국(부)장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에 대한 반대투쟁 적극적인 대책 요구
노총사무총장 면담
- 2.15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건의서 관련부처에 발송
- 2.17 노총 긴급 산별 여성국(부)장 회의
 -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투쟁 계획서 작성
- 2.21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항의방문(노동부, 보사부, 상공부)
 - 방문자 : 노총, 금속, 섬유, 외기, 화학, 연합, 고무
- 2.22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항의방문(정부2장관)
 -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
방문자 : 노총, 금속, 화학, 금융, 출판
- 2.25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 항의방문(민자당)
 - 노총, 금속
- 3.12 프랭카드 부착(금속연맹 건물)
 - “정부는 유급생리휴가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3.28 산별 여성국장 회의
- 3.28 노총 총장 면담

6. 회의활동 및 각종 토론회

1) 회의 활동

①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3. 5. 4. 14 : 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제28회 강조기간에 관한 사항

②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3. 7. 2. 10 : 00-17 : 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제28회 강조기간 활동결과 종합평가
 - 안성 여성직업훈련원 탐방

③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3. 7. 27. 14 : 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법 인지도조사 실시협의)

④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3. 11. 24. 11: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 '93 여성정책토론회 결과에 관한 사항
- 자매부대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⑤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3. 12. 28. 15: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 '94년도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

⑥ 노총 여성국 회의

- 일시 : 1994. 1. 28. 14:00
-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 안건 : - 생리휴가 무급제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생리휴가 활용 실태)
- 노총여성위원회 창립 3주년 행사에 관한 사항
- '94. 3. 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①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제1차)

- 일 시 : '93. 4. 27 ~ 4. 29(2박3일)
- 장 소 : 청소년 수련원
- 참석자 : 동국제강 수석부위원장 외 5명

②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제2차)

- 일 시 : '93. 11. 22 ~ 11. 24(2박3일)
- 장 소 : 양평 프라자 패밀리타운
- 참석자 : 금성사 체육부장외 4명

③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제3차)

- 일 시 : '93. 11. 24 ~ 11. 26(2박3일)
- 장 소 : 양평 프라자 패밀리타운

참석자 : 맥슨전자 홍보부장의 4명

3) 경제활동지도자 연수교육

일 시 : '93. 6. 23 ~ 6. 25 (2박3일)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참석자 : 태광에로이카 여성부장 정봉순 외 5명

- 내 용 : - 한국노동조합 현황과 여성의 역할
-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직무능력 및 지도력 함양
 - 여성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 증진

4) 비디오작품 “남녀고용평등법” 시사회

일 시 : '93. 10. 18. 15:00 ~ 16: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참석자 : 정영숙 여성국장 외 2명

작품명 : ○ 남녀고용평등법

- 법의 필요성 및 각조항별 사례제시
- 부당한 대우, 분쟁발생시 다양한 고충처리 해결과정
- 법의 정착화를 위한 정부, 사업주 및 근로여성의 의식변화의 과제

5)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 목 적

-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동책임 인식전환의 효과 거양
-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고용차별제도 관행을 자율적, 능동적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여성노동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수립 촉구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효과를 위한 여성의 진취적인 의식함양과 활용가치의 방안 모색

○ 방 침

-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기능의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대책 방안 제시)
- 여성고용차별의 자율개선 추진방안 연구

— 연구 결과를 토대로한 남녀고용평등법 실현 촉구

— 연구결과는 남녀고용평등법 심포지움에 발표

(여성 및 노사책임 인식형성)

일 시 : '93. 11. 11. 14 : 00 ~ 17 : 30

장 소 : 노총회관 8층강당

참석자 : 로움코리아 부위원장 장희경외 12명

주 제 : 여성고용차별의 자율개선 추진 방안

6) 여성의 고용안정과 축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 시 : '93. 11. 30(화) 14 : 00 ~ 17 : 30

장 소 : 종로성당 3층

주 최 : 한국여성단체 연합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참석자 : 정영숙 여성국장 외 1명

7) 평화의 집(어린이집) 개소식

일 시 : '93. 12. 10

장 소 : 평화은행 구로지점 2층

참석자 : 정영숙 여성국장 외 4명

7. 직장탁아소 관련 추진 활동

'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8월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기혼여성이 42%나 차지하고 학력전기 보호교육이 되어야 할 어린이도 10만명이나 되며 그중에서 10%만이 시설에서 육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보육시설이 미흡하여 아이들의 탁아문제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직장탁아소를 연구하고 자료 및 정보수집을 교환하고자 직장탁아소 추진위원회 활성화 모임을 구성하였다.

1)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1차)

일 시 : '93. 6. 3

장 소 : 병원 노련

참석단체 : 금속노련, 화학노련, 금융노련, CMC노조, 서울대 병원노조, 전교조, 여노회

내 용 : 각 단체 직장 탁아소 추진 현황보고
'93 직장탁아소에 관한 정부시책논의 향후계획에 관한 토의

2)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 (3차)

일 시 : '93. 7. 8
장 소 : 금융노련
내 용 : 사례발표 확정 및 준비사항 검토
비디오 상영(우리네 아이들)
영유아 보육법 토론

3)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 (4차)

일 시 : '93. 8. 12
장 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내 용 : 사례발표 1차 평가회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안 토의
탁아소 방문 새터 어린이집

4)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 (5차)

일 시 : '93. 9. 9
장 소 : 여성 민우회
내 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요구안 토의
집중토의 : 은행탁아소 설치에 관한 문제점 및 육아문제 토의
영유아보육법의 500인 사업장 개념논의
보사부 질의키로 결정

5)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 (6차)

일 시 : '93. 11. 17
장 소 : KBS 노동조합
내 용 : KBS 직장탁아소 설치에 관한 사례발표 및 탁아소 시설견학

6) 직장탁아소 추진위원 회의 (7차)

일 시 : '94. 1. 12
장 소 : 금융노련
내 용 : 보육사업 지침에 관한 건의서 검토

직장탁아소 정책토의기로 결정(모델연구)

(병원노련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토의기로 함. 전문교수와 직장탁아 문제 토의)

8. 금속노련 통신제작 발송

'93년 4월01일 93-11(104)호
 4월08일 93-12(105)호
 4월15일 93-13(106)호
 4월22일 93-14(107)호
 4월29일 93-15(108)호
 5월06일 93-16(109)호
 5월13일 93-17(110)호
 5월27일 93-18(111)호
 6월 3일 93-19(112)호
 6월10일 93-20(113)호
 6월17일 93-21(114)호
 6월24일 93-22(115)호
 7월01일 93-23(116)호
 7월08일 93-24(117)호
 7월15일 93-25(118)호
 7월22일 93-26(119)호
 7월29일 93-27(120)호
 8월19일 93-28(121)호
 8월26일 93-29(122)호
 9월02일 93-30(123)호
 9월09일 93-31(124)호
 9월16일 93-32(125)호

'93년 9월23일 93-33(126)호
 10월07일 93-34(127)호
 10월14일 93-35(128)호
 10월21일 93-36(129)호
 10월28일 93-37(130)호
 11월04일 93-38(131)호
 11월11일 93-39(132)호
 11월18일 93-40(133)호
 12월02일 93-41(134)호
 12월09일 93-42(135)호
 12월16일 93-43(136)호
 12월23일 93-44(137)호
 12월30일 93-45(138)호
 '94년 1월13일 93-46(139)호
 1월20일 93-47(140)호
 1월27일 93-48(141)호
 2월03일 93-49(142)호
 2월17일 93-50(143)호
 2월24일 93-51(144)호
 3월03일 93-52(145)호
 3월17일 93-53(146)호
 3월24일 93-54(147)호

총 44호 발행

문 화 활 동

문 화 부

1. 노동문화지도자양성 교육
2. 노동가 테이프 추가 제작(제1집)
3. 제1회 노총위원장기 노동가 경연대회
4. 일선장병 위문행사

1.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1차)

○ 목 적

노동문화 활동은 노동자의 단결력 및 투쟁력 고취와 단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료에 대한 상호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해주고 발표력이 부족한 사람은 발표력이 향상되며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1) 일 시 : 1993. 11. 23~11. 25(2박 3일)

2) 장 소 : 대전 경하장

3) 참석인원 : 74명

'93년 노동문화 교육 시간표

제1일 (11. 23)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10:30~12:00	90	참가자 소개	금속노련 김장선 수석부위원장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3:30	30	개강식	
13:30~15:00	90	금속노련 운동방침 및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15:00~15:20	20	휴식	연맹 최용길 사무처장
15:20~18:00	160	팀워크훈련 및 민속무용	
18:00~19:00	60	저녁식사	
19:00~21:00	120	민속무용 및 촛불의식	

제2일 (11. 24)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08:00~09:00	60	아침식사	푸른물결 기획팀 한운선
09:00~12:00	180	노동가 및 율동	
12:00~13:00	60	점심식사	전영수 한국레크레이션협회회장
13:00~16:00	180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	
16:00~16:20	20	휴식	노동자문제교육협회 부대표 장기호
16:20~18:00	100	공동체놀이 및 자신감 훈련	
18:00~19:00	60	저녁식사	
19:00~21:00	120	단결협동 놀이 및 단결투쟁놀이	

제3일 (11. 25)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09 : 00 ~ 11 : 00	120	노조간부의 자세와 역할 및 진도력	연맹 정영숙 여성국장
11 : 00 ~ 12 : 30	90	팀별 교육에 대한 토론 및 발표	
12 : 30 ~ 13 : 00	30	종합평가서 작성 및 수료식	

○ 교육평가

* 본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느낀점.

- 지도자 양성 교육이나 만큼 지도자(레크레이션)로서 할 수 있는 교육 위주
- 새로운것을 배워 신이냐고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 활동적이고 교육전달이 대체로 잘 됐다.
- 보람된 교육이었다.
- 교육은 무척 좋았으나 간부들이 자기들만 너무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 너무 많은 몸의 움직임 때문에 피로감을 주는것 같다.
- 통제보다는 자기 스스로 규율을 지킬수 있게
- 지도력 향상과 조합간부로서 큰 책임의식을 느꼈다.
- 동지애를 많이 느꼈다.
- 좀더 체계적이었으면
- 교육일정이 짧아 아쉬운점이 많았고 많은 사람과 친하지 못한것이 아쉽다.
-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다.
- 자기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좋은 교육장이 있었으면
- 항상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나 많은 교육중 제일 가슴에 와닿는 교육이라고 느꼈다.

* 본 교육과정에 관한 건의 사항 및 개선방안

- 한가지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 갔으면
- 남·녀 비율이 같을 수 있도록 사전통제
- 초급·중급·고급반으로 계속추진
- 인원이 많아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 부족
-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 노동가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율동으로
-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 구체적으로 교육실시

-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
- 노동가, 율동 교육이 좀더 있었으면
- 좀더 연구하는 자세
- 교육일정을 좀더 길게
- 야외교육(예 : 족구, 텃치볼)
- 레크레이션 시간을 늘렸으면
- 많은 내용을 빠른시간에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 풍물 교육
- 팀별 토론회 시간 필요
- 서로 조합간 정보교환
-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 지역본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반복 교육 실시

* 금속노련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 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횟수를 늘렸으면
- 노총에 좀더 강력히 대처
- 단위노조 임투시 확실한 지원
- 교육체질 개선을 위해 좀더 현실에 맞게 반복되는 교육을 피해주었으면
- 정기적인 교육을 하였으면
- 인원의 적절한 배분 선정(남·여)
- 공문에 교육과정 사전통보
- 법률과 이론 교육
- 단위조합과 벽이 있다. 단위조합 실정을 좀 파악 하였으면
- 전체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정치적 참여 유도
- 홍보 활동 활성화
- 교육 활성화
- 교육비를 올려서라도 교육기간과 횟수를 늘렸으면
- 금속노련이 있기 때문에 각 단위노조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교육 및 신문활용 집회등을 하였으면
- 단위조합에 산별 체제에 대한 장·단점 교육실시
- 노동가 테이프를 공급 해주었으면

○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2차)

일 시 : 1994. 1. 18~1. 20(2박 3일)

장 소 : 대전 경하장

참석인원 : 58명

'93년 노동문화 교육 시간표

제1일 (1. 18)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10 : 30 ~ 12 : 00	90	참 가 자 소 개	금속노련 김장선 수석부위원장
12 : 00 ~ 13 : 00	60	점 심 식 사	
13 : 00 ~ 13 : 30	30	개 강 식	
13 : 30 ~ 15 : 00	90	금속노련 운동방침 및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15 : 00 ~ 15 : 20	20	휴 식	푸른물결 기획팀 한운선 진행 : 정혜령, 반주 : 김한균, 한운선
15 : 20 ~ 18 : 00	160	노동가 및 율동	
18 : 00 ~ 19 : 00	60	저 녁 식 사	
19 : 00 ~ 21 : 00	120	노동가 및 율동	

제2일 (1. 19)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08 : 00 ~ 09 : 00	60	아 침 식 사	레크레이션 협회 회장 전영수
09 : 00 ~ 13 : 00	240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	
13 : 00 ~ 14 : 00	60	점 식 식 사	금속노련 사무처장 최웅길
14 : 00 ~ 16 : 00	120	공동체놀이 및 단결협동 놀이	
16 : 00 ~ 16 : 20	20	휴 식	금속노련 사무처장 최웅길
16 : 20 ~ 18 : 00	100	팀웍훈련 및 민속무용	
18 : 00 ~ 19 : 00	60	저 녁 식 사	금속노련 사무처장 최웅길
19 : 00 ~ 21 : 00	120	민속무용 및 촛불의식 투쟁놀이	

제3일 (1. 20)

시 간	배 정	내 용	강 사
09 : 00 ~ 11 : 00	120	노조간부의 자세와 역할 및 지도력	금속노련 여성국장 정 영 숙
11 : 00 ~ 12 : 30	90	팀별 교육에 대한 토론 및 발표	
12 : 30 ~ 13 : 00	30	종합평가서 작성 및 수료식	

○ 교육평가

* 본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느끼신점

- 서로 친목을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 대인 관계 및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어 진것 같다.
- 재미있고 의욕이 생겼다.
- 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타사업장 현황을 알게되어 기쁘다.
- 앞으로 많은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 유익한 교육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연맹교육에 찬사드림
- 다양한 과정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조합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 자유스러워서 좋았다
- 너무 보람이 있었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것 같다.
- 동지애를 보다 더욱 높일수 있었으며 운동에 대한 기쁨을 느꼈다.
- 분임토의는 교육이 끝날때 하지 말고 일일토의를 했으면 한다.
- 레크레이션 시간에 너무 많은 과목이 있다.
- 노동문화 교육답게 좋은 교육과 문화에 대해 많은것을 느꼈다.
- 마음에 문을 열어 주었다.
- 많은 것을 배워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 교육 받는 전원이 반응이 좋다보니 교육 질서라든가 의욕들이 있어서 자신도 보다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었다.
- 과정은 좋았는데 교육생들 자질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본 교육과정에 관한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교육 과목을 다양하게 하는것보다 레크레이션 지도력 개발과 노동가 및 울동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너무 많은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는 것 알맞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한다.
- 토론시간을 많이 주어 팀별로 단결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으면 한다.
- 교육을 주관하는 문제점보다 교육 참석자의 자세와 정신력 고취가 필요하다.
- 노동문화 내에서 단결, 단체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 울동이 너무 다양하다
- 개강식이 끝나면 바로 팀을 구성해 주었으면
- 적절한 통제
- 교육 일정시간이 너무짧아서 짧은 기간동안에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자하니까 너무벅찼는데 다음에 교육일정 시간을 좀더 늘려주었으면

- 팀 위주로 교육진행
- 한가지 교육이라도 확실하게 배울수 있도록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 팀별 모임을 가졌으면 한다.
- 레크레이션과 공동체놀이 시간에 종류는 적게 확실히 몸에 익혔으면 한다.
- 교육 내용에 맞는 부·차장이나 관련된 간부들 위주로 교육
- 노동가 및 울동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머리에 남도록 했으면 좋겠다.

* 금속노련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 단위조합에 계속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을 계속 시켜주었으면
- 노동문화에 대한 교육이 많이 실시되었으면 한다.
- '94년 교육에는 재교육이 되었으면
- 부르기 쉽고 방력있는 노동가를 널리 보급
- 노동문화 교육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 본 교육과정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각사업장에 보급시켜 주었으면
- 각 단위사업장별 교류를 갖도록 해주었으면
- 노련간부님들 많은 노력과 헌신성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깰수 있는 자기혁신 노력과 자신도 모르게 몸에 베어 있는 관료주의를 씻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 교육 횟수를 분기별로 년 4회씩
- 각사업장에 대한 관심과 방문 요망
- 노동자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

2. 노동가 테이프 추가제작(1집)

- 수량 1,000개
- 노동가 테이프 수록곡

(앞 면)

1. 국민의례
2. 금속노련가
3. 진짜노동자 2
4. 포장마차
5.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6. 의연한 산하
7. 단결 투쟁가
8. 남누리 북누리

(뒷 면)

1. 노총가
2. 늙은 노동자의 노래
3. 함께 가자 우리 이길올
4. 일꾼의 노래
5. 광야에서
6. 노동자의 길
7. 우리들의 사랑은
8. 동지

- | | |
|-------------------|--------------------|
| 9. 나의 사랑 동지에게 | 9. 그대 남긴 머리띠 |
| 10. 가야하네 | 10. 철의 노동자 |
| 11. 동지여 내가 있다 | 11.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
| 12. 파업가 | 12. 달동네 부푼꿈 |
| 13. 딸들아 일어나라 | |
| 14.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 |

3. 제1회 노총위원장기 노동가 경연대회

○ 취 지

-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환경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밝고, 밝고, 명랑하게 유지발전시켜, 상호 협력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삶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한다.
- 개인마다의 소질과 재주를 겨루고 자랑하며 더 나은 창의력의 계발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책임을 지향한다.

○ 목 적

- 노동자의 정신문화 예술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 음악을 통한 화합과 단결의 일체감 조성
- 노동조합의 문화활동 활성화촉진

일 시 : 1993. 5. 26

장 소 : 노총회관 8층 강당

심사결과

최우수상 : 금융노련 한국상업은행노조 한광호 외 14명

시상 : 상장, 상금(300,000) 우승기

금 상 : 금속노련 시그네틱스노조 김미선 외 8명

시상 : 상장, 상금(150,000) 부상 양산 9개

금 상 : 섬유노련 삼경복장노조 안현숙 외 7명

시상 : 상장, 상금(150,000), 기념품 크리넥스 선물용셋트 10개

4. 일선장병 위문 행사

노총과 각 회원조합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21사단을 위문하였음.

- 1) 일 시 : 1993. 12. 3
- 2) 위 문 처 : 강원도 양구 제21사단
- 3)참 석 자 : 정영숙 여성국장
- 4)위 문 금 : 금속노련 460,000원

복 지 활 동

복 지 활 동

1. 노총생보사업 추진 활동
2. 복지담당자 회의 및 교육

1. 노총생보사업 추진활동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화에 따른 재해·조합의 노후보장과 성인병 증가에 따른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기능을 위하고 또한 노동조합 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노총과 연대하여 연맹·지역본부, 단위사업장으로 이어지는 생명보험사업 및 손해보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 1 장 생보사업 개요

가. 생명보험과 필요성

1. 생명보험이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키 위해 다수의 계약자가 협동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음(보험 : 저축기능+위험보장기능, 은행 : 저축기능)

2. 생명보험의 필요성

- ① 핵가족화와 자기 책임주의
- ② 산업화에 따른 재해와 성인병 증가
- ③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및 보장
- ④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기능

나. 생명보험 사업추진경과

- 84. 2. 노총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
(3대 협동사업육성기로 : 노동금고, 소비조합, 공제조합)
- 84. 6. 근로자 협동조합법 제정 국회청원
- 89. 9. 노동은행법 제정청원(공제사업포함)
- 91. 4. 11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생보사추진)
- 91. 6~8 생보사업 추진 실무작업
- 91. 9. 4 124차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설립추진본부 발족
(자본금 조성 계획은 추진본부에 위임)

이후 평화은행 설립이 본격화되어 생보사설립은 유보되었음.

다. 생명보험 대리점 설치의 당위성

1. 생보사 설립취지 및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기 재정등 여건의 불성숙
2. 현실적으로 노총 전조직의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이 시급함.
3. 조직과 업무연계로 조직강화에 기여
4. 즉시 실행효과로 생보사 설립과 유사한 효과

제 2 장 생보사업 운영

가. “노총생보사업팀”구성

1. 소재지 : 노총 5층(502호) 783-6260~1, FAX 783-9081
2. 성 격
 - 1) 보험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생보사 소속 생보대리점임
 - 2) 설치 및 운영주체는 노총으로 함.
 - 3) 주된 보험모집사용인과 판매시장은 노총조직과 조합원으로 함
 - 4)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전담보험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함
 - 5) 경영성과 분석후 법인전환 예정이며 추후 생보사설립 기능 및 역할담당
3. 회사기관과 임원 및 자본금조성(법인전환시 결정)
4. 조직인원
 - 1) 내 근 직 : 최초인원은 실무작업인원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확충(현 4명)
 - 2) 외야조직 : 각 단위조직 보험담당자(보험상담역)

나. 조직활용의 특성 및 기본정신

1. 특 성

노총조직 스스로가 생보사업운영상의 일선 영업조직화 및 시장화되고 소속사(대일생명)의 제반 관리 시스템을 활동, 지원받게 되면

- 1) 노총은 “생보사를 보유하는 효과”와
- 2) 노총조직이라는 “거대한 보험판매시장을 일거에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2. 기본정신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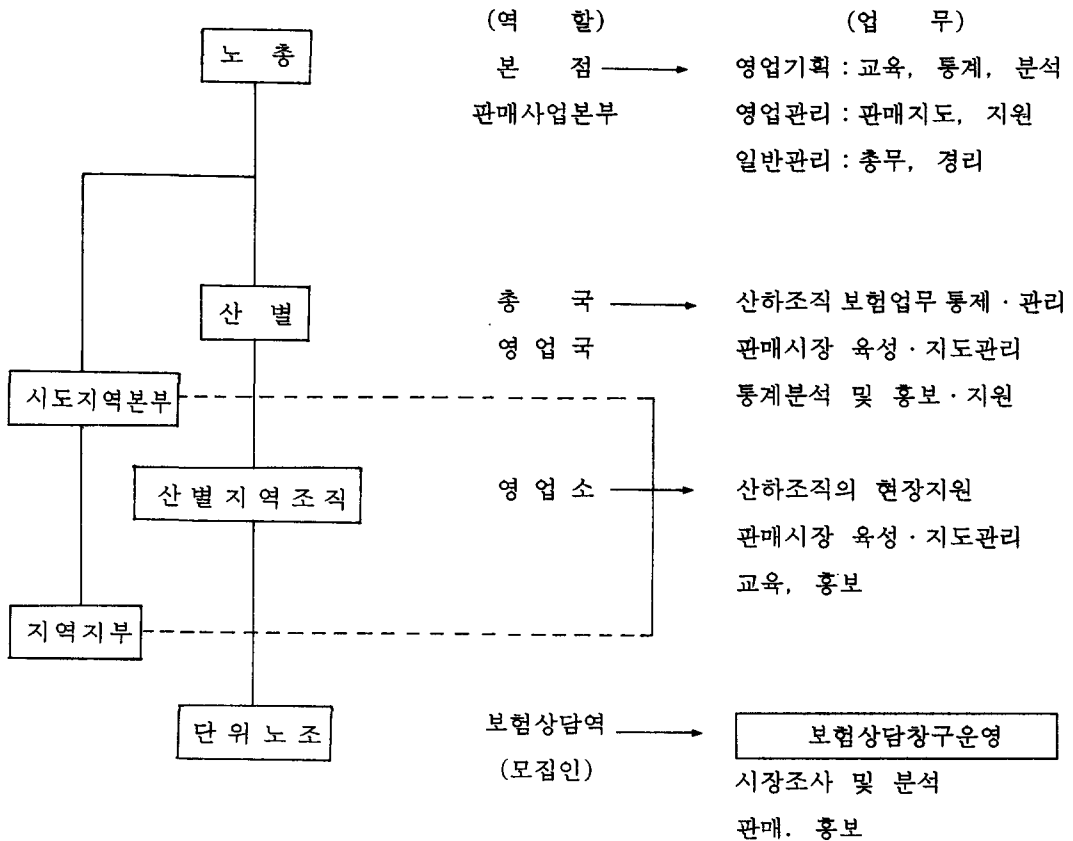
보험산업은 조직을 통한 인시사업(사람+종이)이므로 전조직이 생보사업설립취지를 철저히 공감하여 공동목표 성취의식이 투철하여야 하며

- 2) 노총의 일선조직은 기업과 근로자! → 보험시장의 기능

즉 생보사업의 주된 보험판매시장임을 전조합원이 공감하여 스스로가 동참하여야 하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함

다. 운영 및 효과

1. 운영방법



2. 기대효과

- 1) 노총 및 산별 재정 자립기반 확보
- 2) 조직강화에 기여
- 3) 사회보장제도 보완
- 4) 노사분규 예방에 기여(임금타결 수단이용)

5) 기업부담시 손비인정으로 효과 극대화

라. 효과분석 및 예상실적

1. 분배내용(향후 조정가능)

	노 총	연 맹	단위노조
100%	9.6%	20%	70.4%
		90.4%	
432%	128%		304%

◎ 단위노조에는 초회이후 월유지보험료×보조수당 1% 별도지급(연 11%)

◎ 연맹 산하지역조직의 배분%는 해당연맹에서 결정

2. 가입유형예시

적용상품 : 직장인보장보험 10년형(p.11 참고)

가입인원 : 200명

가입금액 : 월 2만원

수 수 료 : $200\text{명} \times 2\text{만원} \times 432\% = 17,280,000\text{원}$

$1\text{명} \times 2\text{만원} \times 432\% = 86,400\text{원}$

◎ 보조수당은 산정치 않았음.

3. 가입형태별 재정자립자금 예시

1) (가입유형예시)와 같은 규모로 가입시

① 연맹이 연간 30개 가입시

$17,280,000\text{원} \times 20\% = 3,456,000\text{원}$

$3,456,000\text{원} \times 20\text{개} = \text{약 } 1\text{억}3\text{백}6\text{십만원}$

② 단위조노 가입시

$17,00280,000\text{원} \times 70.4\% = \text{약 } 1\text{천}2\text{백}16\text{만원}$

2) 단위조합형태의 회원조합 가입시

① 5,000명 가입시

$5,000\text{명} \times 86,400\text{원} \times 90.4\% = \text{약 } 3\text{억}9\text{천}5\text{십만원}$

② 20,000명 가입시

$20,000\text{명} \times 86,400\text{원} \times 90.4\% = \text{약 } 15\text{억}6\text{천}2\text{백}1\text{십만원}$

4. 추정에상실적에 따른 수수료 (조합원 150만명 기준)

년차별 항목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예 상	%	10	15	20	45
가 입	인원(명)	15만명	22만5천명	30만명	67만5천명

예상수수료(계)			129억	195억	259억	583억
분배 (천)	노 총	9.6%	12억	19억	25억	56억
	A. 산 별	20%	26억	39억	52억	117억
	B. 단위노조	70.4%	91억	137억	182억	410억
	A + B	90.4%	117억	176억	234억	527억

마. 판매상품

1. 단체보험

- ① 개인가입형 전종목
- ② 기업주부담 보장정보험(노사협상용)
- ③ 기업주부담 퇴직금준비보험

2. 개인보험

- ① 교육보험, 암보험등 보장 및 저축보험 중 단체취급보험(보험료 할인혜택)

바. 교 육

과 정		대 상 자	일정	교 육 내 용
입 문	시험전	보험상담역 (단위노조)	3일	등록시험대비(생명보험이란)
	시험후		4일 (숙박)	상품지식, 계약절차, 사무처리 상담요령
보수교육		등록3개월후	3일 (숙박)	시험후 교육 보충
실무교육		실무담당자 (산별, 시도본부, 지역)	3일 (숙박)	생보기초이론, 상품지식 계약절차, 사무처리
수시교육		제도변경, 신상품개발등 기타 중요사항 발생시 실행		

제 3 장 생보사업 실무

가. 업무추진일정

추진업무		세부내용	추진일정
산 별	1. 보험담당자 선발 통 보	1. 미선발 또는 교체되어야 하는 산하 해당 조직의 보험담당자 선발 촉구확인 2. 월중 보험담당자 선발인원현황 제출 3. 서류취합 제출 ① 이력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2통 ③ 증명사진 9장	1. 월중 계속 2. 매월 25일까지 FAX송부 3. 매월 말일까지 노총에 (선발인원현황원본 포함)
	2. 교육 및 등록	1. 업무순서 ① 인원선발 및 서류제출(산별→노총) ② 서류취합송부(노총→대일→감독원) ③ 1차교육 및 시험일자 통보 (감독원→대일→노총→산별→해당조 직) ④ 1차교육, 시험, 등록 실시 ⑤ 합격자 통보 및 실무교육 (노총→산별→해당조직) 2. 매월반복되는 업무임	① 매월말 ② 익월 1일 ③ ④ 감독원 일정에 따라 실시 ⑤ 노총일정에 의해 실시
	3. 생보실무	1. 단위노조별 시장조사서 취합송부 (담당자 실무교육시 세부교육) 2. 보험상담창구운영 확인독려 3. 제반 계약관계서류 송부 (노총→산별→해당조직) 4. 수수료 수령 5. 제반판매관련자료물 청구보급 6. 성과분석 및 홍보, 판매 지원	1. 단위노조담당자교육수료당월 말까지 2. 계속업무 3. 계약처리즉시 4. 매월 26일 5. 매월 5일 청구 6. 계속업무
단위노조실무		1. 상기 교육일정에 의한 ① 담당자 선발 ② 서류제출 ③ 교육출장 실시 2. 실무교육 내용에 의한 ① 시장조사 ② 제반준비 3. 보험상담창구운영 ① 상담 ② 상품설명회 ③ 계약 및 보전업무	

나. 보험상담창구운영 (안)

1. 창구설치의 의의

모든 판매활동이 각기 일정한 판매절차가 있듯이 보험판매에도 고객유형이나 판매현장배경등에 따라 각기 여러 판매절차들로 세분화되지만 요약하면 대체로 아래의 4단계로 분류된다고 볼 때 각 단위노조에 “보험상담창구”를 운영함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판매절차상의 생략과 효과를 기대함에 있음.

판매 절차	1단계→준비 (만남의 장소)	2단계→접근 (신뢰의 교류)	3단계→상담 (가치의 설득)	4단계→계약 (만남의 결실)
과정 이해	고객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보험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과정		보험의 효용가치를 느끼게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기대 효과	단위노조 자체가 “보험시장”이며 “판매담당”이므로 1, 2단계가 자연히 생략된다고 봄		고객의 인식전환(효용가치판단)을 보다 효율적인 매체 즉 “보험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약성과를 추구함에 있음	

2. 인식전환의 기본포인트

- 1) 우리 “보험상담창구” 에 가면
 - a. 항상 믿을 수 있는 보험상담역이 주재하고 있다는 인식
 - b. 언제나 보험에 관한 제반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인식
- 2) 우리 “보험상담창구” 에서 보험계약을 하면
 - a. 보험계약절차 및 납입방법이 매우 간편하다는 인식
 - b.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믿고 계약할 수 있다는 인식
 - c.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인식(교육보험 등 개인보험)
- 3) 우리 “보험상담창구” 에서 내가 계약한 보험 한건이
 - a. 우리 직장노조의 재정자립기반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
 - b. 우리 직장근로자의 복지구현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는 인식
- 4) 우리 “보험상담창구” 는 우리 직장의 사회보장제도 조기실현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

3. 인식전환을 위한 실행사항(단위노조)

- 1) 언제라도 모든 보험에 관하여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자세확립 및 업무숙지

→ 보험상담역

2) 항상 열람이 가능한 판매자료 진열(각종 팜플렛, 비교표 등 판촉자료물)

→ **진 열 대**

3)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관련된 시사물, 신상품 소개등에 관한 공시

→ **게 시 판**

4) 제반 성과 및 실행에 관한 공개(수수료 수령 및 사용, 성과분석 등)

→ **정기적 공개제도 정립**

4. 보험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준비(노총, 대일)

1) 보험담당자의 정기 및 보수교육 실시 → 교육장소, 교육계획, 교육자료

2) 신속한 업무처리라인 구축 → 문서처리행정, 심사, 보전, 온라인

3) 업무지침, 팜플렛, 가입신청서, 청약서 등 인쇄물 보급

4) 지속된 판매촉진자료 개발보급

5)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원사항

a. 진열대 등 창구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대여

b. 기념품 → 판촉물

c. 성과달성에 따른 시상제도

d. 교육출장비

e. 노총기관지, 산별기관지 등에 홍보광고

6) 기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지원담당자 파견

7) 전국 판매조직망(대일의 영업국·소)과의 업무연계 효과방안 마련

8) 노총 각 단계별 조직의 업무연계 효과방안 구축

다. 대표상품 및 수수료 지급예시

A. 직장인보장보험

1. 상품의 특징

- 1)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보장
- 2) 다양한 위험보장
- 3)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 및 각종 배당금지급으로 저축효과
- 4) 퇴직후도 개별계약전환으로 계속유지
- 5) 세제혜택 : 연간 50만원 소득공제
- 6) 가입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보험료 적용
- 7) 산재보험등 기타보험과는 관계없이 별도보장
- 8) 24시간 장소불문하고 모든 재해로부터 보장

2. 가입예시

- 10년 5배형
- 월보험료 남·여 공히 2만원
- 재해입원특약보험료 600원(소멸성)

※ 보장내용

구 분 지급사유		지 급 보 험 금	
		남	여
교통 재해사망시 및 1급 장해		41,322,310	97,087,375
기타 재해사망시 및 1급 장해		24,793,386	58,252,425
일반사망 및 1급 장해		8,264,462	19,417,475
보험료 면 제	재해 2급	5,785,123	13,592,232
	재해 3급	4,132,231	9,708,737
재해 4급 장해		2,479,338	5,825,242
재해 5급 장해		1,239,669	2,912,621
재해 6급 장해		826,446	1,941,747
만 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	
재해로 인한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5,000원	
기 타		세계혜택 및 각종 배당금 지급	

배당금지급 예시 :

- ① 배당금 지급(이자+사차+장기유지) : 93년 현재기준 약 16.09%
- ② 금리차 보상(확정배당금) : (1년만기 정기예금율-0.5%)-예정비율(7.5%)

B. 상품별 수수료 지급예시표

보험종류 및 구분			수 수 료 (원)
직 장 인 보 장 보 험	10 년	노 총	4,147
		연 망	8,640
		단위노조	30,413
		계	43,200
	5 년	노 총	2,074
		연 망	4,320
		단위노조	15,206
		계	21,600
	3 년	노 총	1,037
		연 망	2,160
		단위노조	7,603
		계	10,800
단 체 정 기	남 (35세)	노 총	2,145
		연 망	4,469
		단위노조	15,731
		계	22,345
	여 (25세)	노 총	4,147
		연 망	8,640
		단위노조	30,413
		계	43,200
		노 총	1,296
		연 망	2,700
		단위노조	9,504
		계	13,500

보험종류 및 구분				수 수 료 (원)
직 장 인 저 축 보 험	10년	남	노 총	2,371
			연 망	4,939
			단위노조	17,385
			계	24,695
		여	노 총	2,492
			연 망	5,193
			단위노조	18,277
			계	25,962
	7년	남	노 총	1,366
			연 망	2,845
			단위노조	10,014
			계	14,225
		여	노 총	1,406
			연 망	2,930
			단위노조	10,311
			계	14,647
	5년	남	노 총	874
			연 망	1,821
			단위노조	6,408
			계	9,103
		여	노 총	890
			연 망	1,854
			단위노조	6,528
			계	9,272
3년	남	노 총	494	
		연 망	1,029	
		단위노조	3,620	
		계	5,143	
	여	노 총	500	
		연 망	1,041	
		단위노조	3,663	
		계	5,204	

◎ 월보험료 1만원 기준임.

◎ 10회 균등분할 지급함.

◎ 집금수당 (0.5%) ☐ 단위노조에 지급
 사무보조비 (0.5%)
 (초회이후 매월 유지보험 × 1%)

2. 복지 담당자 회의 및 교육

1) 복지담당자 회의

일시 : '93. 11. 19. 10 : 00

장소 : 노총 6층 회의실

안건 : 각산별 복지정책 및 사업현안 상호협의

노총 복지 사업현황 및 과제

노동조합의 복지활동 방향

2) 복지 담당자 교육

일시 : 1993. 12. 27. -12. 29(2박3일)

장소 : 한국노총교육원

참석자 : 연맹 여성부장 외 6명

3) 복지 담당자 회의

일시 : '94. 2. 4. 16 : 00

장소 : 평화은행 본점

안건 : 1천만 근로자 1통장 갖기 캠페인 추진

4) 보험담당자 교육

일시 : '94. 3. 16~18. (2박3일)

장소 : 유일레저타운

참석자 : 연맹 여성부장